

kiri리포트

포커스 모음집 2018



Contents_ 포커스

1

거시금융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윤성훈 한성원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비교	전용식 김유미	15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 유효성 논란	윤성훈	24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윤성훈 한성원	32
아베노믹스 5년의 평가와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특징	윤성훈 한성원	42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임준환 문혜정	53
국고채 시장 개선과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효과	황인창 임준환	62

2

보험제도 및 정책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김석영	77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창희 홍민지	85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이기형	94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와 시사점	정원석 김세중	103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110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이기형	118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안철경 정인영	128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	변혜원	141
숙박공유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검토과제	임 준	14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157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황현아	166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김규동	178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방안 제안	기승도	187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황현아	198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써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황현아	209

포커스 _Contents

2

보험제도 및 정책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전용식 김유미	218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김규동	226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	236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김규동	244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안철경 정인영	253

3

고령화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안철경 정인영	269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황현아	278

4

보험경영

주요 인슈어테크 기업 사례와 시사점	조영현 이해은	293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아	302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조영현 이해은	312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김세중 김유미	320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과 금리위험관리	임준환	329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사이버 리스크 관리	변혜원	388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안철경 정인영	347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김규동	356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비용 편익 분석	임준환 채원영	364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김석영	371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 분석	조영현 이해은	380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과 시사점	안철경 정인영	390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안철경 정인영	403
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와 신용부도스왑 발행	임준환 문혜정	421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김석영 손민숙	431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임준환 문혜정	440
빅데이터에 나타난 보험산업	김석영 정원석	449



CHAPTER

01

거시금융

- | | |
|-------------------------------------|---------|
| 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 윤성훈 한성원 |
| 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비교 | 전용식 김유미 |
| 3.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 유효성 논란 | 윤성훈 |
| 4.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윤성훈 한성원 |
| 5. 아베노믹스 5년의 평가와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특징 | 윤성훈 한성원 |
| 6.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임준환 문혜정 |
| 7. 국고채 시장 개선과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효과 | 황인창 임준환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7년부터 상승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대책(일명 8.2 대책)을 발표함
- 본고는 전세가격을 아파트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내재가치 변동성과 실제 매매가격 변동성 비교를 통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검토함
 - 전세가격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내재가치와 개념적으로 유사함
 - Shiller(1981)는 자산의 내재가치 변동성이 실제 매매가격 변동성보다 작으면 매매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성 비교를 과대분산테스트(Variance Bound Test)라고 함
- 1986년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발표하는 국민은행 자료(KB 부동산)를 이용하여 서울 전지역, 한강이남, 한강이북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과대분산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한강이남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이미 거품이 형성되었고, 한강이북의 경우 거품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남
 - 거품이었던 시기로 알려진 1980년대 말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실제 매매가격 변동성이 내재가치 변동성을 상회함에 따라 전세가격을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본고의 방법은 적절해 보임
 - 실제 매매가격 변동성은 2009년 이후 내재가치 변동성을 하회하였으나, 최근 들어 한강이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은 내재가치 변동성보다 커졌고, 한강이북에서는 내재가치 변동성에 근접해가고 있음
- 거품이 형성되고 꺼질 때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통화당국 간에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
- 8.2 부동산 대책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가운데, 거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품 발생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6년부터는 지방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서울 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KB 부동산 시세)는 2013년 -1.9%, 2014년 1.0%, 2015년 5.6%, 2016년 4.2%, 2017년 5.3% 상승함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1% 내외에 그침
 -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1.2%, 2014년 2.3%, 2015년 6.9%, 2016년 5.3%, 2017년 6.6%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서울 다른 지역보다 높은 모습을 보임
- 이에 반해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1.5%, 2014년 3.3%, 2015년 6.6%, 2016년 1.1%, 2017년 0.9% 상승하였는데 2016년부터 상승률에 있어서 서울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표 1〉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9~12
서울 전지역	-1.9	1.0	5.6	4.2	5.3	1.8
강남구	-1.2	2.3	6.9	5.3	6.6	2.9
6대광역시	1.5	3.3	6.6	1.1	0.9	0.2
소비자물가지수	1.3	1.3	0.7	1.0	1.9	-0.5

주: 6대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임
 자료: KB 부동산, 한국은행

■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일명 8.2 대책)을 발표하였음

-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크게 증가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증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 또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新)DTI¹⁾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²⁾ 규제가 2018년부터 시행됨
-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8%(연율 7.2%),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9%(연율 11.0%) 올랐으나, 6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0.2%(연율 0.8%) 상승에 그침

2. 자산가격 거품의 개념 및 거품 검증 방법



가. 거품 개념

- 자산가격 거품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 자산의 본질(fundamental)에 의해 결정되는 내재가치를 장기간에 걸쳐 상회하는 현상을 의미함
- 실제가격과 내재가치 간의 괴리가 1년 이하로 단기간 동안 나타나는 현상을 패즈(fads)라고 하며, 실제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은 경우를 거품과 구분하여 선스팟(sunspot)이라고도 함
- 효율적 시장가설(Fama 1970)³⁾에 의하면 실제가격과 내재가치 간의 괴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거품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기대심리 등 내재가치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대표적인 거품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튜립 거품(1634~1637년),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

1)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현재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을 말함

2)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할부·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기타 부채의 경우 이자만이 포함된 DTI보다 엄격한 규제임

3) Fama, E. F.(1970), "Efficient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ory and empirical works", *Journal of Finance*, vol. 25, no. 2

(1720년), 영국의 남해회사(South Sea) 거품(1721년), 남미의 광산 거품(1820년), 영국의 철도 거품(1845년), 미국의 대공황(1929년), 일본의 주가 및 부동산 거품(1980년대 말), IT 거품(2000년 전후) 등이 잘 알려져 있음

■ 자산가격 거품은 크게 비합리적 거품 이론과 합리적 거품 이론 등으로 설명됨

-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실제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격 상승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임
 -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 수 없을 때 거품이 꺼지기 시작함
 - 이에 따라 Flood and Hodrick(1990)⁴⁾은 자기실현적 기대감(Self-fulfilling Prophecies) 자체가 거품이라고 정의함
- 자기실현적 기대감은 군중심리 등 심리적 요인이나 부정확한 정보 등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고,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Blanchard and Watson 1982)⁵⁾로도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관찰되지 않는 내재가치를 정확히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실증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나타난 초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현상에 대해서 Flood and Garber(1980)⁶⁾는 거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Burmeister and Wall(1982)⁷⁾은 거품이 있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
- 1980년대 말 거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주가와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Dekle(1991)⁸⁾은 당시 금융완화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환위험으로 인해 해외자산에 투자되지

4) Flood, P. R. and Hodrick, R. J.(1990), "On testing for speculative bubbles", *Journal of Econometric Perspectives*, vol. 4, no. 2

5) Blanchard, O. and Watson, M.(1982), "Bubbles, rational expectations and financial markets", in P. Wachtel (ed), *Crisis in the Economic and Financial Structure*, Lexington, MA

6) Flood, P. R. and Garber, P.(1980), "Market fundamentals versus price-level bubbles: the first tes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no. 4

7) Burmeister, E. and Wall, K.(1982), "Kalman filtering estimation of unobserved rational expectations with an application to the German hyperinfl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vol. 20

8) Dekle, R.(1991), *Comment in Paul Krugman(ed), Trade with Japan: has the door opened wi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못하고 일본 국내 자산에 투자됨에 따라 자산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자산가격은 거품이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말 부동산가격에 대해 김경환·서승환(1990)⁹⁾은 거품적 속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원암(1992)¹⁰⁾은 당시 주요 거시변수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거품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나. 거품 검증 방법

■ 거품을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자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한 방법과 자산선택 이론에 근거한 방법 등으로 구분됨(이준희 2006)¹¹⁾

-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첫 번째 방법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 요인들의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를 구하여 주택의 장기균형 가격을 도출하고 실제가격과 비교하는 것임
 - 이 방법의 경우 모형 설정의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 가격이 장래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자산선택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공적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변동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뉘어짐
 - 첫째,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존재하면 아파트 가격과 임대소득 간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공적분 관계 유무로 거품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실제가격은 내재가치의 합리적 기대값(rational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면 실제가격 변동성이 내재가치 변동성보다 작아야(이하에서 설명됨)한다는 점에서 변동성 비교로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이고 위험에 중립적(neutral)이라는 강한 가정이 필요함

■ 본고는 앞에서 설명한 실증분석 방법 중 상대적으로 분석이 단순한 변동성 비교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검토함

- 시장참여자들이 합리적이고 위험에 대해 중립적이면 아파트 매매가격 P 는 식(1)과 같이 미래의 예상되는 임대수익 d 의 현재가치와 같게 됨

9) 김경환·서승환(1990), 「부동산투기와 자산가격 거품」,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0) 박원암(1992), 「지가, 환율과 거품」,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4호

11) 이준희(2006), 「주택가격의 거품 여부에 대한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한국은행

$$P_t = \sum_{k=0}^{\infty} q^{k+1} E_t(d_{t+k}) \quad (1)$$

- 여기서 E_t 는 기댓값(expectation operator), q 는 할인율($1/(1+r)$), r 은 주관적 수익률, 아래첨자 t 는 시간을 의미함

- 만일 미래를 완전히 예측(perfect foresight)할 수 있다면 아파트 내재가치 P^* 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P_t^* = \sum_{k=0}^{\infty} q^{k+1} d_{t+k} \quad (2)$$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합리적이라면 식(3)이 성립함

$$P_t = E_t(P_t^*) \quad (3)$$

- 식(3)은 식(4)와 같이 표시될 수 있음

$$P_t^* = P_t + \epsilon_t \quad (4)$$

- ϵ_t 는 추정오차(forecasting error)로 P_t 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이에 따라 $Var(P_t^*) = Var(P_t) + Var(\epsilon_t)$ 의 관계가 성립함
 - Var 는 분산(variance)을 의미함

- 따라서 부등식(5)가 도출됨

$$Var(P_t^*) \geq Var(P_t) \quad (5)$$

- 부등식(5)가 성립하면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반대로 부등식(5)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해석됨
- 이러한 방법은 Shiller(1981)¹²⁾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과대분산테스트(Variance Bound Test)라고 함
- Shiller(1981)는 관찰되지 않는 내재가치 P_t^* 를 식(6)과 같이 사후적으로 계산함

$$P_t^* = \sum_{k=0}^{(T-1)-1} q^{k+1} d_{t+k} + q^{T-1} P_T \quad (6)$$

- 여기서 P_T 는 T기의 가격임

12) Shiller, R.(1981), "Do stock prices move too much to be justified by subsequent changes in dividend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n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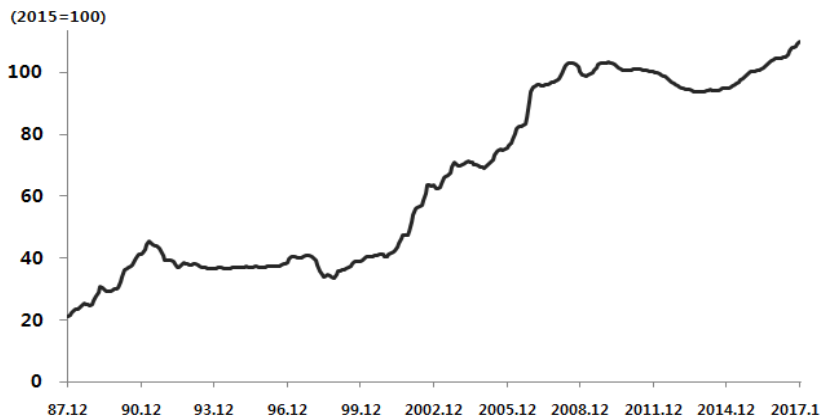
3.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전지역)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은데, 1980년대 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최근에 상승세가 높아지는 모습임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80년대 말부터 상승하는 추세이나, 1990년대 전반기, IMF 외환위기 시, 2004년 신용카드 사태 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기도 함
- 기존 연구(김경환·서승환 1990; 이준희 2006)에 따르면 198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거품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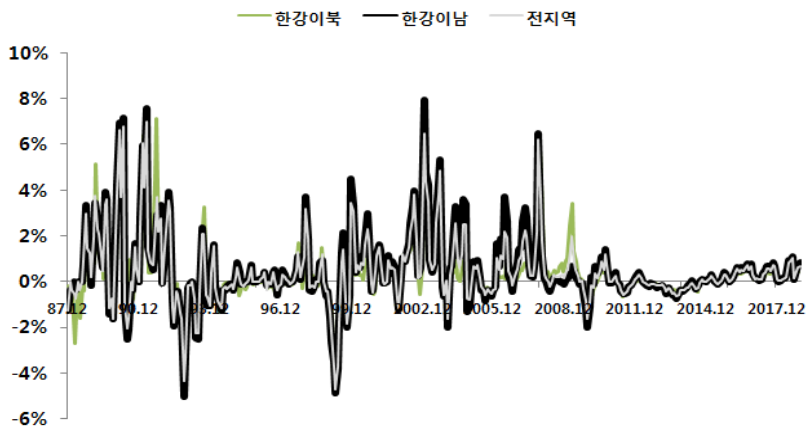
자료: 월간 KB 주택가격동향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지역, 한강이남, 한강이북) 변화율(전월 대비)인 <그림 2>를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하던 198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기에 변화율이 매우 컸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던 1990년대 초반과 외환위기 당시에도 변화율이 작지 않았음

- KB 부동산 시세의 분류에 따라 한강이남 지역에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가, 한강이북 지역에는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가 포함됨

- 2015년부터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율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그 정도는 과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기나 하락기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율만으로는 최근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그림 2〉 서울 아파트(전지역, 한강이남, 한강이북) 매매가격 변화율 추이



자료 : 월간 KB 주택가격동향

4. 실증분석 결과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내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hiller(1981)의 방식처럼 식(6)을 이용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만 존재하는 전세가격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 내재가치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함
 - 아파트 내재가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주거 서비스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가격이 개념적으로 내재가치와 유사함
 - 따라서 전세가격 자체가 내재가치와 수준(level)에서 동일하지 않더라도 변화율 또는 변동성의 경우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주관적인 수익률을 사용해야 하고, 분석기간 동안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하는 식(6) 보다 전세가격이 내재가치와 관련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시기별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년(window)간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변동성 추이를 비교함

- 2015년 1월~2017년 12월, 2014년 12월~2017년 11월, 2014년 11월~2017년 10월 등 기간을 1달씩 과거로 1986년 1월~1988년 12월까지 이동하면서 각각의 3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전월 대비 변화율의 변동성(표준편차)과 전세가격지수의 전월 대비 변화율의 변동성(표준편차)을 계산하고 비교함

■ 변동성 비교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들어 한강이남의 경우 거품 초입에 들어섰으며, 한강이북지역도 거품 수준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남¹³⁾

- <그림 3>은 서울(전지역, 한강이남, 한강이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화율의 변동성 추이를 보여주는데¹⁴⁾, 서울 전지역을 보면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전반기, IMF 외환위기 당시, 2000년대 전기간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성이 전세가격지수 변동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기(199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품 기간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본고의 방법이 실제매매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높은 경우(거품)와 실제매매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은 경우(sunspot)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본고의 방법으로도 기존 연구(김경환·서승환 1990; 이준희 2006)와 동일하게 1980년대 말¹⁵⁾, 2000년대 초반¹⁶⁾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거품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전세가격을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것은 적절해 보임¹⁷⁾
- 한편, 최근 들어 매매가격지수의 변동성이 전세가격지수의 변동성을 상회하기 시작함에 따라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3) 서울의 각 구별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지수가 2003년 1월부터 발표되고 있어 구별로도 거품 여부를 분석할 수 있으나 본고는 전세가격을 임의로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방법으로도 198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기의 거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따라서 1986년 1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 자료를 사용함

14) 예를 들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의 변동성(표준편차)은 <그림 3>에서 2017년 12월에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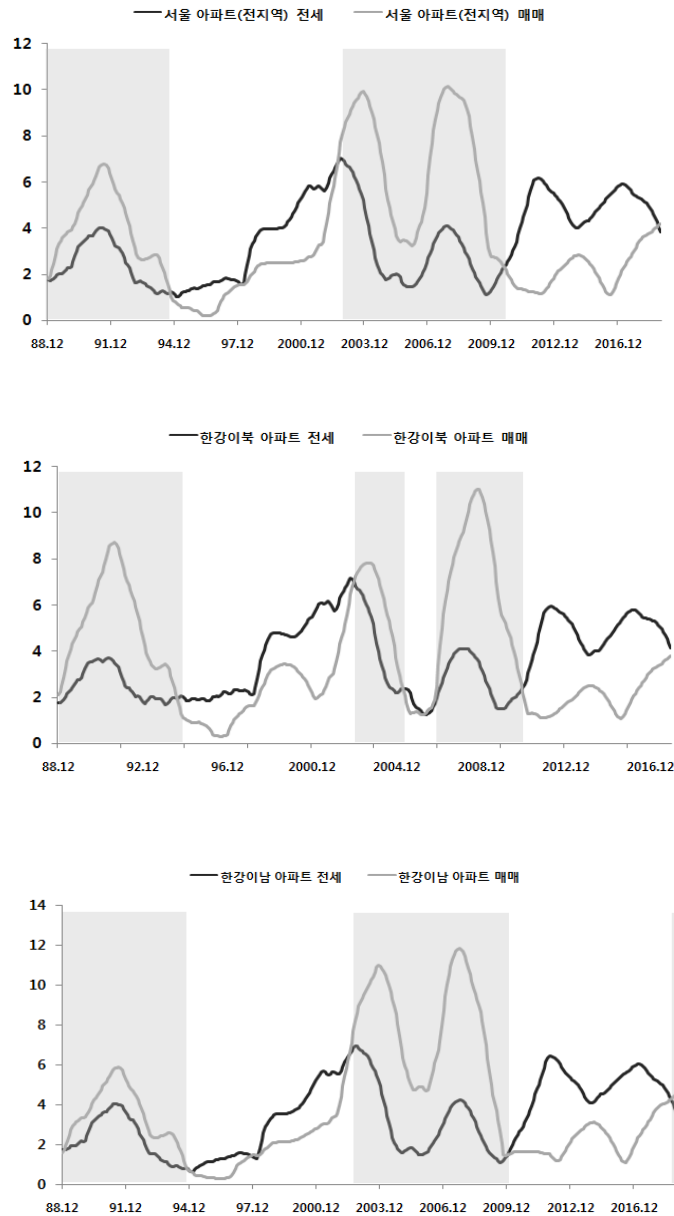
15)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1989년 2월 4일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4월 24일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 계획도 발표됨

16) 노무현정부에서도 LTV 비율 하향,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공공택지 개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등 부동산정책을 연이어 발표함

17)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전세가격을 사용한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3년 1월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각 구별로도 거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강이남과 한강이북 지역을 구분해 보면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양 지역에서 거품이 존재하던 시기는 거의 같으나 두 가지 차이를 보임

〈그림 3〉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 변동성 비교



- 첫째, 최근 들어서 한강이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미 거품이 시작되었고, 한강이북은 거품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간별 3년간의 변동성을 측정하여 거품 여부를 테스트 하는 경우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꺼지는 것을 실제보다 다소 늦게 판별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한강이북도 이미 거품일 가능성이 높음
-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경우 한강이남은 거품이나 한강이북은 거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대 전반기 한강이남에서 거품이 한강이북보다 과도하게 형성되었고, 신용카드 사태 충격이 한강이북에서 더 컸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5. 시사점



- 실증분석 방법이 갖는 제약으로 인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한강이남은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한강이북은 거품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이고 위험에 중립적이며, 사용된 통계자료(변화율)가 정규분포여야 하는 등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 분석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의 내재가치로 전세가격을 사용했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갖는 한계임
 - 공적분(cointegration) 분석 등 다른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본고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거품이 형성되고 꺼질 때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정책을 통해 주가나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거품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화당국 간에도 일치되지 않았음
 - Cecchetti et al.(2000)¹⁸⁾ 등은 자산가격 거품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18) Cecchetti, S., Genberg, H., Lipsky, I. and Wadhvani, S(2000), "Asset prices and central bank policy", *Genevan Report on the World Economy 2*, ICMB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Bernanke and Gertler(2001)¹⁹⁾ 등은 자산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8.2 대책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가운데 거품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품 발생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임

- 2017년 7월 4조 8,000억 원 증가하였던 주택담보대출은 2018년 1월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Sutton et al.(2017)²⁰⁾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 금리가 미국 이외 다른 국가의 주택가격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²¹⁾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kiri](#)

19) Bernanke, B., and Gertler, M.(2001), "Should central banks respond to movements in asset pric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no. 9

20) Sutton, G.D., Mihaljek, D., and Subelyte, A.(2017), "Interest rates and hou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BIS Working Papers, No. 665

21)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19일 국제결제은행(BIS)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태국, 핀란드 등 10개국을 가계부채 위험국가로 분류함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비교

전용식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6년 7월 6일 1.38%에서 2018년 5월 21일 3.06%까지 상승함
 -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015년 13월 82.91에서 2018년 4월 75.58로 약 8.9%하락하였고 신흥국 통화 가치 역시 2014년 5월 88.54에서 2018년 4월 68.65로 하락함
 - 달러화 가치는 2014년 5월 102.11에서 2018년 4월 118.17로 15.7% 상승함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정책금리 인상 이후 주요 금융 불안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1990년 일본의 버블붕괴,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통화위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IT 버블) 붕괴,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선행하고 있음
 - 금리가 낮은 시기에 형성된 자산가치 버블이 정책금리 인상으로 소멸되면서 금융 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2004년 정책금리 인상 시기와 2015년부터 시작된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비교해보면 최근의 금리 상승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미국의 정책금리는 1.0%에서 5.25%까지 상승하였는데, 이 시기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폭은 2015년부터 시작된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달러가치는 하락하였음
 - 2004년 시기의 미국 경기는 확장에서 위축단계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침체에서 확장으로 전환됨
- 국내 경기가 2005년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될 경우 금리 상승의 부담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 실물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 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수출도 부진해질 수 있음

1. 검토배경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3월, 6월, 12월, 2018년 3월 여섯 차례 인상되며 0~0.25%에서 1.50~1.75%로 인상됨
-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5년 12월 2.24%에서 2018년 4월 2.87%, 2018년 5월 21일 3.06%로 상승함
 - 20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시작 이전인 2012년 7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53%임

■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페소화 등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 실질실효환율 기준의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2015년 12월 82.91에서 2018년 4월 75.58로 약 8.9% 하락함
- 신흥국 통화가치 지수는 2015년 12월 65.7에서 2018년 4월 68.65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전인 2014년 평균 85.01에 비해서는 19.2% 하락함

■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두 차례의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기의 글로벌 주가, 환율, 금리, 경기등을 비교하여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4년 6월 1.0%에서 2006년 7월 5.25%까지 17차례, 425bp 인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차례 인상되었고, 올해 3,4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2.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융 불안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과 주요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1986년 12월 5.87%에서 1989년 5월 9.81% 내외로 인상되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7% 후반에서 9% 내외로 상승하였는데, 1987년 블랙먼데이와 1990년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가 이어짐
- 1993년 3.0%에서 1995년 7월 6.0%까지 인상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통화위기, 1996년 동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함¹⁾
- 1998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정책금리는 4.7%에서 6.5%까지 인상되었는데 이후 닷컴 버블(IT 버블) 붕괴와 브라질 통화위기로 이어짐
-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미국 정책금리는 1.0%에서 5.25%까지 인상되었는데, 2008년 3월 베어스틴스 인수,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부터 양적완화가 시작되었고 2015년 12월부터 정책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였는데,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²⁾
 - 신흥국 통화가치 지수는 2015년 12월 65.7에서 2018년 4월 68.65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였고 터키, 인도네시아의 금융 불안으로 확대됨
 -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2017년 GDP 대비 4.6%, 4.9%), 높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2017년 140% 상회), 높은 외자의존도(외국인의 국채보유 비중 터키 20%, 아르헨티나 45%)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³⁾

1) 국제금융센터, “1970년대 이후 외환위기 주요 사례 조사”

2) 보험연구원(2014)은 2014년 전후 발생한 신흥국 금융 불안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로 분석하였고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함; 동향분석실(2014. 2. 17),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KiRi Weekly』

3) 국제금융센터(2018. 4. 26), “환율 불안 신흥국의 대외건전성 점검”

〈그림 1〉 미국 정책금리(실선)와 10년 만기 국채금리(점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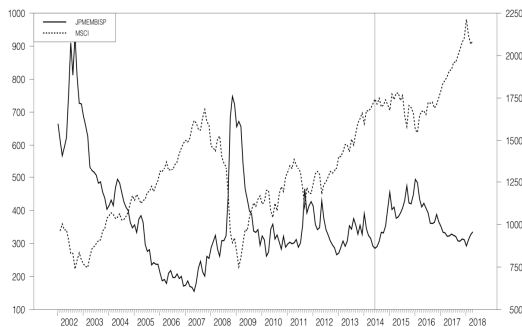
주: 미국의 정책금리는 월평균 수치이며 2008년 이후 정책금리는 하한 값임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

■ 2004년 6월과 2015년 12월 시작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전 세계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흥국의 미국 국채에 대한 국채발행 스프레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모건스탠리 세계 주가지수(이하 'MSCI')⁴⁾는 2014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2016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본격화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
- 2003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신흥국 국채발행 스프레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는 급격히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임
 - 그러나 2018년 들어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금융 불안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음
- 신흥국 통화가치는 2014년을 전후로 하락세가 확대되었으며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세가 확대됨

〈그림 2〉 신흥국 국채발행 스프레드(실선)와 MSCI (점선) 〈그림 3〉 신흥국 통화가치(실선)와 미국 달러가치(점선)

(2010=100)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

4) 세계 주가지수로 모건스탠리복합지수(Morgan Stanley Composite Index)를 사용함

3.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비교



- 2004년 정책금리 인상 시기와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비교해 보면 2015년 말부터의 경우, 정책금리 인상폭에 비해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4년 6월 1.0%에서 2006년 6월 말 5.25%까지 17차례 425bp 인상되었으나 같은 기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73%에서 5.11%로 38bp 상승함
 -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정책금리 상한은 0.25%에서 1.75%로 여섯 차례, 150bp 상승하였고 2018년에도 3~4차례 인상된다는 전망이 실현되면 2.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2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24%에서 2018년 5월 21일 3.06%까지 82bp 상승함
- 2015년의 경우에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장기금리는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미국의 산업생산증가율은 2004년 6월 2.52%에서 2005년 9월 1.64%로 하락한 후, 2005년 6월 4.58%로 최고 수준을 기록함
 - 2015년 말부터의 경우 산업생산증가율은 최저 -3.97%(2015년 12월)에서 최고 3.71%(2018년 3월)로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산업생산증가율 간의 시차상관계수도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시차 6까지 음의 계수인 반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시차 6까지 양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양(음)의 계수를 갖는다는 의미는 6개월 이전의 금리상승(하락)이 현재의 산업생산 증가(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MSCI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062.51에서 1,327.23으로 264.72 상승하였으나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662.79에서 2,086.51로 423.72 상승함

〈표 1〉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구분	2004년 6월~2006년 7월	2015년 12월~2018년 3월
정책금리 인상 횟수 및 크기	17차례 425bp(1.0% → 5.25%)	6차례 150bp(0.25% → 1.75%)
10년 만기 국채금리	4.73% → 5.11%(38bp)	2.24% → 3.06%(82bp)
산업생산증가율	최저 1.62%에서 최고 4.58% (2005년 6월)	최저 -3.97%(2015년 12월)에서 최고 3.71%(2018년 3월)
세계주가(MSCI)	1,062.51 → 1,327.23(264.72 상승)	1,662.79 → 2,086.51(423.72 상승)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달러가치의 상관계수	-0.468	-0.046

■ 미국 경기상승의 기대감은 달러가치에도 반영되는데, 2004년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비해 2015년의 경우 달러가치가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달러가치와의 상관계수는 2004년의 경우 -0.468로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 상관계수는 -0.046으로 금리상승과 달러가치 하락 간의 선형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미국의 산업생산증가율(실선)과 10년 만기 국채금리(점선)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

4.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비교와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금리, 환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의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 달러가치 상승세, 주가지수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의 정책금리 인상 기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 달러화 가치 상승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심화시킬 수 있어 경상수지 적자 등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통화가치 불안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채 금리(3년 만기)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는 2004년 6월 시작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비해 2015년 말부터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반면 환율과 주가에 대한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3년 만기) 상승세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상관계수는 2004년의 경우 0.757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0.891로 나타남
-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모두 상승(원화가치 평가절상)하였으나 그 관계의 정도는 2015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2004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원화가치의 상관계수는 2004년 정책금리 인상 시기의 경우 0.717이었으나 2015년 정책금리 인상 시기의 경우에는 0.543으로 감소함
- 종합주가지수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경기상승 기대)에 따라 상승하는 선형관계가 발견되었는데, 이 선형관계의 정도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우리나라 주가의 시차상관계수는 1개월 시차에서 0.586(1개월 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과 현재 국내 주가상승의 상관계수)이었으나 2015년 정책금리 인상 시기의 1개월 시차상관계수는 0.527로 소폭 감소함

〈표 2〉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

구분	2004년 6월~2006년 7월	2015년 12월~2018년 3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횟수 및 크기	17차례 425bp(1.0% → 5.25%)	6차례 150bp(0.25% → 1.75%)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	4.73% → 5.11%(38bp)	2.24% → 3.06%(82bp)
국고채 금리(3년 만기)	4.28% → 4.89%(61bp)	1.72% → 2.27%(52bp)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의 상관계수	0.757	0.891
국내 산업생산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평균 7.44%	평균 1.65%
국내 종합주가지수	771.61 → 1278.00(506.30 상승)	1,971.54 → 2,439.10(467.56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	3.60% → 2.40% 하락 (최저 2.0%, 최고 4.8%)	1.10% → 1.30% 상승 (최저 0.4%, 최고 2.6%)
생산자물가상승률	6.80% → 1.30% 하락 (최저 0.4%, 최고 7.5%)	-4.00% → 1.30% 상승 (최저 -4.0%, 최고 4.3%)
수입물가상승률	12.40% → 2.50% 하락 (최저 -1.2%, 최고 17.0%)	-12.00% → 3.20% 상승 (최저 -12.0%, 최고 13.3%)

■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의 선형관계가 약화된 원인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 둔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국고채 금리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의 선형관계가 높아진 원인은 2015년 이후 물가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산업생산증가율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평균 7.44%였으나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평균 1.65%에 불과함
 -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6.4%, 2006년 2/4분기 4.7%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4/4분기 3.2%, 2018년 1/4분기 2.8%를 기록함
-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상승률은 하락하던 추세였으나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물가지수들은 상승하고 있음

■ 국내 경기가 2005년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될 경우 금리상승의 부담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내금리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2018년 1/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8%로 2017년 1/4분기 2.9%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고 설비투자(-6.0%p)와 건설투자(-8.6%p)는 2017년 1/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됨

-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8년 2월과 3월 -1.2%와 -1.0%를 기록하였고 2018년 3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함
-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7년 3월 3.21%에서 2018년 3월 3.45%로 상승하였고, 일반신용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4.5% 내외를 유지함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부담비율(Debt Service Ratio)은 2004년 2/4분기 8.9%에서 2007년 3/4분기 11.4%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4/4분기 11.6%에서 2017년 3/4분기 12.7%로 상승함
- 금리상승 시기에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은 정체되고 물가와 금리가 더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현될 경우 지금까지 성장세를 주도하던 수출도 감소할 수 있음 [kiri](#)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 유효성 논란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미국과의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첫째,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의 단순화가 필요한데, 단순화 과정에서 현실과 다른 가정이 사용되며, 가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짐
 - 둘째,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이 경제현상과 부합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실증분석에서도 관련 변수 통제(control) 여부, 축약식(reduced form) 형태 사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 셋째, 경제이론이나 이로부터 도출된 경제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수리적이며, 특정 경제학파의 사고와 주장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임
 - 넷째, 주류 경제학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여 신뢰가 떨어졌으며, 통찰력보다는 수리적 기법에 의존하여 일반의 이해 역시 낮아졌고,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경제학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제이론의 결과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상 가능한 경제정책의 간접효과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고 열린 마인드가 필요함

1. 배경



-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미국과의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최근에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이러한 논란과 학파 간 논쟁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본고는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2. 경제학의 한계



가. 모형 단순화와 가정 의존적 결론

- 복잡한 경제현상을 모두 반영하여 경제모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강한 가정(심지어 현실과 전혀 다른 가정)을 통해 경제현상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데, 가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예를 들어, 무역이론 중 비교우위론은 가정에 따라 Ricardo모형과 Heckchser-Ohlin 모형, 그리고 확장모형 등으로 구분됨
 - Ricardo모형과 Heckchser-Ohlin모형은 두 국가, 두 가지 재화, 하나(노동) 혹은 두 가지(노동, 자본)의 생산요소를 가정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생산이 증가하여 두 나라가 모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경제이론(비교우위론)임

- Ricardo모형과 다르게 생산요소가 2개인 Heckchser-Ohlin모형에서는 무역 이후 소득재분배 문제가 발생함

- 이들 모형에서 국가 수를 늘리거나 재화 수를 늘리면(확장모형) 어느 국가가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생산요소를 늘릴 경우 무역 이후 어느 생산요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생산요소 중 손해를 보는 생산요소가 최소 1개 존재하게 됨
- 한편, 위의 비교우위론은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가정한 것인데, 불완전경쟁을 가정하게 되면 재화의 가격이 무역 이전에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국가에 수출할 유인이 발생하여 비교우위와 관계없이 무역이 이루어짐

■ 이처럼 강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정확히는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가정이 거짓(false; F)이더라도 결과가 참(true; T)이면 조건명제가 참이기 때문임

- 고등학교 수학과정에서 명제 P와 명제 Q로 구성된 조건명제의 진리표는 아래 <표 1>과 같음
- 즉, P(가정)가 거짓이더라도 Q(결론)가 참이면 P이면 Q라는 논리는 참임

<표 1> 조건명제의 진리표

P(가정)	Q(결론)	$P \rightarrow Q$
T	T	T
T	F	F
F	T	T
F	F	T

■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정 가운데 효율적 시장 가설과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합리성 가정은 1980년대 이후 금융 및 재무경제학의 발전뿐 아니라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음

- 이 외에도 ‘모든 소비자의 효용은 동일하다’, ‘세상에 2개의 재화만이 있다’, ‘모든 정보를 가진 설계자(central planner)가 있다’,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한다’ 등이 대표적인 경제학의 가정임

■ 또 다른 단순화는 경제현상을 일반 균형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부분 균형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이 경우 경제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변수 간 내생성 문제 등도 발생함

나. 실증분석의 한계

■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이론(가설)이 실제 경제현상과 부합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 여성의 임금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첫째, 여성의 임금 이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를 통제(control)해야 하는데, 관련 경제변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둘째, 통제가 완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축약식(reduced form)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분균형분석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여성의 경우 임금 상승이 소득효과를 통해 자녀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부분균형) 자녀의 기회비용(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을 높여 자녀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임금 인상이 결혼 여부나 결혼 시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다 고려(일반균형)한 실증분석은 어려움

■ 특히, 198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이론)은 주류 거시경제학 모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가 충분하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항상 내재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른 재화와 의 가격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재가치 수준 자체를 분석하지 못함
 -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여부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변동성 비교로 판단한 윤성훈 외(2018)¹⁾가 효율적 시장 이론의 전형적인 실증분석 방법임
- 이에 따라 Summers(1985)²⁾는 이를 케첩(ketchup)경제학이라고 비판함
 - 시장에서 500ml 케첩 1병이 1,000원에 팔릴 때 1,000원이 내재가치인지에 대해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은 설명하지 못함
 - 다만 시장에서 1,000ml 케첩 1병이 2,000원에 팔릴 때 500ml 케첩 1병이 1,000원 이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 모든 자산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여전히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며 자산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음³⁾

1) 윤성훈·한성원(2018),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KiRi 리포트』, 제440호

2) Summers, L.(1985), “On economics and finance”, *The Journal of Finance*, vol. 40, no. 3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의 주택가격에 대해 예일대학의 실러(Shiller)는 거품이라고 이미 진단하

다. 학파적 주장 고집

■ 1960년대와 1970년대 통화주의자와 케인즈학파 간 논쟁은 1980년대 이후 신고전학파와 뉴케인즈학파 간의 다툼으로 이어져 왔으나 양쪽 모두 금융위기나 자산가격 거품 현상을 설명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함

-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라 시장이 완전하다고 믿는 신고전학파는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 시키려는 통화정책의 경우 뚜렷한 효과도 없고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도 않으나 재정 정책은 경기변동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주장함
 - 이들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요 부족이란 있을 수 없고(가격 조정에 의해 수요 공급이 항상 일치), 가격과 수요 변화는 경기순환과 무관하며 경기순환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것⁴⁾이고, 실업은 경기순환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대응(선택)⁵⁾으로 해석함
 - 이들은 대부분 미국 내륙지방 대학의 경제학자들⁶⁾로 민물(pure water)경제학자라고 불림
- 이에 반해 뉴케인즈학파는 케인즈(Keynes)가 주장한 것처럼 경기가 수요 부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으로는 케인즈의 주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완화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경기 부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은 대부분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 대학의 경제학자들⁷⁾로서 소금물(salt water)경제학자라고 불림
-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학파와 뉴케인즈학파 모두 자산 가격 거품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설명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함
 - 뉴케인즈학파도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에서 최소한으로 벗어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자산가격 거품이나 금융위기를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음

였으나, 효율적 시장 이론을 도입한 시카고대학의 파마(Fama)나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한 당시 미 연준 의장인 그린스판(Greenspan) 등은 저금리에 따른 것으로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4)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같은 주장이며, 이들은 이를 real business cycle 이론이라고 부름

5) 이에 대해 크루그먼(Krugman 2009)은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쉬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냐고 비판함; Krugman, P.(2009), "How did economics get it wrong?", New York Times

6)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시카고대학의 루카스(Lucas)와 미네소타대학의 프레스콧(Prescott) 등임

7)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MIT대학의 브랜샤드(Blanchard), 버클리대학의 로머(Romer) 등임

■ 자산가격 거품이나 금융위기 등을 예측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여전히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른 학파적 주장을 고집하고 있음

-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만이 사용되었고 재정정책은 시행되지 않아 학파 간 논쟁은 거의 없었음
 - 뉴케인즈학파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었음
 - 신고전학파는 통화정책 역시 무용하다고 믿었으나 통화정책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 재정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⁸⁾하자 신고전학파뿐만 아니라 뉴케인즈학파로 알려진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를 비판하면서 양 학파 간 대립이 다시 극명해짐
 - 오바마 대통령과 뉴케인즈학파인 서머스 등 백악관 경제팀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까지 낮아지자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여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신고전학파인 시카고대학의 코크란(Cochrane)은 재정지출이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은 1960년대 이후 대학원에서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정책을 비난함(Madrack 2015)⁹⁾
 - 뉴케인즈학파로 알려졌던 하버드대학의 맨큐(Mankiw)와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Taylor)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함(Madrack 2015)
- 이후 로머(Romer)¹⁰⁾의 실증분석 논문(Romer 2011)¹¹⁾ 등이 발표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 감소함(Madrack 2015)
 - 로머(Romer 2011)는 자신이 뉴케인즈학파가 아니며 순수한 실증분석 결과만을 발표했다고 주장하였는데, 1달러의 재정지출이 1달러 이상의 GDP 증가를 가져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발간됨
 - 이와 함께 경기도 회복되자 2012년 코크란은 재정정책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실증분석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학파적 고집을 꺾지 않음(Madrack 2015)

8)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 의회는 8,300억 달러 상당의 재정정책(재정지출 확대 및 세율 인하)을 지원하는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통과시킴

9) Madrick J.(2015), *Seven bad ideas: how mainstream economists have damaged America and the world*, Vintage Books

10) 뉴케인즈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버클리대학의 로머(Romer) 부인임

11) Romer, C.(2011), "What do we know about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eparating evidence from ideology", Hamilton College

■ 미국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이후 구체적(concrete)이고 실용적(pragmatic)이기보다는 추상적인(abstract) 경제이론으로 둘러싸인 이념적(ideological)인 사고에 기반을 두게 되었고 이것이 잘못된 경제정책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¹²⁾

- 크루그먼(Krugman 2009)은 수학 및 추상적 개념에 대한 경제학의 지나친 의존이 학파적 고집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함
- 로머(Romer 2011)도 자신의 논문 제목 “What do we know about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eparating evidence from ideology”에서도 표현하였듯이 학파적 고집을 우려함

라. 경제학의 신뢰 하락과 대중의 이해 부족

- 주류 거시경제학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며, 통찰력 보다는 수리적 기법에 의존하여 일반의 이해 역시 낮아짐
- 이러한 가운데 경제학이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자 경제정책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어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통상정책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이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12) Cohen, S. and DeLong, J.(2016), Concrete Economic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3.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경제정책은 경제학 이론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 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제이론은 단순화된 모형에 기반하여 가정 의존적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경제정책이 어떠한 가정에 바탕을 두었는지, 가정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어떤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함
 - 또한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부분 균형적 시각에서 도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간접효과와 파생효과 등까지도 최대한 고려되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실증분석의 한계 측면에서 일부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한 경제이론이나 정책보다는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이 평가되고 시행되어야 함
- 셋째, 경제정책이 특정 이론이나 학파적 고집,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기보다는 실용적인 시각에서 수립되어야 하는데, 열린 마인드가 중요함
- 넷째, 경제학의 신뢰도와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제학은 추상적인 모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리학, 정치학, 역사학 등 관련 학문과의 접목이 필요함¹³⁾ [kiri](#)

13) Tirole, J.(2014), Economics for the common g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는데, 본고에서는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 첫째, 금융위기 또는 재정위기 충격이 컸던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과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진행되었고, 주택가격 조정이 가계부채 조정보다 먼저 마무리되었으며, 주택가격은 2013년을 전후하여 빠른 상승세로 전환됨
 - 미국, 영국, 포르투갈의 주택가격 지수는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2007년 수준을 하회함
- 둘째, 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있던 국가들에서 2007~2017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는 본격적인 조정 없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및 우리나라의 2017년 가계부채 비율은 190% 수준에 달하는데, 동 비율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위기 발생 전 가계부채 비율의 평균 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고,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 가져올 충격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조정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가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글로벌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충격에서 한 발 벗어나 있던 국가들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가계부채 비율 역시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위기 경험국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부채조정으로 위기 발생 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비율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게 상승하였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 주택가격 역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함
 - OECD가 발표¹⁾하는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Net Disposable Income)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7년 186%로 상승함
 -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58%, 2012년 159%, 2013년 160% 등으로 2012~2013년 기간 중 상승세가 둔화됨
 - OECD가 발표²⁾하는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2015년=100)(이하, '주택가격 지수')는 2008년 88에서 2017년 103으로 높아짐
 - 다만 주택가격 지수는 2012년 97, 2013년 96, 2014년 97로 2012~2014년 기간 중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 10월³⁾ 가계부채 대책을, 그리고 2017년 8월⁴⁾과 2018년 9월⁵⁾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함

1)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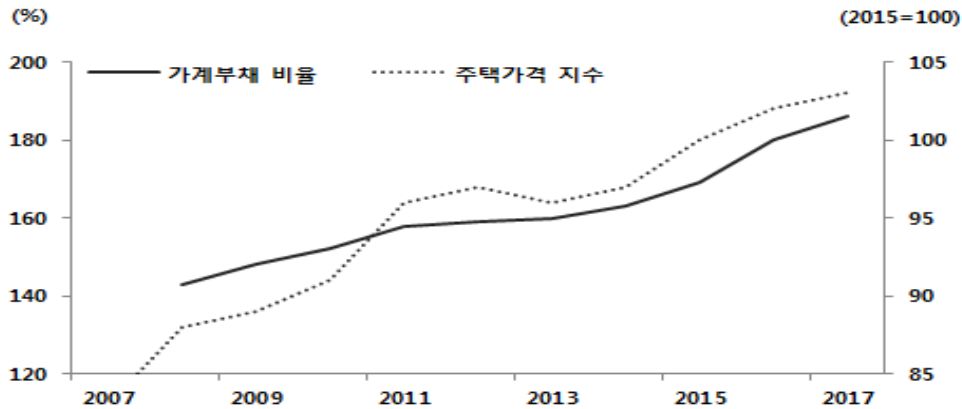
2)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3) DTI, DSR 등의 대출규제가 도입됨

4)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이 지정됨

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보유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등이 시행됨

〈그림 1〉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주택가격 지수 추이



자료: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고에서는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 고자 함
- 한국은행(2018)⁶⁾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서울 지역에서 상관관계가 높음

2. 주요국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



가. 가계부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 추이는 국가별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임
-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2011년 전후 남유럽 재정위기 충격이 컸던 국가들 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의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됨

6) 한국은행(2018), 「통화신용정책보고서」, pp. 45~46

-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미국(2007년 144% → 2015년 109%), 영국(2007년 165% → 2015년 142%), 아일랜드(2009년 241% → 2016년 171%) 등의 경우 가계 부채 비율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함
- 미국은 2015년 이후 동 비율이 109%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은 동 비율이 2016년과 2017년 각각 146%, 149%로 상승하여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임
- 스페인(2007년 155% → 2017년 116%)과 포르투갈(2012년 156% → 2017년 136%), 그리고 이탈리아(2012년 91% → 2015년 87%) 등 재정위기가 발생한 남유럽 국가 역시 가계부채 비율이 고점 대비 하락함
- 한편, 네덜란드⁷⁾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와 비슷한 시기부터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2010년 284%를 고점으로 2017년 243%로 하락함
- 둘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가계부채 비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100% 내외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음⁸⁾
 - 2007~2017년(일본은 2016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이 103~109%, 독일이 93~103% 범위 내에서 변동함
 - 일본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독일은 2015년 이후 변화가 없음
-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국가들은 1~2년간의 단기 조정이 있었으나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함
 - 스웨덴은 2011~2012년, 노르웨이는 2009년과 2015년, 프랑스는 2012년, 호주는 2008년과 2010~2011년, 캐나다 2012년에 가계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과 유사한 시기인 2012~2013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부채조정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타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함
 - 이들 국가(프랑스 제외)의 2017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경험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기 전 고점 평균인 190%에 이름

7) 네덜란드는 남유럽 재정위기국은 아니나 가계부채 움직임이 이들 국가와 비슷하여 재정위기 그룹에 포함시킴

8) 일본과 독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고 있었음

〈표 1〉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 위기	미국	144	137	136	129	121	115	116	112	109	109	109
	영국	165	163	157	155	154	148	144	145	142	146	149
	아일랜드	235	231	241	234	237	220	215	203	185	171	-
재정 위기	네덜란드	258	266	279	284	277	275	268	253	251	246	243
	스페인	155	151	146	149	143	142	135	128	122	118	116
	포르투갈	146	149	151	154	155	156	151	151	143	138	136
	이탈리아	79	80	85	89	89	91	89	88	87	87	87
위기 미 발생	일본	108	108	106	107	103	103	105	107	108	109	-
	독일	103	99	100	98	97	95	95	94	93	93	93
	스웨덴	158	158	163	169	168	167	168	171	176	181	186
	노르웨이	207	207	206	212	216	220	222	225	221	230	236
	프랑스	101	103	109	113	114	108	110	111	115	118	120
	호주	191	186	192	190	189	190	191	195	203	211	-
	캐나다	152	157	165	167	169	167	170	172	173	178	178
	한국	-	143	148	152	158	159	160	163	169	180	186

주: 음영처리 된 시기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시기
 자료: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나. 주택가격

■ OECD 주요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미국, 영국 및 아일랜드는 주택가격 지수가 4~5년간의 조정을 거친 후 빠른 속도로 반등함
 - 미국에서 2012년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됨
 - 미국과 영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각각 2017년 113과 112로 2007년 수준 102와 94를 상회함
 - 반면, 아일랜드의 주택가격 지수는 주택가격 지수 반등에도 2017년 119로 2007년 163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표 2〉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2015=100)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 위기	미국	102	94	88	85	82	84	90	95	100	106	113
	영국	94	89	81	86	85	85	87	94	100	107	112
	아일랜드	163	152	123	106	88	76	77	90	100	108	119
재정 위기	네덜란드	116	119	113	111	109	102	96	97	100	105	113
	스페인	149	147	137	135	124	106	96	97	100	105	111
	포르투갈	114	106	107	107	108	95	93	97	100	107	117
	이탈리아	121	123	119	118	120	117	109	104	100	100	99
위기 미 발생	일본	99	100	94	95	95	95	96	98	100	102	105
	독일	81	82	83	87	90	90	93	96	100	106	111
	스웨덴	66	66	68	74	76	77	81	88	100	109	116
	노르웨이	70	69	71	77	83	88	92	94	100	107	112
	프랑스	102	103	96	101	107	106	104	102	100	101	104
	호주	67	70	72	81	79	79	84	92	100	106	114
	캐나다	72	76	73	80	84	88	90	95	100	110	113
	한국	83	88	89	91	96	97	96	97	100	102	103

주: 음영처리 된 시기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한 시기
 자료: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 둘째,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주택가격 지수는 3~6년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하락세가 지속됨
 - 네덜란드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 유사한 모습임
- 셋째,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 상승 속도가 일본에 비해 빠름
 - 일본의 경우 주택가격 지수가 2008년 10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2009년 94로 하락한 이후 5년 정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독일에서 주택가격 지수는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2007년 81에서 2017년 111로 상승 속도도 매우 빠름
-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택가격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프랑스의 경우 동 지수는 96으로 떨어진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101~107 범위를 유지함

- 노르웨이(2008년), 호주(2011년), 캐나다(2009년) 등이 단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2007~2017년 기간 중 스웨덴(66 → 116), 노르웨이(70 → 112), 호주(67 → 114), 캐나다(72 → 113) 등은 동 지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함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하였으나 2007~2017년 기간 중 동 지수가 83에서 103으로 상승하였는데, 상승 정도는 상기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음
- 다섯째, 2014년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하였음

3.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관계



■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를 동시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이 관찰됨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 충격이 강했던 국가들을 보면,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됨
 - 가계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2015년에 마무리된 영국의 경우 주택가격 지수는 2012~201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7년 수준을 상회하였고,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 중인 아일랜드는 주택가격 지수가 201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07년 수준에 미달함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 지수는 201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반면, 가계부채 조정이 늦게 시작(2013년)된 이탈리아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하락세가 지속됨
 - 한편,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부채조정이 끝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 지수는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됨
- 둘째, 초고령사회인 이탈리아, 일본, 독일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남
 -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 모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07년보다 각각 0.9%, 6.1% 높아짐
 - 독일은 2007년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임

〈표 3〉 가계부채 비율 및 주택가격 지수 변화율

(단위: %)

구분			2007~2012	2012~2017	2007~2017
금융 위기	미국	가계부채 비율	-20.1	-5.2	-24.3
		주택가격 지수	-17.6	34.5	10.8
	영국	가계부채 비율	-10.3	0.7	-9.7
		주택가격 지수	-9.6	31.8	191.1
	아일랜드	가계부채 비율	-6.4	-22.3	-27.2
		주택가격 지수	-53.4	56.6	-27.0
재정 위기	네덜란드	가계부채 비율	6.6	-11.6	-5.8
		주택가격 지수	-12.1	10.8	-2.6
	스페인	가계부채 비율	-8.4	-18.3	-25.2
		주택가격 지수	-28.9	4.7	-25.5
	포르투갈	가계부채 비율	6.8	-12.8	-6.8
		주택가격 지수	-16.7	23.2	2.6
위기 미 발생	이탈리아	가계부채 비율	15.2	-4.4	10.1
		주택가격 지수	-3.3	-15.4	-18.2
	일본	가계부채 비율	-4.6	5.8	0.9
		주택가격 지수	-4.0	10.5	6.1
	독일	가계부채 비율	-7.8	-2.1	-9.7
		주택가격 지수	11.1	23.3	37.0
	스웨덴	가계부채 비율	5.7	11.4	17.7
		주택가격 지수	16.7	50.6	75.8
	노르웨이	가계부채 비율	6.3	7.3	14.0
		주택가격 지수	25.7	27.3	60.0
	프랑스	가계부채 비율	6.9	11.1	18.8
		주택가격 지수	3.9	-1.9	2.0
	호주	가계부채 비율	-0.5	11.1	10.5
		주택가격 지수	17.9	44.3	70.1
	캐나다	가계부채 비율	9.9	6.6	17.1
		주택가격 지수	22.2	28.4	56.9
	한국	가계부채 비율	11.2	17.0	30.1
		주택가격 지수	16.9	6.2	24.1

자료: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를 보면 일시적으로 가계부채 비율 또는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는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함
 - 2007~2017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는 스웨덴(17.7%, 75.8%), 노르웨이(14.0%, 60%), 프랑스(18.8%, 2.0%), 호주(10.5%, 70.1%), 캐나다(17.1%,

56.9%), 한국(30.1%, 24.1%)에서 상승함

- 이들 국가들은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앞에서 설명한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에서는 부채조정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넷째, 2007~2017년 기간 중 이탈리아, 프랑스와 우리나라만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많이 상승한 국가임

4. 결론 및 시사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남유럽 재정위기 충격이 컸던 국가들에서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진행되었고, 주택가격 조정이 가계부채 조정보다 먼저 마무리되었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주택가격은 2013년을 전후하여 빠른 상승세로 전환됨
 - 이들 국가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2017년까지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음
 - 이들 국가 중 미국, 영국과 포르투갈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이탈리아 제외)되었으나 2007년 수준에 미달함
- 둘째, 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있던 국가들의 경우 2007~2017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가 본격적인 조정 없이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함
 - 이들 국가(프랑스 제외)의 2017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기 발생 전 평균인 190% 수준에 달함
 -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와 캐나다는 2007~2017년 기간 주택가격 지수가 각각 55~75% 상승함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고, 주요국과는 달리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이에 따라 향후 금리 상승이 가져올 충격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조정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가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글로벌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충격에서 한 발 벗어나 있던 국가들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가계부채 비율 역시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위기 경험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부채조정으로 위기 발생 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가계부채 비율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게 상승하였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kiri**



아베노믹스 5년의 평가와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특징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자민당이 2017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베노믹스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베 내각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 구조개혁 등 세 가지 경제정책을 의미함
 - 정책목표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실질기준 연간 2%, 명목기준 연간 3%,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연간 2%임
- 아베노믹스 5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 긍정적인 평가의 배경은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8분기 연속 성장하였고,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주가도 크게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점 등임
 -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고, 대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부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만 개선되었을 뿐 서비스업의 경우 하락하였으며, 국가 경쟁력도 노동시장 규제 및 혁신능력 부족 등으로 후퇴하였다는 점 등임
 -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일부 제조업에서 경제 전반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실업률 개선이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 아베노믹스 5년간 생명보험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개인보험의 계속보험료 감소세가 멈추었다는 점과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개인연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등임
 - 비록 경제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았으나 양(+)의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점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막대한 정부부채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은 취업이 용이해지자 노후소득보장 수요부터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경기부양 및 성장정책을 2013년부터 실행하였고, 2017년 10월 선거 승리로 2021년까지 동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0월 선거 승리는 아베노믹스 때문이라는 평가¹⁾를 받고 있음
 -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지난 5년간 니케이 225 주가는 8,000 수준에서 22,000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구인배율은 0.9에서 1.5로 높아지며 실업률도 4%대에서 2.8%로 하락함
 - 엔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도 800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증가함
- 그러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의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구조개혁도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불거진 사학 스캔들과 북핵 관련 외교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²⁾
- 본 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아베노믹스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동 기간 동안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2.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아베 내각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 구조개혁 등 세 가지 경제정책을 의미함

1) Nikkei Asian Review(2017. 11. 2), "After an election win, get ready for more Abenomics"

2) 현대경제연구원(2018), "아베그리트 현실화되나"

- 세 가지 경제정책은 세 개의 화살에 비유됨
- 세 가지 화살을 통해 경기부양 → 신규수요 창출 → 투자 증가 → 기업수익 개선 → 고용 확대 → 임금 상승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함
- 정책목표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실질기준 연간 2%, 명목기준 연간 3%이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연간 2% 등임

■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일본은행은 미국 및 EU를 능가(GDP 대비)하는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행함

- 2013년 하루히코 구로다가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되자 바로 양적완화정책이 실시됨
- 2016년 기업대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도입됨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은행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투기적 거품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통화정책위원회(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에서 5대4로 근소하게 통과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1% 이하에서 유지됨에 따라 2017년 들어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66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2017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GDP 대비 70%를 상회함³⁾
 -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미국과 EU의 경우 모두 GDP 대비 25% 수준임
- 2018년 들어 구로다 총재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공격적인 통화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패키지가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마련됨

- 2013년 마련된 경기부양 패키지는 20.2조 엔에 달하였으며, 이중 10.3조 엔이 교량, 터널,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됨
- 2014년 4월 5.5조 엔 규모의 별도 경기부양 패키지가, 2014년 12월 선거 이후 3.5조 엔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패키지가 마련됨

3) James McBride and Beina Xu(2018), "Abenomics and the Japanese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구조개혁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 인하, 농업 자유화, 노동시장 개혁, 에너지/환경/헬스케어 부문 규제 완화 등임

- 이를 위해 산업재흥플랜, 전략시장창조플랜, 국제전개전략 등 3대 실행계획이 마련됨
-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현대화가 지연된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을 추진함
- 임시직과 정규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함

■ 또한 세 가지 화살의 연장선에서 아베 내각은 2015년 9월 출산율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아베노믹스 2.0을 발표함

- 교육비 및 육아비 절감에 2조 엔을 투입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68%에서 2020년까지 7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움
 -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 관리직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높일 것으로 요청함
- 우울증과 자살을 유발하는 과도한 노동문화 개선도 중시함

3. 아베노믹스 평가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아직까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두 가지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으나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인 시각과 부정인 시각으로 나뉘어짐

- 경제성장률은 아베노믹스 시행 원년인 2013년 2.0%를 기록한 이후 0.4~1.7% 사이를 유지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0.1%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4년간 양(+)의 상승률을 보임
 - 2014년의 경우 목표 수준을 상회한 2.7% 상승하기도 함

〈표 1〉 일본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1.7	-5.4	-0.1	1.5	2.0	0.4	1.4	0.9	1.7
소비자물가상승률	2.8	-1.4	-0.2	-0.1	0.4	2.7	0.8	-0.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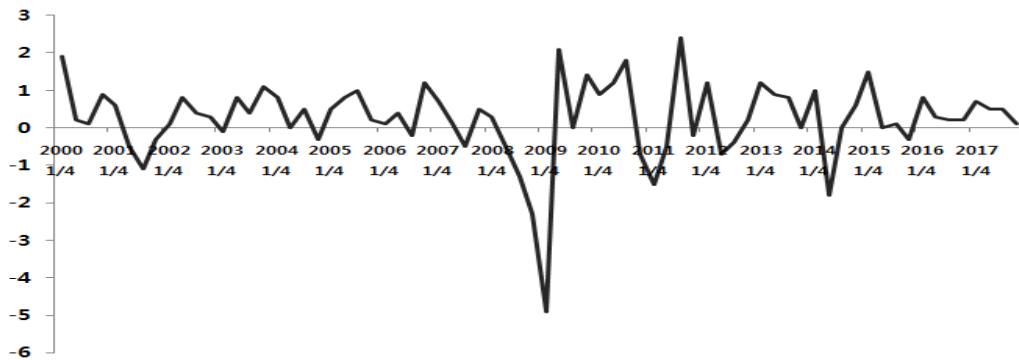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먼저 긍정적인 시각의 배경을 보면 첫째, 일본 경제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2016년 1/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성장(전분기 대비)한 점, 둘째,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한 점, 셋째,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개선된 점 등임

● 경제성장률은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여 년간 최장기간 양(+)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 1/4분기에 -0.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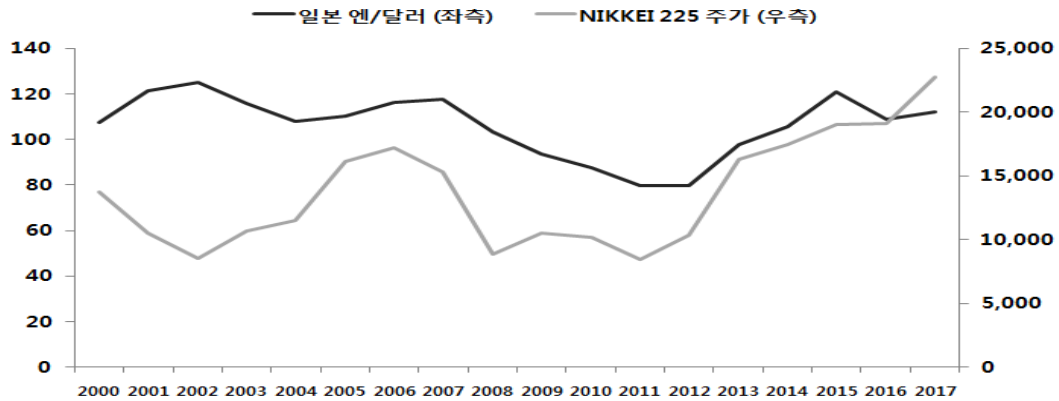
〈그림 1〉 일본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일본 엔/달러 환율과 니케이 225 주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주가는 1990년대 초반 자산가격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8,00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부터 아베 내각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와 이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제고로 22,000대를 회복함
- 아베노믹스 이후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개선됨
 -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인구도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개선되는 모습임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남성 취업자는 29만 명 늘어났으나 여성의 경우 203만 명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짐
 - 전체적으로 구인배율이 1.5에 달하며,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전 연령의 실업률이 가장 크게 개선됨
 - 24세 이하 남성의 실업률은 2010년 10.4%에서 2016년 5.7%로, 여성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4.5%로 하락함
 - 은퇴를 앞둔 연령의 실업률도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정년 연장의 효과로 보임
 - 한편,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51년생, 1,000만 명)가 2010년대 들어 은퇴하기 시작한 것도 실업률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2〉 일본의 실업률 추이

(단위: 만 명, %)

구분		취업자 수	실업률						
			전체	15~24	25~34	35~44	45~54	55~64	65 이상
남성	2000	3,817	4.9	10.2	5.0	2.9	3.4	6.7	3.2
	2005	3,723	4.6	9.9	5.2	3.5	3.1	5.0	2.5
	2010	3,643	5.4	10.4	6.6	4.3	4.1	6.0	3.3
	2015	3,639	3.6	5.9	4.8	3.0	2.9	3.7	2.4
	2016	3,655	3.3	5.7	4.4	2.9	2.6	3.4	2.5
	2017	3,672	3.0	-	-	-	-	-	-
여성	2000	2,753	4.5	7.9	6.4	3.7	2.9	3.6	1.1
	2005	2,702	4.2	7.4	6.2	4.1	2.9	2.7	1.1
	2010	2,656	4.6	8.0	5.7	5.0	3.6	3.3	1.3
	2015	2,764	3.1	5.1	4.3	3.2	2.7	2.3	1.0
	2016	2,810	2.8	4.5	4.1	2.9	2.4	2.3	1.3
	2017	2,859	2.7	-	-	-	-	-	-

자료: Statistical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전자부품 및 전기기계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음

- 일본 상용직(regular employees)의 월평균 급여는 2000년 35만 5천 엔에서 2013년 31만 4천 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기업의 수익성 개선, 구인배출 증가 및 실업률 하락에도 높아지지 않고 감소세만 멈추었음
 - 일본 정부는 기업에 임금을 매년 3% 이상 인상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들은 현재의 일본 경기 확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임금 인상에 주저함

〈표 3〉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천 엔)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임금	355	335	317	314	317	314	316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일본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생산용 기계, 전자부품, 전자 기계 등 대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에 그침
 - 대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에서 구조개혁 및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업종으로 파급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99.1, 2017년 97.3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4〉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추이

구분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석유화학	100.0	96.3	93.5	93.4	93.7	97.9
철강	100.0	94.1	93.5	87.8	86.0	85.9
생산용 기계	100.0	107.7	119.8	119.6	117.3	127.4
전자부품	100.0	101.0	112.3	119.8	112.9	124.3
전기기계	100.0	106.5	108.5	105.3	106.2	108.9
제조업 전체	100.0	98.7	100.8	98.9	98.5	102.4
서비스업 전체	100.0	1002.2	100.8	100.0	99.1	97.3

자료: Japan Productivity Center

- 한편,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기업의 수익성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과 혁신이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지속 성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임
 - 현재의 경기 확장세는 엔화 약세에 의존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실업률 개선은 엔화 약세와 단카이 세대 은퇴의 영향일 수도 있음
 - World Economic Forum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상승하지 못하고 있음

〈표 5〉 일본의 국가 경쟁력 순위 추이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순위/전체국가	10/144	9/144	6/144	6/144	8/138	9/137

자료: World Economic Forum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 혁신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개혁이 아직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6〉 일본에서 기업활동 애로 사항 순위

순위	1	2	3	4	5	6
애로 사항	노동시장 규제	세율	혁신능력 부족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	세금 규제	정책 불안정성

자료: World Economic Forum

4. 생명보험시장 변화 특징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던 개인보험⁴⁾ 계속보험료(Premium in Force)의 감소세가 멈추었다는 점임

-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임금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가계의 보험수요가 둔화되어 왔음
- 또한 보험수요가 저축성에서 의료보험 등 보장성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침체에도 보유계약 건수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였으나 의료보험 등의 경우 계약당 보험료 납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계속보험료 감소세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까지 지속되었음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근로자의 임금 하락세가 멈춘 것 등이 계속보험료 감소세를 멈추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7〉 개인보험 계속보험료 추이

(단위: 조 엔, 백만 건)

구분	2000	2005	2012	2013	2014	2015	2016
계속보험료	1,312	1,071	861	865	857	858	863
보유계약 건수	-	-	136	144	152	160	167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연차보고서, 각 호

4) 일본의 생명보험상품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됨

■ 둘째,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개인보험 중 개인연금 신계약 건수의 경우 30세 이하 연령층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됨

-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2년과 최근 자료인 2016년을 비교해보면 개인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의 경우 60세 이상은 16.9%에서 18.0%로 상승하였고, 30세 이하 연령층은 32.2%에서 32.3%로 변화가 없었음
 - 인구 고령화로 노인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층의 신계약 비중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30세 이하 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개인보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표 8〉 연령별 개인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30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1	30.6	21.4	16.7	13.5	17.8
2012	32.2	21.2	16.8	12.9	16.9
2013	33.0	20.2	16.7	12.4	17.6
2014	33.6	19.3	16.8	12.4	17.8
2015	32.1	19.1	17.2	12.5	19.2
2016	32.3	19.6	17.7	12.3	18.0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연차보고서, 각 호

- 그런데 개인연금 신계약 건수 비중의 경우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26.8%에서 16.8%로 하락하였으나 30세 이하 연령층은 19.0%에서 27.5%로 크게 높아짐
 - 2014~2016년 기간 중에는 30세 이하 연령층의 개인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은 33.6%에서 32.3%로 낮아졌으나 개인연금 신계약 건수 비중은 19.1%에서 27.5%로 오히려 높아짐
 - 이러한 현상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비록은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표 9〉 연령별 개인연금 신계약 건수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30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1	16.7	19.6	16.4	15.6	31.8
2012	19.0	20.6	18.2	15.5	26.8
2013	20.4	19.1	18.5	16.7	26.2
2014	19.1	16.9	18.5	17.8	27.7
2015	22.3	18.9	19.6	16.1	23.1
2016	27.5	19.9	20.4	15.3	16.8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연차보고서, 각 호

- 일본의 경우 막대한 정부부채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이 취업이 용이해지자 노후소득보장 수요부터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kiri](#)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보험업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중(對中) 무역적자의 누적, 글로벌 기술·경제력 약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촉발된 것으로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수 있음
 - 이에 중국도 관세부과로 맞대응하면서 극단적 대립의 형태인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불거진 직후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강세 및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지수인 VKOSPI가 한때 20%까지 상승하였음
 - 원화 대비 달러가치에 대한 미래의 상승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리스크 리버설(Risk Reversal)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한편 원화가치는 위안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하락폭이 원화하락폭보다 컸음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10년 이상 중장기 국채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채권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 및 수출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경제회복세 둔화는 장기 금리 상승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식시장 불안은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의 보증준비금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어 추가변화에 대한 해징 빈도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환율이 불안한 가운데 최근 장기 환헤지 부담비용이 단기에 비해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 환헤지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장기금리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는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미·중 무역 분쟁¹⁾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중(對中) 무역적자의 누적, 글로벌 기술·경제력 약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촉발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무역 및 핵 폐기 등 세계 문제를 “물 중심”의 정책을 통해 다루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국익 우선주의” 정책으로 선회함
 - 이러한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은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
- 미국은 중국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시장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약 50%를 차지함
-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을 목표로 하는 ‘Made in China 2025’ 정책의 핵심 투자분야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이에 중국도 관세부과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극단적 대립의 형태인 치킨게임(Game of Chicken)²⁾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불공정 교역임을 주장해왔는데,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중국도 이에 맞서 4월 초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증폭됨
- 지난 7월 6일 미국이 제 1차 관세부과를 시행함으로써 치킨게임이 시작되었고, 중국도

1) 무역 분쟁이란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 무역 및 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제반 조치 수단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하며, 조치 수단으로 관세율(tariff) 인상, 수입 금지 및 제한 등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그리고 환율평가절하 등이 있음

2) 엄밀히 말하면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은 동태적 치킨게임으로 볼 수 있음. 정태적으로 보면 치킨게임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극한적 대립상황(lose-lose)에 직면하게 되지만 동태적으로 살펴보면 상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호 간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것임. 가능한 전략으로 “눈에는 눈(tit for tat)” 또는 “군비경쟁(arms race)” 전략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눈에는 눈” 전략이 실효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죄수의 딜레마보다 나은 해결책(협상)이 도출될 수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곧바로 동일 규모의 보복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됨
- 닷새 후인 7월 11일, 미국이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10%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치킨게임은 2019년 양국의 실질GDP 최소 0.3%p 감소, 약 2조 달러의 세계 무역규모(미국 달러화 기준) 감소를 초래하여 세계경제에도 손실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³⁾

〈표 1〉 미·중 무역 분쟁 진행 현황

일자	국가	주요 내용
2018. 3. 22.	미국	행정명령을 통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부과, 중국 WTO 제소, 중국의 미국투자 제한 등을 예고
2018. 4. 4.	중국	500억 달러 규모(농산물, 자동차 등 106개 품목)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부과 예고
2018. 5. 3.	미·중	제1차 무역협상(베이징), 5월 3~4일(2일간)
2018. 5. 15.	미·중	제2차 무역협상(워싱턴), 5월 15~19일(4일간)
2018. 6. 15.	미국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기술 및 지재권 관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방안 발표 - 340억 달러 규모(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7월 6일부터 시행함을 발표
2018. 6. 15.	중국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결정 발표 - 340억 달러 규모(농산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는 7월 6일부터 시행함을 발표
2018. 7. 6.	미국	1) 제1차 관세 발효: 340억 달러 규모(818개 품목)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2) 제2차 관세부과 예고: 2주 내 추가 160억 달러 규모(284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부과
2018. 7. 6.	중국	1) 340억 달러 규모(545개 품목)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 관세부과 시행 2) WTO에 미국 제소
2018. 7. 11.	미국	추가 2,000억 달러 규모(소비재 다수 포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조치 발표(대상 품목은 8월 말 발표 예정)

자료: 국제금융센터; 언론기사

■ 미·중 무역 분쟁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지난 5월 31일에 EU,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⁴⁾ 유예를 철회하였고, 이에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부과, WTO 제소 계획 발표 등으로 대응하면서 무역 분쟁 확산이 우려됨

3) 국제금융센터; Morgan Stanley; Bloomberg Economics 참고

4) 미국은 6월부터 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25%) 및 알루미늄(10%) 제품에도 관세부과를 개시함

-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유권자 층의 정치적 성향)와 국제적 협조 간의 간극을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 양상에 달려 있음

■ 본고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먼저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보험업권도 금융시장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미·중 무역 분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교란시켜 총공급 충격을 유발하고 국제무역량의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IMF 2018)⁵⁾
- 미국 연준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이 공급 충격을 유발할 뿐 아니라 투자지출의 축소 등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FOMC 6월 의사록)
 - 관세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으나 무역 분쟁 확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부정적 영향은 장기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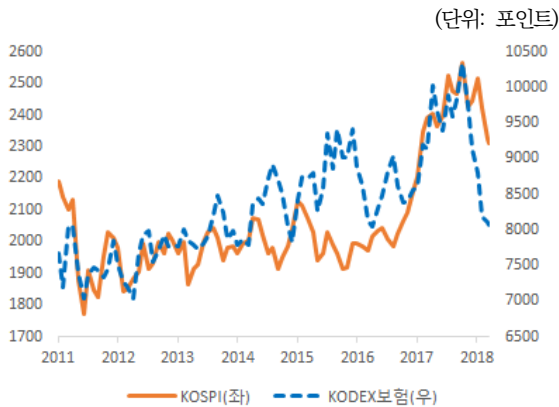
- 무역마찰 여파로 주가 하락 및 변동성 확대, 달러 강세심리 확산, 중장기 금리 하락(flattening)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IMF(2018. 7), 2018 World Economic Outlook

■ 먼저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지수가 하락함과 동시에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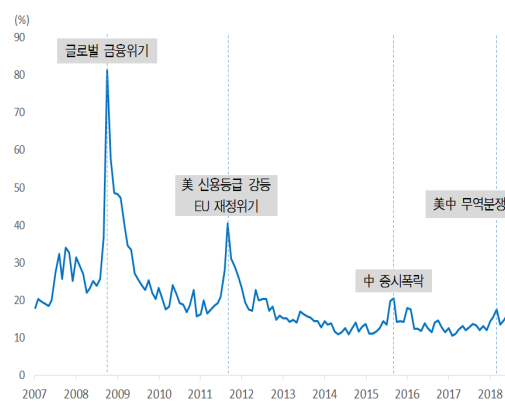
- 점진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던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 및 보험업지수(KODEX)도 미·중 무역 분쟁 충격과 더불어 하락하는 모습임(<그림 1> 참조)
 - 2017년 하반기부터 KOSPI 지수에 비해 보험업지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2021년 도입될 새로운 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의 영향이 반영된 측면도 있음
-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공포심리(fear)를 반영하는 지수, VKOSPI가 한때 20%까지 상승하기도 함(<그림 2> 참조)
 - 동 지수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81.27%로 최고치를, 2011년 미국, 유럽 발 위기 시 40%대를 기록한 이후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
 - VKOSPI 지수는 글로벌 시장과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KOSPI와 KODEX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2> VKOSPI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 외환시장에도 무역 분쟁이 달러강세 및 환율변동성 확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대비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일 뿐 아니라 달러의 원화 대비 강세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시장견해(market view)를 반영함(<그림 3> 참조)
- 미래 원화 대비 달러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원/달러 리스크 리버설(Risk Reversal) 가격이 상승함
 - 원/달러 리스크 리버설 가격은 콜옵션 내재변동성-풋옵션 내재변동성의 차이로 호가되며 향후 달러 강세가 예상될 때 상승함

-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므로 경제위기 혹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리스크 리버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위안화 평가절하정책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위안화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그림 4〉 참조)
-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시장개입이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그림 3〉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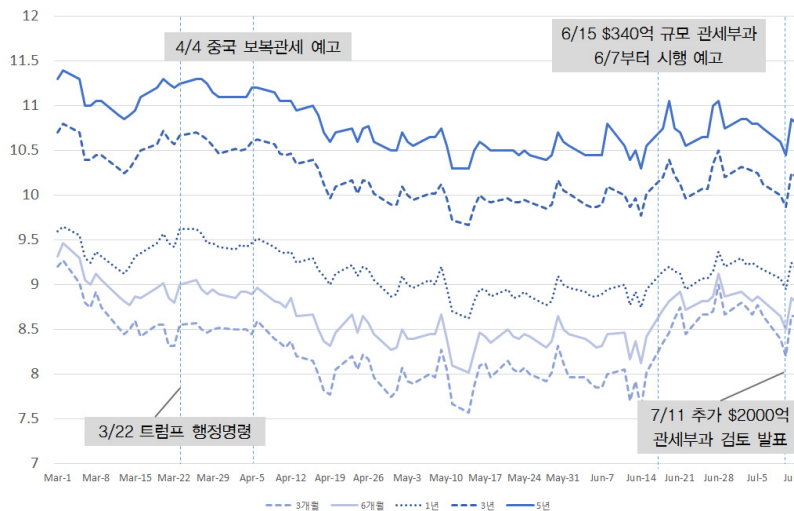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4〉 원/위안 환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5〉 원/달러 리스크 리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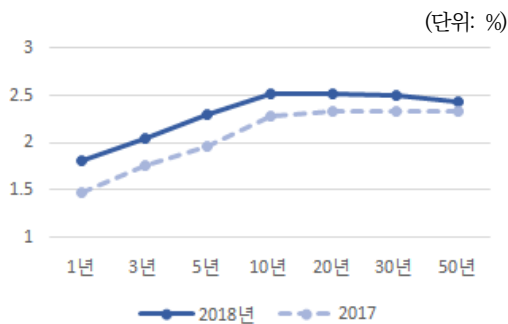


주: 리스크 리버설 = 등가격(At the Money) 통화콜옵션 내재 변동성 - 등가격 통화풋옵션 내재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 무역 분쟁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를 확대시키고 수출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만기 10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그림 6,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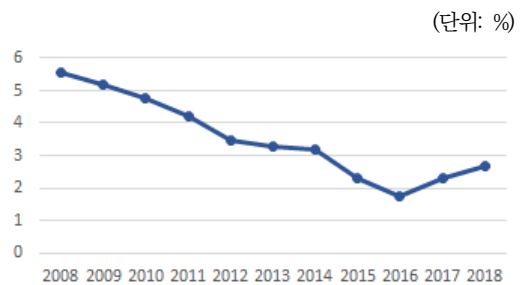
- 지난 해 대비 올해 금리기간구조는 단기물 중심으로 상향 이동하였으나 만기 20년 이상의 채권금리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임
 - 최근 10년 기준 국채금리가 과거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무역 분쟁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이동과 수출중심의 국내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임
 - 또한 국내 기준금리의 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금리 역전 현상(마이너스 스프레드가 약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투자 증가로 중장기 금리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단기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금리기간구조의 평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6〉 국채 금리기간구조(7월 11일 기준)



자료: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그림 7〉 10년 국채 금리 변화 추이(연평균)



자료: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3. 미·중 무역 분쟁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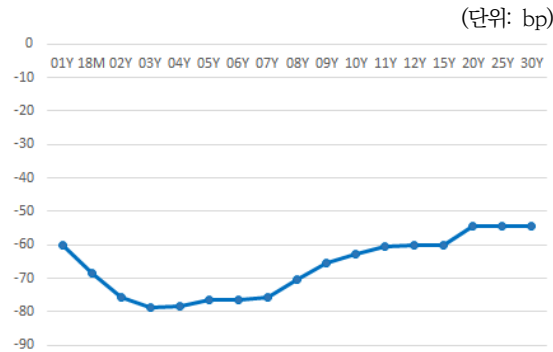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금융시장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가하락 또는 변동성 확대는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의 보증준비금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어 주가변화에 대한 헤징 빈도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증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헤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정적인 경우 월별, 분기별로 헤지의 빈도수를 사전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헤징 빈도수를 보다 짧게 조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상품의 주요 헤징 대상은 최저사망보증(GMDB), 최저원금보증(GMAB), 최저중도인출보증(GMWB) 등의 보증옵션임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환헤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최근 장기 환헤지 부담비용이 단기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환헤지에 장기 이중통화스왑(CRS)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그림 8〉 참조)
 - 〈그림 8〉에서 만기 1년 CRS 계약을 통해 환헤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CRS 스프레드는 60 베이스스 포인트(bp)인 데 반해 만기 20년 CRS 스프레드는 53bp로 장기 환헤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⁶⁾

6) 상황에 따라 단기 CRS 스프레드가 장기 CRS 스프레드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 CRS계약을 롤오버(roll-over)하여 장기 해외투자의 환위험을 헤지하는 것이 장기 CRS계약을 이용하는 것보다 환헤지 비용을 낮출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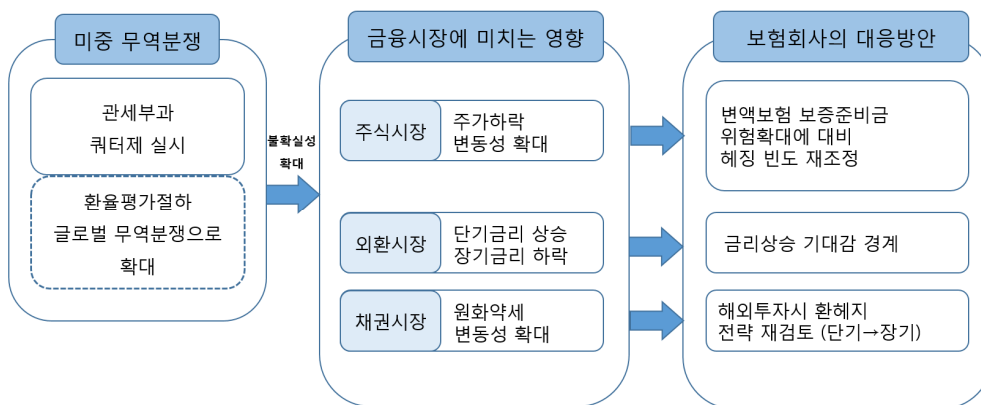
〈그림 8〉 기간별 CRS 스프레드



자료: 연합인포맥스

- 장기금리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는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미·중 무역 분쟁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변동에 노출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 지금까지 논의한 방향성(증시둔화, 장기금리 하락, 달러강세) 및 변동성 확대는 국내 경제 둔화에 따른 부양책,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 중국의 금융안정책 등을 포함한 다른 요인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그림 9〉 참조) [kiri](#)

〈그림 9〉 미·중 무역 분쟁 심화가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 경로



주: 점선(...)이 현실화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됨



국고채 시장 개선과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효과

황인창 연구위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 국고채 시장 변화는 국채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보험회사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침
 - 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 확대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금리위험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2018년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중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은 ①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②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스트립) 활성화, ③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 등임
 -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30\pm 5\% \rightarrow 35\pm 5\%$)
 - 국고채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국고채 스트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스트립 공급을 확대하고, 스트립 재결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연간 총 발행량을 제시(약 1.5조 원)하는 한편 물가연동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국고채 시장 개선이 보험회사에게 주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국고채 장기물(특히, 초장기물) 발행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회사 자산다이버시언 확대, 이자소득 증대, 해외 장기물 수요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국고채 스트립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는 국고채 스트립 채권 투자를 통해 자산다이버시언 확대, 재투자위험 제거, 다양한 만기구조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이자소득세 이연효과를 볼 수 있음
 -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는 실질 가치 기반 연금 등 신상품 개발, 저물가 탈피 기초에서의 투자수단 제공,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부채평가 및 보험료 산출 활용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주요 정책에 대해 발행시장 참여자(국고채 전문딜러)와 더불어 국고채 최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고채 시장의 질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자금 조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국고채 장기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국고채 50년물 발행의 정례화, 장기 국채선물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올해 초장기물인 50년 만기 국고채가 연이어 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장기 국고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국고채 만기는 3년에서 50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이 확대됨
 - 국고채는 만기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물의 6가지 만기의 고정금리부 채권과 원금이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물가연동국고채권(만기 10년) 등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 확대는 2017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채 시장 변화는 국채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보험회사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침
 - 2017년 말 기준 국·공채는 보험회사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22.5%)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채권(21.9%)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주요 투자자산임

〈표 1〉 보험회사 운용자산 구성(2017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과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운용자산
		국·공채	특수채	외화유가증권	기타			
생명보험	13.8 (2.1)	167.4 (25.5)	116.6 (17.8)	87.2 (13.3)	130.0 (19.8)	127.5 (19.4)	13.7 (2.1)	656.2 (100)
손해보험	6.8 (3.0)	31.3 (13.9)	29.7 (13.2)	27.8 (12.3)	58.3 (25.9)	65.3 (29.0)	6.0 (2.7)	225.3 (100)
보험산업	20.7 (2.3)	198.7 (22.5)	146.4 (16.6)	115.0 (13.0)	188.2 (21.4)	192.8 (21.9)	19.7 (2.2)	881.5 (1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운용자산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특히 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 확대는 신지급여력제도(이하 'K-ICS') 도입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금리위험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2021년 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측정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금리위험 확대와 이로 인한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하락이 예상됨
 - 금리위험 등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현행 RBC제도에서는 향후 1년 간 99.0% 신뢰수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VaR)으로 측정하지만, K-ICS에서는 더 높은 신뢰수준(99.5%)을 요구함
 - 금리위험 측정 시 현행 RBC제도는 보험부채에 최대 잔존만기 구간을 설정한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지만, K-ICS는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경제적 실질 만기가 반영됨
- 현재 보험회사들은 K-ICS 도입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듀레이션 확대를 통한 금리위험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국고채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중 보험회사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봄

2. 국고채 시장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2017년 12월 말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한 『2018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 방안』¹⁾을 발표함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에는 국고채를 전년 대비 2.7조 원 증가한 106.4조 원 발행할 예정임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주요 정책방향으로 ①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안정적 국고채 발행, ②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한 체계적 시장관리, ③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고채 가치 제고 등을 제시함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 간 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함
 - 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발행 비중을 확대하고, 금리 상승 및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함
 -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 활성화, 물가연동국고채 정상화, 국고채 헤지 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국고채 가치를 제고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
-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중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 장기물 수요 증가 대응 및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물 발행 비중을 $30\pm 5\%$ 에서 $35\pm 5\%$ 로 확대함
 - 2017년부터 시장상황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물 단위로 관리하던 발행비중을 기간별(단기: 3~5년, 중기: 10년, 장기: 20년 이상)로 그룹화하여 관리함

1)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7. 12. 20), “2018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 개선 방안” 참조

- 최근 5년간 장기물 수요 증가로 인해 장기물 발행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2〉 2017년 국고채 발행비중 실적 및 2018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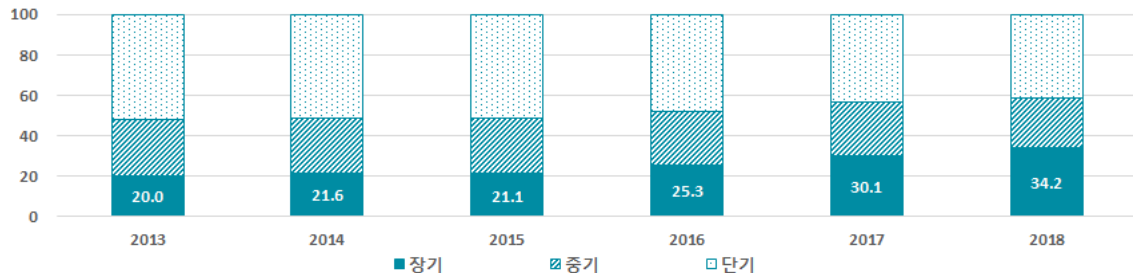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단기(3~5년)	중기(10년)	장기(20년 이상)
2017년 가이드라인 (2017년 실적)	45±5 (43.6)	25±5 (26.3)	30±5 (30.1)
2018년 가이드라인 (2018년 실적)	40±5 (41.2)	25±5 (24.6)	35±5 (34.2)

주: 2018년 실적은 1~3월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시장(ktb.mosf.go.kr)

〈그림 1〉 기간그룹별 국고채 발행실적 추이(2013~2018년)

(단위: %)



주: 2018년 실적은 1~3월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시장(ktb.mosf.go.kr)

- 50년 만기 국고채는 보험회사·연기금 등의 실수요, 경제·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금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발행함

- 지난 3월에 실시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는 3,250억 원이었으나, 6월에는 5,400억 원으로 확대함
- 국고채 50년물의 실제 발행규모는 작은 수준이나 높은 응찰률(200% 초과)에 비추어 볼 때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국고채 50년물의 낙찰 금리는 이보다 만기가 짧은 국고채 10~30년물의 수익률보다 낮으며, 이러한 금리역전 현상은 3월 발행보다 6월 발행에서 더 심해짐
- 국고채 초장기물 발행 확대는 2021년 K-ICS 도입을 앞두고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을 맞추려는 보험회사의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에 기여함
-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늘어남에 따라 차환발행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짐

〈표 3〉 2018년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입찰개요		응찰결과		입찰결과	
입찰일시	입찰금액	응찰금액 (응찰률)	응찰금리	낙찰금액	낙찰금리
2018. 3. 15.	3,000억 원	7,030억 원 (234.3%)	2.550~2.720%	3,250억 원	2.640%
2018. 6. 21.	5,000억 원	1조 400억 원 (208.0%)	2.200~2.620%	5,400억 원	2.510%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시장(ktb.mosf.go.kr)

나.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 활성화

■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제도 또는 스트립(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STRIPS)은 이표채권(Coupon Bond)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Zero-coupon Bond)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²⁾

- 예를 들어, 20년 만기 국고채는 20년 동안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데, 이 국고채를 스트립(원금과 이자 분리)하면 1개의 원금분리 채권(Principal STRIPS)과 40개의 이자분리 채권(Coupon STRIPS) 등 총 41개의 개별 무이표채권(할인채)을 만들어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 반면 스트립의 반대 개념으로 분리된 원금 스트립 채권과 이표 스트립 채권을 결합하여 기존의 원본채권인 이표채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재결합(rebundling 또는 reconstitution)이라고 함

■ 2006년 3월 국고채 스트립 도입 이후 정부는 스트립 채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고채 스트립 활성화의 일환으로 스트립 공급 확대와 스트립 재결합 방안 검토를 할 예정임

- 2007년 4월 처음으로 20년 만기 국고채를 대상으로 스트립이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30년 국고채에 대한 스트립이 활발히 시행됨
- 스트립 채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국고채 스트립 정례공급을 통한 단기수급기

2)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8. 2), 『국채 2017』 참조

반을 강화³⁾하였고, 2016년에는 스트립 전담 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⁴⁾하였음

- 2018년에는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을 월 1,500억 원에서 월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스트립 활용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트립 채권의 재결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국고채 스트립 잔액은 2010년 말 9.5조 원에서 2017년 말 71.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거래량도 2015년 18.7조 원에서 2017년 241.9조 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음⁵⁾

다. 물가연동국고채 정상화

■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를 의미함⁶⁾

- 물가연동국고채는 정부의 이자비용 절감, 안정적인 재정 조달기반 확보, 민간의 물가연동채권 발행 시 기준금리 제공 및 효율적인 물가예측지표 도입을 위해 2007년 3월 최초로 발행됨
- 최초 발행 시 인수단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후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2008년 8월 발행을 일시 중단하였지만, 2010년 6월부터 비경쟁인수방식으로 발행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임

■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공급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간 총 발행량을 제시하는 한편 물가연동국고채의 유동성 제고 및 거래 촉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⁷⁾

- 과거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호가의무 부여, 물가연동국고채 경과물 교환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음
- 2017년 상반기 물가연동국고채 과다 공급으로 인한 수급 왜곡 문제⁸⁾가 심화되자 물가

3)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5. 8. 27), “2015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5년 8월 국고채 발행 실적”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6. 6. 27),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조성제도 실시” 참조

5) 기획재정부(2018. 2), 『국채 2017』; 연합뉴스포맷스 인용

6)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채시장(ktb.mosf.go.kr)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7. 12. 20), “2018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2018. 2), 『국채 2017』 참조

8) 물가연동국채 수요는 제한적인 반면 국고채 전문딜러들의 경쟁 과정에서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었

연동국고채 인수·교환 실적을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에서 제외, 통합발행 기간 변경(1년 → 2년),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금리 결정방식 변경⁹⁾ 등의 조치를 취함

- 2017년 12월에는 물가연동국고채 과다 공급 방지를 위해 발행량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의무 개수를 확대(3개 → 5개)하고 호가범위를 축소함
 -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총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량을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내에서 결정하고, 월 발행량을 월별 발행계획에 사전 공지할 예정이며, 국고채 전문딜러별 물가연동국고채 인수한도를 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량의 10%로 설정하고, 인수기간을 축소(2일 → 1시간)함
- 2018년 물가연동국고채 연간 총 발행량을 1.5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물가연동국고채 선매출 실시 및 교환 발행 정례화 등을 통해 물가연동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하여 거래를 촉진할 예정임

3.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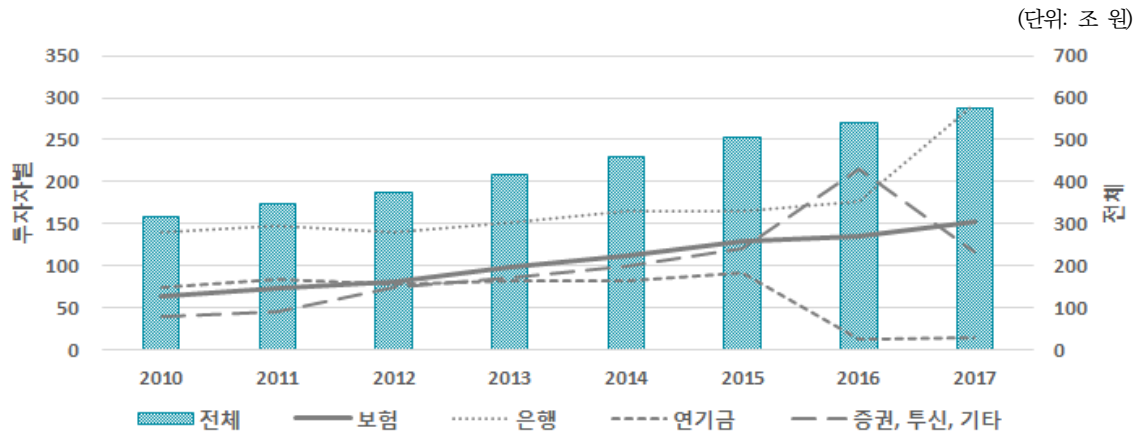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은행과 더불어 주요 국고채 투자자로 은행과 달리 장기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물 선호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짐
- 2017년 말 기준 보험회사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26.6%(152.5조 원)로 은행(50.9%, 291.9조 원) 다음으로 높음
- 보험회사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0년 말 19.9%(62.6조 원)에서 2017년 말 26.6%(152.5조 원)로 상승함
- 투자주체별 장외채권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보험회사는 만기 10년 초과 국채를 26.0조 원 순매수하였음
- 2013년과 2017년 보험회사 국채 순매수의 전체 규모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만기 10년 초과 국채 순매수는 2013년 13.8조 원에서 2017년 26.0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고, 이로 인해 물가연동국고채에 내재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BEI: Break Even Inflation Rate)가 실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부각됨

9) 기존의 국고채 전문딜러가 보고한 금리가 아닌 10년 만기 국고채 경쟁 입찰일 전 5영업일간의 객관적인 시장금리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조정함

〈그림 2〉 기관별 국고채 보유현황 추이(2010~2017년)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표 4〉 만기별 보험회사 국채(장외채권) 순매수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전체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2013	28.0	0.7	-3.2	1.3	3.0	12.5	13.8
2014	25.4	0.3	-3.1	-0.2	3.0	8.0	17.4
2015	29.6	-1.9	-2.6	1.1	1.0	9.8	22.0
2016	22.3	-2.7	-2.8	-0.9	-2.6	11.5	19.8
2017	28.9	-2.1	-2.7	0.2	0.7	6.8	26.0
2018	14.3	-1.9	-1.5	-0.6	-0.5	2.0	16.8

주: 2018년은 1~7월을 대상으로 함
 자료: 연합인포맥스

■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 개선으로 국고채 장기물(특히, 초장기물) 발행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 회사 자산다이버시언 확대, 이자소득 증대, 해외장기물 수요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보험회사는 K-ICS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다이버시언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고채 장기물, 특히 초장기물인 50년물 발행 확대는 보험회사 자산다이버시언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자산다이버시언은 2014년 말 5.4년에서 2017년 말 7.5년으로 확대됨
- 2018년 하반기에도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지속되어 연간 약 1.7조 원이 발행되고, 발행 물량 모두 보험회사가 흡수한다면 보험회사의 자산다이버시언은 0.1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만기가 긴 국고채는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의 존재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만기가 짧은 것에 비해 높음
 - 다만, 최근 보험회사 등에 의한 장기물 수요 증가로 인해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¹⁰⁾
- 최근 보험회사는 국내 장기자산 투자처 부족으로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 국고채 장기물 발행이 확대되면 해외채권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말과 2017년 말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생명보험(4.7% → 13.3%)과 손해보험(6.5% → 12.3%) 모두 크게 증가함

〈표 5〉 보험회사 자산듀레이션 추이(2014~2017년)

(단위: 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생명보험	5.6	6.0	6.7	7.6
손해보험	4.7	5.3	6.2	7.4
전체	5.4	5.9	6.6	7.5

주: 손해보험회사는 국내일반손해보험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각 사 경영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 국고채 스트립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는 국고채 스트립 채권 투자를 통해 자산듀레이션 확대, 재투자위험 제거, 다양한 만기구조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이자소득세 이연효과를 볼 수 있음
- 스트립 채권은 일종의 할인채(무이표채권)로 금리민감도가 이표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자산듀레이션 확대에 유리한 자산임
- 스트립 채권은 이표채권의 재투자위험(re-investment risk)을 제거하여 만기 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불일치 위험을 가능한 회피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자산임
- 국고채 스트립을 통해 다양한 만기구조(6개월~50년)를 갖는 투자자산을 만들 수 있음
- 국고채 스트립을 통해 이표채가 할인채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세 이연을 통한 절세효과가 발생함
 - 원금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원금 및 이자분리채권의 처분 또는 만기상환 시 과세함¹¹⁾

10) 자세한 내용은 임준환·황인창(2017. 11. 20),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KiRi 리포트』 참조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이 정상화 및 활성화되면, 보험회사에게 실질 가치 기반 연금 등 신상품 개발, 저물가 탈피 기조에서의 투자수단 제공,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부채평가 및 보험료 산출 활용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지만, 물가연동국고채 활용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 가치 기반 연금 상품(예, 실질 생계소비수준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에 도움을 줌
- 금리인상 시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저물가 탈피 기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는 유용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음
- 물가연동국고채를 통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17과 K-ICS 도입 이후 장기 보험상품의 부채평가 및 보험료 산출에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4. 시사점 및 제언



■ 정부의 지속적인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자금 조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인프라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해 볼 때,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는 국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차환위험을 축소시켜 장기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상환부담을 기간별로 분산시켜 채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 현재 보험회사는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상당히 큰 상황으로 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자산 편입을 통한 자산듀레이션 확대가 불가피함
- 국고채 스트립 및 장기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표금리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되면 실질금리 및 기대인플레이션 등 통화정책정보를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음
 - 국고채의 금융시장 인프라 제공 기능은 다양한 금융상품(장기 회사채, 물가변동위험 반영 구조화 상품 등) 개발 및 발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국고채 시장 개선이 보험회사에 주는 실제적인 영향은 국고채 시장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에도 달려 있음

- 국고채 장기물의 발행 금리 및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다이버시언 확대 수준이 달라짐
- 장기 국고채, 국고채 스트립, 물가채 시장이 수급불균형 지속,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화 및 활성화되지 않으면 금융시장 인프라 제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의 장기투자 수요에 비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물량이 적으면 장기 구간에서 낮은 금리가 형성되어 금리기간구조가 평탄(또는 역전)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경우, 경기전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활용하는 장기 할인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주요 정책에 대해 발행시장 참여자(국고채 전문딜러)와 더불어 국고채 최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고채 시장의 질적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국고채 장기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국고채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보험회사가 포함된 국고채 장기투자자 협의체(Long-term Korea Treasury Bond Club: LKTB)를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고채 50년물 발행의 정례화, 장기 국채선물(장기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 도입¹²⁾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12) 장기 국채선물 도입 검토는 기획재정부(2016. 12. 21),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제시된 바 있음



CHAPTER

0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 김석영 |
| 2.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 최창희 홍민지 |
| 3.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 이기형 |
| 4.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와 시사점 | 정원석 김세중 |
| 5.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 양승현 |
| 6.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 이기형 |
| 7.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 안철경 정인영 |
| 8.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 | 변혜원 |
| 9. 숙박공유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검토과제 | 임 준 |
| 1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 양승현 |
| 11.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 황현아 |
| 12.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 김규동 |
| 13.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방안 제안 | 기승도 |
| 14.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 황현아 |
| 15.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써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 황현아 |
| 16.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 전용식 김유미 |
| 17.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 김규동 |
| 18.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 양승현 |
| 19.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 김규동 |
| 20.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 안철경 정인영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 2015년 10월 영국 금융당국(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
 - 영국은 핀테크 영역에서 매년 약 200억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의 핀테크 허브를 유지하기 위해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FCA의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Sandbox Eligibility 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의 사업 범위, 혁신성, 소비자 편익, 필요성, 준비상태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영국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FCA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을 주도함
 -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현재 4차 모집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 FCA는 홍콩보험 당국과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도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 방안을 발표하여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추진할 예정
-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으로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1. 연구배경



■ 2015년 10월부터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함

- 영국은 핀테크 영역에서 매년 약 200억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의 핀테크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음¹⁾
 - FCA는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의 무결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려고 함
 -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한 Project Innovate를 시행
- Project Innovate 정책은 다섯 가지 정책수단(initiatives)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 ① Regulatory Sandbox: 준비된 혁신적인 회사(Innovative Firms)들을 지원
 - ② Request Direct Support: 혁신적인 회사들 위하여 맞춤형 규제 지원
 - ③ Advice Unit: 자동 안내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에 피드백 제공
 - ④ Reg Tech: 새로운 기술에 보다 적합한 규제에 대한 협업 및 지식 공유
 - ⑤ Engagement: 영국 및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의 핀테크 혁신 촉진
-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관련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운용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 수단임

■ FCA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하여 3차에 걸쳐 혁신적인 기업들을 모집·지원하였고, 4차 지원기업을 2018년 1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음

- 세 차례에 걸친 모집에서 총 207개의 기업이 지원하였음
 - 1차 모집(Cohort 1)은 2016년 7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9개 기업이 지원하였음
 - 2차 모집(Cohort 2)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77개 기업이 지원하였음
 - 3차 모집(Cohort 3)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61개 기업이 지원하였음²⁾

1) Regulatory sandbox,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5. 10

2)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3>, last updated 2017. 6. 12

■ 우리나라도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세 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함³⁾

-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규정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업법에서 금융규제의 요건과 부과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부여할 수 있는 재량 여지가 제한적임
- 따라서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 의견서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 지정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비조치 의견서는 기존 법령상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신금융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임
- 지정대리인 제도가 활용될 경우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업에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고는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시장의 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진행상황



- 기업이 FCA의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범위, 혁신성, 소비자 편익, 샌드박스활용의 필요성, 준비성 측면에서 자격기준(Sandbox Eligibility Criteria)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의 사업 범위(In Scope)에서는 영국 금융시장에서 허가된 비즈니스 또는 허가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업이어야 함
 - 혁신성(Genuine innovation) 기준은 현재 존재하는 기업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함을 규정함

3) 금융위원회(2017. 3. 20),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

- 소비자 편익(Consumer Benefit) 측면에서는 혁신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뛰어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은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동안 계속 충족되어야 함
- 샌드박스의 필요성(Need for sandbox) 기준은 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 준비성(Background Research) 기준은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적용될 규제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줄일 방법에 대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

■ FCA는 샌드박스 수단(Sandbox tools)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⁴⁾

- 샌드박스 수단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특징과 테스트에 따라 사용됨
- 샌드박스 수단은 제한된 승인(Restricted authorization),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 규정면제 또는 수정(Waivers or modifications to our rules), 비조치 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비공식 조정(Informal steers)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한된 승인: FCA는 규제 샌드박스에 수용된 회사에 대해 맞춤형 인증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승인 또는 등록은 회사가 동의한 아이디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에 제한됨
 - 개별지도: 규정들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를 경우 FCA는 테스트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줌
 - 규정면제 또는 수정: FCA는 테스트를 위해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은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나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면제할 수는 없음
 - 비조치 의견서: FCA는 개별 지도나 규정면제 또는 수정을 제공할 수 없지만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의 특정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없음’의 문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비공식 조정: FCA는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잠재적인 규제영향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정을 제공할 수 있음

■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선발된 기업들만이 테스트를 받게 되었음

4)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sandbox-tools>

- 규제 샌드박스 1차 모집에서는 69개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나 24개 기업만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18개 기업이 테스트되었음
 - 18개 기업은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는 FCA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밖에서 필요한 규제 허용에 대해 협의 중임
 - 18개 기업⁵⁾중 보험 관련 회사는 Blink Innovation임

〈표 1〉 규제 샌드박스 1차 모집에서 테스트된 보험회사

회사명	업무
Blink innovation	비행기가 취소되었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새로운 비행기표를 즉시 제공하는 자동 클레임처리 상품을 제공함

- 규제 샌드박스 2차 모집에서는 77개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며 31개 기업만이 자격기준을 만족하였고 최종적으로 24개 기업이 테스트되었음
 - 31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차 모집에서 테스트를 받을 예정임
 - 테스트는 단기간 소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 장치와 협의된 몇 가지 요소들을 테스트할 예정임
 - 24개 기업⁶⁾ 중 보험 관련 회사는 AssetVault, Canlon, FloodFlash, Laka, Nimbla, YouToggl임

〈표 2〉 규제 샌드박스 2차 모집에서 테스트된 보험회사

회사명	업무
AssetVault	소비자의 자산을 분류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Canlon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게 해주며 보험계약이 종료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
FloodFlash	홍수 보험 제공
Laka	계약자가 보험기간동안에 청구된 비용에 근거하여 월말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5) Billon, BitX, Blink Innovation Limited, Bud, Citizens Advice, DISC Holdings Limited, Epiphyte, HSBC, Issufy, Lloyds Banking Group, Nextday Property Limited, Nivaura, Otonomos, Oval, SETL, Tradle, Tramonex, Swave

6) AssetVault, Assure Hedge, Beekin, BlockEx, Canlon, Disberse, Evalue, Experian, FloodFlash, Laka, Money Dashboard, Moneyhub Enterprise, Nimbla, Nivaura, Nuggets, nViso, OKLink, Oraclize, Paylinko, Sabstone, Saffe, Systemsync, You Toggle, ZipZap

회사명	업무
Nimbl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국 중소기업에 유연한 무역신용보험과 인보이스 관리 도구 제공
YouToggl	휴대전화 텔레매틱스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차보험 회사와 공유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만드는 앱 제공

- 규제 샌드박스 3차 모집에서는 61개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며 18개 기업이 테스트되었음
- FCA는 현재 여전히 지원서를 받고 있음
- 18개 기업⁷⁾ 중 보험 관련 회사는 Etherisc, Sherpa Management Services, 그리고 Wrisk임

〈표 3〉 규제 샌드박스 3차 모집에서 테스트된 보험회사

회사명	업무
Etherisc	• 2016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비행기 연착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사용 • 비행기 도착이 연착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 Atlas Insurance와 협력함
Sherpa Management Services	•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가지 보험을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 모든 계약에 대해 하나의 계정과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GenRe와 협력함
Wrisk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 • 최근에 MunichRe의 디지털 파트너 모임에 합류하였음

■ 규제 샌드박스 1, 2차 모집에서는 다양한 사업 영역과 지역, 그리고 규모의 회사들이 지원하였음⁸⁾

- 소매금융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원회사가 있었고, 일반손해보험, 연금 및 퇴직소득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전체 지원회사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전역에서 지원하였으며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에서 지원한 기업들도 약 20%를 차지함
- FCA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업을 영국으로 한정하지 않아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Barclays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지원하였으나 스타트

7) Barclays, Barkat Ventures, Chynge, Curl, Economic Data Science, Etherisc, first direct and Bud, Future Flow, Nationwide, Orca, Rebank, ResonanceX, Sherpa Management Services, Solidi, Spherical Defence Labs, Square Book, Wrisk, Yoti

8)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

업(start-up)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였음

-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FCA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FCA의 제한된 인가가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1, 2차 모집에서 보험 관련 회사들은 위험인수 능력 확대를 위해 대해보험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

- 대해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위험선호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기 어려우나 일부 대해보험회사들은 혁신적인 기업과 협력하는 데 개방적인 모습을 보임

■ FCA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샌드박스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소비자와 다른 금융기관 서비스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FCA는 홍콩보험 당국(Hong Kong Insurance Authority, 이하 'IA')과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FCA와 IA는 상대방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려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임
 - FCA는 홍콩 통화감독당국(Monetary Authority) 및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와도 비슷한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 증권 분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
- FCA는 중국, 일본, 캐나다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함

■ 영국에서 시작된 샌드박스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음

- 2016년 9월 홍콩 통화당국은 핀테크감독 샌드박스(Fin-tech Supervisory Sandbox, HKMA Sandbox)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 HKMA Sandbox는 시험시간 동안 HKMA의 일반적인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도 은행이 핀테크 및 기타 기술에 대한 파일럿 시험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6년 11월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 라인을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해 신청서 양식과 함께 발급함
- MAS는 금융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의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최상의 금융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시사점



■ FCA는 명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체계적으로 운영

-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Project Innovate 정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 샌드박스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한적 규제하에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소규모로 테스트함
- 특별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1차 모집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4차 모집이 진행 중임

■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추진하는 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활용 회사의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검토에서부터 운영 시 필요한 규제의 면제 또는 수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 테스트베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요를 조사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 시행 후 회사들과의 다양한 협의와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회사가 생존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kiri](#)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창희 연구위원, 홍민지 연구원

요약

-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음(1958년 2월 민법 제정 시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
-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연 5%)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존재함
-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가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을 복구하는 데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정이율이 미래상실소득의 할인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5%의 할인율로 계산된 손해배상금의 현재가치금액이 시장에 투자될 경우, 투자금액이 손해배상금보다 적어짐
-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 인하 및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함
 - 월 소득 500만 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2억 6,070만 원 증가함(9억 3,141만 원 → 11억 9,211만 원, <표 2> 참조)
-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음
 -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음
-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또는 점진적 인하) 여부 검토
 -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검토

1. 검토배경



■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임¹⁾

- 동 조항은 1958년 2월 민법 제정 당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최근 저금리 기조로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이하 시장금리를 1.44%로 가정)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음²⁾

■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가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를 변제 받아 이를 시장금리로 투자하는 것보다 법정이율 5%를 받는 것이 이익이므로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로 부리(附利)된 금액을 청구할 동기가 존재함
 - 채무 미변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억 원을 받아 1년간 1.44%로 투자해도 144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나 법정이율 5%를 받게 될 경우 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함
-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높을 경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미래상실소득 수준보다 적어짐
 -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미래에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를 평가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함³⁾
 -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법정이율이 할인율로 사용됨(이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높을 경우 법정이율로 할인된 미래상실소득을 시장금리로 투자해도 미래상실소득을 회복할 수 없음

1)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조: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8. 1. 8 현재 은행별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1.3~2.2% 수준임

3)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제공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투자해 미래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임

■ 일본과 영국은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를 결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을 인하하는 민법 개정안⁴⁾이 발의되었음

-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⁵⁾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함
- 2017년 2월 27일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대인사고에 적용되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했음⁶⁾
-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현행 5%인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이하 '변동제'라 함)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음

■ 본고는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인하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가 국내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2. 법정이율 인하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책임에 미치는 영향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등으로 구성됨⁷⁾

- 병원비, 간병비(개호비), 장례비, 변호사비 등 사고로 발생한 비용이 적극적 손해에 포함됨
- 피해자가 사고로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 중 손해로 인정되는 부분이 소극적 손해임
-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 장해 발생 시 노동능력상실률,⁸⁾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98), 2017. 7. 19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5) 일본 「民法」 제404조(法定利率) 개정안이 2017. 6. 2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임
일본 의회 입법사이트(http://www.shugiin.go.jp/internet/index.nsf/html/rippu_top.htm) 참조

6) 채원영(2017), 「영국, 인적사고 손해배상액 일시금 산정 시 마이너스 할인율 도입」, 『Kiri Weekly』, 글로벌 이슈, 보험연구원 참조

7)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조정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過失相計)라 함. 자세한 내용은 최창희·정인영(2015), 『국내 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pp. 38~40 참조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됨⁹⁾

- 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사고(이하 장해사고)¹⁰⁾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소극적 손해는 <표 1>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됨¹¹⁾

<표 1> 소극적 손해 산정 방법

사고 유형	손해액
사망사고	소득기준 × 가동연령 ¹²⁾ 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 - 생활비
장해사고	소득기준 × 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 × 노동능력상실률

자료: 최창희·정인영(2015), pp. 38; 장중운(2016) 참조

- 소득기준은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자의 고정 수입임
- 가동연령은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함¹³⁾
 - 예를 들어 31세가 되는 시점에 사망한 직장인의 경우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정함
- 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시점부터 가동연령 상한까지 매월 1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계산된 월 소득의 현재가치임
 - 복리를 가정할 경우 월 0.4074% 이자율로 1년을 투자하면 1년 후 수익률이 5%가 됨¹⁴⁾
 - 사고로 1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현재가치계수는 11.6812임¹⁵⁾
- 소득기준에 가동연령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됨
 -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51세 직장인¹⁶⁾이 사망한 경우 6억 원 (500×12개월×10년)이 아닌 3억 1,427만 원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로 산정됨¹⁷⁾

8)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피해자가 잃게 된 노동능력의 비중

9) 위자료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중운(2016), 『최신 손해배상실무』, 진원사 참조

10)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영구히 상실한 사고

11) 자세한 내용은 최창희·정인영(2015), 『국내 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pp. 38~40; 장중운(2016) 참조

12) 장중운(2016), 『최신 손해배상실무』, 진원사, p. 56 참조

13) 가동연령은 피해자의 직종에 따라 달라짐. 상세한 내용은 장중운(2016), 『최신 손해배상실무』, 진원사, II장 참조

14) $(1.004074)^{12}=1.05$

15) $11.6812=1/(1.004074)+1/(1.004074)^2+...+1/(1.004074)^{12}$, 반올림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6) 사고로 10년간의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봄

17) 500만 원×현재가치계수(94.2813)×생활비 공제(2/3)=3억 1,427만 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기준×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의 1/3이 생활비로 공제됨
 - 이는 피해자가 생존하였다면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1/3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했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임
- 장애사고의 경우 ‘소득기준×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가치계수’에서 노동능력상실률만큼 이 소극적 손해로 인정됨

■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임(〈표 2〉 참조)

〈표 2〉 할인율 인하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및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 차이

(단위: 계수, 만 원)

소득상실기간 (개월)(A)	기간별 현재가치계수		월수입 500만 원 가정 시 미래상실소득 현재가치 차이(D=500만 원×C-B)
	할인율 5% 적용 시(B)	할인율 3% 적용 시(C)	
12	11.6812	11.8098	64
120	94.2813	103.7624	4,741
240	151.5253	180.9714	14,723
360	186.2816	238.4221	26,070

주: 1) 복리식(라이프니츠식) 현재가치계수임, 3% 할인율 현재가치계수는 직접 계산, 반올림 방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 발생 가능

2) 계산 방법은 장종운(2016), II장 참조

자료: 할인율 5% 현재가치계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

- 소득상실기간이 짧을 경우 이율 3% 적용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증가 폭이 크지 않음
 - 기간이 12개월일 경우 할인율 5%의 현재가치계수는 11.6812이고 할인율 3%의 현재가치계수는 11.8098로 0.1286 증가함
 -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3%로 인하될 경우 64만 원 증가함¹⁸⁾
- 소득상실기간이 길어질 경우 법정이율 인하로 인한 현재가치계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기간이 360개월일 경우 5% 할인율하에서의 현재가치계수는 186.2816이고 할인율이 3%로 인하 시 현재가치계수는 238.4221로 52.1405 증가함
 -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3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

18) $500 \times 11.8098 - 500 \times 11.6812 = 64$ 만 원

을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5%인 경우 9억 3,141만 원, 3%인 경우 11억 9,211만 원으로 할인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 손해배상액이 2억 6,070만 원 증가함¹⁹⁾

- 이와 같이 법정이율이 인하 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

3. 영국과 일본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 사례



■ 최근 영국은 대인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을 위한 적용 계리표(이하 Ogden Table)²⁰⁾의 할인율을 2.5%에서 -0.75%로 인하하였음

- Ogden Table은 연령, 성별, 사망률, 은퇴시점, 할인율 등을 고려해 대인사고 피해자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표임
 - 한국의 복리(라이프니츠) 계수표 또는 단리(호프만) 계수표와 유사한 기능을 함
- Ogden Table의 할인율은 법²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무장관이 정하는데 2017년 2월 27일 영국 법무부는 기존 2.5%인 할인율을 -0.75%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음(2017. 3. 20 시행)
 - 새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만기 5년 이상인 영국 물가연동채²²⁾ 실질수익률의 3년간 단순평균으로 산정된 것으로 시장금리를 반영해 조정된 것임²³⁾
 - 할인율이 낮을수록 대인사고 손해배상금액이 높아지고 할인율이 음수가 될 경우 할인된 미래상실소득이 '기준소득×소득상실시간'보다 커져 할인이 아닌 할증이 이루어짐
 - Kollewe(2017)²⁴⁾는 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예를 들어 과거 300만 파운드(43억 2천만 원)이었던 손해배상금이 800만 파운드(115억 2천만 원)로 2.7배까지 증가할 수

19) $500 \times 238.4221 - 500 \times 186.2816 = 2\text{억 } 6,070\text{만 원}$

20) 공식 명칭은 “Actuarial Tables with explanatory notes for use in Personal Injury and Fatal Accident Cases”이나 통상 1~4판까지의 작성 책임자 ‘Sir Michael Ogden’의 이름을 따 간단히 ‘Ogden Table’이라 함

21) Section 1 of Damages Act 1996

22) ILGs: Index Linked Gilts

23) 채원영(2017), 「영국, 인적사고 손해배상액 일시금 산정 시 마이너스 할인율 도입」, 『Kiri Weekly』, 글로벌 이슈, 보험연구원 참조

24) Julia Kollewe(2017. 9. 7), “UK insurance payouts to shrink after U-turn on lump sum formula”, Article, The Guardian

있다는 것을 보임²⁵⁾

■ 영국 보험회사들은 Ogden Table의 할인율 인하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예상했음

- A.M. Best(2017)²⁶⁾는 큰 폭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부적절한 요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단기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음
 - 2015년 현재 영국의 자동차보험 총 보험료는 139억 파운드(20조 원) 규모이고 합산 비율²⁷⁾은 102%로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²⁸⁾
 - Kollewe(2017)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평균 100파운드(14만 4천 원), 젊은 운전자의 경우 300~500파운드(43만 2천 원~72만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A.M. Best(2017)는 큰 폭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대인사고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음

■ 영국 법무부는 큰 폭의 할인율 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0.75%로 조정된 할인율을 0~1%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음²⁹⁾

■ 2017년 법정이율 인하를 결정한 일본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음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을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로 활용하고 있음(일본 「민법」 제404조)
- 일본 언론³⁰⁾과 보험회사³¹⁾는 법정이율 인하 시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음

25) 1 파운드(GBP) = 1,440원으로 환산

26) A.M. Best(2017), "A.M. Best Briefing: Reserve Strengthening to Follow U.K. Personal Injury Discount Rate Change", Article

27)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영업 손실이 발생함

28) Deloitte UK(2016), "Motor insurance premiums rise to £13.9bn in 2015, but headline net combined ratio (NCR) increases to 102%"

29) Baroness Vere of Norbiton(2017), "Justice update: Written statement - HLWS121", U. K. Parliament

30) 일본 保険ニュース(2017. 6. 7), "民法(債権法)改正案が国会で成立損害賠償額算定実務に大きな影響、中間利息控除の利率3%へ", 日本経済新聞(2017. 5. 15), "法定利率、変動制に 車保険料上昇の可能性" 참조

31) 波多江健(2013), 損害保険にかかわる債権法の論点,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式会社

- 일본 보험뉴스는 현행 5% 할인율에서 5,559만 엔(5억 2천 477만 원³²⁾)인 손해배상금이 3% 할인율 적용 시 7,489만 엔(7억 700만 원)으로 34.7% 증가하는 예를 들어 할인율 인하의 영향을 설명했다
- 또한 법정이율 인하 시 자동차보험의 약관 개정이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자연 손해배상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하여 설명했다

4. 시사점



■ 법정이율과 시장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이율 인하와 더불어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이 필요함

- 법정이율이 현재와 같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대인사고 피해자들은 사고로 자신에게 발생한 미래상실소득보다 적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법정이율 인하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고,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Ogden Table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인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을 시장금리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정이율 인하 및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과 함께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할인율 인하로 인해 관련 보험(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따라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최근 지급된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인하된 할인율로 재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³³⁾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추정해 법정이

32) 일본 엔, 1엔 = 9.44원으로 환산

33)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입원 상태인 경우

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의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또는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은 법개정으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인 보험료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kiri](#)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사망자는 2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부상자는 1,430명으로 매년 3.8%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재산피해(property damages)는 2,9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0%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상당한 인적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화재피해의 심도가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인수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의무보험을 인수하고 있고 재산손해도 인수하고 있음
 - 소화설비할인, 특수건물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 2016년 화재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른 화재피해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인점사와 할인을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요율체계 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검토배경



-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사망하고 재산손해가 발생한 제천의 스포츠 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 원인 조사, 예방, 소방 등 리스크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 왔음
 - 화재 리스크관리의 주된 대책은 화재 예방과 피해 축소 등과 같은 리스크통제(risk control)보다는 제3자에 대한 보상 등 리스크재무(risk financing)가 강조되어 왔음
 - 이러한 기조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화재로 인한 제3자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그러나 대형 화재 시에 화재발생 원인과 피해현황 파악, 피해자 보상 후 동절기가 지나면 화재 리스크관리 대책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화재 이후 발견된 발생원인과 피해확대를 제거 또는 제한하기 위한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화재 리스크관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없어 반복적인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될 가능성이 큼
- (舊)국민안전처가 집계한 화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재 발생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리스크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은 그렇지 못한 건물에 비해 화재사고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화재 리스크관리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보험회사는 일부 보험종목에서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연계하여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화재보험의 경우 소화설비가 갖추어졌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60% 할인하고 고액의 공장물건에 대해 화재 리스크관리와 화재 발생빈도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는 사전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손해를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험요율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본고는 화재발생 현황, 소화설비할인 적용과 유지관리의 양호도,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설비 작동 여부 등과 연계한 보험요율체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2. 주거 등 건축물의 화재발생 현황



■ 매년 겨울이 되면 빈번한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51명으로 2012년 247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상자는 1,430명으로 연평균 3.8% 감소함
- 그러나 재산피해(property damages) 규모는 3,845억 원으로 2012년에 대비하여 연평균 11.0%증가하였고 화재 1건 당 재산피해액은 1,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재산피해 이외의 휴업손해(loss of profit or loss of business interruption)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해는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보임

〈표 1〉 주거 등 건축물의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 추이

(단위: 건, 명, 백만 원)

연도	화재건수	인적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계	1건당 사상자 수	피해액	1건당 피해액
2012	25,563	247	1,670	1,917	0.07	252,593	9.88
2013	23,868	262	1,591	1,853	0.08	394,174	16.51
2014	25,811	275	1,571	1,846	0.07	370,118	14.34
2015	26,303	205	1,520	1,725	0.07	382,359	14.54
2016	29,280	251	1,430	1,681	0.06	384,549	13.13
CAGR	3.45	0.40	-3.80	-3.23	-6.46	11.08	7.37

주: 전체 화재건수에서 임야, 자동차·철도차량, 선박·항공기, 위험물·가스제조소를 제외하였음(이들은 2016년 화재건수 43,413건의 18.2%, 재산피해액 4,206억 원의 8.0%, 사상자 수 2,024명의 12.7% 점유)

자료: (舊)국민안전처(2017), 『2016년도 화재통계연감』, p. 20 참조 재작성

■ 화재로 인한 인적, 재산피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이 피해발생 규모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실제 화재사고에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 당 0.002명이 사망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상은 소화설비가 작동한 경우 화재발생 1건 당 0.084명이나 작동하지 않은 경우 0.105명임
- 재산피해는 인명피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소화설비의 유효성이 크게 부각됨
 -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 당 1,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1건 당 6.63억 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

〈표 2〉 2016년 발생 화재의 소화설비 작동여부별 인명 및 재산피해 차이

소화설비 작동 여부	인적피해(명)				재산피해(백만 원)	
	사상자 수	화재 1건당 사상자 수			총액	1건당 피해액
		사망	부상	계		
효과적으로 작동함	44	0.002	0.084	0.086	7,319	14.32
소규모로 작동하지 않음	25	0.002	0.050	0.052	521	1.08
작동하지 않음	12	0.035	0.105	0.140	57,048	663.35
확인 불가	9	-	0.273	0.273	7,997	242.33
해당사항 없음	1,934	0.007	0.039	0.046	347,751	8.22
합계	2,024	0.007	0.040	0.047	420,636	9.69

자료: (舊)국민안전처(2017), 『2016년도 화재통계연감』, p. 140

■ 이러한 화재 리스크관리의 실행여부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차이는 소화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나 안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고려하면 더 큰 차이가 날 것임

- 건물 소유자나 경영자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방화 등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적인 설비 점검 및 개선 등의 실시 여부에 따라 피해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리스크 진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지고 보험제도도 리스크 관리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보험의 화재 리스크관리 촉진 현황



■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리스크관리의 리스크 재무대책으로 기능하는 화재보험을 임의보험과 의무 보험으로 인수하고 있음

- 임의보험은 화재로 인한 계약자의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이 해당됨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음
 - 특수건물¹⁾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재물손해를 배상함
 - 다중이용업소시설 소유자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 하고, 기타 재난취약시설²⁾ 소유자는 2017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표 3〉 화재 등 리스크를 담보하는 의무보험 현황

보험명칭	근거법	가입대상/담보손인	보상한도	시행시기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	화재로인한재 해보상과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 (18개 업종)	• 사망·후유장해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 대물배상: 1사고 당 10억 원	• 1974.6.30
		화재		
다중이용시설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23개)	• 사망·후유장해 1억 원, 부상 2천만 원 • 대물배상: 1 사고 당 1억 원	• 신규 2013.2.23 • 기존 2013.8.22
		화재, 폭발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취약시설(19개)	• 사망·후유장해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 대물배상: 1사고 당 10억 원	• 신규 2017.1.4 • 기존 2017.7.7
		화재, 붕괴, 폭발		

■ 상기 의무보험 중 특수건물의 경우에만 건물소유주나 사업자의 화재 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39,153개이며 2015년 경과보험료는 675억 원임. 의무가입대상건물은 국공유건물, 학원, 병원, 16층 이상 건물, 숙박업, 공연장, 방송, 학교, 공장, 대형판매장, 11층 이상 아파트, 목욕탕, 영화관, 철도, 사격장, 다중이용시설(게임제공업, 노래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으로 일정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함; 화재보험협회(2017), 『특수건물 화재 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 pp. 217~218

2)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 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 19개 업종

-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협회가 화재위험도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건물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함
 - 특수건물 할인율은 아파트 등 주택물건 30%, 사무실 등 일반물건 최대 30%, 공장물건 25%임
-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은 소방서에서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출입구에 부착하고(법 제21조) 보험회사는 이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동 법 시행령 제9조의 3)
 - 보험료의 차등요소는 화재발생 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 여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여부임

■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자기를 위한 보험인 경우에도 일부 종목에서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할론·포소화설비, 소방펌프차, 자동화재속보 및 경보설비)를 설치한 계약자에 대해 화재보험협회의 심사를 거쳐 설비별로 할인율을 적용함(설비별 합산하여 최대 60% 할인)

〈표 4〉 화재보험의 소화설비 할인건수 및 적용비율

(단위: 건, %)

연도	특수건물			비특수건물			합계		
	신청건수	할인건수	적용비율	신청건수	할인건수	적용비율	신청건수	할인건수	적용비율
2015	30,147	1,820	6.0	84	56	66.7	30,231	1,876	6.2
2016	33,209	1,992	6.0	56	48	85.7	33,265	2,040	6.1

주: 적용비율은 할인건수/신청건수

자료: 화재보험협회(2017),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 pp. 174~175

-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 물건 중 보험가입금액 20억 원 이상인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하는 예정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할인율을 결정하는 평가요소는 과거 5년간 평균 순손해율(손해액/경과순보험료)이 68% 미만인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 화재발생 방지 및 피해경감 장치 설치 여부 등 관리 실태, 5년간 사고발생 빈도 등임
 - 화재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중 참조순보험요율서가 없는 종합보험과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보험요율의 화재 리스크관리 유도방안



- 국내 손해보험업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역할을 분석한 결과,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리스크재무 기능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리스크통제 기능에서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리스크재무의 경우 계약자들이 재물손해담보를 니즈에 따라 전부 보험 또는 일부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리스크 컨설팅 수요가 적음
 - 그러나 제3자배상책임손해담보의 경우에는 법률상 보상한도액이 1인당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상한도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자의 리스크관리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 컨설팅이 필요함
 - 현재는 화재보험에서 화재발생 방지와 피해 축소를 위한 리스크통제와 관련하여 소화설비할인과 특수건물할인제도만 운영되고 있고, 기타의 보험에서는 명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소화설비할인의 경우 경제주체의 화재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리스크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비교적 소화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일반건물에 비해 양호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도 각 소화설비 운영 실태를 화재보험협회가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양호율이 79%에서 98% 내에 있음
 - 이는 계약체결 시에 소화설비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 시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 2016년 특수건물 소화설비의 양호율

(단위: 건, %)

할인 적용 소화설비			할인 비적용 소화설비		
설비장치	설비건수	양호율	설비장치	설치건수	양호율
소화기	27,621	98.2	물분무장치	185	90.3
옥내소화전	25,086	91.0	비상경보장치	6,926	86.3
옥외소화전	4,355	87.5	-	-	-
스프링클러설비	10,901	90.9	-	-	-
포소화설비	706	85.8	비상방송설비	18,946	90.8
가스계설비	3,633	79.2	안전관리실태	27,621	39.1
자동화재탐지장치	27,333	59.9	-	-	-
자동화재속보장치	5,936	81.2	-	-	-
소방펌프	267	92.1	-	-	-

자료: 화재보험협회(2017),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 pp. 139~149

- 이러한 우려는 <표 2>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소화설비할인 적용을 실제 작동 여부에 따라 연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화설비할인 적용 방법을 효율적용규정(rating rule)에서 소화설비할인특약(fire fighting equipment endorsement)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약은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화재사고가 없거나 사고 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약정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실제 사고 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추징한다는 것을 규정함
 - 또 다른 방법은 계약체결 시에 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하고 사고 시에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할인보험료를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음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화설비할인을 적용 시에 설비 자체의 성능과 더불어 유지관리 등을 평가하여 할인을 적용하고 있음
 - AIG손보사는 홈프로텍트보험에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가 장치된 경우 연간점검 횟수, 주야간 소방요원의 상주여부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음³⁾
-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한 보험요율제도를 마련하여 대규모 건물이나 시설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화재보험 공장물건에 한정하여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예정요율과 경험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성 보험에 대해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보험업법규 등에 규정하지 않지만, 각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 요율제도를 도입하여 큰 폭으로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음
 - 일신화재해상보험은 맨션소유자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맨션 안전관리 적정화 진단서비스를 받아 평가등급이 우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음⁴⁾
 - 손보재팬은 부보물건의 건설상황(construction), 연소하중(fire load), 방화설비(protection), 방화관리체제(management), 과거 손해율과 이재경력(loss history)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함⁵⁾
 - 에이스보험은 공장, 사무실, 점포, 병원, 학교 등에 대한 화재보험(영업휴지보험, 비용보험 포함)과 종합보험에 대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최대 보험료를

3) <https://www.kasai-hoken.info/info/discount.html>(2018. 1. 12)

4) <http://mmoh.jp/mansion-kasaihoken.html>(2018. 1. 12)

5) http://www.bousai.go.jp/kyoiku/kigyoku/keizoku/keizoku07/10_shiryo05.pdf(2018. 1. 12)

50%까지 할인함⁶⁾

-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보험법에 기업성보험(commercial lines)에 대해 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한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함⁷⁾
 - 워싱턴주의 경우 상업용자동차보험, 범죄보험, 신용 및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내륙운송보험, 종합보험, 재물보험을 단독으로 또는 종합담보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정요율을 운영해야 하며 보험요율은 계약자 간 최대 $\pm 25\%$ 로 차등함

■ 향후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비통계요율의 사용이 가능한 기업성보험에 대해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보험요율체계(rating plan)를 마련하여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kiri**

6) http://www.hokensystem.co.jp/wp-content/uploads/2014/08/c_risk1.pdf(2018. 1. 12)

7) 이기형(2017. 9), 「기업 리스크관리 활성화를 위한 ERM 규격화 및 보험연계 방안」, 『리스크관리연구』, 제28권, 제3호, pp. 67~68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Auto Enrollment)와 시사점

정원석 연구위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기여율, 적립금 운용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퇴직연금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 중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중은 2012년 52.1%에서 2017년 64.9%로 상승함
 - 기여율이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 비율 및 평균 기여율 역시 상승하고 있음
 -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가입제도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가입 방식에 따라 기여금 납입 수준과 방식이 달라짐
 - 기본 자동가입 방식(ACA) 혹은 적격 자동가입 방식(EACA)의 경우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며, 사전에 결정된 기여율에 따라 퇴직연금에 기여하게 됨
 - 인증형 자동가입 방식(QACA)의 경우 가입 시점에 3~6% 범위의 기여율을 선택하며, 연차에 따라 기여율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고용주는 근로자 기여금의 50~100%를 추가로 기여함(Matching Contribution, 이하 '매칭기여')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8.3%를 의무적으로 기여하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추가 납입이 가능한 반면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고용주 기여율을 결정함
 -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은 일정조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족시키며 근로자의 연령 및 은퇴 계획을 반영한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운용됨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입자의 퇴직연금 추가 기여 선택을 통해 노후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근로자가 연소득 중 일정 수준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경우, 고용주가 일정 수준의 매칭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 적립금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동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디폴트 옵션)을 고려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기여율 그리고 적립금 운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 중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비중은 2012년 52.1%에서 2017년에는 64.9%로 상승하였음¹⁾
-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은 물론 기여율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금융상품 가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짐
- 가입자의 편의성 및 퇴직연금 기여 유인이 제고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수 근로자 채용인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확대는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의 총 과세이연 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여금을 합한 연간 55,000 달러이며, 이중 본인 기여금의 과세이연 한도는 연간 18,500달러임(2018년 기준)
- 401k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공기관 근로자를 위한 403b,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SIMPLE 등의 퇴직연금이 존재함
-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중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²⁾
-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확대로 퇴직연금 미가입률은 1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퇴직연금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음

- 퇴직연금가입 의무화로 인한 퇴직연금 저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가입자가 더 많은 기여금을 적립하고 더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1) Callan(2017), *Defined Contribution Trends Survey*

2) U.S. Department of Labor'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2017), *Automatic Enrollment 401(k) Plans for Small Businesses*

2. 미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현황



가. 미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동가입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됨
 - 만 21세 이상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자일 것
 - 단체교섭 합의(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를 통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제공 받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을 것
 - 비(非)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아닐 것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에는 기본 자동가입 방식, 적격 자동가입 방식, 인증형 자동가입 방식 등의 세 가지 방식이 있음
- 기본 자동가입 방식(Basic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 이하 'ACA')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하고,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납입비율(기여율)을 결정할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 매칭기여를 통해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정부분을 제공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연차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율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기여율 자동 상승 (Automatic Contribution Escalation)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적격 자동가입 방식(Eligible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 이하 'EACA')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하고,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기여율의 퇴직연금을 납입함
 - 기본 자동가입 방식과 동일하게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매칭기여 및 퇴직연금 기여율 자동증가 제도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단,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90일 이내에 퇴직연금에서 탈퇴(opt-out)할 수 있음
- 인증형 자동가입 방식(Qualified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 이하 'QACA')은 EACA와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하나, 근로자가 입사 시 퇴직연금 납입비율(기여율)을 3~6% 범위에서 설정함

-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비율(기여율)은 매년 1%p씩 증가해 최대 6%까지 자동으로 상승함
 - 예를 들어 초기 퇴직연금 납입비율을 연소득의 3%로 설정한 경우 4년차가 된 시점의 퇴직연금 납입비율은 6%가 됨
 - 단,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연금 납입비율은 3~1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함
-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고용주 추가 기여율을 지급해야 함
 - 퇴직연금 본인 기여금(Elective Deferral Contribution)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연소득의 3%, 본인 기여금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본인 기여금의 100%까지 고용주가 매칭기여금을 지급함
 - 단, 매칭기여율이 100%인 경우 매칭금액은 근로자 연소득의 1%를 넘을 수 없으며, 매칭기여율이 50%인 경우 매칭금액은 연소득의 최소 1%에서 최대 5%의 매칭기여를 함
 - 또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을 중도인출 시 고용주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음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일정조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족시키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단을 제공해야 함

- 적립금은 근로자의 연령, 은퇴계획 혹은 기대여명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함
 - 적립금을 생애주기 펀드(Life-cycle Fund)등에 운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근로자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표 1〉 퇴직연금 자동가입 방식 종류와 특징

구분	가입	기여율	기여율 자동증가	매칭기여	자산운용
기본형(ACA)	자동가입	자동설정	적용가능	적용가능	자동운용
적격형(EACA)	자동가입	자동설정	적용가능	적용가능	자동운용
인증형(QACA)	자동가입	3~6% 선택	의무적용	의무적용	자동운용

나. 자동가입제도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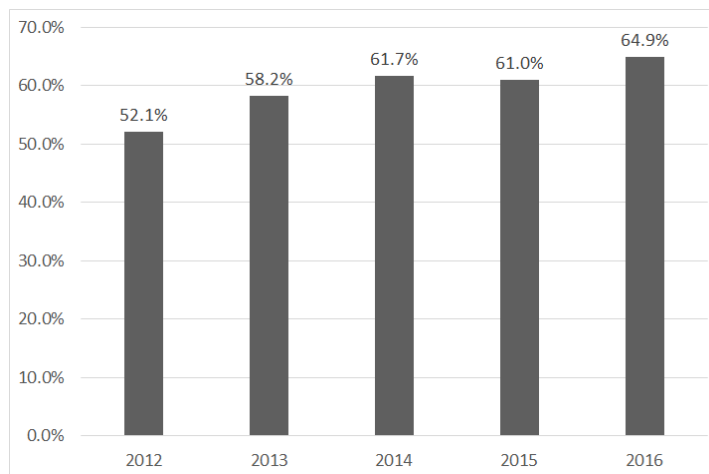
■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 가운데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비중은 2012년 52.1%에서 2014년 61.7%, 그리고 2016년에는 64.9%로 증가하였음

■ 자동가입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2009년 연소득의 3%를 기여율로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54%, 6%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11%였으나 2017년에는 3%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37%, 6%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30%로 증가하였음

〈그림 1〉 퇴직연금 제공 기업 중 자동가입제도 도입 비중



자료: Callan(2017), *Defined Contribution Trends Survey*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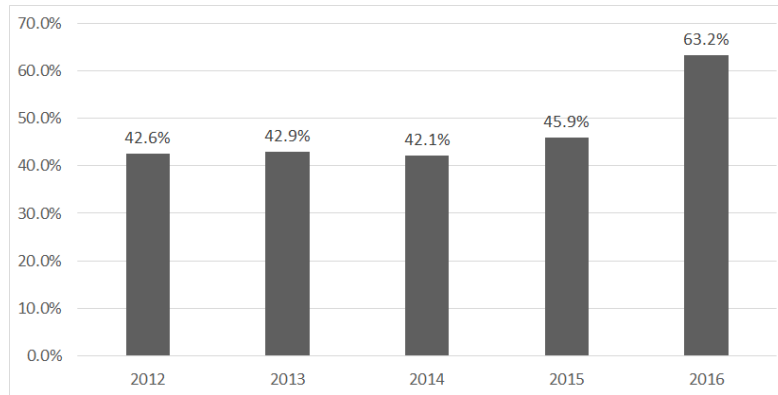
■ 가입 연한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율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기여율 자동상승제도(Automatic Contribution Escalation)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⁴⁾

- 2012년 42.6%이던 기여율 자동상승제도 제공 사업장의 비율은 2015년 45.9% 그리고 2016년에는 63.2% 수준으로 증가함
 - 자동가입제도 적용 사업장의 77%가 자동상승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56.6%가 향후 기여율 자동상승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Alight(2017), *2017 Trend and Experience in Defined Contribution Plans*

4) Callan(2017), *Defined Contribution Trends Survey*

〈그림 2〉 퇴직연금 제공 기업 중 기여율 자동증가제도 도입 비중



자료: Callan(2017), *Defined Contribution Trends Survey* 자료를 재구성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특징은 자동가입 및 운용, 매칭 등 퇴직연금 납입 인센티브 제 공과 기여율 자동상승제도로 요약할 수 있음

- 자동가입 및 운용은 가입자의 퇴직연금 편의성을 증대시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⁵⁾
- 고용주의 매칭기여 등은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고 기여금의 일정부분을 고용주가 함께 납입하는 영국, 뉴 질랜드 등에서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제고되었음⁶⁾
- 기여율 자동상승제도 역시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자산 기여율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앞서 설정해놓은 상태가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를 ‘현상유지 편견’이라 함

5) U.S. Department of Labor’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2017), *Automatic Enrollment 401(k) Plans for Small Businesses*

6) 단, 영국, 뉴질랜드 등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는 모든 고용주가 퇴직연금 제공의무를 가지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됨. 반면, 미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는 고용주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자동가입제도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 납입 그리고 적립금 운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단, 영국, 뉴질랜드, 미국 모두 대상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opt-out)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가입, 납입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 가입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 및 고용주의 근로자 연소득대비 퇴직연금 기여율(최소 8.3%)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로퇴법)에 따라 결정됨
- 고용주가 근로자 기여금에 대한 매칭기여 목적의 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제상 혜택이 없음⁷⁾
 - 세제상 혜택이 적으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임금인상보다 매칭기여 등을 선택할 유인이 적음
-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나 대부분 적립금은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⁸⁾
 -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89%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중해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금자산 방치로 인해 퇴직연금 연간 운용 수익률은 1.5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가입자의 추가 기여 및 적립금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연소득 중 일정 수준을 퇴직연금계좌에 자동으로 적립할 경우, 고용주는 일정 수준의 매칭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고용주의 매칭기여분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국 사례에서처럼 근로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 적립금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동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디폴트 옵션)을 고려할 수 있음 [kiri](#)

7) 사업주가 사업주 기여금 이상의 금액을 매칭기여 등의 형태로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적립 시 근로자 본인 납입금으로 보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 등을 납입 중인 경우 퇴직연금 세제혜택 한도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 금액만큼 축소됨

8) 금융감독원(2017),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연구위원

요약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됨
-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 확보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방어권이 현저히 강화될 것임
 -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선방안의 구체화·규정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 편면적 접촉 금지
 -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및 등사·사본교부 허용
 - 심의회 의사록 기재 상세화(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

1. 검토배경



- 지난해 12월 1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이하 “심의회”) 시 대심제(對審制)¹⁾ 전면 실시 및 심의회 부의안건 전체 사전열람을 허용하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발표²⁾
 -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 및 제재절차에 대한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구성하여 운영해온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안(이하 “TF 권고안”)³⁾을 수용한 것임
 - 2018년 1분기 중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⁴⁾
-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규제 전문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나, 영업의 자유 등 피규제자의 기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함
 - 제재에 관하여 감독당국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는 반면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미약한 경우가 많음
 - 제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부합함⁵⁾
- 그간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확대 관점에서 사전 고지, 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 등 사법(司法)적 요소를 반영한 여러 절차가 도입·개선되어 온 바, 이번 혁신방안으로 제재절차상 대상자 권익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됨

1) 형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대심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재판부)이 중립적 입장에서 검사·피고인(형사재판), 처분청·청구인(행정재판) 등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주장진술·증거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구조를 지칭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2. 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마련”

3) 동 권고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감독, 검사 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는 목적의식하에 ①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②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③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통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총 3가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재심의 대심제 전면도입 및 제재심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 열람 시행 등 제재절차 관련 사항은 위 ②의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방안 중 일부임

4)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2월 20일 발표한 금융행정혁신 최종권고안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2. 21),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이행계획”

5) 이혜진(2015. 2. 2),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

■ 본고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금융감독상 제재절차⁶⁾ 진행과정을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개관하고, 그와 관련하여 금번 혁신방안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겠음

● 이어서 향후 시행세칙 등 규정화, 구체화 과정에서 실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2. 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진행과정 개관



■ 현행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원적으로 배분⁷⁾되나, 실무절차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 금융감독원의 제재실시부서에서 제재안을 작성하고 제재심의담당부서에서 검사,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을 거친 뒤,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검사제재규정 제34조)로 제재 의결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재 안건은 심의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⁸⁾

■ 제재절차는 크게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심의 前 절차와 심의절차로 구분

구분		세부내용	관련 조문
제재심의 前 절차	① 처분의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조치 내지 조치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을 10일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통지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59 ①
	② 의견청취절차 및 청문	위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단,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별도로 의견청취절차를 청문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동 시행세칙 §59 ③ 검사제재규정 §35 ③

6) 본고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제재절차는 다루지 않기로 함

7)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의 인가취소, 영업정지, 위법내용의 공표 등 중한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의 경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재권한을 가짐. 임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임권고 내지 업무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문책경고 내지 주의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재권한을 가지며, 직원에 대한 제재는 개별법에 따라 달리 정함

8) 윤광균(2008. 6.), “금융감독상의 제재와 적법절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p. 61

구분		세부내용	관련 조문
심의절차	③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사실 통지	원칙적으로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의예정사실을 제재예정대상자에게 통지	동 시행세칙 §59 ⑤
	① 부의안 작성 및 부의	제재실시부서장의 부의안 작성 및 심의회 부의	동 시행세칙 §57 ⑤
	② 심의 및 의결	제재대상자는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입증자료 중 소정의 사항 ⁹⁾ 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부터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감독원 방문 열람 가능 대면심의·의결 원칙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 “제재대상자 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심의회 의장은 제재대상자 등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심의회에 출석한 제재대상자 등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심의회는 심의 내용에 대해 심결서를 작성하고, 참여 위원은 심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동 시행세칙 §59의2 ① 동 시행세칙 §57 ④ 동조 ⑥
	③ 의사록 작성 및 공개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 등 심의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소정의 사유(재판·수사,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 영업상 비밀 등)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	동 시행세칙 §57의2 동 시행세칙 §57의3 ① 동조 ②

■ 제재심의 前 절차에서는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예정사실 등을 알려 반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절차 및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통해 방어권 보장

■ 심의절차에서는 제재대상자의 부의안 열람, 심의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통해 이른바 대심제적 운영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열어두고는 있으나, 대심제가 규정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음

- 현행 규정에서 제재대상자의 심의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임의적 절차이며, 제재대상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도 제재대상자 퇴장 후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심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여, 소추자와 피소추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중립적

9) ① 심의회 부의예정안 중 제재대상 사실, 관련 법규, 제재대상사실과 관련한 신청인의 귀책사유 및 신청인이 제59조의 사전통지에 따라 제재실시부서에 제출한 의견 중 사실관계 관련 부분에 대한 제재실시부서의 검토의견, ② 심의회에 제출될 입증자료 중 신청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로 열람대상 한정

판단자 앞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대심제와는 거리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2014년 중 대심제¹⁰⁾를 시범 실시하였으나, 안건 심의 장기화로 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 현실적 한계로 본격 실시되지 못한 바 있음

- 제재대상자가 예정된 제재 근거 사실 등을 검토하여 심의회에서 실효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부의예정안 및 입증자료 열람이 최근 허용¹¹⁾되었으나, 최종 조치수준 및 양정기준은 열람대상 제외

3. 혁신방안의 내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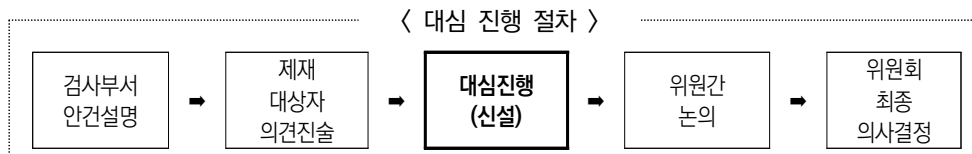
■ 대심제(對審制) 전면 실시

- TF권고안은 ①“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의회를 진행하는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고, ② 원활하게 대심제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운영방식 및 제재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TF권고안의 대심제 설명은 2013~2014년 시범실시 당시¹²⁾와 유사하나, 대심제 실시의 현실적 장애사유로 지적되어온 심의회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권고에 주목할 만함¹³⁾

10) 피조치자(대리인 변호사), 참고인 및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대심 진행 후에는 피조치자와 검사부서 직원 모두를 퇴장시키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6. 18),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사건 집중심의제 도입” 참조

11) 2015. 9. 11. 신설

1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4. 7),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도 시범실시” 참조



① 검사부서 안전 설명, ② 제재대상자 의견 진술, ③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상태에서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질의·답변을 반복, ④ 위원 간 의견교환 후 최종결정

13) 2018년 1월 9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를 현재와 달리 전체 제재심의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 피규제자인 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사후적으로 불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심의절차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은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큰 도약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로 나누어 심의를 운영하는 합리화 방안은 개별 건에서 제재대상자의 의견개진 및 대심시간을 확보하여 대심제의 실효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의안건 전체 사전열람

- 혁신방안은 현재 부의예정안 열람대상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는 최종조치수준 및 적용된 양정기준(고의나 과실 또는 가중이나 감경 등의 사유)까지 열람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임
- 최종조치수준은 제재대상자가 의견진술 등 적극적 방어권 행사 여부 및 변호인 조력 등 방어 방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며, 양정기준은 변론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임
- 제재대상자와 감독당국 간 정보간극이 축소되어 제재대상자 방어권 행사에 기여할 것임

■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

-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외부인사로 임명한 권익보호관이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타당성 검토 후 심의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함
-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중소 금융회사 및 개인 제재대상자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우선 과제로 선정, 지난해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을 제재심 권익보호관으로 위촉

권역별 전문지식이 있는 제재심의위원 3명 정도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구분하고, 중징계 조치 예정 사안만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고, 그 밖의 조치 예정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전체회의이든 소위원회든 심의회 상정 안건은 모두 대심제를 적용하며, 직원에 대한 견책 등 경미한 제재 사안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913555068975>)

4. 제언 및 결어



가. 대심제도 관련

- 현재 제재대상자의 심의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임의적인 부분¹⁴⁾을 개정하여 제재대상자가 제재 수준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동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자의 심의회 출석을 제재 심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에도 질문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당사자(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간 공방에 의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대심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임
- 심의절차 개시 후 제재심의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이 제재대상자 참석 없이 제재실시부서 직원과 별도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재당사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제재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¹⁵⁾

나. 심의회 부의안건 등 열람 관련

- 현재 심의회 개최 3일 전부터로 정해진 열람가능시한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 복잡다기한 금융관련 사안에 대해 단 3일만으로 열람내용을 소화하여 법적 조력자와 함께 실효적 방어 전략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안이 송부¹⁶⁾됨과 동시에 제재대상자에게도 열람을 허용함이 바람직함
- 열람제한 사유¹⁷⁾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등사 내지 사본교부 허용이 검토될 필요

14)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제6항 전문은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제재대상자 출석을 임의적으로 규정

15) 同旨, 윤광균, 전계논문, p. 69; 이혜진, 전계논문, p. 53 참조

16)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부의안 송부 시기는 검사제재규정 및 동 시행세칙상 정해진 바 없으나, 이 시기 또한 검토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 규정 상 감독원을 “방문”하여 열람(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2 제1항)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자료의 양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열람만으로 숙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다. 심의회 의사록 관련

- 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특히 제재대상자가 제기한 반론 등)에 대한 의견의 요지를 의사록에 보다 폭넓게 기재·공개하여 제재 절차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현행 규정에는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감독당국이 재량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의사록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의사록에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결과 정도만 포함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재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¹⁸⁾

라. 결어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대심제 전면 실시의 현실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의미있는 시도임
 - 제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구현 수준은 금융행정의 신속성·효율성과 상호 관련하여 검토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시행세칙 등을 통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도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17) 금융시장의 안정, 수사의 밀행성 필요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사안의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검사제재규정 제35조의3 제3항),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감독원장의 검사·감독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동 시행세칙 제59조의2 제2항)

18) 고동원(2012. 3),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1호, p. 307; 이해진, 전계논문, p. 55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일본은 2018년 3월 30일 아베 수상이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 L4 이하의 자율주행차(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를 마련할 예정임
 - 2016년부터 운영된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적용 관련 다섯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3월 20일 6차 회의에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하였음
- AV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의 확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AV사고 시 운행공용자책임을 적용하여 현행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운행공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지도나 인프라 정보 등 외부데이터 오류나 통신 차단 등에 의한 사고도 AV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를 보상함
- 일본의 자배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개념을 적용하는 운행자 책임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마련에 일본의 AV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L4 이하의 사고는 여전히 운행자책임이 지배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분석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검토배경



- 일본은 SAE(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L4 이하의 자율주행차(이하 ‘AV’)가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상용화될 것에 대비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2018년 3월 30일 확정·공표하였음¹⁾
 - 총리실 주관 미래투자회의에서 AV사고일지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와 2019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의 제출을 요청하였음
 - 또한 일본이 AV상용화와 관련한 국제규정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음
- AV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은 국토부가 2016년 11월부터 「자동안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회(이하 ‘연구회’)」²⁾를 6회 운영하여 마련되었음
 - 연구회는 L4 이하 AV사고에 대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확보와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목표로 검토하였음
 - 그 결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운행공용자 책임을 AV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표 1〉 AV 손해배상책임 연구회 운영 경과

연구회 개최 일자	연구회의 주요 논의 및 결정 내용
제1차 회의(2016. 11. 2)	AV 관련 일본 및 국제동향 검토, 자배법 검토사항 논의
제2차 회의(2017. 2. 2)	주요국 AV사고의 책임부담 방안 논의사항 검토
제3차 회의(2017. 4. 26)	자배법의 주요 쟁점사항 도출
제4차 회의(2017. 9. 27)	자배법의 쟁점사항 논의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향 도출
제5차 회의(2018. 1. 26)	주요국의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Crash Data Recorder) 현황 검토
제6차 회의(2018. 3. 20)	AV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최종 확정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2018. 4. 4),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p. 25(<http://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1) 日本経済新聞(2018. 3. 30), 自動運転中の事故, 車の所有者に賠償責任政府方針(<https://www.nikkei.com/article/DGX MZO28805990Q8A330C1MM8000/>)

2) 법학 교수 4명과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됨: 일본 국토교통성(2017. 10. 30),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http://www.mlit.go.jp/common/001151040.pdf>)

■ 일본의 AV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은 관련 법제가 유사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 논의와 관련 법제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배법은 공통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기초로 하는 운행자책임³⁾(일본은 운행공용자 책임⁴⁾)을 기본 법리로 하여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있음

2. AV사고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주요논점⁵⁾



■ 일본은 AV 도입에 따른 사회적인 편익을 기대하면서 국가가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AV가 2020년 이후 상용화되는 경우 도로교통사회에서 사고로 인한 문제와 과제의 해결, 이동과 관련한 새로운 수단 제공, 범용성이 큰 기술의 확산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 AV 도입 시 사회적 기대 효과

AV 특징		AV의 기대 편익
인간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	도로교통사회의 사고 등 과제 해결	• 교통사고의 소멸 • 교통체증의 완화 • 환경 부하의 저감
자율운전에 따른 운전자의 부담경감	이동 관련 사회과제에 대한 새로운 수단 제공	• 운전의 쾌적성 향상 •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산업규모, 파급성이 큰 범용기술		• 산업경쟁력 향상 • 관련 산업의 산업생산성 향상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2018. 4. 4),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p. 1(<http://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 3)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한국 자배법 제3조)
- 4) 自己のために自動車を運行の用に供する者は、その運行によって他人の生命又は身体を害したとき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に任ずる(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 운행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일본 자배법 제3조
- 5) 일본 국토교통성(2017. 4. 26), “자율운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점 정리”, 3차 자동운전손해배상책임연구회(日本国土交通省,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論点整理, 3回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이기형(2017),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KiRi리포트』, 제432호, 보험연구원

■ 그러나 연구회는 AV가 도입되면 AV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적 장애가 원인이 되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일반 자동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의 오류, 통신차단, 해킹 등 지금까지와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배법을 검토하였음

■ 연구회는 2017년 4월 제3차 회의에서 AV사고에 자배법 제3조를 적용할 경우의 주요 논점 5개 사항을 도출하였고 2017년 9월 제4차 회의에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향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연구회는 L4까지의 AV가 2025년⁷⁾에 도입되는 과도기 과정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전히 AV를 운전할 때 자동차의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표 3〉 AV의 자배법 적용 시 주요 논점

구분	논점 사항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향
논점 1	운행공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	① 적용, 보험회사가 제조사 구상권 행사
		② 적용, 제조사의 일정부분 보험료 부담
		③ 적용, 시스템공용자책임 도입 제조사에게 무과실책임 부담
논점 2	해킹으로 인한 사고 시 손해 부담자	보유자의 관리상황에 따라 책임부담 여부가 달라짐
논점 3	타인의 범위에 운전자 자손 사고 포함	제조물책임법 적용, 상해보험 활용
		자배법에서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논점 4	운전자의 주의 태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정비점검에 대한 주의 의무 해태 가능성 병존
논점 5	지도정보, 인프라 등 외부데이터의 오류, 통신차단 등의 사고를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에 해당여부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 장애에 해당 가능성 병존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2018. 4. 4),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p. 3(<http://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6) 이기형(2017),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KiRi리포트』, 제432호, 보험연구원

7) 일본은 2020년에 L3의 자가용, 한정지역에서 무인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L4의 AV(자가용, 트럭)를 고속도로에서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3. AV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 내용⁸⁾



■ (운행공용자 책임) AV사고에 대한 3개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행과 같이 운행공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제1안을 채택하되, 보험회사가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연구회는 자율운전일지라도 소유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운행공용자 책임은 변하지 않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현행제도가 효과적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연구회는 참여위원들이 제1안 채택에 위화감이 적지만 제2안과 제3안을 채택하는 경우 해결 과제가 많다는 점과 독일, 영국, 미국의 채택 사례도 반영하였음

〈표 4〉 AV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별 해결 과제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운행공용자책임	적용	적용	적용
부담 방안	보험회사 보상 후 제조사에게 구상	제조사 일정보험료 부담	제조사의 시스템공용자책임 도입
해결 과제	구상권 행사에 대한 실효성확보	• 공평한 보험료부담 비율 결정의 어려움 • 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제 구축의 어려움 • 자율운전레벨에 따라 적용하는 제도가 다를 경우 보험제도 혼란 가중 •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보험료와 자배책 보험료의 중복 부담 • 자배책 보상한도액 초과 사고 시 구상권 행사 필요	• 제조사에게 무기한 무과실책임부과는 과도한 부담 • 제조물책임법에 반영 가능성 검토 • AV만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합리적 설명이 어려움 • 현행 운행공용자책임에 추가하여 AV에 대해서만 시스템공용자책임 도입은 합리적 설명이 어려움 • 부품 제조사 등 관계자가 있음에도 제조사에게만 책임을 집중하는 근거가 불명확함 • 피해자와 제조사가 입증할 결함의 존재가 불명확함 • 운행공용자와 시스템공용자가 각각 구상 시 부담 비율 산정이 어려움 • 시스템 공용자는 보상한도액 초과 사고 시 자동차 임의보험과 제조물책임보험의 중복 가능성 존재 • 자동차사고에 다른 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자배책 보험제도 운영에 혼란 가중

8)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2018. 4. 4),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pp. 7~23 (<http://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채택 여부	채택함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자율운전 기술의 발전, AV 보급 상황, 적절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리콜정보도 활용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도 확보할 예정임
 - 관계 부처의 각종 회의 등에서 검토 상황을 감안하여 사고기록장치(EDR, CDR) 등의 사고 원인 해석에 필요한 장치를 AV에 부착하고, 시장에서 입수 가능한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자율운전 중의 사고 시 보험회사와 자동차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원활한 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해석과 협의를 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도 검토함
 - AV의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운전 중 사고 및 시스템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함
-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자가 AV를 해킹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배법상의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음
 - 연구회는 제3자의 해킹사고 시 보유자가 주의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의 도난차량과 같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행공용자책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해킹사고가 소유자 등이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보수점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운행공용 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또한 자율운전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해킹인 경우에는 정부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자동차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운전자의 타인성 인정 및 보상 여부) 운전자가 AV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기초한 임의보험을 이용하여 보상받도록 하였음
 - AV시스템의 결함 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한 생산물배상책보험이나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였음

- 동 방식은 제2안(자배법에서 타인으로 인정)보다 제3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No loss-No Profit 원칙을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을 운영함에 있어 혼란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5〉 운전자의 타인성 인정 방법 및 해결 과제

구분	제1안	제2안
근거법	제조물책임법, 민법(채무불이행책임)	자배법
부담 방안	임의보험(배상책임담보, 상해보험 등)	의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
해결 과제	현행 일반자동차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자손 사고에 대해 임의보험(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담보)을 통해 보상받으므로 해결 과제 불요	• 자배법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인 취지를 벗어나게 됨 • 자배책보험료 반영에 복잡한 문제 발생 • 타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자의 신속한 보상목적인 자배법 제도가 복잡화됨 •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손사고를 No Loss-No Profit으로 운영되는 자배법 구조에 부적합함
채택 여부	채택함	채택하지 않음

■ (운행공용자와 운전자의 관리 및 주의 의무 적용) 일본은 AV에 대해서도 자배법 제3조의 단서인 운행공용자의 관리 및 주의 의무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현행 자배법 제3조 단서는 운행공용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를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AV일지라도 자율운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등을 업데이트하거나 자율운전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적시에 수리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향후 자율운전 기술의 발전에 맞춰 운행공용자의 주의 의무의 내용도 변화될 수 있다는 점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의 논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¹⁰⁾
- 일반 자동차와 달리 AV에 대해 운행공용자의 주의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자동차기술의 발전, 도로교통법 등의 논의상황에 따라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9) 운행공용자의 주의 의무의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 의무, 자동차 점검 정비에 관한 주의 의무, 운전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포함됨

10) 관련 사항은 운행공용자의 자동차 점검 정비에 대한 주의 의무, 자율운전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도록 해당 기능을 유지 및 관리 할 주의 의무, 소프트웨어나 정보의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의무가 해당됨

■ (지도정보,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의 오류, 통신 차단 등에 의한 사고를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애로 인정 여부) 일본은 이에 대해 자배법 제3조의 단서의 면책요건 중 하나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일반적으로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장애는 “소유자 등이 일상 정비점검을 통해 발견할 수 없는 것과 운행 당시의 자동차 관련 기계공학 지식과 경험에 의해 발생가능성을 미리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자동차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AV가 외부 데이터의 오류나 통신 차단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한 자율운행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또한, 어떤 경우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 장애”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자율운전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4. 시사점



■ 일본은 2016년부터 AV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대해 5가지 쟁점사항을 논의한 결과 현행 자배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No loss-No Profit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 운행공용자의 주의 관리 의무, 지도정보 등 오류 등에 대해서는 AV의 기술 발전, AV의 보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재 결정된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완전한 자율주행기능이 가능한 L5의 경우에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행 자배법의 지속적인 적용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¹¹⁾

11)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2018. 4. 4),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p. 23 (<http://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표 6〉 일본의 일반 자동차와 AV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법 비교

구분			일반자동차	AV(L4 이하)
근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 운행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 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면책사유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 장애가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	
인적 손해	보 상	운전자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임의보험에 구상)
		제3자	보상함	보상
	보상한도액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최고 4,000만 엔(상시간병) 부상 최고 120만 엔	일반 자동차와 동일
재물 손해	보상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보상한도액		대물배상 임의보험 가입	일반 자동차와 동일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도난차량, 원인불명	뺑소니, 도난차량, 원인불명, 해킹
보험회사의 구상권			사고원인 자(제조사 등)에게 구상	제조사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EDR 정착 등)
보험상품			자배책보험, 자동차임의보험	자배책보험, 자동차임의보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상해보험)

■ 손해보험회사는 AV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고 향후 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고 있음¹²⁾

● 손해보험회사는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 상품을 개발하였음

- 동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에 기인하거나 해킹에 의한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임
-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제조사, 해커 등 손해를 야기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아울러 AV의 시스템결함이나 제3자의 해킹 등의 부정접근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과실사고의 특칙”을 도입하여 차량보험에 부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AV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음

12) 日本損害保険協会(2018. 2. 1), 自動運転に関する損害保険業界の取り組みについて, pp. 4~6
(<https://www.kantei.go.jp/jp/singi/it2/senmon.../siryou1-3.pdf>)

-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원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구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함
 - AV사고 시 EDR(또는 CDR) 등과 같이 사고 해석에 필요한 장치 및 분석 체계의 마련
 -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와 제3자 등과 구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신설하고, 양자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판단에 의한 해결방법 확립
-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책임에 대한 법제가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L4 이하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히 자동차의 사고 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개념을 도입한 운행자책임(운행공용자 책임)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면책사유도 유사한 점을 들어 L4 이하의 사고에 대해 일본의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음¹³⁾
 - 따라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식(L4 이하 AV사고에 대해 자배법 적용, 해킹사고의 정부 보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내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표 7〉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부담자와 면책사유 비교

구분	일본	한국
근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책임 부담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 운행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면책 사유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1.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
정부 보장 사업	1. 자동차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13) 이기형·김혜란(2016),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조사보고서 2016-10, 보험연구원, pp. 69~79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 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하여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함
 -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음
-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경협·교역보험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회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capacity)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북한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11년만의 4. 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경우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2010년 5·24 조치¹⁾에 이어 2013년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금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한 간 경협과 교역이 재개 및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다만, 남북경협이 재개되려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한 변수임
- 그동안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기업들의 불안정한 기업경영 환경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新남북경협 추진에 앞서 남북 경협의 안전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추가되어 국내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협 및 교역보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민영 보험회사도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북한 관련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보험에 참여하며 향후 북한보험시장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남북경협 관련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 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임.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였음

2. 교역·경협 보험제도 운영 현황



가. 개요

- 경제협력사업보험(이하 '경협보험') 및 교역보험은 이 같은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남측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²⁾의 형태로 2004년 도입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임
 - 2003년 8월,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후 민간경협 활성화 및 남북 간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북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북한의 신용도 및 수입자 신용조사·사고조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 수출보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역·경협 보험제도가 도입됨
- 경협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재산보험, 자동차 및 종업원 배상책임보험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에 의거 북한보험회사에 의무가입(제6조), 경협관련 정치적 위험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은 사업재개 시 반환해야 함
- 경협·교역보험의 관리주체는 통일부이며, 정책심의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기금수탁관리기관이자 운영기관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나. 보험상품 종류

-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함³⁾
 - 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함

2)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의 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제8장 교역·경협보험,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교역보험 취급기준

3) 경협보험은 해외투자보험과 유사하며, 교역보험은 해상적하보험 또는 이해보증보험의 성격과 유사

- 반면, 교역보험은 북측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기업이 당사자 간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
 -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연속 2주 이상 중단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줌

〈표 1〉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의 주요 종목 및 보험대상

구분	보험 종목	보험 대상
경험보험	지분 등 투자보험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대부 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지연
	권리 등 투자보험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교역보험	선적 후 반출보험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선적 전 반출보험	반출한 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보험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위탁가공설비보험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지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반출 원부자재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납품계약 체결된 위탁가공품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person/guideservice/PU211.do>)

다. 운영형태

■ 경험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수용위험, 송금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불가항력위험 등과 같은 비상위험(非常危險)이 해당됨

- 한편, 교역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로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 경험보험과 교역보험 담보위험

경험보험	교역보험
① 수용위험: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②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개월 이상의 송금불능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③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험보험	교역보험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④ 약정불이행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 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해당 경험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⑤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반출 불능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 불가 ⑥ 남북당국 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⑨ 수용위험: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⑩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주: 교역보험의 보험종목에 따라 담보위험 범위가 다름

(1) 선적 후 반출보험: ①~⑦, (2) 선적 전 반출보험: ①~⑧, (3) 반입보험: ①~⑧, (4) 위탁가공설비보험: ⑨~⑩

자료: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 고시 제2017-2호); 교역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4호)

■ 보험계약한도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재 기업 당 가입한도는 경험보험은 70억 원으로, 교역보험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교역보험 중 납품이행보장보험의 계약한도액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한편, 경험보험의 부보율⁴⁾은 70% 또는 90%로, 교역보험은 70%로 설정되어 있음
 - 단, 교역보험 중 납품이행보장보험의 부보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음

■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의 보험요율은 각각 0.5~0.8% , 0.3~1.0%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 특별할인을 적용함

- 경험보험의 보험요율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0.7%로 책정되었으나, 가입률 제고 목적으로 2007년 0.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09년 보험요율 근거조항 마련 이후 0.6%로 상향조정하여 2016년까지 유지됨⁵⁾

4) 부보율이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을 의미함

5) 김종현(2017), 「남북경험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표 3〉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의 운영 형태

구분	경협보험	교역보험
계약한도	기업 당 70억 원	기업 당 10억 원 (납품이행보장보험: 5억 원)
보험가액	- 지분 등 투자보험: 지분 취득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 대부 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 - 권리 등 투자보험: 권리 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 당시 평가금액	- 선적 후 반출보험: 선적금액 - 선적 전 반출보험: 반출계약금액 - 반입보험: 입금대금 - 위탁가공설비 보험: 선적금액-감가상각분 -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반출원부자재 금액+위탁가공비 -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납품계약액
부보율	경제특구지역: 90%, 기타지역: 70%	70%(단, 납품이행보장보험: 10%)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보험가액×부보율
보험요율	0.5~0.8%(중소기업 할인적용: 25%)	0.3~1.0%(중소기업, 교역실적기준: 할인적용)
보험료	보험계약관계 성립금액×보험요율	보험계약관계 성립금액×보험요율

주: 1)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의 부보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보율을 적용함
 2) 경협보험의 보험금액 5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요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요율을 적용함
 자료: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 고시 제2017-2호); 교역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4호)을 기초로 작성

3.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가. 부보대상 위험 범위

■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의거 북한보험회사에만 가입해야 하므로 기업유지 등 리스크를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한국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하고 사업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재가동 시에는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임
- 개성공단 폐쇄조치 직후 통일부(2016)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손실액은 7,779억 원으로 나타남⁶⁾

6)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3월 17일~2016년 5월 10일까지 총 3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이 9,446억 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 원 임(통일부 보도자료(2016. 5. 27), “그 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 추진현황 점검 및 기업·주재원 지원방안 마련”)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동안 입은 총손실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총손실액의 21%인 3,147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⁷⁾

■ 사업 정지 후 재개 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은 부재한 실정임

〈그림 1〉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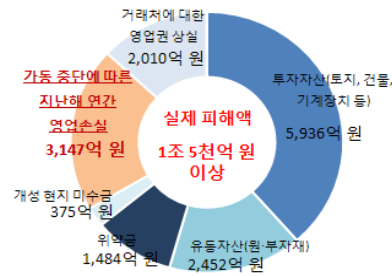
〈주요 항목별 피해액 규모 추산(2016)^{1),2)}〉

(단위: 억 원)

구분	정부	개성공단기업협회
투자(토지, 건물, 기계 등)	5,088	5,654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917	2,317
위약금	633	1,100
개성 현지 미수금	141	375
합계	7,779	9,446

〈개성공단 폐쇄조치 1년 이후 피해조사 규모(2017)³⁾〉

(단위: 억 원)



자료: 1) 개성공단기업협회 보도자료(2016. 3. 11), “개성공단 비대위 발표-피해금액 추산”

2) 통일부 보도자료(2016. 5. 27),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3) 연합뉴스(2017. 2. 7),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업체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

나. 보상한도의 적절성 및 보험금 산정

■ 경험보험은 2004년 도입 이후 보상한도를 확대하였으나,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업별 보험가입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2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 50억 원, 2009년 70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함
- 그러나 과거 보험사고 패턴을 볼 때 경험보험 관련 보험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커 현행 보상한도로는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2,945억 원으로 1사당 28.3억 원 수준이었음

7) 연합뉴스(2017. 2. 7),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업체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

-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경험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약 10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하였고, 약 15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⁸⁾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사고 발생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액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

- 보험사고 지역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가 존재함

다. 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운영 효율성

■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의 보험요율은 각각 0.5~0.8%, 0.3~1.0%로 해외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의 요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교역·경험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의 경우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최고 연 1.5%까지 요율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임⁹⁾

■ 또한 경험·교역보험제도 운영 목적을 대북거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과도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지원의 형평성이나 이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되,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지원율 45%, 한도 17.5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짐¹⁰⁾

8) 정유석(2017), 『개성공단 실증분석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모색』, 통일부 연구용역

9) 김종현(2017), 「남북경협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10) 통일부 보도자료(2016. 5. 27),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 결과”

4. 검토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도개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단계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며, 아울러 기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험참여 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담보범위 확대, 보상한도 증액, 적정 보험요율과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험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초기 투자 이후 추가 공장 또는 설비 확장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부족, 실물자산의 화재,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재물·책임보험 등 투자위험 외에 실물자산 관련 물적담보에 대한 보험상품이 필요함
 - 개성공단 기업의 화재, 가스사고배상책임 등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 10. 11) 제6조에 의해서 공업지구보험회사, 즉 북한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으나, 동 보험에 가입한 극히 일부 기업들은 과거 사고 시 손해사정 및 보험금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¹¹⁾
 - 북측 보험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 보상에 대한 불신 제거 등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공동으로 합영보험회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함
 - 기업휴지보험과 같이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손실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북측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 또는 지시로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과세, 파업, 태업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험담보 재검토 등
- 현재 운영 중인 경험·교역보험 상품의 주요 과제인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방식, 적정 보험요율,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 개성공단 기업 면담결과(2015)

- 경협·교역보험에 대해 보장한도금액과 부보율이 낮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경협보험 참여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원 검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¹²⁾
 - 보험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액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경협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미평가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보험가입을 미리 합의하는 기평가보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입률 제고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기업등록 신청 시 경협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긴급운전자금 수혜 기업은 경협보험 및 교역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함
- 향후 남북 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교역·경협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나 해외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담보확대, 신상품 개발 및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북한의 정치적 위험, 남북 보험관련 규정, 낮은 요율 수준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았음
 - 남북 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도 어느정도 가능해져 민간 보험회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AIG, Lloyds 등 해외 대형보험회사가 정치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요율은 경협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¹³⁾ 적정수준의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급보험금(재원)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외재보험(XOL), 위험대체수단(ART) 활용이 필요해 보임
 - 보험 누적가액이 크지 않고 국내보험회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capacity) 규모를 고려하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북한과의 경협 관련 보험상품의 운영에 국가재보험제도¹⁴⁾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Lloyds 등 해외재보험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리할 것임¹⁵⁾ **kiri**

12)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경협보험 실태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90% 이상이 투자자산 보장을 위한 한도액 및 부보율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신동호·이재열(2016),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제34권 1호

13) 신동호(2013),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경협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p. 42~43

14) 국가재보험은 일정 수준까지 민간이 부담하며, 그 수준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증(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정책성보험제도에 활용됨

15) 현재 북한이 미국과 UN의 제재대상국가(sanctioned countries)이기 때문에 해외재보험회사들과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별첨 1〉 남북경협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실적

■ 2016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총 112개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 중 79개사(가입률 64.2%)와 개성공단에 부지 등을 분양받았으나 생산활동을 영위하지는 않은 기업이 33개사임

-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개사에는 자본잠식(20개사),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지급받았던 경협보험금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14개사가 포함되어 있음
-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았으나 토지를 소유한 22개사와 영업소 등 11개사 등도 경협보험에 가입함

〈별첨 표 1〉 남북경협보험 실적 현황

(단위: 개사,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수	9	7	31	94	147	159
가입금액	4,873	11,688	93,559	316,244	512,148	529,305
보험료	13	46	188	323	1,131	1,62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 수	149	147	98	108	112	8
가입금액	515,694	508,634	316,588	367,189	379,781	17,450
보험료	1,698	1,679	1,026	1,173	1,337	350

주: 연도 말 기준이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계약이 해지됨(예: 2016년에 104개 업체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8개 업체(112-104) 만 계약이 남음)
자료: 수출입은행

■ 반면, 교역보험은 경협보험에 비해 보험가입조건이 불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특히 5·24 조치 이후에는 교역량과 관계없이 실적이 전혀 없음

-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자인 진출기업들이 대체로 영세한 상황에서 재고자산, 원부자재 등 가입명세를 개성공단에 반입·반출할 때마다 매번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고, 관리 전담조직을 두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다 관리역량도 미흡하기 때문임
- 또한 교역보험의 보장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별첨 표 2〉 남북교역보험 실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1	1	2	3	2	2	1
건수	1	1	4	23	10	5	3
금액	68.6	66.3	98.4	2123.4	927.2	848.9	652.0

자료: 수출입은행

■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제도 도입 후 2016년까지 거수된 보험료 총액은 각각 105.9억 원, 47.8억 원임

■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경협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총 3차례임

- 정부는 2011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자 6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 등 총 46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함¹⁶⁾
- 2013년 4월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총 1,761억 원이며, 총 140여개 보험가입 기업 중 59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이 결정됨
-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보험금 지급은 총 104개사 2,945억 원으로 1사 당 지급보험금은 28.3억 원 수준임¹⁷⁾

16) 통일부 보도참고자료(2011. 3. 23), “개성공단 공장투자 6개 기업 경협보험금 등 지급 의결”

17) 보험금 지급 외에도 기타 지원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5,833억 원임(통일뉴스 2017. 11. 10)

〈별첨 표 3〉 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및 반납 현황

(단위: 개사, 억 원)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보험금 반납		보험금 잔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 2010년 5.24 조치		7	50	-	-	7	50
•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59	1,761	44	1,307	19	454
세부내역	전액 반납	40	1,232	40	1,232	-	-
	일부 반납	4	108	4	76	4	32
	전액미 반납	10	363	-	-	10	363
	사업 포기	5	59	-	-	5	59
•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주)}		104	2,945	-	-	104	2,945
세부내역	가지급금	26	486	-	-	26	486
	본지급금	104	2,459	-	-	104	2,459
합계		170	4,756	44	1,307	130	3,448

주: 1) 가지급금 및 본지급금을 모두 수령한 기업은 1개사로 간주

2) 2018년 1개 업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추가되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험금 지급업체는 총 105개 업체임

자료: 수출입은행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2017년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적발금액의 6.2%를 차지함
 -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허위,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입원, 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는데,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에 해당하는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이 깊음
 -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함
 -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행위임
-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과 평범한 계약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충동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범은 경성 보험사기범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방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보험사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 사회규범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자각을 돕는 넛지(Nudge)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아울러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험사기를 보험청약 단계에서의 사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함¹⁾

● 예를 들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청구 단계에서의 보험사기로 한정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이 정의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청약 단계에서의 보험사기도 포함함

● 미국 NAIC 보험사기방지 모델법에서 정의하는 보험사기행위에는 보험금청구 단계 외에도 보험청약 단계이나 갱신 단계에서 사취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숨기는 자의 행동을 의미함²⁾

- 여기서 보험사기의 주체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중개자, 판매자 등이 모두 포함됨

- 중요한 정보에는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계약 등급, 보험금지급신청, 보험료, 보험금, 보험감독당국에 제출한 문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보험상품(line)의 구성·인수·합병·재합병·해체·철회, 보험에 대한 서면증명의 발행, 보험계약의 회복 등이 포함됨

● 영국 ABI는 보험사기를 의도적이고 부정직하게 거짓진술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고 했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 손해를 초래하려고 했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로 규정함

- 여기서 보험사기의 주체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3자임³⁾

■ 한편 보험사기는 사전 계획 여부에 따라 경성 보험사기(Hard Fraud)와 연성 보험사기(Soft Fraud)로 나눌 수 있음⁴⁾

●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 제14123호), 제2조

2) NAIC(2010), "Insurance Fraud Prevention Model Act"

3) <http://www.theifr.org.uk/en/about/>

4) Karapiperis(2014), "Insurance Fraud", CIPR Newsletter,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NAIC

금지급을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함⁵⁾

-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성 보험사기범은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과 적발되지 않으면 얻게 되는 이득, 예상되는 적발 확률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음⁶⁾
- 이에 반해, 기회주의적 보험사기(Opportunistic Fraud)라고도 불리는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 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이룸⁷⁾
- 충동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범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 보험금 사기 규모는 경성 보험사기, 경성 보험사기 의심 건, 연성 보험사기 또는 남용, 연성 보험사기 또는 남용 의심 건 중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⁸⁾⁹⁾

■ 2017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입원·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과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등 연성사기와 관련된 유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⁰⁾

- 2017년 기준으로 허위입원 또는 보험사고 내용을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에 속하는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75.2%를 차지함¹¹⁾
- 한편 사고피해 과장, 병원 과장 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6.2%를 차지함

■ 본고는 보험금청구 단계에서의 연성 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과 방지 방법들을 검토하여 국내 연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5) 미래 보험금 청구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 보험사기(Deliberate Fraud)라고도 함; RGA(2018), *RGA 2017 Global Claims Fraud Survey*

6) Becker(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 pp. 169~217

7)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계산 없이 보험료 경감을 위해 건강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보험에 계약했을 때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보험금 신청 단계에서 충동적으로 피해를 부풀리는 경우에 해당됨; RGA(2018)

8) Derrig(2002), "Insurance Fraud",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9(3), pp. 271~287

9) 연구자에 따라서는 보험사기를 사실이 아닌 진술이나 중요한 허위진술하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얻으려는 의도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Derrig(2002)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7), "허위·과잉 치료관련 손해보험 사기 크게 증가"

11) 허위·과다사고 보험사기 유형에는 허위·과다 입원, 진단, 장애 외에도 허위사망 및 실종, 허위수술, 사고내용조작, 피해자 또는 피해물 끼워넣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고지의무위반, 사고 후 보험가입, 차량도난, 운전자 바뀌치기, 사고차량 바뀌치기 등이 포함됨

2. 연성 보험사기의 특성



■ Dan Ariely(2009)는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라는 자아상 (self-image)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부정행위를 함을 보였는데, 그의 이론을 연성 보험사기에 적용할 수 있음¹²⁾

- 높은 수준의 부정행위는 자신의 자아상에 흠집을 낼 수 있지만 낮은 수준의 부정행위는 적당히 정당화하여 자아상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그는 이렇게 자신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합리화가 가능한 부정행위 수준을 ‘개인적 얼버무림 인자’(Personal Fudge Factor)라고 정의함
- 따라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Burbach(2016)는 사람들은 손해발생이나 피해자를 부정, 보험회사를 비난, 더 심각한 보험사기와의 비교, 고차원적인 동기 이용, 심리적 대차대조표의 비유, 규범에 원인을 귀착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기를 합리화한다고 설명함¹³⁾

- 적은 금액의 보험사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소한 보험사기는 부유한 보험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함
-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속이므로 보험회사를 속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험회사의 수준 낮은 고객서비스나 불명확한 면책 조항 등은 이러한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음
- 절박하게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험사기를 합리화하기도 함
-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기록하는 계좌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대체로 도덕적으로 살

12) https://www.ted.com/talks/dan_ariely_on_our_buggy_moral_code

13) Koneke et al.(2015)을 Burbach(2016)에서 재인용함: Burbach(2016), “Soft Fraud and Possibilities for Prevention”, *Risk Management Review*, Gen Re; Köneke, Müller-Peters, and Fetschenahuer(2015), *Versicherungsbetrug Verstehen und Verhindern*, Springer Gabler

있다면 사소한 보험사기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정당화함

- 모든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쁠 리 없으므로 보험사기는 사소한 범죄라고 정당화함

■ 이 밖에도 제도 또는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연성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험 또는 사고처리 관련 전문가들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유도하거나,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체계가 연성 보험사기를 발생시키기도 함

- 영국의 보험사기 대책위원회는 보험금청구관리회사(Claims Management Company, 이하 'CMC'), 전문의료인, 변호사, 자동차 정비기사 등이 평범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경우를 발견함¹⁴⁾
- 영국의 보험회사인 Aviva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자동차수리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평균 자동차 수리비용의 57%가 과잉 청구되었으며, 견인차량기사가 소비자에게 공인정비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백지 수리견적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함¹⁵⁾
- 한편, 미국 자동차대인배상보험의 보험금은 대부분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계약자는 합의과정에서 제안된 금액이 낮추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보험금 청구 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높은 보험금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함¹⁶⁾

3. 연성 보험사기 방지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



■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에는 단순하고 명확한 정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 사회규범 또는 동료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정직한 행동을

14) Insurance Fraud Taskforce(2016), *Final report*

15) Aviva(2018. 3. 12), "Aviva Fraud Investigation Reveals Urgent Need to Reform Auto Insurance", News Release

16) Derrig and Weisber(2004), "Determinants of Total Compensation for Auto Bodily Injury Liability under No-fault: Investigation, Negotiation and the Suspicion of Fraud",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71(4), pp. 633~662; Derrig(2004), "The Settlement Negotiation Process for Automobile Injury Liability Claims in the Presence of Suspicion of Fraud and Build-up", ARIA; 전용식 외(2017), 『자동차보험 대인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워킹페이퍼, 보험연구원에서 재인용

유도하는 자극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기존 사례들은 정보를 단순하고 더 눈에 띄게 제공하는 것이 법규 준수를 독려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¹⁷⁾미국 뉴멕시코주는 명확하고 단순한 표현을 통해 실업보험금 청구인의 신고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킴¹⁸⁾
- 영국 국세청(HMRC)과 BIT(Behavioural Insights Team)의 실험 결과는 사회규범을 이용한 안내편지를 통해 납세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임¹⁹⁾20)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기일 내 납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집단이 이러한 내용이 없는 기존 편지를 받은 집단보다 15%p 더 높은 납세율을 보임²¹⁾
- 기존 연구들은 정직서약을 하도록 하거나, 십계명을 기억해 내는 등 도덕적 상기(moral reminder)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²²⁾
 - Shu et al.(2012)의 연구는 사실 확인 서명란의 위치를 마지막에 두는 것보다 응답 전에 두는 것이 부정행위를 줄이는 데에 더 효과적임을 보임²³⁾
 - 이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운행거리를 신고하도록 한 현장실험에서, 운행거리 기입 전 정직서약을 한 경우에 기입 후 정직서약을 한 경우보다 운행거리를 10% 더 많이 신고했음을 발견함

■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

- 2010년 이후로 영국정부는 개인상해보험금 지급 관련 소개 비용(변호사, 보험회사, 보험금관리회사 등)을 금지하고, 경추손상(whiplash) 등 경미한 연부조직손상(soft tissue injury)과 관련된 법의학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MedCo를 설립함²⁴⁾

17) The Cabinet Office Behavioural Insight Team(2012),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Reduce Fraud, Error and Debt*

18) Forehand and Greene(2016), "Nudging New Mexico", *Deloitte Review*, p. 18

19) 영국은 2010년 정부 산하에 Nudge Unit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BIT(Behavioural Insight Team)를 두어 행동경제학을 접목한 정책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BIT는 2014년 상호합작투자(Mutual Joint Venture) 형태로 정부에서 분리되었음

20) The Cabinet Office Behavioural Insight Team(2012),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Reduce Fraud, Error and Debt*

21) '편지를 받은 사람의 지역 이름' 주민의 9명 중 10명이 기한 내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사용함

22) Mazar, Amir, and Ariely(2008), "The Dishonesty of Honest People: A Theory of Self-Concept Mainten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6), pp. 633~644

23) Shu, Mazar, Gino, Airel, and Bazerman(2012), "Signing at the Beginning Makes Ethics Salient and Decreases Dishonest Self-reports in Comparison to Signing at the End", *PNAS*, 109(38), pp. 15197~15200

24) <http://www.medco.org.uk/>

- 캐나다 온타리오 자동차정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Aviva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함
 - 제3자 소개비 제공 금지, 백지 견적서 사용 금지, 보험회사 공인정비소를 사용할 고객에게 할인허용, 보험회사의 식별된 보험사기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 보험금 지급 관련 사업자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임²⁵⁾

4. 결론



- 보험금 청구 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고 내용을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접근과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접근으로 나눌 수 있음
- 우선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연성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합리화 논리이나, 보험사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함
 -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를 비난하여 보험사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약화시켜야 함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투명한 정보전달을 통해 보험모집,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소비자의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할 경우 면책조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둘째, 사회규범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자각을 돕는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5) Aviva(2018. 3. 12); 정인영(2018. 4. 9), 「캐나다의 사고차량 견인 및 수리 관련 보험사기 규모 추정 결과」,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대부분의 계약자들, 특히 보험금 지급 신청자가 소속감을 갖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할 때 피해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정행위를 적당히 합리화할 여지를 줄여야 함
 - 다만, 국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연성 보험사기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53.5%로 조사되어 소비자가 연성 보험사기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²⁶⁾
- 보험금 신청 시에 사고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겠다는 확인서명을 한 후, 보험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연구는 사실확인 서약의 위치를 응답 전에 두는 방식과 사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직서약 서명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나,²⁷⁾ 실제 효과측정을 위해서는 사전실험이 필요할 것임

■ 셋째,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상품이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나 보험판매자를 포함한 보험사기 공모 사례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이 보험계약자를 충동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²⁸⁾

■ 효과적인 연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연성 보험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 BIT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의 효과는 시장의 상황과 맥락에 좌우되므로, 기존 방법들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황에서 사전 시험을 해 보고, 어떤 요소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효과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²⁹⁾ [kiri](#)

26) 동향분석실(2017),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2017-14, 보험연구원

27) The Cabinet Office Behavioural Insight Team(2012)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7), “허위·과잉 치료관련 손해보험 사기 크게 증가”

29) BIT는 이와 같은 방식을 ‘test, learn, adapt approach’라고 정의함; The Cabinet Office Behavioural Insight Team(2012)



숙박공유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검토과제

임준 연구위원

요약

- 숙박공유 서비스의 경우 현재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데,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지역의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보험 이슈는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가계로 보아야 할지, 기업으로 보아야 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
 - 숙박 영업행위는 가계의 일반적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계성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보장공백 이슈에 대해 규제당국, 플랫폼 사업자, 보험산업이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의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2014년에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공유경제하에서의 보장 공백 이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음
 - 에어비앤비(Airbnb)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어떠한 보상정책도 제공하지 않았으나, 규제당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집주인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정책을 제공하였음
 -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 업체들은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만 보장하는 단기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국내 규제당국과 보험회사도 향후 숙박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선, 규제당국의 경우에는 보장공백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회사들은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¹⁾ IT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희자산(Excess Resources)의 시장거래를 의미함²⁾
 -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를 들 수 있음
 - 우버는 승차공유(ride sharing) 서비스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에어비앤비는 숙박공유(home sharing) 서비스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임
- 공유경제의 긍정적 기대효과는 유희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임
 -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 다양한 선택권, 편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음
- 반면,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거래상 위험 및 소비자보호 등의 우려 요인도 존재함
 - 일각에서는 공유경제의 성장이 혁신보다는 규제차익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문제 발생 시 피해구제 등의 소비자보호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숙박공유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³⁾
 - 숙박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미국사례를 통해 보험산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공유경제의 확립된 정의는 없음. 공유경제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용어에는 “collaborative economy”, “peer-production economy”, “access economy”, “on-demand economy”, “peer-to-peer economy” 등이 있음

2) 공유경제의 개념 및 일반적 논의는 다음 문헌에서 인용함; 김민정(2017),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Focus』, 통권 제83호, pp. 1~8

3) 조선비즈(2018. 1. 6), “에어비앤비처럼...내·외국인 손님 다 받게 공유민박업 열어준다”

2. 국내현황



가. 민박업 관련 제도

■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는 국내 법규상의 분류로는 민박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음

●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민박업에는 농어촌 민박사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음

■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⁴⁾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⁵⁾

●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 규모 및 시설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⁶⁾ 충족해야 하는데, 사업 규모의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⁷⁾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이 없음

● 기본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 2012년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을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박업의 허용 지역을 농어촌에서 도시로 확대하였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⁸⁾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함⁹⁾

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의미함)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목

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7) 하나의 대지에 있는 건물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함. 예를 들어, 화장실이 분리된 형태로 있을 경우 주택의 연면적 계산 시에 화장실의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함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해당됨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 민박을 제공하는 자의 등록 기준, 등록 기간, 등록 영업 범위 위반 등의 경우에는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¹⁰⁾

■ 최근 들어 에어비앤비가 인가를 얻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24만 명 가운데 51만 명이 국내 에어비앤비를 이용함¹¹⁾
- 2016년 10월 21일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2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음
- 두 개정안 모두 주요 내용은 유사한데, 도시지역에서의 민박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 까지 확대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 이내로 한정하고,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함
 - 민박업자가 연간 영업일수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초과하여 영업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내 숙박공유 전문 서비스 플랫폼

■ 해외의 에어비앤비에 해당되는 국내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는 코자자(Kozaza)가 있음

- 코자자는 한옥이라고 하는 전통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글로벌 사업자인 에어비앤비와 차별화를 시도하였음
- 해외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미국의 숙박정보 사이트 트립핑(Triping)과 제휴를 맺고 코자자의 모든 숙소를 트립핑에 등록하였음¹²⁾
 - 또한, 중국판 에어비앤비 ‘투지아’와 제휴를 맺고 중국 여행객을 국내 숙박과 연결하는 전략을 시도하였음¹³⁾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 3

11) 조선비즈(2017. 6. 5), “에어비앤비, 2016년 외국인 관광객 중 51만 명 이용, 내국인을 합치면 101만 명, 국내 경영성과 첫 발표”

12) 조선비즈(2015. 9. 17), “코자자, 미국 숙박정보 사이트 트립핑과 제휴”

13) 전자신문(2016. 9. 18), “코자자, 중국판 에어비앤비 ‘투지아’와 맞손, 요우커 잡기에 나서”

3. 해외사례



가. 보험 관련 이슈: 보장공백(Coverage Gap)

- 숙박공유를 비롯한 공유경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가게로 보아야 할지, 기업으로 보아야 할지의 모호함인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장공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가게성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숙박 서비스 제공 중에 재산피해나 기타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숙박 영업행위는 낯선 사람의 관여로 인해 가게의 일반적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게성 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보장공백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플랫폼 사업자, 보험산업의 대응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¹⁴⁾

나. 규제당국의 대응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공유경제하에서의 보장공백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권고를 위해 2014년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였음
 - 승차공유와 숙박공유 중심으로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2016년에 숙박공유 관련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음¹⁵⁾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집주인과 고객에게 숙박공유와 관련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일부 주에서는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었음
 - 매사추세츠주의 경우에는 집주인당 최저 보장한도가 5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음

14) Alexander B. Traum(2016), "Sharing Risk in the Sharing Economy: Insurance Regulation in the Age of Uber", *Cardozo Public Law, Policy and Ethics Journal*, Vol. 14, pp. 511~544

15) NAIC(2016), *Insurance Implications of Home-Sharing: Regulator Insights and Consumer Awareness*, White Paper

-
- 보험가입의 주체는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음
 - 한편,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사고 당 최저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 주택 당 최저 보장한도는 2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2015년 4월에 폐기됨
 -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의 문제에 대해 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숙박공유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어떠한 보험도 제공하지 않았음
- 그러나 보장공백 이슈가 제기되고, NAIC가 워킹 그룹을 조직하는 등 규제당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보상정책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하였음
- 에어비앤비가 제일 먼저 취한 정책은 숙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100만 달러 이내의 보상을 보증(guarantee)하는 것이었음
- 이 정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집주인이 에어비앤비에 사고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투숙객과의 분쟁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보상범위도 제한적이었는데, 현금, 증권, 애완동물, 개인배상책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보증정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 1월부터 플랫폼에 가입한 미국 내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통한 보장정책을 실시하였음¹⁶⁾
-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의 사고 당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 집주인당 연간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임

16) United Specialty Insurance Company가 인수하였음

- 다른 주의 경우에 사고 당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 총 보장한도는 1,000만 달러임
- 이러한 보장정책은 다른 국가의 집주인으로도 확대되었는데, 보장한도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함

■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보험의 경우 이전의 보증 정책보다는 집주인의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고객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소실한 경우 사고 당 보장한도인 100만 달러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
- 또한,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총 보장한도인 1,000만 달러로는 충분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라. 보험산업의 대응

■ 비록 에어비앤비가 보험을 통한 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험산업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음

- 기존 보험회사들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인슈어테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대표적인 사례는 Slice인데, 이 회사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단기(short term) 보험상품을 제공하였음¹⁷⁾

- 예를 들어, 이틀 동안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이틀 동안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음
- 재산피해나 배상책임 관련 보장한도가 200만 달러인 경우, 하루 당 보험료는 4달러에서 7달러 정도임

■ 미국의 Slice 이외에 숙박공유 관련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로는 영국의 BelongSafe, GuardHog, SafeShare, 호주의 ShareCover 등이 있음¹⁸⁾

17) Forbes(2016. 10. 5), "Slice Offers On-Demand Insurance to Cover Home Sharing Hell"

18) <http://sharetraveler.com/insurance-sharing-economy-services/>

4. 시사점



- 향후 내국인 대상 도시지역 민박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어 숙박공유가 활성화되면, 공유경제의 특성으로 인한 보장공백 이슈가 국내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규제당국과 보험산업 차원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우선, 규제당국의 경우에는 보장공백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숙박 서비스 공급업자 중 누구에게 보험 가입의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의무보장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보험산업 차원에서는 숙박공유경제하에서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단기 보험상품이 한 예가 될 수 있음 [kir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연구위원

요약

-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함
 -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재분류·체계화하여 판매행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쟁점은 ①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②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③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에 관한 것임
-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투자성 상품과 달리 다수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견해가 있음
 - 아울러 ‘적합’·‘적정’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판단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나, 분쟁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인 상황에서,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여서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큰 경우 특례의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적용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등 7개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을 연말까지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힘¹⁾
 - 2012년 7월 국회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 제출된 이래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제출되어 왔으나, 소비자 보호 수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된 금융감독체계 등에 관한 엇갈리는 견해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 총 5건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23일 국회 제출된 정부안에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금융감독기구와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내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규제차익 없이 금융회사에 대해 효율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국회에서 감독기구 개편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정부안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피해구제 제도를 중심으로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 정부, 학계 및 보험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피해구제제도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금융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1) 조선비즈(2018. 7. 25), “금융위가 국회에 요청한 7개 금융개혁 법안은…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긍정적” 참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0577.html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개요



가. 현 금융업권별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

■ 금융상품의 속성 및 판매채널 속성의 매트릭스 구조로 구분하여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함

- 금융상품의 속성을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재분류·체계화하여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제3조)²⁾
-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사, 금융회사 등)와 판매대리·중개업자(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카드·대출모집인 등) 및 자문업자(투자자문업자 등)로 재분류, 등록의무를 부과함(제4조, 제11조)³⁾

나.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수수료·보수에 대해 고지(제25조)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용이하게 함

■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제26조)하여 일반인들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

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행위 규제 및 제재 강화

■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⁴⁾, 설

2)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보장성 상품으로 분류됨

3) 기존의 금융회사와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간주됨

4)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 금지”로, 적정성 원칙을 “부적정한 상품에 대한 고지”로 지칭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타 입법례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보임. 양자 모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을 규정함(제16조 내지 제21조)

-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
-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위반 제외) 부과,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위법행위 해지권 부여(광고규제 제외) 등을 규정함

-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음(제54조)

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철회권이 부여됨(제51조)
- 광고규제를 제외한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일정기간⁵⁾ 내에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52조)

마.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분쟁조정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제45조),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함(제46조)
-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관련,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하고(제48조), 금융회사에게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과함(제49조)⁶⁾

5)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가 선임·감독 시 주의의무 이행 및 손해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함

3. 주요 쟁점



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관련

■ **현행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제정안은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예정⁸⁾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음**

- 두 원칙의 준수는 금융회사가 ① 금융소비자의 연령, 계약체결 목적은 물론 부채, 자산, 소득 등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② 이를 토대로 해당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두 단계로 구성됨
 - 적합성 원칙(Know-Your-Customer-Rule)은 본래 복잡다기한 금융투자상품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자본시장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변액보험에 한해 적합성 원칙이 도입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보험상품⁹⁾에도 폭 넓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¹⁰⁾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에 주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현재와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¹¹⁾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다수 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원본 손실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7)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적용

8) 제정안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⁷⁾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및 계약체결 목적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9) 이러한 견해는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은 물론, 연금상품 및 상품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0) 안수현(201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의 평가 및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pp. 13~15 참조

11) 전한덕(2017),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법률논총』, 제24권 제1호, pp. 434~436 참조

- 과도하게 많거나, 부적합한 보험가입은 설명의무 강화 또는 인수심사로 방지함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또한 우려됨
- 목적과 수단은 비례를 이루어야 하므로, 변액보험 외의 일반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 확대는 신증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탐색 문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기책임 원칙 등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 한편,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적합·적정’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법 위반이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제정안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¹²⁾

-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도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예컨대, 연령이 적은 사람이 거액의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적은 연령이 긍정적 판단 요소인지 부정적 판단 요소인지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의 효과로 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금지행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일반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더 모호해질 것이므로, 법령상 명확한 판단기준 제공이 필요함
- 위험전가라는 보험의 특성상, 어떠한 보장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는 주관적 위험회피 성향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3자가 재산상황 및 연령이라는 외적 조건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재산과 소득이 적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보장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음

12) 정무위원회(2017. 9),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나. 금융분쟁조정 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 관련

① 소송중지 제도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법원이 소송중지 여부를 일정 기한 내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¹³⁾

- 제정안은 법원의 소송중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절차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됨
- 유사입법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재정절차를 중지하게 되어 있음

②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이탈 금지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다수이나¹⁴⁾, 비록 한시적이지만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함¹⁵⁾

-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인 상황¹⁶⁾에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제기가 금지됨
-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개별 사건의 소가가 낮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은 클 수 있음
 -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소액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 인정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함¹⁷⁾

13) 위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pp. 76~77 참조

14) 김주영(201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의 평가 및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p. 42; 이형욱·맹수석(201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 연구』, 제6권 제1호, p. 223; 전한덕, 전계서, pp. 447~448 각 참조

15) 위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pp. 78~79 참조

16) 위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p. 79 참조

17) 상동

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대해 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소비자가 여전히 금융회사의 법 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평가¹⁸⁾가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②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한 남소 및 금융회사 응소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함
- 금융회사에게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과¹⁹⁾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와 유사하나,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내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화된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지휘감독관계도 없고, 보험회사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 이상의 규모와 손해배상능력을 갖추었음
 - 이들의 경우까지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임

라. 위법계약의 해지요구권 관련

- 적합성 원칙 등 판매규제 위반 시 5년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 없는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속적 거래에서 위법한 계약의 중도해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나, 위법계약의 범위가 넓고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²⁰⁾가 있음

18) 김주영, 위 발제문 p. 36 참조

19)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는 제외

20) 김주영, 위 발제문 pp. 39~40; 위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 pp. 103~105 각 참조

4. 결어



- 제정안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적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뜻 깊은 일로 평가되나, 주요 쟁점별로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상품별 특성 및 금융거래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금융감독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임 [kiri](#)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국내 상용화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 및 그간 국내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행 배상책임 법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관련 배상책임은 자배법에 따라 보유자가 부담하는 운행자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하는 운전자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으로 나뉘어짐
 - 피해자 구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임
 - 운행자책임은 운전 여부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임
-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는 레벨3의 과도기적 특성 및 일반차 사고와 구별되는 자율주행차 사고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함
 - 레벨3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완전자율주행차 전면상용화 이전까지는 여러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도로에 혼재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또한,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운전자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사고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원인 규명이 중요해질 것임
-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로 (i) 현행법제 적용 방안(1안), (ii) 제작사 무과실책임 방안(2안), (iii) 보유자·제작사 공동무과실책임 방안(3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구제 관점에서 볼 때 1안이 가장 타당함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도 일반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위 3가지 방안은 각각 이론적, 현실적 근거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분하여 피해자 구제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역행하므로, 현행 법제를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레벨4 이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는 인공지능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레벨3 자율주행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과는 달리 운행 중 인간과 시스템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완전자율주행보다 더 복잡한 배상책임 문제를 야기함

-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및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표 1〉 자율주행 단계

구분	정의	특성
레벨0	비자동화 (No Automation)	자율주행기능이 없어 사람이 차량 주행의 전 과정에서 운전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단계
레벨1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사람이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조향장치 및 가속·감속장치 제어 등 운전지원기술이 장착된 단계
레벨2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사람이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조향장치 및 가속·감속장치 제어 등 복합적 운전지원기술이 장착된 단계
레벨3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특정한 조건하에서 운전자가 시스템에 차량 제어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운전자는 항상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여야 함
레벨4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일반적 도로환경에서 주행의 전 과정을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할 수 있는 단계
레벨5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모든 환경에서 제한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주행이 가능한 단계

자료: Vision for Safety 2.0 및 SAE International Standard J3016

-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Conditional Automation)이라 하며, 완전자율주행단계 이전의 과도기적 기술로서 자율주행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제어권 전환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 고유의 특성이 있음
 - 레벨4 및 레벨5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운전의 전 과정을 담당할 수 있으나, 레벨3는 운전의 전 과정 중 일부만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모드에서도 운전자는 운전 가능한 상태로 항상 대기하여야 함
- 또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일반차와 자율주행차가 상당기간 도로에서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개입된 교통사고 유형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주(州)정부고속도로안전협회(GHSA: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는 향후 최소 30년간 일반차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혼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¹⁾

■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평 타당하게 책임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일반차 중심의 기존 자동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를 재검토하고 있음²⁾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민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³⁾ 이러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 법제 관련 종합적 점검 및 제도 개선 방향 논의가 필요함

2. 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법제의 구조



■ 자동차 사고 관련 배상책임은 크게 (i)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ii) 자동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하 ‘운전자책임’)으로 구성되며, (iii)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작사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됨

-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은 자동차보험제도와 결합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 구제의 주된 기

1) James Hedlund(2017), “Autonomous Vehicles Meet Human Drivers: Traffic Safety Issues for States”, GHSA, (<https://www.ghsa.org/resources/spotlight-av17>)

2) 주요국의 배상책임법제 검토에 관한 논의는 함께 발간되는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참고

3) 자율주행차 배상책임법제 관련 국내 선도적 연구는, ① 권영준·이소은(2016. 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호임. 이후 자율주행차 사고 민사책임에 관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논문으로는 ② 이기형·김혜란(2016),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③ 김진우(2017), 「자율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의 입법 방향」, 『강원법학』 제51권 등이 있음. 한편, 정부 발주 용역보고서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로는, ① 김성천(2016), 『신기술과 소비자법제연구 I-자율주행자동차』, 한국 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②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③ 박준환(201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④ 정진명·이상용(2017),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등이 있음

능을 담당하고 있고, 운전자책임과 제조물책임도 피해자 구제의 보충적 기능 및 공평한 사고책임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운행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운행지배’) 운행을 통한 이익(‘운행이익’)을 얻는 자인 보유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임

- **자배법 제3조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제3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운행자책임’이라 함
-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운전행위를 담당하는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 ‘운행지배’란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물리적·직접적 지배는 물론 관념적 지배도 포함하며, 적법한 지배 및 불법적인 지배⁵⁾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운행이익’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의미하며, 직접적·경제적 이익 및 간접적·정신적 이익을 포괄함
 -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⁶⁾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운행자가 됨
- **운행자는 직접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나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당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의미에서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운행자는 실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⁷⁾에게 구상을 청구함으로써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음

4)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5) 예를 들어, 절도범이 타인 소유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중단되고, 절도범이 운행지배를 가지게 됨
- 6) ‘보유자’는 소유자 및 기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함(자배법 제2조 제3호)
- 7)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 운전자(운행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운전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운전자책임’ 체계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일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운전자책임은 운전자가 운전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책임으로, 운전자의 고의·과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함**

- 자배법은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
 - 운전자가 고의·과실로 운전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책임이 인정됨
 -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운전자책임과 구별되나, 실제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차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책임이 인정됨

■ **제조물책임은 자동차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 및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 존재를 요건으로 함**

-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⁸⁾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음⁹⁾
- 최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 입증책임이 완화되고¹⁰⁾ 제작사가 결함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함에 따라¹¹⁾ 향후 제조물책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8)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급발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하여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9) 하급심 판결 중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 베어링 결함으로 인해 생긴 용착 현상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45898 판결)

10)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11)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레벨3 자율주행사고 및 배상책임의 특성



■ 레벨3는 과도기적 기술로 인간 운전자가 상당부분 운전に関여할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운전 작업이 완전히 시스템에 이전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및 해법이 필요함

- 운전의 전 과정을 시스템이 담당하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과 달리, 레벨3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차량제어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항상 운전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여야 함
- 또한 날씨, 도로, 통신 등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¹²⁾ ODD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하며,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던 중에 ODD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제어권을 회수하여야 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벨3 자율주행차가 개입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이 자율주행모드였는지 수동모드였는지, 시스템의 제어권 회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고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됨
 - 자율주행차가 ODD 상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하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자율주행차 특유의 사고책임 문제가 발생하나, 그 밖의 경우, 즉 수동모드, 제어권 전환 과정, 또는 ODD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가 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차 사고와 동일함
- 이러한 특성은 레벨3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되면 해소될 것이나, 향후 상당기간 다양한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되어 도로에서 운행될 것이므로, 과도기적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임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12) NHTSA의 자율주행 관련 가이드라인인 Vision for Safety 2.0은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의 안전 조건(ADS Safety Element)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ODD를 문서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즉, ADS가 작동 가능한 환경을 도로조건, 지역범위, 제한속도, 날씨·일몰 여부 등 환경 조건, 기타 제한사유로 나누어 열거하도록 함

■ 자율주행사고는 (i) 운전자책임의 부존재, (ii) 제조물책임의 확대 (iii)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라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차가 정상적으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는 중에는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고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차량제어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어 운전자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
 - 독일도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운전자책임 부존재로 인한 피해 보상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보유자책임의 최대 보상액을 일반차 보유자책임의 최대보상액(5백만 유로)의 2배인 1천만 유로로 정하였음(StVG §12)
 - 다만 운전자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당해 차량이 자율주행모드였는지, ODD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운전자가 제어권 회수 대기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일반차 사고의 경우 제작사는 차량 하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나,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제작사는 차량 하자는 물론 자율주행시스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동차사고에 대해 제작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확대될 것임
 -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할 뿐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장치들을 장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 및 장치의 하자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이 귀속됨
 -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책임 확대는 기존에 인간이 담당하던 운전행위를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하게 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 과실, 시스템 결함, 차량 장치 결함, 통신 및 도로상 결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이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 및 사고발생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
 -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나 관련 장치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로, 통신 등 외부 환경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또는 운전자나 보유자가 자율주행관련 조건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¹³⁾ 등이 규명되어야 함¹⁴⁾

13) 예컨대, 운전자는 ODD 상태에서만 자율주행모드를 실행하여야 하는데 ODD 상태가 아님에도 자율주행을 실행한 경우,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에서도 항상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여야 하는데 음주상태로 탑승하거나 운행 중 수면을 취한 경우 등

14) 사고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함께 발간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방안 제안” 참고

- 이상과 같은 레벨3의 과도기적 성격 및 자율주행사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책임 법제 변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자율주행사고 관련 자배법상 책임법제 변화 방향



가. 책임법제 검토의 전제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는 (i)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ii) 자동차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iii)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중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하여야 함
 - 자동차사고에 대해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이 제정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자율주행사고 피해자가 일반차 사고 피해자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되고, 반대로 자율주행사고 피해자를 일반차 사고 피해자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도 부적절함
 - 자율주행사고 피해자와 일반차 사고 피해자가 동일한 절차에 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법제를 마련하여야 함
 -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므로,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
 - 자율주행차 보유자도 일반차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법률적 분쟁의 장기화로 피해자가 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보험에 의해 우선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 유무에 대한 다툼은 사후 정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 자율주행차 기술은 향후 완전자율주행차가 도입될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기술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음
 -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도로교통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법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이성과 같은 점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현행 자동차 사고 책임법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할지를 검토하고자 함

나. 운행자책임 변화 방향

- 자배법상 보유자가 부담하는 운행자책임의 근거는 ‘운전행위’가 아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므로, ‘운전행위’를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음
 -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비록 자율주행사고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나, 자동차로 인한 피해는 자신을 위해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운행자책임의 원리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함
- 자율주행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자배법상 책임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법리적 측면은 물론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현행 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완전자율주행차가 전면 상용화되어 시스템이 운전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인간이 운전행위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책임법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수 있음
 - 자율주행차 소유자는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선택권이 있으나 일단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관리·통제할 수 없는 반면,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관리·통제할 수 있음
 - 이같은 시스템 관리·통제의 측면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시대에는 제작사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사고 배상책임 법제의 영역, 즉 자배법상의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기존 책임법제에 변화가 필요하게 됨
 - 자율주행시대의 배상책임 법제로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제작사 책임 강화의 정도에 따라 3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1안(현행법제 적용방안)은 자율주행시대에도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법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보유자

- 의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사고 원인이 자율주행차 시스템이나 장치 하자로 밝혀지면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임
- 제2안(제작사 무과실책임 방안)은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배법상 운행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제작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방안임
 - 제3안(보유자·제작사 공동 무과실책임 방안)은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제작사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운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임

〈표 2〉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 방안의 내용, 근거 및 장단점

구분	제1안: 현행법제 적용 방안	제2안: 제작사 무과실책임 방안	제3안: 공동 무과실책임 방안
내용	- 보유자: 운행자책임 - 제작사: 제조물책임 - 운전자: 운전자책임(예외적)	- 제작사: 운행자책임 (일반차 사고는 보유자 책임) - 운전자: 운전자책임(예외적)	- 제작사·보유자: 공동운행자책임 (일반차 사고는 보유자 책임) - 운전자: 운전자책임(예외적)
근거	- 운행자책임은 운전여부와 무관 - 기사 고용 일반차 운행과 동일	- 시스템 통제·관리가 가능한 제작사 책임 강화 필요	- 공동책임이 형평에 부합 (보유자: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 제작사: 시스템 통제·관리)
장점	- 현행 법제도 및 보험제도 유지 - 안정성 및 효율성 - 신속한 피해자 구제 - 주요국의 제도변화 방향과 부합	- 기술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피해자 보호 강화
단점	- 자율차 구매자의 인식과 불일치	- 기존 운행자책임 체계와 상충 - 법체계 변경의 근거 부족 -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저해 -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 기존 운행자책임 체계와 상충 - 법체계 변경의 근거 부족 - 일반차 사고 피해자와 차등보호 - 보험제도 운영상 혼란·비효율

자료: 황현아(2017. 11. 2),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 위 3가지 방안은 각각 이론적,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방안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나,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에는 제1안을 채택하여 현행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는 과도기 중에서도 매우 초기에 해당하고, 향후 수십 년 간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되어 운행될 것인데,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분하여 피해자 구제 방법을 이원화할 경우 피해자 구제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즉, 가해 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여부 및 그 차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절차와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될 것임

- 예를 들어, X차량이 보행자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A 입장에서는 X 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여부 및 사고 당시 자율주행모드 실행 중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만약 사고 당시 X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차량 소유자 B가 A에게 '이 차는 자율주행차이고,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A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 향후 완전자율주행차가 전면 상용화되어 전체 차량 대수 대비 완전자율주행차 대수 비율이 높아 지게 되면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확대는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배법은 물론 일반 불법행위법 체계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망에만 근거하여 레벨4 및 레벨5 단계의 제도 변화 방향을 제안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은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 제도에 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면서 구체화될 것임
- 주요국들도 레벨3 내지 레벨4 초기 단계를 전제로 배상책임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법제도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¹⁵⁾

5. 결론 및 향후과제



■ 레벨3 상용화 초기 단계인 2020년에는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 효율적인 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기존의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미국 NHTSA는 매년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되 시행 후 2년 뒤인 2019년 법률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며(StVG §1c), 영국 교통부도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에 관해 단일보험자모델을 채택하기로 하되 이 제도를 향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고 있음. 최근 자율주행차 배상책임 법제 방향을 발표한 일본도 이번에 발표한 방향은 레벨 3 및 레벨4 초기단계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밝히며, 향후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 자율주행차 장치나 시스템의 하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부당하게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자율주행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 및 그로 인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ri](#)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 **현행 자배법상 운전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용될 경우,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산출 시에는 운전자의 특성 외에 차량별 특성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 형태 등이 일반차와 큰 차이가 없어 소유 구분과 용도 구분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종목과 담보종목도 현행과 동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료 산출 시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차량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차량모델별 요율이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는 모든 담보종목에 차량모델별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제3자가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현행 자동차사고와는 원인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킹이 소프트웨어 결함처럼 제작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자동차사고의 손해는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상되어야 함
 - 소유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게을리하는 등 소유자의 과실로 해킹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의 손해 및 배상책임은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어야 함
- **제작사나 소유자가 해킹방지를 위해 통상적인 노력을 하여 그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현행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도난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보는데, 소유자나 제작사에 책임이 없는 해킹에 의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도난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할 수 있음
 - 소유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없음

1. 검토배경



- 일반차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은 필요함
 - 현재 자동차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임
 - 운전자 과실, 자동차 결함, 차량 및 도로의 관리상 결함 등 사고 원인은 비교적 단순하며, 이 중에서 대부분을 운전자의 과실이 차지함
 -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자율주행 장치 및 시스템 결함, 통신 결함, 정보의 오류, 해킹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방식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그러나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는 운전자의 수동주행이 여전히 교통사고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차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혼재하여 운행하게 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의 요율제도는 현행 요율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
 - 레벨3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할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으므로, 새로운 자동차보험과 현재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운전자의 특성과 자동차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현행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새로운 사고 원인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고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적합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2.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 개요



■ 자동차보험은 보험종목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등으로 구분하고, 담보종목에는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음

- 자동차보험은 보험종목에 따라 개인용자동차, 업무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농기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음¹⁾
 - 개인용자동차는 개인소유의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업무용자동차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함²⁾
 - 영업용자동차는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말함
- 담보종목은 크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구분할 수 있음³⁾
 - 배상책임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과 보험계약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배상 II 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음⁴⁾
 -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함
 -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나 피보험자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 상대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보상함

1) 자율주행차는 이륜차와 농기계를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등 개인용·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차량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본고에서는 개인용자동차, 업무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살펴봄

2) 자동차의 용도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관용)과 사업용(영업용)으로 구분함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참조

4) 자배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한 대물배상에 가입할 수 있음

〈표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구분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배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종 및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에 운전자와 자동차의 위험요소 및 특약에 의해 증감되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함

- 자동차보험료에는 피보험 운전자 및 피보험 단체의 사고 경력을 반영한 할인·할증 등급이 적용됨
 - 가장 위험한 등급인 1Z부터 가장 안전한 등급인 29P로 세분화하고 있음
- 피보험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특성요율이 적용됨
 - 보험가입 경과기간을 반영한 보험가입경력요율, 과거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반영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있음
- 안전장비(에어백, ABS, 도난방지장치, 자동변속기 등) 장착 자동차, 스포츠형 자동차 및 긴급출동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할증의 특별요율이 있으며, 과거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사고건수요율(Number of Claim Rate)이 있음
- 이 외에 1인 한정특약, 부부 한정특약, 가족 한정특약과 같은 운전자 한정특약,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는 연령 한정특약 및 주행거리연동 특약 등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
-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추가적으로 차량모델 등급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차량을 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모델별로 요율을 산출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음

3.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보험제도 개선 방안



■ ■ 현행 자배법상 운전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용될 경우,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행태 등이 일반차와 큰 차이가 없어 소유 구분과 용도 구분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종목과 담보종목도 현행과 동일할 것으로 보임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는 현행 보험종목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도 동일할 것임
 -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되는 현행 담보 종목도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
- 향후 자율주행차 활용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에서 보장이 가능함
 - 제작사나 제3자가 자율주행차를 공유차량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자동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율주행차는 영업용자동차의 대여자동차와 유사함
 - 공유경제가 확대되어 P2P 공유차량이 보급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또는 일반자동차보험의 개인용(또는 업무용)자동차 상품에 공유차량과 비공유차량이라는 용도 구분이 가능할 것임
- 다만 해킹으로 인한 프로그램 조작, 외부 신호 조작 및 통신의 장애 발생이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차 사고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고이므로,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임

■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소 외에도 차량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요율특성은 변화할 것이

며, 일반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차량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레벨3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수동주행 모드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모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운전자 특성에 따른 요율의 종류는 일반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요율 종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는 할인·할증 등급,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사고건수요율, 특약요율 등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요율이 현행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차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되어야 할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자동차보험과 달리 모든 담보종목에서 차량모델별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에 한해서 사고 시 차량모델별 손상성 및 수리비 특성을 반영한 차량모델별 등급요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모델별 특성이 사고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임

-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자율운행 시에는 차량모델별 특성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담보종목에 차량모델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4. 해킹에 따른 사고 보상 방안



■ 자율주행차 관련 해킹사고는 사고의 종류 측면에서는 ①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② 자율주행차 운전 통제권 침해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책임소재 측면에서는 ① 소유자가 해킹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② 제작사가 해킹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및 ③ 소유자 및 제작사의 통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⁵⁾

-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로 인해 소유자가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본 경우인데,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니며 자율주행차 제작사나 소유자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
-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운전 통제권 침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① 제작사가 해킹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② 소유자가 해킹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및 ③ 해킹방지 책임이 있는 자들의 통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제작사의 과실(해킹방지 프로그램의 오류 등)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⁶⁾
 - 소유자의 관리소홀(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실행 등)로 인한 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음
 -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충분한 예방 및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으므로 별도의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해킹이 자동차사고의 원인인 경우, 소유자의 피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음

- 해킹은 일반차 운행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에만 고려되는 사고 원인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는 소유자의 책임이 있는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의 배상책임은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차량 파손)를 입은 경우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함
 - 각 담보종목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에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하는 방안과 담보종목별로 해킹사고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방

5) 해킹방지 노력의 책임은 소유자와 제작사에게 있으나 해킹의 주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나 제작사의 해킹방지 노력이나 손해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킹의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본고에서는 해킹의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소유자나 제작사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함

6)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제작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제작사의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을 통한 보장을 검토해볼 수 있음

안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비해서 피해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예상되는 손해 분포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해킹사고담보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고통계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별도의 “해킹사고담보특약”을 부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해킹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한 “해킹사고담보특약”은 의무화되어야 함
- 제작사나 소유자가 해킹방지를 위해 통상적인 노력을 하여 그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①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자기 손해를 보장하는 방안과 ② 피해자의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자기 손해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다르지 않음
 -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도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소유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장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도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소유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함
 - 해킹발생에 제작사나 소유자의 책임이 없어 제작사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자배법 제 30조는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음
 - 제작사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킹으로 인한 자동차사고도 도난 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해킹은 자동차사고의 새로운 원인으로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빈도 및 심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정부보장사업의 기금 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5. 결론 및 향후 과제



■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사고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체계를 유지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담보종목 등의 보험상품 및 보험료 산출을 위한 요율제도에서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차 운행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보장의 범위 및 요율제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할 만큼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그러나 해킹 등과 같은 새로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손해 복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배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명백하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⁷⁾
 -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엄격히 규명하여 보험회사가 사고의 책임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kiri](#)

7) 자배법 제3조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방안 제언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 강화, 사고책임 배분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 자율주행차사고 피해자 보호, 즉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자배법의 운행자책임 법리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운행자책임 법리를 유지하면서 제작사책임 확대를 통한 사고책임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절차로는 구상제도가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를 완료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제작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제작사에게 구상을 하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구상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가 객관적,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자동차사고의 원인규명 체계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움
 -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의 물적증거에 의존하여 운전자의 과실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현행 사고규명 체계로는 자율주행차의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의 정보처리,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고조사 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차 내부의 전자적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정보 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차 사고당사자간 구상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의 정보를 피해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치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고가해자(보험회사)와 피해자(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신력 있는 사고조사기구(가칭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고조사기구에서 분석한 정보는 민간(보험회사 및 제작사)에게 제공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사고책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제정 목적이 “피해자보호”¹⁾이며,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법률에 “운행자책임” 법리가 적용되었음
-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자동차와 같은 “운행자책임” 법리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함
-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운전장치 등의 오작동도 주요 사고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을 통해 “운행자책임” 법리의 보완이 필요함

■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사고원인 제공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자율주행차 소유자,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보급, 활용이 확산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레벨3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운전자, 자동차제작사 등(자동차제조업자, 소프트웨어 공급업자, 도로정보 제공자 등)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반자동차와 다름

■ 자율주행차는 상황 파악 센서(라이더, 적외선 카메라 등)의 정보, 외부(도로, V2X 등)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등을 내부 운전시스템에서 처리하여 스스로 운전하는 차이므로, 내부 운전시스템 등의 오류로 발생한 사고를 일반자동차처럼 사고 현장 증거만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함

- 일반자동차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사고 외부 증거(예: 스키드 마크, 도로상태, 자동차 파손부위 등)에 근거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파악할 수 있음
-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 자율주행차 내부 시스템의 오작동이 사고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내부 시스템 오작동은 사고 외부증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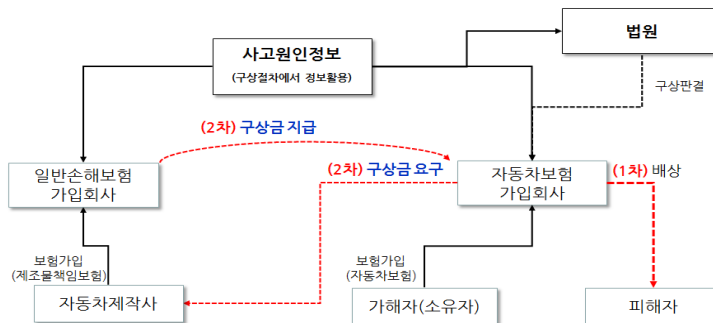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주행차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사고원인 제공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해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사고원인 조사 후 사고발생 원인 제공자가 제작사 등이라고 하면 자율주행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제작사 등에게 피해자 치료비 등을 쉽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함
-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이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규명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가해자(운행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1차로 배상 또는 치료를 해주고, 사고원인이 자율주행차 운행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자동차)보험회사는 제작사 등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구상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자동차)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림 1〉 법률절차(구상)에서 사고원인 정보 활용



3. 현행 사고원인 규명제도 적정성



가. 현행 사고원인 규명방법

- 자동차사고 원인조사의 목적 중 경제적인 부분, 즉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당사자 간의 경제적 손실 배분을 위한 사고조사는 현재 경찰과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짐
 - 경찰 조사는 사고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인명이 사상된 사고이거나, 피해규모가 큰 경우에 사고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짐
 - 보험회사 조사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물적 사고 등 경미한 사고이므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험처리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출동 조사를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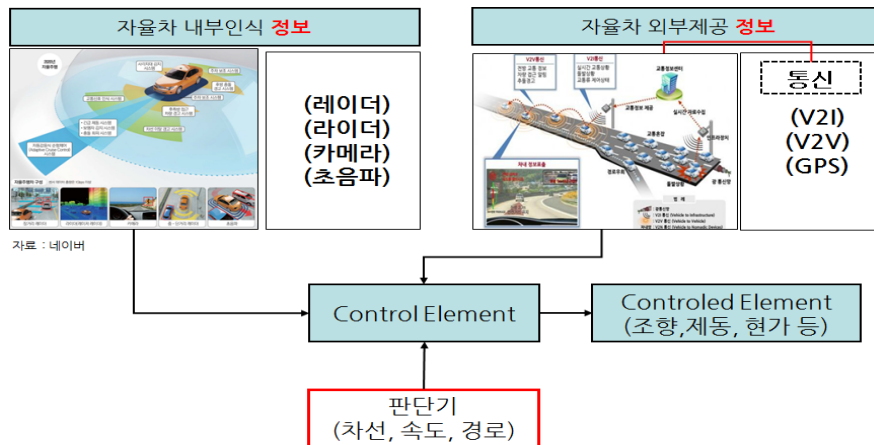
나. 현행 사고원인 규명방법의 적정성

- 레벨3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부에 장착된 각종 센서(카메라, 레이더, V2X통신 등)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기²⁾에서 처리하여 차가 스스로 운전(작동)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단계의 차임
 - 자율주행차를 사람이 수동조작으로 운전하는 것은 현재의 일반차와 동일하며,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은 외부정보인식, 내부정보인식, 통신망, 판단시스템, 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짐
 - (외부정보인식) 자율주행차는 라이더(LIDAR), 레이더(RADAR), 영상장치(Vision), 초음파장치(Ultrasonic) 등의 조합으로 차량 주변상태 및 전후방 원거리를 모니터링 함
 - (내부정보인식)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운전 관련 기계장치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인식함
 - (통신망) 통신망은 외부 정보가 자율주행차로 전달되는 전파 구축 체계를 의미하며, 통신회사의 통신망, V2X(V2V, V2I, IVN, V2P 등) 관련 통신 체계를 포함함
 - (판단) 수집된 정보는 내부 ECU들 사이의 통신망인 CAN을 통해서 이동되고, 자율주

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기록되어 있는 전자칩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는 상황별 운전방법이 코딩되어 있는 경우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행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기계장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판단함
- (제어) 자율주행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동력전달장치(Power Transmission System), 현가장치(Suspension), 조향장치(Handle) 및 제동장치(Brake) 등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차량의 움직임을 조절함

〈그림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 개념도



- 레벨3 자율주행차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내부센서로 들어온 정보가 적정한지, 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없는지, 판단기가 제어장치에 적정하게 명령을 내렸는지 등이 종합적, 전문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 그런데 현행 사고조사 방법에서는 사고현장에 나타난 외부증거 자료만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하므로 자율주행차 내부의 전자적 원인에 근거한 사고의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음
 - 자율주행차시대에도 현 사고원인 규명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내부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액이 사고당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되기 어려워 이해당사자 사이에 불만이 고조될 개연성이 큼
 - 보험회사가 공신력을 가진 경찰의 사고조사결과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렵고, 경찰이 전체 자동차 사고 중에서 신고된 일부 사고만 조사하는 현 사고조사절차에서는 보험회사가 구상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모든 자율주행차사고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내부 또는 외부에 집적되는 사고원인과 관련된 전자정보 및 사고현장 증거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사고원인 및 사고원인 제공자의 규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자율주행차 시대에 부합한 사고원인 규명체계 제안



가.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대상

- 레벨3 자율주행차의 사고원인은 “운전자부주의(과실)”, “노후화로 인한 전자장비의 기계적 결함”, “판단기의 소프트웨어 결함”, “운전코딩의 오류”, “운전논리의 모순”, “해킹”, “도로정보오류”, “통신정보오류”, “천재지변”, “도로결함”, “GPS교란” 등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중에서 전자장비 관련 오류 이외의 “운전자부주의”, “천재지변”, “도로결함” 등은 현행 일반자동차의 경우와 동일함
- 그러나 전자장비 등과 관련한 오류들은 자율주행차 고유의 사고원인이며, 현행 사고조사 체계로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표 1〉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의 종류

1) 정보왜곡	2) 인지장치 오작동
• GPS정보 • 차간 정보 • 도로 정보 • 자율자동차 인식정보	• 카메라, 라이다, 적외선 장치 등 • 정밀지도 인지 장치 • V2X 장치
3) 판단 시스템 오류	4) 제어장치 오작동
• 판단 소프트웨어 • 판단 기계장치 • 판단 논리 • 판단코딩(버그 등)	• 조향장치 • 동력장치 • 제동장치 • 기타 자동차 차체 관련 장치
-	5) 기타 원인
	• 자연재해 등 • 운전자부주의(과실)

나. 자율주행차 운행정보(또는 사고정보)기록 및 보관 의무화

- 자율주행차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사고정보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의 기록 내용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인식 및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이 핵심이 될 것임
 - 자율주행차의 인식과정, 판단과정, 제어과정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인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제어장치에 운전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구조로 작동하고, 인식-판단-제어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곧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제작·판매 시에 자율주행 사고정보 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정보 기록장치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독일 도로교통법과 같이 법령에서 자율주행 정보 기록 및 보관장치의 주요 기능과 기록 및 보관 대상이 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을 정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독일은 최근 개정한 도로교통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i) 제어권 전환이 있는 경우 그 시간 및 장소, (ii) 시스템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 그 요청 사실, (iii) 기술적 장애 발생 시 그 장애 발생 사실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 및 저장하도록 하였음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와 시스템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일어날 때 인공위성 네비게이션시스템을 통해 그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저장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시스템으로부터 제어권 인수를 요구받거나 기술적 장애(Technical Failure)가 발생한 사실도 저장되어야 함(StVG §63a(1))
 - 미국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운행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 NHTSA의 Vision for Safety 2.0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관련 12가지 안전 설계 요소(Safety Design Elements) 중 하나로 Data Recording을 포함시키고 있음

-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기술 데이터 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ATDR')³⁾ 장착을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위한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음

다. 자율주행사고정보 공개범위

■ 수사기관은 물론 제3자도 당해 자율주행차가 관련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므로 운전자나 소유자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조사만으로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움
- 따라서,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대체·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사고정보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부여하여야 할 것임
 -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압수영장이나 소송상 제출 명령 절차와 같은 일반적인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는 원활한 사고조사에 장애가 될 것임
- 한편,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의 정보제공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 시에도 정보 활용이 가능함

■ 독일의 경우에 당해 자율주행자동차가 관련되어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StVG 63a(3))

-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는 사고관계자에 한하며, 운전자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도 제3자에 해당함
- 비식별처리된 데이터는 사고 조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StVG 63a(5))

3) ATDR이란, 자율주행 기술 센서들의 상태 및 작동을 기록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를 의미함

라. 자율주행사고 조사기구 설립

- 자율주행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서 사고정보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 분석 등 전문적인 분석 과정이 필요함
 - 예컨대 최근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우버 사고의 경우, 우버 자율주행차의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 인식장치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인식하였음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제동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시스템이 제동명령을 내렸음에도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 과정이 필요하였음
-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전통적인 자동차사고 조사방법인 운전자 중심의 조사만으로는 자동차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자율주행차사고 조사를 위한 별도의 사고조사기구 설립을 통하여 자율주행차 시대에 부합한 사고원인 규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아직 낮은 점, 사고원인 조사가 공평한 사고책임배분의 핵심절차인 점등을 감안할 때 사고조사기구(가칭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됨.
 - 사고조사기구는 보험업계, 학계, 제작사, 공익단체,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사고조사기구에서 분석한 정보는 민간(보험회사 및 제작사)에 제공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사고책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결론



■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 강화, 사고책임배분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 자율주행사고 피해자 보호, 즉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자배법의 운행자책임 법리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제작사책임법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작사 파산에 따른 광범위한 자율주행차 무보험상태로 인한 혼란가능성, 보험료가 자율주행차 가격에 전가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가격경쟁력 상실, 해외의 운행자 책임제도와 국내 제작사책임제도 사이의 규제 차이에 따른 혼란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임

■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운행자책임 법리를 유지하면서 제작사책임의 확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절차로는 구상제도가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를 완료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제작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제작사에게 구상을 하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구상제도를 통해 제작사 등과 소유자의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가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사고원인 규명체계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움

-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의 물적증거에 의존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현행 조사체계는 자율주행차의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의 정보처리,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전자장치와 관련된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자율주행차에는 전자적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사고정보 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율주행차 사고당사자간 구상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의 정보를 피해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치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고가해자(보험회사)와 피해자(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객관적, 용이한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구조, 즉 공신력있는 사고조사기구(가칭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이 필요할 것임
- 사고조사기구에서 분석한 정보는 민간(보험회사 및 제작사)에게 제공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사고책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kir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 미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현행 불법 행위법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다만, 향후 제작사 상대의 대규모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에 구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 위 내용을 반영한 법안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2018년 7월 19일 확정됨
- 독일은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Halter)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공유를 의무화함
 -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유자 책임’은 일반 자동차사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한편,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사고책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을 의무화하고, 교통당국 및 사고 피해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본도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자배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運行供用者責任)을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2019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였음
- 이처럼 주요국들이 일반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현행 법 체계를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리적인 측면과 피해자 구제의 적합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임
 -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1. 검토배경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자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배상책임 법제에 대한 논의 및 제도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



- 미국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및 시험 주행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연방 의회 및 NHTSA 등 연방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NHTSA는 2016년 9월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등을 담은 자율협약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7년 9월 이를 업데이트 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하였음
 - 2016년 가이드라인¹⁾은 자율주행차 설계, 테스트 및 보급 실무를 위한 아웃라인으로, 자동차 제작사 및 공급자, 기타 관련자들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및 보급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하였음

1)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 2017년 가이드라인²⁾은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12가지 안전설계요소를 제시하고,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매년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2018년 3월 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교통약자의 접근권, 소비자교육, 배상책임 및 보험, 고용 문제,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³⁾
-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진행 중임
 - 하원은 NHTSA의 2016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자율주행차 관련 주정부 및 연방정부 권한 분장,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개정 제안,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약칭 “SELF DRIVE Act”)’를 발의하였음⁴⁾
 - 한편 상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인 ‘American Vision for Safer Transportation through Advancement of Revolutionary Technologies Act(약칭 “AV START Act”)’를 발의하였음⁵⁾
 - 다만,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연방법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⁶⁾

■ 자율주행차사고 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향후 완전자율주행시대의 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RAND Corporation⁷⁾의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 Guide for Policy makers’(이하 ‘Rand 보고서’)⁸⁾는 배상책임이나 보험 문제가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2) Automated Driving System 2.0: A Vision for Safety

3)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ublic Listening Summit on Automated Vehicle Policy-Summary Report

4)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계류되어 있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88/text\(2018. 7. 26\)](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88/text(2018. 7. 26))

5)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임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885/text\(2018. 7. 26\)](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885/text(2018. 7. 26))

6) CNBC 보도자료(2018. 6. 12), ‘Congress is trying to pass legislation to make self-driving cars safer. It doesn’t go far enough’

7) 미국의 민간연구소로 국방 및 행정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며, 정부 발주의 각종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8) Anderson, James M., Nidhi Kalra, Karlyn Stanley, Paul Sorensen, Constantine Samaras and Tobi A. Oluwatola(2016),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 Guide for Policymaker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RAND 보고서는, 미국의 현행 배상책임 법제가 자율주행시대에도 적용 가능하며,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려가 없는 반면 제작사의 책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의 적용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자율주행기술이 발전에 따라 배상책임 법제도 점차 정비될 것으로 보았음⁹⁾
-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i)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연방법 도입 방안, (ii) NHTSA가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제시하고, 제작사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iii)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노폴트 방식의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 (iv) 자율주행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¹⁰⁾ (v)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여,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차 대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더 높다면 제작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았음¹¹⁾
- RAND보고서에서는 주로 제작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제작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제작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자율주행기술 발전 및 상용화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위 보고서는,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에 의한 운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상용화가 가능하므로, 배상책임 문제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전통적인 불법행위 이론 및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음¹²⁾
- 한편, NHTSA가 2018년 3월 개최한 자율주행차 정책 관련 공청회에서도 자율주행차가 개입된 교통사고에 대해 현행 불법행위의 체계를 통해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음¹³⁾
- 위 공청회 참석자들은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되더라도 현행 법제 및 보험제도로써 대응이 가능하고, 다만 향후 보험의 체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자동차 중심으로 점차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9) RAND 보고서, pp. 132~134

10)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운전자책임과 유사한 구조임

11) RAND 보고서, pp. 142~146

12) RAND 보고서, pp. 145~146

13)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ublic Listening Summit on Automated Vehicle Policy", pp. 15~17

- 위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단계에는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의 배상책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보험도 자동차 소유자 중심의 현행 보험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3. 영국



-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사용자의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일보험자모델(Single Insurer Model)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영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목표를 (i) 자율주행차의 이용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제도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ii) 영국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이동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음¹⁴⁾
-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 정부는 당초 교통사고 관련 의무보험의 체계 내에 교통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제조물책임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을 병행하는 모델(Co-existence of product liability with the compulsory motor insurance framework)을 고려하였음¹⁵⁾
- 그러나 위와 같은 병행모델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제조물책임 법리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계는 자동차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고,¹⁶⁾ 자동차사고 의무보험의 영역에 제조물책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조

14) “Pathway to driverless cars: Consultation on proposals to support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Automated Vehicles Government Response”(2017)(이하 ‘Pathway to driverless cars 2017’), p. 10

15) “Pathway to driverless cars: Proposals to Support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2016), p. 17; “Pathway to driverless cars 2017”, p. 10

16) 영국 교통부가 실시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보험전문가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조물책임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배상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조물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임의보험이므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체계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제조물책임보험의 계약조건들은 도로교통 관련 원리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
- 제조물책임소송은 제조물의 구입 시를 기준으로 10년 동안만 제기할 수 있는데 비해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물책임 법리 자체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 제조물책임 법리 자체에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가 개입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자율주행모드 실행 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방안인 ‘단일보험자모델’을 채택함¹⁷⁾

■ 단일보험자모델이 채택됨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사고 발생시 일단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 사고 원인을 밝혀 제작사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을 통해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됨

- 영국 정부는 구상 과정에서 보험사와 제작사의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절차가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였음¹⁸⁾
- 구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제작사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상품 제공을 꺼릴 수 있어 보험회사의 구상절차에 불응하는 것은 제작사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결국, 최종 손실이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제작사가 및 다른 제3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¹⁹⁾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았음

■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을 반영한 법안인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AEVB)”이 2017년 발의되었으며, 2018년 7월 19일 법안이 확정됨²⁰⁾

- AEVB는 자율주행차가 원인을 제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였음²¹⁾

-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은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할 수 없음
-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Vunk 결정 취지(모든 자동차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임의보험인 제조물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적합하지 않음

17) “Pathway to driverless cars 2017”, p. 10

18) “Pathway to driverless cars 2017”, p. 11

19)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장치나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제작사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개발위험의 항변(State of the art defense)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20)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automatedandelectricvehicles.html>(2018. 7. 26) 위 법안은 현재 확정되었고, 확정된 법률의 명칭은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2018’임

21) AEVB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기형(2017. 3),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RI리포트』, 포커스 참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율주행차를 무단 개조한 경우나 정기적 업데이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제3자에 대해서는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후에 피보험자에게 해당금액의 구상을 청구하여야 함

4. 독일



■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이하 'StVG')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²²⁾

- 독일은 운전자가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Hoch-automatisierter Fahrfunktion)²³⁾ 또는 전면자율주행시스템(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²⁴⁾에 차량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음
 - 시스템이 차량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승객만이 존재하는 형태의 완전자율주행은 허용하지 않음
-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 관한 하위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독일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i)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 시 주의의무가 감면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반면, (ii) 보유자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사고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차량제어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 회복을 요청한 경우 및 운전자가 자율주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명백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어권을 회수

22) 참고로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자배법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도로교통법(StVG)에서 규정하고 있음

23)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모드를 실행할 경우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이 이를 알려주게 됨. SAE 기준 레벨 3단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2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전 과정을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임. SAE 기준 레벨 4단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하여야 함(StVG §1b)

- 따라서, 운전자는 제어권 회수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됨

- 독일 도로교통법은 우리나라 자배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Halter)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StVG §7),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 규정을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운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임

- 한편, 독일은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발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을 일반 차 사고의 보상액(5백만 유로)의 2배인 1천만 유로로 정하였음(StVG §12)

- 독일 도로교통법상 보유자의 배상책임은 일정 상한이 있는 반면 운전자의 배상책임에는 상한이 없는데,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어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유자의 보상한도를 2배로 인상한 것임

- 한편, 독일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관련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을 의무화하고, 정부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며, 제3자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StVG §63a)

- 개정법은 자율주행차 운전자와 시스템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일어날 때 인공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그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저장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시스템으로부터 제어권 회수를 요구받거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내용도 저장하도록 하였음(StVG §63a(1))

- 구체적으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를 저장할 필요는 없고, 사람과 자율주행시스템 가운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를 식별할 수 있으면 됨

-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책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주행상태였다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운전자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저장된 데이터는 주(州) 교통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며, 교통당국은 제공받은 정보를 보관 및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제어권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제한되어야 함(StVG §63a(2))

- 위와 같은 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제3자가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StVG §63a(3))

-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는 사고관계자에 한하고, 운전자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도 제3자에 해당함

- 이처럼, 독일은 우리나라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에 해당하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7조의 “보유자 책임”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유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 한편으로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접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및 사후 구상을 통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였음

5.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운전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를 조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걸쳐 자율주행사고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검토하였고, 동 연구회는 2018년 3월 연구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²⁵⁾

- 위 연구회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고,²⁶⁾ 최종적으로 현행 법 체계를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1안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음

- (1안) 자율주행사고일지라도 현행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공용자책임 체계²⁷⁾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되, 자율주행시스템 하자 등 제작사측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유자의 보험사가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25)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http://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26) 이하의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검토된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 관련 3가지 방안과 매우 유사함. 자세한 내용은 함께 발간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참고

27) 우리나라 자배법상 운행자책임과 동일함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2안) 기존의 운행자책임 체계를 유지하되,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자동차보험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
- (3안) 종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스템가동자 책임(たにシステム供用者責任)’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마련하여 제작사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

■ 일본은 2018년 3월 30일 아베 수상 주재 미래투자회의에서 레벨4 이하의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정책으로 1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음

- 다만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운행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대응하기로 함
-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고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종전의 자배법상 ‘타인’에 운전자까지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음
 - 운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는 제작사의 제조물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및 임의보험(자차, 자손)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2019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6. 시사점



■ 주요국들은 레벨3 및 레벨4 상용화 초기 단계에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적용되던 법체계 및 보험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자율주행기술의 발달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우리나라 자배법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자율주행사고가 비록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도 자동차 보유자가 그 사고에 대해 원칙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유자의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였음
- 영국도 자율주행사고와 일반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보유자의 보험으로 일단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주요국들이 이처럼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무과실책임 또는 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현행 책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체계가 피해자 구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2020년을 전후하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시작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되어 운행될 것이고, 자율주행차-자율주행차, 일반차-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보행자 등 자율주행차가 개입된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임
-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자율주행차라면 그것이 자율주행모드에서 운행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만약 자율주행모드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의 상대방이나 절차가 달라진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절차상 부담이 가중되어 신속한 구제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2020년 상용화될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와 시스템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스템이 운행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레벨4나 레벨5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자배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이러한 법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보유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독일 개정 도로교통법과 같이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사고기록에 대한 피해자 및 수사당국의 접근권 확보 등을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공평한 손해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kiri](#)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 노폴트보험(No-Fault)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하고 있음
 -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
 - 제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노폴트보험 제도의 목적임
-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지적됨
 -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자율주행시대에는 미국식 노폴트보험 또는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식 노폴트보험은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미국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자배법은 이미 자동차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가불금, 가지급금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은 큰 실익이 없음
-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는 그 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인적 손해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도 자동차등록세 및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며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자율주행시대에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자율주행시대의 자동차보험 문제는 노폴트보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 시 사고책임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1. 배경



-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보험(No-Fault)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자동차보험제도의 대안으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가 검토된 바 있으나¹⁾, 기존 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큰 괴리가 있고 실익이 크지 않아 도입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음²⁾
 - 최근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다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노폴트보험의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대에는 제도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³⁾
 - 국내에서도 기존 불법행위 책임 체계로는 자율주행사고 시 책임 귀속 및 배상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노폴트보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⁴⁾
- 본고에서는 노폴트보험의 특성과 주요국의 노폴트보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노폴트보험이 자율주행시대에 적합한 보험제도인지 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함

1) 2005년 당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노폴트보험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음; 한국경제(2005. 8. 9), '과실여부 상관없이 손해배상 "노폴트" 자동차보험 나온다'; 서울경제(2006. 3. 9), '자동차보험 "노폴트제" 도입 가능할까'

2) 이데일리(2006. 4. 20), '車보험 "노폴트제" 도입 물건너가나'

3) Anderson, James M., Nidhi Kalra, Karlyn Stanley, Paul Sorensen, Constantine Samaras and Tobi A. Oluwatola(2016),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 Guide for Policymakers", RAND Corporation(이하 RAND 2016), pp. 143~144; Anderson, James M., Paul Heaton, Stephen J. Coarrol(2010), "The U.S. Experience with No-Fault Automobile Insurance-A Retrospective", RAND Corporation(이하 RAND 2010), pp. 141~143 등

4) 박은경(2017. 12), 「보험계약상 사회 안전보장을 위한 약관확보방안-‘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 약관의 개발」,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학회, p. 29~56; 이기형·박혜란(2016. 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p. 76~77; 김영훈(2017. 6),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책임보험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8~91

2. 노폴트보험의 특성 및 운영 현황



■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인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 노폴트보험은 (i)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first-party insurance)⁵⁾을 통해 구제 받는다는 점, (ii) 보상 대상을 사망, 상해 등 인신손해로 한정한다는 점, (iii) 노폴트보험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⁶⁾
- 미국에서는 24개주가 노폴트보험(변형된 노폴트보험)을 도입하고 있고⁷⁾, 캐나다도 주별로 상이한 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⁸⁾, 뉴질랜드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순수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노폴트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의 정도, 가입 의무 여부 등에 따라 순수노폴트, 수정노폴트, 선택노폴트 및 추가노폴트로 구분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제한하는 순수노폴트(True no-fault 또는 Pure no-fault)는 현재 캐나다의 일부 주⁹⁾와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음¹⁰⁾
- 수정노폴트(Modified no-fault 또는 Conventional no-fault)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되,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monetary threshold), 또는 중·상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verbal threshold)에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임
- 선택노폴트(Choice no-fault)는 보험가입자에게 노폴트보험과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따른 책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5) 불법행위 체계를 전제로 한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을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노폴트보험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자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First-party Insurance)로 분류됨

6) RAND(2010), p. 14

7) RAND(2010), p. 41

8) 방새봄(2015. 12), 『노폴트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 36

9) 메니토바주, 퀘벡주

10) 미국의 경우, 순수노폴트를 도입한 주는 없고, 수정노폴트(10개 주), 선택노폴트(2개 주), 추가노폴트(12개 주)를 도입하고 있음(RAND 2010, p. 41)

- 추가노폴트(Add-on no-fault)는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따른 책임보험에 노폴트방식의 보험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무 추가 방식(mandatory add-on)과 임의 추가 방식(optional add-on)으로 구분됨¹¹⁾

■ 노폴트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도모하고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관련 소송으로 인한 각종 부담 및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제도의 효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존 불법행위 체계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구제의 공백, 보상 지연, 피해규모와 보상금의 불균형, 피해자 재활의 어려움,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유발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폴트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됨¹²⁾
- 이후 미국 다수의 주에서 노폴트보험을 도입하였는데, 남소 방지 효과 및 보험료 인하 효과 등 당초 기대하였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폴트보험을 도입한 주에서 각종 의료비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도 발견되었음
- 현재는 노폴트보험이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이며, 노폴트보험을 채택한 대부분의 주들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음
 - 현재 미국에서 순수노폴트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없고 수정노폴트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주도 10개에 불과하여, '제소권 제한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노폴트보험의 본래적 기능은 크게 축소된 상태임
 - 노폴트보험제도의 성공 사례로 대표되던 미시간주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노폴트보험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으며, 최근 디트로이트 시장이 노폴트보험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주 보험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음¹³⁾

11) 임의추가방식의 노폴트보험은 사실상 노폴트보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음(장덕조(2005), 「노폴트(No-Fault) 자동차보험의意義와 必要性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p. 233)

12) RAND(2010), pp. 39~40

13) "Detroit mayor files lawsuit against Michigan, seeks to stop no-fault auto insurance"(Insurance Business America 2018. 8. 27); 위 보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장은 '미시간주의 자동차보험제도는 (i) 인신사고에 대한 무제한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ii)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진료 수가(fee schedule for medical service)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iii)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헌법에 반한다(unconstitutional)'고 주장하였다고 함. 또한, 미시간주의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약 3천 달러 정도로 미국 전체 평균인 1,500달러의 2배 수준이며, 특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디트로이트의 경우 미국 도시들 중 최고 수준인 평균 6,200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함

〈표 1〉 미국의 노폴트보험 관련 논의 과정

구분	사회적 이슈	보험제도 관련 논의
1915~1940	자동차산업 급성장 ¹⁴⁾ 자동차사고 증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적용되던 노폴트보험을 자동차보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1940~1970	자동차사고 비용의 지속적 증가	자동차사고 관련 소송의 건수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소권을 제한하는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1965~1970	메사추세츠에서 최초 노폴트보험 도입	1965년부터 학계에서 노폴트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논쟁 끝에 1970년 메사추세츠주에서 노폴트보험을 최초로 도입하였음
1970~1985	노폴트보험 확대 및 소비자 권리 신장	1970년대 초부터 각 주에서 노폴트보험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된 도입 동기는 소송비용 등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였음
1998~현재	노폴트보험에 대한 회의론	노폴트보험을 도입한 주의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노폴트보험 이 본래 의도하였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자료: RAND(2010), Ch. 3, A Brief History of No-Fault 참고

■ 뉴질랜드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노폴트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민간 보험인 미국식 노폴트보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 뉴질랜드에서는 1967년 발표된 'Woodhouse 보고서'¹⁵⁾의 제안을 기초로 1972년 사고 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Law)이 제정되고, 1974년 사고보상기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가 설립되었음
 - ACC는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 제반 원인으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구임
- 뉴질랜드 사고보상법은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모든 인신손해에 대한 사고보상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임
 - 사고보상을 위한 보험은 분야별로 제정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계정(Motor Vehicle Account)은 차량등록세와 유류세에 의해 보험료를 충당함
 - 보험료 산정 시 연령, 성별, 사고발생 등에 따른 요율차이나 할인 할증 제도는 없으며, 차량등록세는 ACC에서 공시하는 세율로 차종별 차등적용하고, 유류소비세는 주유 시

14) 1900년 미국 등록 자동차대수는 총 8,000대였으나, 1915년 200만 대가 되었고, 1920년에는 900만 대, 1930년에는 2,300만 대에 이르렀음(RAND 2010, p. 23)

15)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f Inquiry(1967),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New Zealand"; 위 보고서는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의 원칙으로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 첫째,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로서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 함. 둘째, 모든 부상자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함. 셋째, 손해보상은 육체적·직업적 완전한 재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함. 넷째, 장해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함. 다섯째, 그 제도의 성취 여부는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정확한 산정,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의 여부에 달려있음

리터당 세월에 의함¹⁶⁾

- 뉴질랜드에서 노폴트보험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ACC 수입 중 94%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용도로 사용되고 행정적 비용은 6%에 불과하여 효율성도 인정되고 있음
 - 다만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보험료 인상 등이 문제되지는 않고 있음¹⁷⁾

3.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써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 여부



가.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론의 근거

-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하여 노폴트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i)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ii)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함
 -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사고 자체는 감소할 것이나,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¹⁸⁾
 - 위 견해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현행 배상책임 구조하에서는 자율주행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이동의 편의성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책임도 공동체에 귀속됨이 타당하며, 자동차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치료비, 재활비,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로써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¹⁹⁾

16) 장덕조(2006), 「인신손해에 대한 무과실보상과 자동차보험」, 『상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p. 201

17) 장덕조(2006), pp.213~214

18) RAND(2010), p. 140; 박은경(2017), p. 42; 김영훈(2017), p. 39

19) 박은경(2017), p. 42

나.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 여부

■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관련 배상책임은, 인신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운전자 중심의 과실책임 체계가 아닌 소유자 중심의 준무과실책임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노폴트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 및 동법 제5조의 의무보험제도임
 -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보유자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인 대인배상¹⁾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의 한계로 인한 피해자 구제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운행자책임’이라는 준무과실책임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First-party Insurance)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 자배법상 의무보험은 배상책임보험(Third-party Insurance) 형태로 운영되고 제소권 제한이 없다는 점²⁰⁾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그 기능면에서는 매우 유사함
- 또한 우리나라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²¹⁾, 가불금·가치급금 제도²²⁾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해당 금액을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²³⁾

20) 다만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제도 자체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제소권이 제한되는 노폴트보험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됨. 다만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소권이 제한되지 않음

21) 자배법 제10조

22) 자배법 제11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2조

2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국식 노폴트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미국식 노폴트보험이나 우리나라의 운행자책임 모두 결국은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목적과 기능 측면은 물론 실제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도 구별 실익이 없음

다.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 여부

■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보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 및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요함

- 추후 완전자율주행차가 전면 보급되고, 그 결과 자동차사고가 운전자나 소유자의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와 같은 보험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변경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자율주행시대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에 기여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소권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임

-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의 뉴질랜드식 순수노폴트보험 제도는 사고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고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완전히 금지하는 제도보다는, 자율주행사고 시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과 같은 보유자의 준무과실책임 및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되,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그 귀책사유 있는 자가 최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더욱 합리적일 것임
- 만약 순수노폴트보험 제도가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완전히 금지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기술 안전성 제고 및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할 유인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현행 자동차보험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보상하고 있고, 여기에는 뉴질랜드 노폴트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 재활비, 완치 시까지 생활

비 등도 일정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보험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사회보험 형태의 순수노폴트보험 도입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임
- 다만 기존 의무보험의 한도(1억 5천만 원)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결어



- 우리나라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사고의 영역에서는 과실책임원칙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고, 그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어 피해자가 인적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다만, 기존에는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곧 차량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으나, 완전 자율주행시대에는 운전자 개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유자의 준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는 자배법 제3조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이 완전자율주행시대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이 문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큰 틀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 시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험 보상을 실시할 경우 그 보험가입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법리 및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ri](#)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전용식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심화될 수 있음
 - 2018년 상반기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1.29% 하락함
 -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보험금 원가 상승은 사고 1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수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할 경우 손해율은 상승함
- 보험금 원가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경우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악화될 수 있음
 - 보험금 원가 상승, 혹은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증가(손해율 상승)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됨
 - 유럽 주요국을 비교한 결과, 보험금 원가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폭이 적은 국가의 자동차 보험 경영성과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악화는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984년부터 손해율이 악화되었던 이탈리아의 경우 80년대 후반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던 경험이 있음
 - 한국소비자원(2017)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되어야 함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료가 하락하고 자동차보험 경영성과가 개선됨

1. 검토배경



- 2017년 2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자동차보험은 2018년 상반기 116억 원 적자로 전환됨
 - 2016년 4월부터 개정된 렌트비 지급기준이 적용되었고 경미사고 수리기준 등 대물배상 제도 개선으로 2017년 영업이익은 19년 만에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보험영업이익 흑자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함
 - 대형 3사는 2016년 12월 31일, 2017년 8월 6일과 16일, 2017년 6월 1일 최소 0.8%에서 최대 2.7% 보험료를 인하함
 -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동기 대비 3.9%p 상승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의 자동차 보험료 지수 기준으로 2017년 0.07% 상승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 1.29% 하락함
- 자동차 보험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확대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금 원가 상승, 혹은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증가가 발생(손해율 상승)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됨
 - 2019년에도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 요인

구분		개요
대인	합의금	일용임금 상승으로 인한 휴업손해, 상실수익, 간병비 증가
	진료비	진료수가 인상, 2, 3인실 입원료 증가
	한방진료	한방 병/의원 진료비 비중 상승세 지속 (한방 진료 비중 2016년 28.5% → 2017년 33.5% 상승)
대물	부품비	평균 부품가격 상승 (국산차 평균 부품가격 증감률 2016년 2.9% → 2017년 3.3%)
	공임비	평균 공임비 증감 2016년 0.6% → 2017년 3.2%

-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이에 대한 보험료 조정 현황, 조정 지연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2.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



가. 국내 현황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손해율 상승, 보험영업이익 적자 확대에도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인 자동차 보험료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임
- 2014년 손해율이 88.4%를 기록하고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1조 1,009억 원을 기록해도 2014년과 2015년 자동차 보험료 지수 상승률은 0%를 기록함
 - 2016년에 2014년과 2015년의 경영실적과 손해율을 반영하여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2.43% 상승함
 - 2013년부터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등은 매년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자동차 수리비는 상승폭이 확대됨
 - 2016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대물배상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2017년 손해율은 80.9%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2017년 보험료 인하로 그 효과가 소멸되면서 2018년 상반기 손해율은 상승하였고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됨
 - 2018년 상반기 손해율은 81.7%로 2017년 상반기 77.8%에 비해 3.9%p 상승함

〈표 2〉 자동차 보험료와 보험금 원가 상승률,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30	1.27	0.71	0.97	1.90	1.12
입원진료비 지수	1.78	1.35	1.09	1.50	1.55	0.32
한방진료비 지수	2.70	2.73	2.50	2.20	3.00	2.89
외래진료비 지수	1.03	1.88	2.01	2.30	2.60	2.50
자동차 수리비 지수	-0.03	0.47	0.26	0.58	0.73	1.78
자동차 보험료 지수	-0.68	0.00	0.00	2.43	0.07	-1.29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87.9	88.4	87.6	83.0	80.9	81.7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7,962	-11,009	-10,868	-3,418	266	-116

주: 자동차 보험료,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1년간 손해율 상승폭의 20% 내외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전용식 외(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¹⁾

나.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

- 유럽 주요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원가 상승,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²⁾(〈표 3〉참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폭이 적을 경우 자동차 보험의 경영성과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33%인데 합산비율은 106.08%로 자동차보험 경영성과가 가장 좋지 않음
-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100%를 초과하고 있음

1) 손해율 상승에 대한 보험료의 반응을 책임보험, 임의보험 등 담보별로 1993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전용식 외(2013)의 연구결과도 2000년 이후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크기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 외(201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참조

2) 전용식(2018. 8. 28),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효과」,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참조

〈표 3〉 우리나라와 주요국 자동차 보험료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산비율

(단위: %)

구분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A)	소비자물가 상승률(B)	실질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A-B)	합산비율
한국	-0.04	1.29	-1.33	106.0
프랑스	0.68	0.71	-0.03	103.1
이탈리아	-0.04	0.89	-0.93	92.5
영국	3.22	1.54	1.68	102.2
스페인	1.04	0.60	0.44	98.4
독일	0.72	1.03	-0.31	100.1

주: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사업비/보험료)을 합한 비율로 100% 이상일 경우 경영성과가 악화됨을 의미함
자료: 이탈리아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3.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영향



■ 보험금 원가 상승 반영이 제한적일 경우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손해보험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984년부터 합산비율이 110%를 초과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80년대 후반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던 경험 있음³⁾
- 한국소비자원(2017)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⁴⁾

가. 손해보험회사의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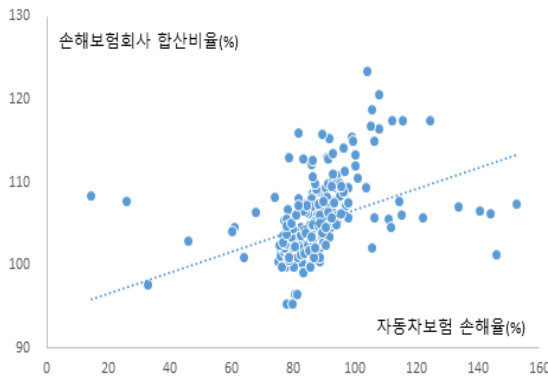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 상승(경영성과 악화)은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Heiks(2006), "The Pricing Effects of European Union Insurance Liberalization on Italian Motor Insurance", Honors Projec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4) 한국소비자원(2017. 11),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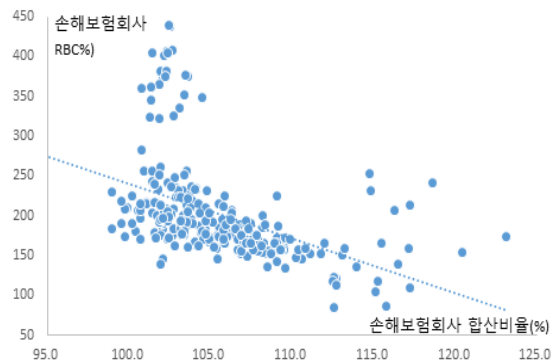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에서 2018년 2/4분기까지 11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합산비율 상승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악화는 가용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림 1〉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과 R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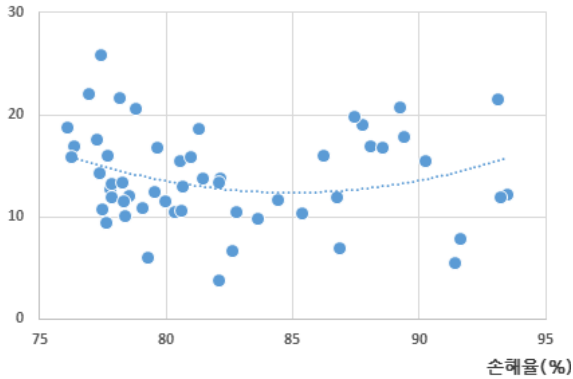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나. 자동차보험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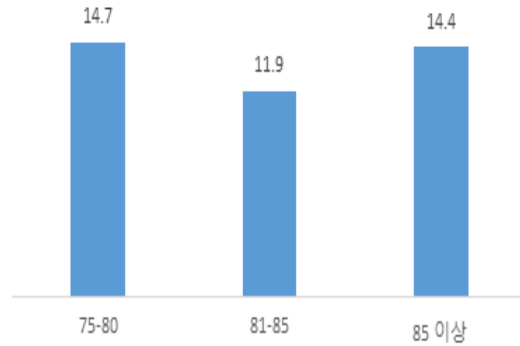
-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인수(Underwritin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할 수 있음
- 2017년 1/4분기부터 2018년 2/4분기까지 9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는 2017년 1/4분기 평균 13.9건에서 2018년 2/4분기 평균 12.8건으로 줄어들고 있음
- 9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와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85% 이상 구간에서 보유계약 10만 건당 자동차보험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그림 4〉 손해율 구간별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민원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4. 요약



■ 국내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보험금 원가 상승 반영 폭이 적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보험료 상승률이 낮아 손해율이 상승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악화될 수 있음
 - 손해율이 상승해도 사업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사업비 절감 등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의 변동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침
- 80년대 후반 손해율 악화 지속으로 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던 경험 있음

-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되어야 함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료가 하락하고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개선됨⁵⁾
- 스페인의 경우 2016년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개선으로 2017년 합산비율은 95%로 2016년 98.5%에 비해 하락, 경영성과가 개선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0.8% 상승에 그침⁶⁾ [kiri](#)

5) 이탈리아 사례는 전용식(2018. 8. 28),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효과」,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참조

6) 보험연구원(2018. 10. 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참조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실의 금전적 보상이라는 리스크 재무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지만, 리스크 통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은 리스크 재무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개인 또는 기업에게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리스크관리 방식임
 - 보험회사는 리스크 재무를 주요 업무 영역으로 삼고 있지만, 화재보험에서는 소화설비 구비 등 리스크관리 실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및 손해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
 - 사고 발생 및 손해 규모 축소를 위한 리스크관리 기법을 리스크 통제라고 하는데, 과거 영국의 화재보험회사는 리스크 재무에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리스크 통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음
-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고객의 리스크 통제 역할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Financial Times는 보험회사들이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고객의 수요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이나 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 최소화 및 신속한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리스크관리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함
 - 실제로 해외에서는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임
- 국내에서도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시도하고 있으나 활발히 판매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실익이 없거나 보험업법·의료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음

- 현대사회의 보험은 과거 해상보험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상선들이 항해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였음
 - 16세기에 시작된 영국의 해상보험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P2P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부조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¹⁾,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함
- 이후에 상호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보험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 등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의 보상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음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사고 발생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왔음
 - 화재보험에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건물의 안전성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와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주된 업무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금전적 보상임

■ 그러나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손실의 보상 외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피보험자나 피보험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이에 해당됨
- 이와 같은 노력들은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였을 때에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보험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되는 방안임

1) P2P 보험에 대해서는 김규동(2018. 4. 9),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KiRi 리포트』, 제442호를 참고하기 바람

- ■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및 해외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 및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2. 리스크관리 기법 측면에서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



- ■ 개인 또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옵션은 사고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리스크 통제(Risk Control)와 사고 발생 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리스크 재무(Risk Finance)로 구분되는데, 보험은 리스크 재무의 대표적인 기법임

- 리스크 통제는 손실의 발생 및 규모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관리 기법인데,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손실방지(Loss Prevention)와 손실감소(Loss Reduction)가 있음
 - 손실방지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통제 기법으로, ABS·도난방지장치 및 후방카메라와 같은 차량 안전장비 장착, 교통신호 준수 및 정기적인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음
 - 손실감소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손실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통제 기법으로, 차량 에어백 장착, 안전벨트 착용 및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리스크 재무는 개인 또는 기업이 사고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인데, 보험이 대표적인 리스크 재무 기법임
 - 보험 이외의 리스크 재무 기법으로는 보유(Retention) 및 자가보험(Self-insurance)이 있음²⁾

- ■ 전통적인 보험회사는 리스크 재무를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리스크 통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사람의 생명 및 질병, 상해와 같은 인적 손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주

2) 자가보험은 발생할 손실의 보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는 반면, 보유는 별도의 기금 없이 손해 발생 시 일상적인 재원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로 보상하며, 손해보험회사는 물적 손해와 배상책임손해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주로 보상함

-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과 같은 건강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사망, 암발생, 입원, 수술 등) 시 사전에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정액보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등은 발생한 손실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에 기초함
- 그러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태에 따라 화재보험 보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이나 손해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음³⁾
 - 소화설비를 설치한 계약자에 대해 화재보험협회의 심사를 거쳐 설비별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 제도는 리스크에 적합한 보험료 산출이 주요 목적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리스크 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 통제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임

3. 해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서비스 확대 사례

■ 최근 소비자들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보험회사가 고객의 리스크 통제 역할을 도와주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

- Financial Times는 보험회사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함⁴⁾
 - 호주의 여행보험회사 Cover-More는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보험회사 그룹인 Generali는 이탈리아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객에게 아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브라질 보험회사인 Porto Seguro는 고객에게 주차나 차량 수리부터 주택의 배관공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이기형(2018. 1. 29),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KiRi 리포트』, 제437호

4) Financial Times(2018. 8. 7), "Identity crisis: the insurers moving away from insurance"

- 기업보험 분야에서는 영국의 보험중개회사 RSA가 RSAded(Risk Engineering Database)라는 웹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데, 고객사들은 실시간으로 리스크 프로파일링이나 리스크 모델링, 리스크 포트폴리오 분석 등 리스크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음⁵⁾

● 이러한 리스크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규모 최소화 및 신속한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고객들이 리스크 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도 줄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고객의 리스크 통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초기의 보험회사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영국 런던에서는 1666년 9월 2일 발생한 대화재(The Great Fire of London) 이후 화재보험회사가 소방관을 운영하면서, 피보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화재를 진압하였음⁶⁾

- 1667년 런던에서 최초의 화재보험회사가 설립된 후 보험회사들은 직접 사설 소방관을 운영하였는데, 다른 보험회사와 차별화된 소방관 조직의 운영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
- 보험에 가입된 건물에는 가입된 보험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fire mark)을 부착하였고, 보험회사들은 자사에 가입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속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였음
- 보험회사의 소방관 운영은 고객의 손실감소 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는 과거 보험회사들도 업무 영역을 리스크 재무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례임

■ 보험회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은 인슈어테크(Insurtech)로 인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계약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대부분임

● Financial Times는 보험회사들이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함⁷⁾

5) <https://www.rsabroker.com/rsared>

6) Great Manchester Fire Service Museum; <http://gmfsmuseum.org.uk/education/BackgroundPDFs/history.pdf>

7) Financial Times(2018. 8. 7), "Identity crisis: the insurers moving away from insurance"

-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Vitality가 고객에게 최상의 운동과 음식 섭취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으며, 핏비트(Fitbit)와 같은 커넥티드 기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행동을 측정함
- AXA가 설립한 스타트업 Kamet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Qare는 고객들이 매월 수수료를 내고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상 의료서비스(Virtual Medical Clinic)를 제공함
- 이 외에 Generali는 차량에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할 때 경고를 하고 있으며, RSA와 Aviva는 고객의 주택 배관에 누수감지 장치를 장착하고 누수를 조기에 감지하여 손실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미국의 Beam dental insurance는 칫솔에 장착된 커넥티드 기기를 이용한 구강관리와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⁸⁾, 이는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좋은 사례임
 -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전동칫솔, 치약, 치실 등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며, 칫솔은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됨
 - 보험회사는 앱을 통해 고객의 치아관리 습관을 점검하고, 좋은 구강관리 습관을 통해 고객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고객의 치아관리 습관에 근거한 점수에 따라 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함
- 스웨덴의 Aimo는 AI와 3D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고객의 동작을 분석·점수화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개별화된 건강 분석정보와 조언을 고객에게 제공함⁹⁾
 - 개인 고객은 Aimo의 조언을 통해 잘못된 동작 습관 등을 교정하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
 - 근로자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보험에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 자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음
 - 이 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시 사고 발생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부담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음

〈표 1〉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해외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사례

구분	보험회사	보상하는 내용
건강보험 관련	Vitality	• 고객에게 최상의 운동과 음식 섭취에 관한 조언 • 핏비트(Fitbit)와 같은 커넥티드 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의 행동을 측정

8) <https://beam.dental>

9) <https://www.startupbootcamp.org>

구분	보험회사	보상하는 내용
	AXA	• 자회사 Kamet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Qare를 통해 고객들이 의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유료)
	Beam	• 커넥티드 기구를 이용한 구강관리와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
	Aimo	• AI와 3D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고객의 동작을 분석 및 점수화 •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개별화된 건강 분석정보와 조언을 고객에게 제공
손해보험 관련	Generali	• 차량에 장착된 장치를 통해 운전이 불안정할 때 경고
	Aviva RSA	• 고객의 주택 배관에 누수감지 장치를 장착하여 누수를 조기에 감지

출처: Financial Times; 관련 웹사이트 및 유튜브 인터뷰 영상

4. 국내 보험회사의 서비스 확대의 한계점



■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자의 리스크 통제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나, 활발히 판매되지 못함

-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객의 질병예방 및 수명연장(손실방지) 등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상품 개발이 활발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2018년 6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에 의하면 생명·손해보험을 통틀어 4개 회사(생명보험 2개, 손해보험 2개)만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손해보험회사 1개만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당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걷기·달리기·칼로리 소모 등의 목적 달성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혜택만 제공할 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운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Usage-based-insurance)가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많지 않음
 - DB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네비게이션 앱과 연동하여 주행거리 및 운전습관을 측정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 자동차보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음

- 앱으로 측정된 주행거리와 안전운전 점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주는 데, 보험료 할인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줄이는 리스크 통제 효과가 있음
- 그러나 UBI 자동차보험은 2개 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이 장기라는 특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해야 하는 보험감독의 특성상 타 금융권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보험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이 요구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을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험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에는 건강보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의료인 이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통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현재보다 활발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보험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에, 보험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음
 - 현 규제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단순한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의료기관과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상품 개발 시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지침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익에 '보험료 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발생과 보험료 할인의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사업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정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없이는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도권을 보험회사가 잃을 수도 있으므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이 매우 중요함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규정이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¹⁰⁾
 - 스타트업들은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투자만으로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자회사 인정 기준인 지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자회사가 아닌 지분 확보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인슈어테크 투자는 해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인슈어테크 투자는 2012년 3.7억 달러에서 2017년 22.1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¹¹⁾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슈어테크 관련 투자에 대한 통계도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금융위원회 신고를 거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지만(보험업법 제115조), “보험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1) Willis Towers Watson, *Quarterly InsurTech Briefing*, 각 호

-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은 보험회사의 이익 추구보다는 고객의 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임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사고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객들이 가장 원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 소비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내 보험회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해외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므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임 [kiri](#)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 연구위원

요약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규제 샌드박스는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 방식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의 혁신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도움
 - 본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 범위 내에서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규제 적용 없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입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된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 혁신적 아이디어가 재정적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기준 설정
 - 지정심사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에서의 보호장치 마련
 - 시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및 배상기준 관련,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설정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¹⁾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특별법')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임

- 「금융혁신특별법」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4법'²⁾의 일환으로, 본 제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최종 통과가 전망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제·개정을 마침
-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운용하고자 할 때,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는 규제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음³⁾
 - 특히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환경을 전제로 한 포지티브 규제체계하에서 감독당국의 재량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의 결실을 신속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⁴⁾
- 「금융혁신특별법」은 금융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제정됨

■ 「금융혁신특별법」의 제정으로 향후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본고에서는 「금융혁신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관한 후 금융 분야 혁신 서비스 도입

- 1)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2016년 5월 처음 도입함
- 2)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총괄하는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개정)」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하, '정보통신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 「산업융합 촉진법(개정)」, 「금융혁신특별법(제정)」을 지칭함
- 3) 정순섭(2017), 「기술 발전과 금융규제 -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 『BFL』, 제85호, p. 6 및 p. 8 각 참조
- 4) 금융위원회는 현재 유사한 취지에서 금융서비스를 실제 금융시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사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테스트베드(Virtual Test-bed)를 가동 중이며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금융감독기관에 일반적·포괄적인 금융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내 규제환경상 그 범위 및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촉진에 관한 함의를 살펴보고 입법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2. 「금융혁신특별법」의 개요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관

■ 「금융혁신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것임

신청	■ (신청자격)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로 제한)과 금융회사(제5조) ■ (신청대상)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제2조 제4호)
↓	
심사	■ (심사주체) 금융위원회 산하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제13조) ■ (심사기준) ① 주된 활동 영역(국내 금융시장 내), ② 서비스의 혁신성, ③ 소비자 편익 증대, ④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⑤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⑥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⑦ 금융 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⑧ 금융 관련 법령 목적 달성 저해 우려(제13조 제4항) ■ (심사절차)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제15조) ■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연장 가능, 최대 120일)(제14조)
↓	
지정 및 연장	■ (지정주체) 금융위가 심사위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 가능(제4조) ■ (지정공고) 금융위는 지정내용을 관보게재 등으로 공고(6조) ■ (지정기간) 최대 2년 이내에서 서비스별로 결정(제4조 제1항) ■ (기간연장) 연장 신청 시 심사위가 연장 여부 결정(최대 2년)(제10조)
↓	
종료	■ (종료효과) 사업자 지위 상실(필요한 범위 내 의무 유지)(제9조)

나. 규제특례의 범위 및 지정의 효과

■ (규제적용의 특례)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고,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제16조 및 제17조)

5)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본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법령은 법률에 열거된 금융 관계 법률⁶⁾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한함
- 해당 금융 관련 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 단,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금융질서의 안전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 인정이 불가함(동조 제2항)
- 타 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은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4조 제1항)

다. 감독 및 소비자보호

■ (감독 및 제재) 금융감독원 등이 특별법 등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함(제7조, 제29조, 제33~35조)

- 규제 적용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정 외의 규정도 감독대상이며, 감독 결과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 및 시정함
 - 지정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중지 명령 내지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제11조)

■ (소비자보호)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운영 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제13조, 제19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제15조)

- 사업자는 지정신청 시 이용자의 범위 제한, 거래위험 고지,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 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함

6)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34개(동법 제2조 제1호, 별표)

-
- 사업자의 배상여력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함⁷⁾

라. 종료 후 후속조치

- (지정효과 실효) 기간(최대 4년) 만료 내지 지정취소,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변경, 자진철회 등의 경우 서비스 운영을 즉시 종료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또한 원칙적으로 종료됨(제7조~9조, 제22조)
- (시장안착 지원) 지정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심사절차를 지원하고(제21조 제2항), 시험운영한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입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제13조 제5항)
- (배타적 운영권) 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서비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짐(제23조)

마. 기타

- (규제신속확인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⁸⁾는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령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⁹⁾, 금융위원회는 30일 내(연장 가능, 최대 120일)에 회신하여야 함(제24조)
- (지정대리인)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험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핀테크 기업 등을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5조)
- 금융회사는 시험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본질적 업무 포함)를 위탁할 수 있음

7) 배상방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8) 상법상 회사 및 금융회사에 한함

9) 문언상 규제특례 지정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여야 하므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함

3. 검토 및 제언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샌드박스 1+4법' 중 「금융혁신특별법」만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¹⁰⁾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금융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라 하더라도 '우선 허용'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규제특례 범위) 「금융혁신특별법」상 규제특례는 '금융 관련 법령'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본 법으로 특례 인정이 가능한 부분은 특별법에 규정된 34개 법령 및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한함

-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해짐

■ (심사기준) 서비스의 혁신성,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총 9개의 기준이 열거되어 있는데, 위 기준들을 사용하여 지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이 필요함

- 서비스가 '충분히 혁신적인지', 신청자가 이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심사자의 재량적 해석 여지가 큼
 - 심사자는 구체적 사안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제도접근을 꺼릴 우려가 있음
- 스타트업 등 혁신적 사업자는 재정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이나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 활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10)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타 행정기관의 동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정신청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의 장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관련 행정기관 장의 성실한 검토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를 간주하는 등의 적극적 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의견청취 절차) 심사 단계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신청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 내지 공청회를 열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 자체가 사업자에게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지정 여부가 확실치 않는 심사단계에서 특히 잠재적 경쟁자 등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사업자의 제도 회피요인이 될 수 있음
 - 하위법령상 보완장치가 필요함
 - (지정취소 사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가 특례 인정을 받은 규정 이외에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직된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사전에 지정된 특정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규제회피 목적 등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를 경감하는 등 완화조치가 필요함
 - (지정 철회의 효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취소하면 사업자는 즉시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사업자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 종료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부분은 서비스의 제공인데, 서비스 운영 종료 후 계약상 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이용자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 또한 문제됨

- 시험운영은 서비스의 완벽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있으므로, 애초 예측과 달리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 및 소비자보호 방안) 「금융혁신특별법」은 서비스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사전에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영업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후적으로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함

- 규제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시험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보험 가입 내지 배상 방안은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입법권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 기간 만료 이후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혁신특별법」상 ‘금융혁신서비스 지정 제도’는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융합활성화특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달리 적극적 규제 완화 조치¹¹⁾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금융혁신특별법」상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규제유예일 뿐 규제면제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¹²⁾도 있음

■ (면책규정)관련 공무원 등이 감사 내지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단서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이미 포섭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kiri

11) 「산업융합촉진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음

12) 안수현(2018),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과 법적 과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상사판례연구』, 제31권, p. 185 참조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 최근 P2P(Peer-to-Peer)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P2P 보험은 유럽에서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최초 도입되었는데, 계약자 간의 상호 부조와 재보험이 결합한 형태로 시작되었음
 - 계약자들이 그룹을 형성한 후,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는 내부 적립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로 초과손실에 대비해 재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인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줄일 수 있는 보험 형태로 알려짐
- P2P 보험은 상품 유형 및 운영 주체에 따라 ① 유럽처럼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형태, ② 미국처럼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 ③ 회사는 P2P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계약자들이 직접 보험을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형태로는 영국의 so-sure나 독일의 Friendsurance를 예로 들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는 미국의 Lemonade가 있음
 - 가장 최근에 출현한 P2P 보험은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 서로를 보장해주는 완전한 손실 공유 형태인데, 영국의 Teambrella가 대표적임
- 보험중개사가 모집·운영하는 유럽의 P2P 보험 모델은 국내 보험업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P2P 보험을 고려해야 함
 - 유럽의 P2P 보험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P2P 보험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던 위험보장의 일부를 계약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특성이 있어 보험회사들이 P2P 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유인이 적지만, 펫 보험처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큰 위험보장에서는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기술발전으로 인해 P2P 보험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Teambrella와 같은 완전 손실 공유 형태의 P2P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험환경을 전제로 제정된 보험규제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새로운 보험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P2P(Peer-to-Peer) 보험이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음¹⁾
 - P2P 보험이란 보험계약자들이 상호 보장을 하는 형태로, 친구·가족·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한 후, 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임
 - P2P 보험은 공유경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17세기 영국에서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선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서로의 상선을 보장하였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아님²⁾
- P2P 보험은 이미 시행 중인 P2P 대출과는 다르지만, 금융기관의 역할이 최소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음
 - P2P 대출은 예금자와 대출자 중간에 있던 금융기관을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을 투자자(기존 예금자)와 대출자가 공유하는 개념임
 -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자의 부도위험(default risk)에 노출됨
 - P2P 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위험보장 역할을 피보험자들이 공유하는 것임
 - 보험리스크를 보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축소 또는 배제하고 피보험자들이 보험리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취하는 대가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임
- P2P 보험은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주로 보험중개사 또는 새로 설립된 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중개회사들이 P2P 보험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초기에는 유럽의 보험중개회사들이 전통적인 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과 보

1) 김규동(2017),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KiRi리포트』, 제418호, 보험연구원

2) http://www.naic.org/documents/cipr_events_spring_2016_article.pdf

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매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공략하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P2P 보험을 활용하였음

- 최근에는 미국에서 P2P 보험 전문 보험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인슈어테크의 열풍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P2P 보험상품도 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중개회사들이 P2P 보험 판매를 원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임³⁾

■ 본고는 해외의 P2P 보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P2P 보험 도입의 한 가지 방안으로 펫 보험의 P2P 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함

2. 해외의 P2P 보험 활용 사례



■ P2P 보험은 유럽에서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P2P 보험 형태는 계약자 간의 상호 부조와 재보험이 결합된 형태임

- 계약자들이 그룹을 형성한 후,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는 내부 적립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로 초과손실에 대비해 재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임
 - 그룹 내 피보험자들에게 보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전체 손해가 적립금 총액에 이를 때 까지는 적립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체 손해가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함
 - 전체 보험금이 내부 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기간이 끝나고 남은 적립금을 계약자들이 나눠 갖는 형태인데, 전통적인 보험회사에 비해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⁴⁾

3) 일부 보험중개회사들은 펫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계약자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하는 마케팅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공동구매로 계약자들이 서로의 위험을 보장하는 P2P 보험과는 상이함

4) 계약자 10명이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P2P 보험을 예로 들면, 70만 원은 내부 적립을 하고 나머지 30만 원으로는 10명의 총 손해액이 70만 원이 넘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음. 총 손해액이 7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내부 적립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총 손해액이 70만 원이 넘으면 재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총 손해액이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적립금을 계약자들이 환급받는 구조임

■ 영국의 so-sure와 독일의 Friendsurance는 초기부터 P2P 보험을 판매해오고 있는 회사로 보험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

- so-sure는 지인을 소개하여 동일한 보험 네트워크로 초대(가입)할 경우 1명 당 최초 보험료의 10%씩을 최대 80%까지 크레딧으로 적립해 줌
 - 보험기간이 종료될 까지 동일한 네트워크의 보험가입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보험료 크레딧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임
- Friendsurance는 2010년 P2P 보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법률비용 및 개인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함
 - 보험금 청구(지급)가 없거나 보험금 지급률이 낮을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보험회사에 비해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함
 - 영국의 so-sure와 유사하게 보험기간 동안 본인 및 네트워크의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합의된 금액만큼 환급받는 형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본인과 네트워크 내 계약자들의 보험료 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임
 - 80% 이상의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받고 있으며, 재물보험에서는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30%를 환급받고 있다고 광고함
- 프랑스의 insPeer나 영국의 Guevara도 이와 유사한 P2P 보험 모델을 가지고 있음

■ 보험중개사가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P2P 보험을 운영하는 사례는 미국의 Lemonade가 대표적임

-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운영하므로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P2P 보험에 비해 상품 설계 측면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별도의 판매조직 없이 앱을 통해서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보험이나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판매함
-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들에게 환급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한 단체(cause)에 기부하는 방식인데, 지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대상 단체가 동일한 계약자들을 동일한 리스크 풀(risk pool)로 구성하는 방식임
 -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20%만 사업비로 수취하고 위험보험료(80%)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전액 기부하는 구조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회사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하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상품을 운영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단히 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차익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임
- P2P 보험이라는 점보다는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각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P2P 보험은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서로를 보장해주는 완전한 손실 공유 형태임

- 영국의 Teambrella는 블록체인 암호 화폐 체계인 이더리움에 기반한 P2P 보험 시스템을 운영함
 - 지인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이전의 P2P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지 않고 개별 적립금만 보유하고 있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개별 계약자들의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임
 - 새로운 가입자가 네트워크(리스크 풀)에 들어올 때에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투표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언더라이팅)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도 계약자들이 투표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보험금 지급심사)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율규율(self-governing) 모형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P2P 보험임
 - 그러나 그룹 규모가 작고 보험사고 규모가 클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Teambrella는 상호보장을 위한 플랫폼만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들이 네트워크만 구성하면 보장 내용에 제한 없이 상호보장이 가능함
- 영국의 Cycle Syndicate와 캐나다의 Besure도 Teambrella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 회사가 직접 위험보장을 하지는 않으며, 상호보장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플랫폼 제공에 대한 수수료만 수취하는 구조임
- 플랫폼 제공 회사는 보험료 수취 및 보험금 지급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Teambrellar와 같은 플랫폼 제공 서비스가 보험업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P2P 보험의 특성은 보험사고의 변동성, 정보 비대칭성, 보험료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질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 풀(risk pool)을 크게 유지하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P2P 보험은 계약자들의 네트워크가 작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변동성이 큼
-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거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유인이 크고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적으면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 반면, P2P 보험은 피보험자들 상호 간의 거래이므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유인이 작고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적으면 보험계약자들이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됨
-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P2P 보험의 경우 보험중개사와 보험회사의 협상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이 손실 전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용을 위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3. P2P 보험 도입 방안



■ 독일의 Friendsurance나 영국의 so-sure처럼 보험중개사가 모집·운영하는 P2P 보험 형태는 국내 보험업법에 부합하지 않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⁵⁾

- 보험업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보험업법 제2조, 4조)
- 유럽의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P2P 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보험중개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내 보험업법의 「보험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을 판매·운영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음

5) 상호부조와 재보험이 결합된 형태의 P2P 보험 도입 방안별 검토에 대해서는 “김규동(2017),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KiRi리포트』, 제418호, 보험연구원”을 참고 바람

- 일정한 자본금 유지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보험상품을 운영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중개사의 P2P 보험 판매·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P2P 보험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던 위험보장의 일부를 계약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특성이 있어 보험회사들은 P2P 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유인이 적으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커 보험회사가 전통적인 보험상품으로 보장하기에 리스크가 큰 담보에 대해서는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보험상품을 P2P 보험으로 판매·운영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들이 P2P 보험 도입에 적극적일 유인이 적은 것이 사실임
 -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운영(사업비)과 위험보장(위험보험료) 측면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P2P 보험으로 판매·운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은 보험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 수익과 재보험계약에 대한 위험보험료 수익으로 제한되므로, 전통적인 보험계약을 판매·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수익이 감소할 것임
- 그러나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심한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P2P 보험 판매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우선적으로 펫 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큰 보험에서는 적정한 보험료의 산출이 어려워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판매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시장개척 차원에서 P2P 보험 개발 및 판매를 고려해볼 수 있음
- 피보험 동물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비가 없어, 펫 보험은 정보 비대칭성(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이 높고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보험상품으로 알려져 있음
 - 동호회를 중심으로 P2P 보험을 개발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동호회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진료비가 적절한 동물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물병원을 이용하도록 동호회 회원들이 합의할 경우, 리스크 평가와 보험료 산출이 수월해질 수 있음

4. 향후 과제



■ 일부 보장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시범적으로 P2P 보험을 판매·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P2P 보험을 판매할 경우 전통적인 보험에 비해서 이익은 감소하겠지만 보험료 산출 및 위험보장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음
 - 보험사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면 보험기간 말에 남은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가입 시점에서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더라도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험회사가 다양한 P2P 보험을 판매·운영하게 되면 보험상품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P2P 보험을 모두 판매·운영할 경우 너무 다양한 보험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P2P 보험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음

■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수요조사, 보장내용 설계 및 판매는 보험중개사가 대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수적이지만, 보험회사가 소규모 단체의 보험가입을 위해 매번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
- 보험중개사들이 소비자의 수요조사 및 보장내용 설계처럼 보험판매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은 P2P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임

- Teambrella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P2P 보험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경우 P2P 보험의 확산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 Teambrella가 제공하는 P2P 보험 플랫폼의 경우, 회사는 보험 운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 보험계약을 운영하는 구조임
 - 그러나 플랫폼의 하자로 인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플랫폼 제공 회사를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인슈어테크 및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보험산업은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P2P 보험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새로운 보험상품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보험환경을 전제로 제정된 보험 규제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kiri](#)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을 회사별·채널별로 산출·공시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의 목표는 보험상품의 효용 제고와 소비자보호임
-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상반기 0.18%, 손해보험의 경우 2011년 0.41%에서 2017년 상반기 0.10%로 하락하였고, 이와 관련된 계약유지율, 설계사 정착률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2.3%p, 3.8%p 상승하였고, 설계사 정착률도 각각 4.6%p, 5.7%p 개선되었음
-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계량화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의 조치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관련 지표들은 개선되었으나, 소비자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보험민원 건수는 정체 또는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적 검토가 필요
-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보험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제언함
 -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수체계(지급방식, 수수료 보장급,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신계약 창출(단기성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리한 판매 및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형(재무·노후설계 중심) 채널로 전환
 - 특히, 표준형·단기형 상품의 경우 푸쉬형을 지양하고 다양한 플랫폼(ICT 업체, 포털, 스타트업 기업 등)을 활용한 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유통시장에서 모럴 해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판매자 책임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불완전하게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민원 및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의 주된 원인임
 - 2008년 키코사태, 금융투자회사의 펀드상품¹⁾,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등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금융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에서 불완전판매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설계사 조직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보험료 기준 세계 8위의 보험대국으로 급성장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의 과제를 안게 됨
 - 보험상품은 상품 자체의 복잡성²⁾과 계약·판매 과정상 불완전성³⁾이 내재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타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완전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2. 불완전판매의 개념과 감독정책



가. 불완전판매의 개념

-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금융법규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 11. 26),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2)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처럼 비교적 정형화된 상품부터 사망·생존·입원·수술·통원 등 다양한 위험을 특약의 형태로 보장하는 상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상품의 구조도 타 금융상품과는 상이한 가격구조(위험보험료,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 보험수리적 이해를 필요로 함
3) 보험계약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약관상 보장요건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판매과정에서 명확하게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BIS(2008)⁴⁾는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자문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FSA(2013)⁵⁾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합한 상품 권유 등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있음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PPI⁶⁾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각되던 2003년에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FSA의 핵심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힘⁷⁾
 - FSA는 불완전판매가 법적 또는 FSA핸드북(Handbook of Rule and Guidance)상 개념은 아니나, 투자위험이 높아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원칙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
 - 한편, FSA가 규정한 11개의 영업행위원칙(Principles for Businesses)⁸⁾ 중 불완전판매 관련 항목으로는 진실성(원칙 1), 선관주의(원칙 2), 소비자이익 고려(원칙 6),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원칙 7), 소비자와의 신탁관계(원칙 9) 등이 있음
- FSA는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대신, 금융회사들이 각종 법령과 원칙들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함
 - 금융소비자들은 거래과정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불완전판매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정의되기를 바라나, FSA는 세밀하게 불완전판매의 개념을 한정하는 것은 정의조항으로서 너무 길고 상세하며 규범적일 뿐 비현실적이라고 보았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불완전판매는 보험상품 판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⁹⁾

4) BIS(2008), "Customer suitability in the retail sale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5) FSA(2013), "Final Guidance - Risks to customers from financial incentives"

6)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은 대출채무자가 상해사고, 질병, 비자발적 실업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임(Ferran, Eilis(2012), "Regulatory lessons from the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mis-selling scandal in the UK",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13(2), p. 250)

7) Mondovision(2003. 4. 17), "UK'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dvises Industry On Definition Of Mis-Selling"; 김원각(2015), 「영국에 있어서 PPI(지급보증보험)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그 시사점」, 『경영법률』, 제26권 1호, pp. 270~271

8) John Lowry, P. J Rawlings, Robert Merkin(2011),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3rd ed. Hart Publishing, p. 34; 김원각(2015), p. 270

9) 국내 연구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불공정금융거래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정보·교섭력·판단능력 등의 격차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함으로써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거래(김동환(2006. 3. 31), 「불공정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방향」, 『주간금융브리프』, 15-14호, 한국금융연구원, p. 9),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모집인의 설명부족 등 계약과정에서

나.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감독정책

■ 불완전판매 감독의 목표는 불합리한 판매관행의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효용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또는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감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⁰⁾

- 예를 들면,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비롯하여 판매 이전에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나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규제, 상품비교공시 등 판매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
- 최근 감독당국의 조직개편에서도 불완전판매·민원·분쟁의 비중이 큰 보험부문의 감독·검사부서를 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해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에 역점을 둠

■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보험회사별 그리고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비교 공시하며 본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¹¹⁾

- 불완전판매 비율 지표는 신계약 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및 무효 건수 비율로 정하고 이를 채널별, 회사별로 공시
- 2011년에는 회사별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¹²⁾ 등으로 공시내용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까지 비교 공시함

불완전판매 비율	=	$\frac{(\text{품질보증해지}^* \text{ 건수} + \text{민원해지}^{**} \text{ 건수} + \text{무효}^{***} \text{ 건수})}{\text{신계약 건수}}$	× 100
-----------------	---	---	-------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설명 상이,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 미전달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상품내용 인지 미흡 등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해지된 계약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서면동의 누락 등 약관상 무효사유로 무효 처리된 계약

주: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는 당해 사업 연도 신계약 건수 중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수를 말함

하자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것(차일권·이상우(2007. 3),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p. 19)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금융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유형을 상품설명 불충분, 3대 기본 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분 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부분 설명) 불이행, 보장내용의 부실안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10) 2010년 이후 감독당국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표 2> 참조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5. 19)

12)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 (품질보증해지건+민원해지건) / 신계약건,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 / 보험금 청구건,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 보험금청구된 계약건

■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를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회사 및 채널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고령소비자, 가정주부, 사회복지·보육시설,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개선 방안을 추진함

3. 불완전판매 비율 현황 및 특징



가. 업권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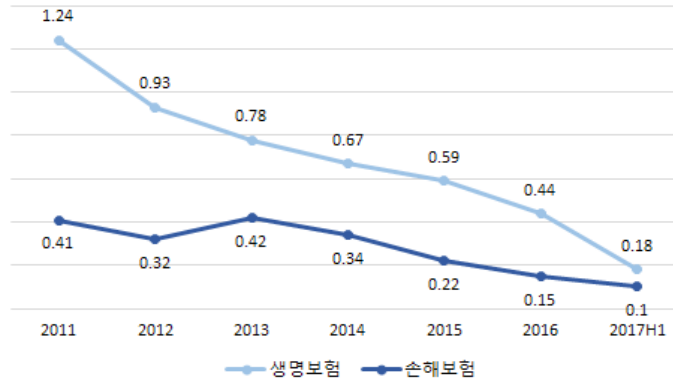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이후 불완전판매 비율이 개선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손해보험에 비해 높게 나타남¹³⁾
-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0.18%까지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0.41%에서 0.10%로 하락함
 - 이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13)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복잡하고 난해한 상품이 많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손해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표준화된 상품이 많아 불완전판매보다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민원발생 건수가 많음

〈그림 1〉 업권별 불완전판매 비율

(단위: %)



주: 불완전판매 비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민원해지 건수+무효 건수)/신계약 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 불완전판매 비율은 일반적으로 비대면 채널과 GA에서 높고, 생명보험은 복합채널에서 손해보험은 TM 채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M,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이유로 판매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과장된 설명 등을 들 수 있음
 -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복합채널(0.54%), TM(0.30%), 기타 법인대리점(0.29%), 홈쇼핑(0.29%), 다이렉트(0.28%) 순임
 -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TM(0.20%), 홈쇼핑(0.19%), 다이렉트(0.14%), 기타 법인대리점(0.12%) 순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함

〈표 1〉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

(단위: %)

구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		합계
				방카	TM	홈쇼핑	기타	복합	다이렉트	
생 보	FY2011	0.85	0.73	0.38	1.63	1.73	2.22	2.50	1.53	1.24
	2017. 06	0.17	0.20	0.03	0.30	0.29	0.29	0.54	0.28	0.18
손 보	FY2011	0.19	0.18	0.36	0.89	0.88	0.52	0.09	0.57	0.41
	2017. 06	0.08	0.04	0.09	0.20	0.19	0.12	0.01	0.14	0.10

주: 1) 판매채널 구분: ① 방카슈랑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② TM: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③ 홈쇼핑: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④ 기타: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GA)을 지칭함, ⑤ 복합: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⑥ 다이렉트: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나. 보험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

■ 보험상품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고, 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 질병보험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음

- 생명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종신보험(0.33%), 변액보험(0.27%), 연금(0.23%), 암보험(0.17%) 순임
 - 연금보험상품 가입 희망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판매함으로써 설계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아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¹⁴⁾
 - 변액보험의 경우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특히, 중도해지 시 낮은 환급률¹⁵⁾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통합형보험(0.21%), 질병보험(0.13%), 상해보험(0.12%) 등이 손해보험상품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0.10%)을 초과하고 있음
 - 표준형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 특성을 보이는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음

〈그림 2〉 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2017년 상반기)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14)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전환특약을 종신보험상품에 부과하여 판매하는 현상 등도 존재함(금융감독원(2017. 12),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백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8. 6),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은 상품에 대해 판매중단 등 조치 실시”)

15)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나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사업비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해지공제 등으로 환급률이 낮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6. 20),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 상품별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채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상품을 푸쉬형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음¹⁶⁾

-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TM(1.01%), 다이렉트채널(0.96%) 등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변액보험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0.21%)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CI보험도 복합(TM+대면), 다이렉트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상품 중 질병보험은 TM(0.35%), 홈쇼핑(0.26%) 등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으며, 재물보험의 경우 홈쇼핑채널(0.44%)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다. 불완전판매 비율과 주요지표들 간의 관계

■ 불완전판매 비율은 해지(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및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아질수록 보험계약유지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생명보험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2011년 1.24%에서 2017년 상반기 0.18%로 하락하는 동안 13회차 계약유지율은 82.0%로 2.3%p 상승하였고,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9.8%로 6.8%p 상승함
- 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동 기간 중 0.41%에서 0.10%로 하락하는 동안 13회차 계약유지율은 82.6%로 3.8%p 상승하였고, 25회차 계약유지율은 72.6%로 4.3%p 상승함
- 불완전판매 비율과 계약유지율 간의 회사별 분포를 보면 <그림 3> 하단과 같음

16) 보험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은 <별첨 표 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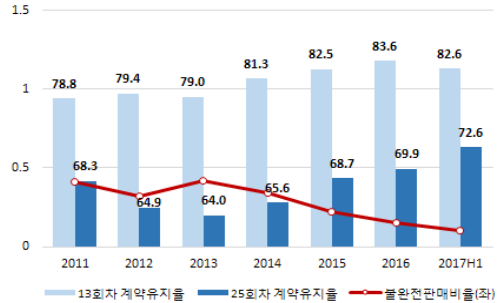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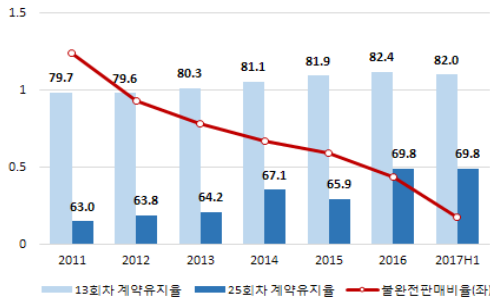
〈그림 3〉 불완전판매 비율 vs. 계약유지율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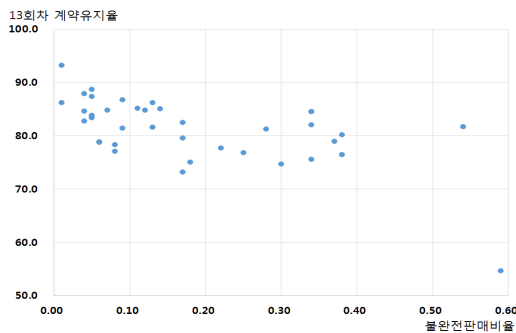
〈손해보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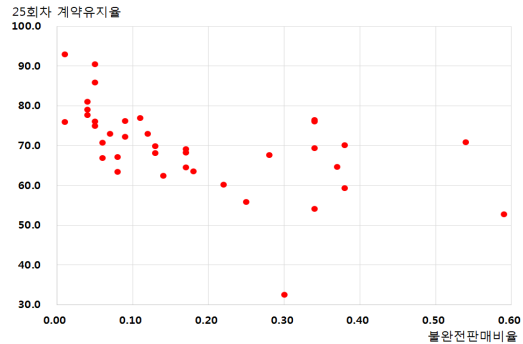
(단위: %)



〈회사별 분포: 13회차 계약유지율〉



〈회사별 분포: 25회차 계약유지율〉



주: 2017년 상반기 기준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 또한, 최근 들어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완전판매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두 지표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2011년과 2017년 상반기의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을 비교해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35.6%에서 40.2%로 4.6%p, 손해보험은 45.7%에서 51.4%로 5.7%p 개선되었음
- 금융소비자연맹(2015)¹⁷⁾은 보험설계사 중 60%가 1년 이내에 그만둠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 소비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17)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14. 4. 7), “보험설계사 1년 이내 10명중 6명 그만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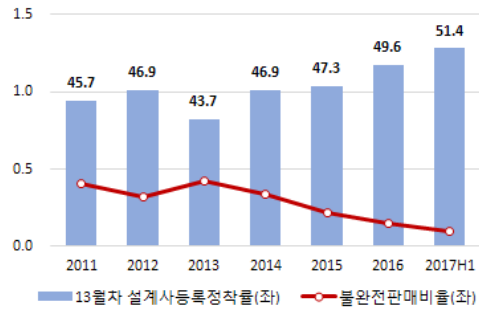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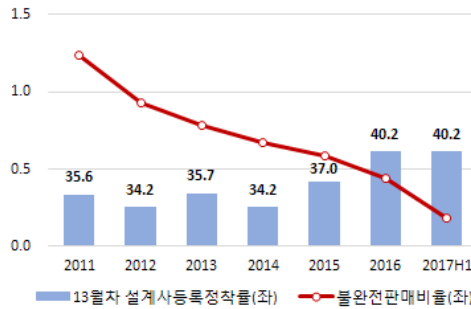
〈그림 4〉 불완전판매 비율 vs. 13회차 설계사 정착률¹⁾

〈생명보험〉

〈손해보험〉

(단위: %)

(단위: %)



주: 13개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보험설계사 신규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 한편,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건수는 정체되는 모습이나, 타 유형의 보험민원 증가로 전체 민원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총 민원 건수는 2012년 38,862건에서 2017년 47,768건으로 증가 추세(연평균 4.2%)에 있으나,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해지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 건수는 동기간 13,862건에서 13,458건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비중은 2012년 35.7%에서 2017년 2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는 2011년 23.7건에서 2016년 25.0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음¹⁸⁾

18) 생명(손해)보험회사의 민원 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 수)가 전체 생명(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 시 제외
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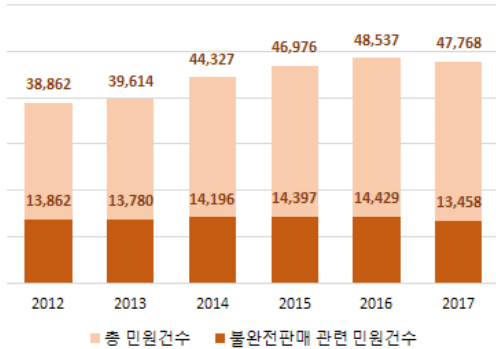
〈그림 5〉 보험회사의 유형별 민원 실태와 불완전판매 비율

〈총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건수 추이〉

〈주요 민원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건)

(단위: %)



구분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지연	면부채 결정	기타
	보험 모집	계약 성립·해지				
2012	27.2	8.5	13.6	13.4	8.4	29.0
2013	26.5	8.3	16.4	11.5	10.5	26.8
2014	24.4	7.6	19.7	12.5	9.4	26.3
2015	21.8	8.8	15.3	16.1	8.9	29.0
2016	21.9	7.8	17.7	11.9	10.4	30.3
2017	19.8	8.3	18.5	10.3	11.2	31.8

주: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건수는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으로 한정함
자료: 금융감독원

4. 평가 및 제언

■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계량화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의 조치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음

●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 2017년 기준 유형별 보험민원은 보험모집(19.8%), 보험금 산정(18.5%), 면·부채 결정(11.2%), 보험금 지급지연(10.3%), 계약성립 및 해지(6.3%) 등의 순임

■ 특히, GA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와 이직¹⁹⁾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위해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19) 과거 5년간(2011~2016년) 이직경험자 비중이 GA 설계사 55.3%, TM 설계사 51.7%, 전속설계사 12.6%임(안철경·정세창(2017. 11), 「보험설계사 이직 요인과 정착률 제고 방안」,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4호, p. 9)

필요한 시점임

■ 우선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하였던 제도임을 고려하여 환경변화에 부합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IFRS 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간접비는 이연상각이 불가능해져 이연상각에 의존한 현행 보험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지급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 일시적으로 급격한 보수체계의 개편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설계가 필요함
- 영국 감독당국에서도 PPI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법을 초기에는 판매자와 고객 간의 설명의무 이행 등 행위규범의 문제로만 좁혀서 보았으나, 금융회사와 판매자 간의 수당체계와 판매시장에서의 과당경쟁, 즉 금융상품 유통구조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함²⁰⁾
 -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왜곡된 보수체계를 정비하였음
 - 그 일환으로 판매과정을 자문(advice)과 판매(sale)로 구분하고, 독립자문자의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자문비(fee)로 전환하는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개혁을 2012년부터 시행함

■ 전통적 푸쉬·판매중심 보험유통구조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채널혁신이 필요함

- 표준형·단기보험상품²¹⁾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주로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인바운드형 채널 및 상품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함
 - 이들 상품의 경우 보험유통시장에 다양한 플랫폼(ICT업체, 포털, 스타트업 기업 등)·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 공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정보비대칭성 해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김원각(2015), 「영국에 있어서 PPI(지급보증보험)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그 시사점」, 『경영법률』, 제26권 1호

21)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애견보험, 여행자보험, 도난보험, EW, 휴대폰분실·도난보험 등

- 한편,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의 경우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컨설팅형(재무·노후 등 생애 설계 중심) 채널로의 전환을 고려
 -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시책 중심의 프로모션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신계약 창출에는 도움이 되나 무리한 판매 및 사후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 모럴해저드 관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유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판매자책임 관련 법제 및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최근 비전속대리점의 급성장,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과 연계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승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판매자에게 직접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²²⁾
 - 특히, 대형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우나, GA 또한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필요성이 제기됨²³⁾
 -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사상품설명 스크립트 등 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대리점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을 GA 설계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

22) 김현수·정세창·김은경(2014),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험연구원

2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현아(2017),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KIRI 리포트』, 제412호 참고



CHAPTER

03

고령화

1.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2.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 안철경 정인영
| 황현아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IT 기술 발달로 비대면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설계사 인력 축소와 설계사의 고연령화가 진행 중임
-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 조직 또한 신규 경쟁채널의 등장, 청년층의 저조한 신규진입, 설계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으로 고연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
 - 30세 미만 설계사의 비중은 2017년 기준 5.7%로 1997년 대비 16.0% 감소했으며,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30%p 증가한 40.7%임
 - 고연령화는 여성설계사(50세 이상 비중, 45.6%)가 남성설계사(24.9%)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 형태별로는 대형사(47.0%), 중·소형사(36.3%), 외자계(22.3%) 순임
- 설계사의 고연령화가 진행될수록 신계약에 대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단순한 상품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업조직의 역동성이 상실되면서 손익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 설계사 중심 보험회사 영업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
 - 채널 포트폴리오가 고령의 여성설계사 중심이어서 젊은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장기적으로 연계판매 기회가 적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아울러 고객의 고령화는 보험회사의 손익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보험회사는 설계사의 고연령화에 따라 설계사 인력 및 조직 인프라 재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문설계형 채널과 단순판매형 채널로의 역할 분담 등 보험시장의 신환경에 상응하는 인력 및 조직 인프라 재구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일정기간 임금을 보전해 주는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 생산성 및 직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함
 - 상품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라 고연령 설계사의 완전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설계사 보수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함

1. 검토배경



- IT 기술 발달로 비대면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설계사 인력 축소와 더불어 설계사 조직의 고연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 2017) 발표에 따르면, 미국 생명보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의 평균연령은 59세이며 네 명 중 한 명은 1년 이내에 은퇴할 것으로 전망함¹⁾
- 설계사 조직 고연령화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임
 - 인력구조 고령화는 보험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과거 상품판매과정에서 설계사가 담당하던 기능을 온라인이나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젊은 인력의 진입 감소로 설계사의 고연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일본의 AXA 다이렉트 생명은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얼굴인증을 통해 고객의 성별과 나이를 추측한 후 보험료 산출 및 상품 소개가 가능한 로봇 Pepper를 2017년 도입함²⁾
 - 라이프넷 생명은 LINE, Facebook Messenger에서 채팅 봇의 자동응답 기능을 활용한 보험료 견적서비스를 2017년부터 제공함
- 설계사 고연령화는 생산성과 비용구조(인건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사 영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전통적 판매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1) Precise(2017),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Face Looming Workforce Gap"

2) PR TIMES(2017. 8. 7), "アクサダイレクト生命, 百十四銀行にPepperを導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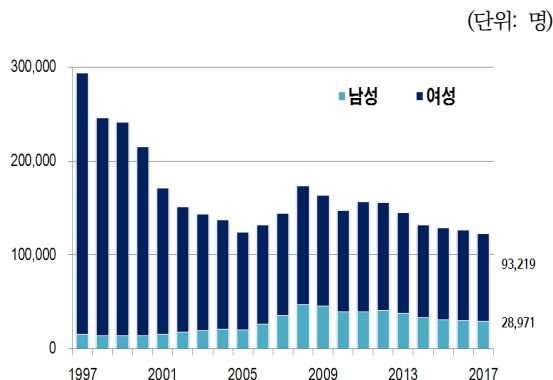
2. 설계사 조직의 고연령화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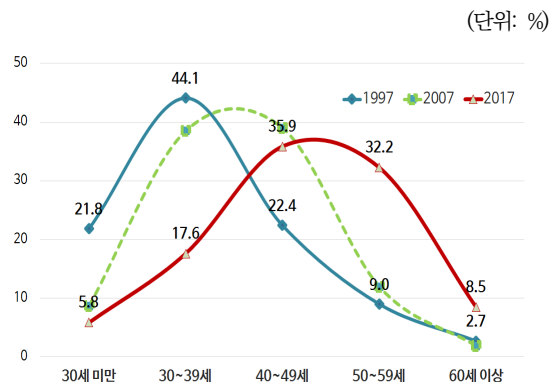
■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도 신규 판매채널 등장, 청년층의 낮은 노동시장 진입, 설계사 직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으로 설계사 조직의 고연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채널의 등장, TM, CM, 홈쇼핑 등 온라인채널의 성장에 따라 설계사 중심의 전통적인 대면모집 비중이 축소와 더불어 설계사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2017년 기준 생명보험의 설계사 수는 12만 2,190명(남성: 28,971명, 여성: 93,219명)으로 과거 20년간 연평균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
 - 설계사 채널을 통한 상품판매 비중은 2001년 60.3%에서 2016년 16.3%로 크게 감소함⁵⁾
-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독립보험대리점으로서의 이탈, 설계사 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신규 진입 저조 등의 여파로 설계사 조직의 고연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황
 - 생명보험 산업의 30세 미만 설계사의 비중은 2017년 기준 5.8%로 1997년 대비 16.0%p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설계사는 30%p 증가한 40.7%임

〈그림 1〉 생명보험 설계사 수 추이 및 연령별 분포
 〈설계사 수 추이〉



〈설계사 연령별 분포〉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3) 등록설계사 기준이며(교차설계사 포함)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포함하지 않음(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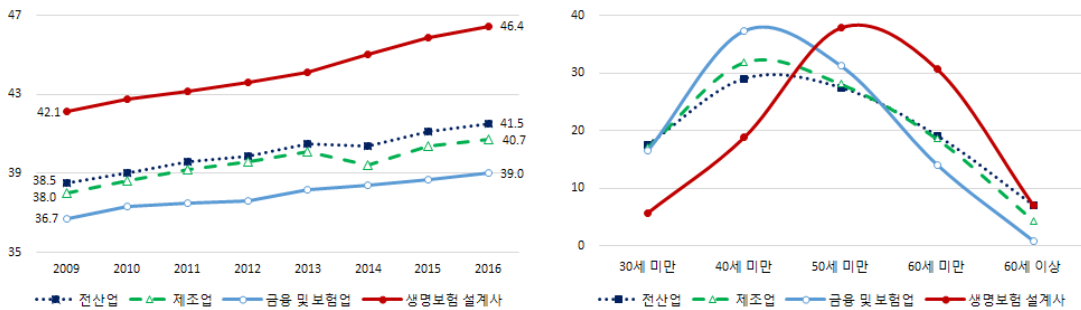
4) 과거 20년 동안(1997~2017년) 여성설계사는 5.3% 감소한 반면, 남성설계사는 3.3% 증가하였음

5)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 조직의 평균연령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생명보험 설계사 조직의 평균연령은 46.4세로 전산업 41.5세, 제조업 40.7세, 금융 및 보험업(설계사 제외) 39.0세에 비해 높음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연령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산업 1.1%, 제조업 1.0%, 금융 및 보험업 0.9%에 비해 생명보험 설계사는 1.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및 연령별 분포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추이〉 (단위: 세)
 〈산업별 근로자 연령별 분포(2016년)〉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국내 설계사 조직의 고연령화 현상은 성별, 회사 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첫째, 설계사 조직의 고연령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설계사 조직의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연령
남성	1997	49.3	34.0	8.9	4.6	3.1	33.1
	2007	18.5	52.1	26.2	2.9	0.3	36.6
	2017	15.3	29.1	30.7	19.6	5.3	42.1
여성	1997	20.4	44.6	23.1	9.2	2.7	37.9
	2007	5.4	34.1	43.2	14.9	2.3	42.5
	2017	2.9	14.0	37.5	36.2	9.4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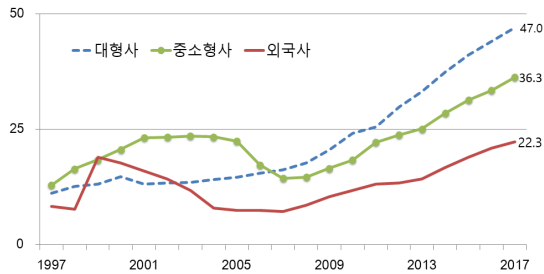
주: 평균 연령은 각 구간별 중위값을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50세 이상 여성설계사는 1997년 11.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기준 45.6%로 크게 증가함
 - 1997년에는 여성설계사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44.6%), 40대(23.1%), 20대(20.4%)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40대(37.5%), 50대(36.2%), 30대(14.0%) 순임
 - 남성설계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은 1997년 7.7%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기준 24.9%에 이룸
 - 1997년에는 남성설계사 인력의 주 연령대는 30세 미만(49.3%)이었으나, 현재는 40대의 비중(30.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회사 형태별⁶⁾로는 여성 중심 대규모 설계사 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형사 설계사 인력의 고연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 국내 대형사의 경우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1997년 11.1%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현재 47.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각각 36.3%와 22.3%임
 - 젊은 계층에 대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대형사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업조직 운영전략 구사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여성설계사 고연령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⁷⁾
 - 반면, 과거 고학력 젊은 남성설계사 중심의 영업전략을 추진하였던 외국사는 국내 대형사나 중·소형사에 비해 인력 고연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임
 - 특히, 외국사의 50세 이상 남성설계사 비중은 10.7%로 대형사(39.5%)에 비해 크게 낮음

6) 2017년 기준, 회사형태별 설계사 조직 규모는 대형사 74,434명(60.9%), 중·소형사 29,194명(23.9%), 외국사 18,562명(15.2%)으로 나타남

7) 매일경제(2017. 7. 14), “경단녀 보험설계사 신바람”; 머니투데이(2017. 9. 13), “‘투잡도 경단녀도 환영’ 설계사 모시기 전쟁”

〈그림 3〉 생명보험 회사 형태별 고연령 설계사 비중
 〈회사 형태별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 〈성별·연령별(20~30대 vs.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
 (단위: %) (단위: %)



구분		20~30대		50대 이상	
		2007	2017	2007	2017
대형사	남성	62.2	29.2	8.4	39.5
	여성	36.4	13.9	17.1	48.4
중·소형사	남성	76.7	47.2	2.3	21.6
	여성	41.3	21.1	19.6	41.6
외국사	남성	70.0	59.7	1.5	10.7
	여성	49.8	28.0	13.6	35.6

주: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동양생명은 중·소형사, ING생명은 외국사로 분류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3. 설계사 고연령화의 영향



- 연령과 생산성에 관한 다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후 경험축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나 일정 연령을 초과하면 육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성과가 하락하는 역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남⁸⁾
 - 다만,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설명 및 권유 등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고연령자의 개인적인 역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설계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복잡한 상품에 대한 이해와 설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⁹⁾
 - 젊은 설계사에 비하여 고연령 설계사는 상대적으로 신규 고객을 만나는 활동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가 예상됨
 - 생산성 측면에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고연령층 설계사가 현저하게 낮

8) Göbel & Zwick(2012); Ruzik-Sierdziński et al.(2013); Van Zyl(2013)(지은정(2017),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연구」, 『보건사회연구』, 37(3) 재인용)

9) 안철경(2009), 「보험 판매자의 고객지향성, 전문성 및 개별적 특성이 판매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8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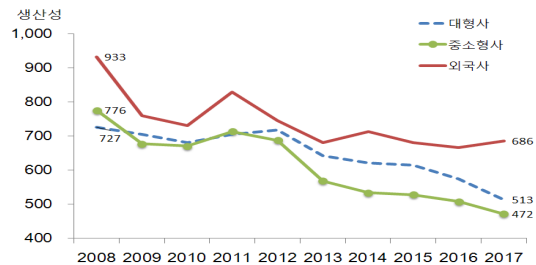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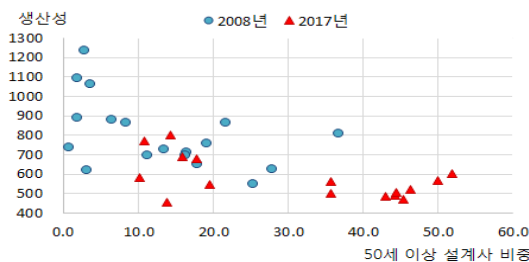
다고는 할 수 없으나¹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계약에 대한 생산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설계사의 고연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그림 3〉 참조)

〈그림 4〉 설계사의 고연령화로 인한 영향(50세 이상 설계사 비중 vs. 생산성)

(단위: %, 천 원/명)

(단위: %, 천 원/명)



주: 1) 생산성 = 월납초회보험료 / 가동 인원

2) 법인영업, 대리점, TM 실적자료를 제외한 전통적인 설계사(FP) 영업 실적을 토대로 산출

3) 은행계열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회사 월별교환통계 내부자료

-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이 점차 복잡화·고도화되고 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지식적 기반이 약한 고연령층 설계사가 비교적 단순한 상품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남

- 고연령층 설계사의 경우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상품 등에 대한 정보의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에 둔감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변액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다소 복잡한 상품보다는 정기보험이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같은 단순한 상품판매가 많은 경향이 있으며, 최근 들어 GA에서조차도 판매가 수월한 단기형(갱신형) 손해보험상품 판매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손해보험 보장성상품의 GA 판매비중은 2007년 14%에서 2016년(1~4월) 34.5%로 증가¹¹⁾

- 기존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더불어 젊은 설계사의 신규 유입이 저조하고 GA로 이동하는 경향이

10) 보험개발원(2013)의 채널별 손익분석에 따르면 설계사 채널의 수익성과 성장 기여도가 타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함

11) 보험대리점협회 내부자료(2017)

나타나면서 영업지점 분위기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존 설계사 중심 보험회사 영업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임

- GA소속 설계사 중 보험회사에서 이동해 온 비중이 88.1%(2011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¹²⁾ GA 설계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향후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저하가 우려됨
- 설계사의 평균 연령이 높은 지점의 경우 영업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침체되거나 역동적·적극적 영업 행태가 되지 못한 결과 손익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 고연령화가 진전된 회사들은 채널 포트폴리오가 고령의 여성설계사 중심이어서 젊은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장기적으로 연계판매 기회도 적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아울러 고객의 고령화는 보험회사의 손익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4. 보험회사의 향후 과제



- 전통적 설계사 중심의 보험시장 구조 변화를 예상하여 인력 및 조직체계 등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보험영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2000년 이후 다양한 채널의 등장과 최근 GA시장의 급성장으로 설계사 제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자문설계형 채널과 (단순)판매형 채널로 역할분담이 예상됨
 - 따라서 보험회사의 설계사 인력구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인력의 재배치를 포함한 효율적 인력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설계사의 고연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 신입 설계사의 지속적인 영입 및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임
 - 최근 국내 청년실업률¹³⁾이 급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양질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12) 안철경·황진태·서성민(20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보험연구원

13) 청년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2017년 9.8%로 9년 새 2.7%p 상승함(통계청)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보험대리인 인턴제도를 통해 고학력, 저연령 취업 희망자의 보험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저연령기에 보험전문인 자격 취득 후 지속적 판매실무와 보수교육을 통해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속채널조직을 구축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은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보험영업 인턴프로그램¹⁴⁾,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매니저 리쿠르팅¹⁵⁾, 3~40대 고능률 여성 조직 구축¹⁶⁾, 일정 기간 후 성과에 따른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고연령화에 대응하고 있음
- 특히 단기간 임금을 보전해 주는 단기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생산성 및 직업 안정성 제고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 설계사 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상품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른 완전판매를 위해서는 기존 고연령 설계사의 효과적인 재교육이 필요함

-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¹⁷⁾ 교육방식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으며, 내용도 주로 윤리교육과 법령교육이며 상품교육은 제도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음
-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구조, 수수료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완전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kiri](#)

14) 기존 남성설계사 조직이 대졸자 중심이었다면 최근 학력과 관계없이 채용 범위를 확대함

15) 세일즈매니저가 되기 위하여 6개월간의 보험영업의 훈련평가기간을 두고 6개월간의 평가를 통하여 일정 요건을 통과할 경우에는 세일즈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16) 3~40대 중심으로 유연한 출퇴근시간과 함께 일정기간(약 1.5년) 보장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17) 보험업법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공개변론을 열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심리하였음
 - 가동연한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만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실회의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그에 따라 일실회의 인정 규모도 커지게 됨
 -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직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음
-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나,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적용되고,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참고함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업에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동연한을 결정함
 - 반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장래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일실회의 산정함
 - 한편,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일종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그 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대수명(남자 67.5세, 여자 75.3세), 연금수급연령(60세)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보는 기존 판례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폐기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결 선고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기대수명은 당시 보다 10세 이상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며, 고령자가 생계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할 필요성도 커짐

-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실체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정신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및 정년 연장 압박,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조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가동연한 상향에 수반되는 보험료 조정,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배경



-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변경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음¹⁾

-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음

- 본고에서는 가동연한에 관한 기존 판례의 내용과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이 필요한지 여부 및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함

- 가동연한 상향 시 현재 일반적으로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 중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 압력이 문제될 수 있음

1)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판단함.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통상임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변론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

2. 가동연한의 의의 및 기능



■ 가동기간 및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시 일실회의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개념으로, ‘가동기간’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을 의미하고, ‘가동연한’은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함

- ‘일실회의’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극적 손해²⁾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임
-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되며, 남자의 경우 사고 전 이미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됨
- ‘가동연한’은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으로, 사고가 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더라면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최종 시점을 의미함

■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되면 가동기간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일실회의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되면, 상향된 만큼 가동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일실회의에 해당하는 손해(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 부상 시 휴업손해 등)의 규모가 늘어나게 됨

〈표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일실회의 증가 예시

구분	피해자	현행(만 60세)	변경(만 65세)	증감
사망 상실수익액	만 35세 일용근로자	2억7,700만 원	3억200만 원	2,500만 원
부상 휴업손해	만 62세 일용근로자	0원	1,450만 원	1,450만 원

자료: 대법원 공개변론 손해보험협회 발표자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됨.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 지출을 의미하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함.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의미하며, 일실회의, 일실회의금 등이 이에 해당함(사법연수원(2008), 『손해배상소송』, p. 108 참조)

3. 가동연한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 법원은 가동연한 결정과 관련하여 (i)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동연한을 결정하는 방법과 (ii)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

-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년이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경우 해당 직장의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그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등,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동연한을 결정하고 있음
 - 판례가 인정한 직종별 가동연한은 <표 2>와 같음
- 한편,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 만 60세, 의사의 경우 만 65세를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음
 -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은 개별적·구체적 가동연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표 2> 대법원 판례상 직종별 가동연한(1990년대 이후)

가동연한	직종	사건번호	가동연한	직종	사건번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¹⁾	91다9596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자	91다35243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선수	91다7385	63세가 끝날 때까지	농업 노동 종사자 ³⁾	92다18573
57세가 될 때까지	보육교사 ²⁾	2000다59920	65세가 될 때까지	수산물중매인 ⁴⁾	92다38034
60세가 될 때까지	민요풍 가요 가수	91다3888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	92다24431
	피복 판매상	91다14499		소설가	92다43722
	의복 제조·임가공업자	91다19494		의사 ⁵⁾	93다3158
	활어 구매·운송업자	93다6546		한의사	96다54560
	식품소매업자	93다12749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92다7269
	보험모집인	94다28536		변호사	92다37642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95다24364		목사 ⁶⁾	96다426
	송전전공	99다6302		승려 ⁷⁾	2004나42496

주: 표 기재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임

- 1)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가동연한이 종료한 이후에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적용
-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은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 3) 농업 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만 63~65세 사이에서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음
- 4)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 5)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한 판례도 있음(87다카376)
- 6) 목사의 정년이 경험칙상 70세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음(98다39114)
- 7) 서울고등법원 사건

자료: 사법연수원(2008), 『손해배상소송』, p. 192~195(해당 자료에 언급된 판례 중 1990년 이후에 선고된 판례를 발췌, 정리함)

■ 대법원은 1980년대까지 경험칙에 의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였으며, 그 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연장하였음

- 1980년대까지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³⁾
 - 경험칙에 의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뿐 아니라 직종별 가동연한 판단 시에도 육체노동 관련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사무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음⁴⁾
-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에 따른 사정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만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판례들을 폐기하였고⁵⁾, 이후 일용노동 종사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만 60세라고 판시하였음⁶⁾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일실회익을 산정해왔음

4.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확대 관련 쟁점 및 논의사항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 아동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

3)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 대법원 1966. 10. 11. 선고 66다1399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91다9 판결 등

4)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사건들을 보면, 채탄광부(70다269), 사진사(75다2278), 설계사무소 건축 보조사(80다54), 미용사(81다35), 중기 정비업자(82다카1297), 계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86다카2804), 개인택시 운전자(87다카2663) 등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개인회사 이사(76다156), 개인회사 전무(81다1151), 건설회사 기술사(80다754),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81다115), 암자 경영자(80다2089), 행정서사(86다카112),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87다카69) 등 사무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사법연수원(2008), 『손해배상소송』, p. 192)

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학생, 아동이어서 장차 성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용노임과 가동연한이 적용됨
 - 예를 들어 4세 남아가 수영장의 안전관리책임 소홀로 인해 익사한 사건⁷⁾에서,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기간을 ‘사망한 남아가 살아있었다면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고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
 - 또한 일반 육체노동과 유사한 특수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참고가 될 수 있음
 - <표 2>에서 살펴본 직종별 가동연한 중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의 가동연한은 대부분 만 60세가 될 때까지인데, 이는 대법원이 경험직상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한 이후에 형성된 판례의 경향임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만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⁸⁾
 - 따라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상향할 경우 전반적인 가동연한을 상향 및 이로 인한 일실이익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 대상 사건 두 건 중, 한 건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았고(서울고법 사건), 다른 한 건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음(광주고법 사건)⁹⁾
- 서울고법 사건의 경우, 수영장 익사 사고로 사망한 만 4세 5개월 남아에 대해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 및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
 - 광주고법 사건의 경우, 난간 파손으로 인하여 추락사한 만 49세 11월 남성에 대해, 사망 당시 종사하던 직업¹⁰⁾의 실제 소득 및 가동연한(만 65세가 될 때까지)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
 - 광주고법 사건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전 수행하던 조명 제품 판매업 및 전기공사 견적·점검업무의 성격, 피해자의 자격증 취득 및 실제 업무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업무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험직상 만 65세의 가동연한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¹¹⁾

7) 대법원 2018다248909사건(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이하, ‘서울고법 사건’)

8) 각주 4) 참조

9) 대법원 2018다271855 사건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15118 판결, 이하, ‘광주고법 사건’)

10) 피해자는 직원 1명을 둔 소규모 조명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전기공사 견적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11) 광주고법 사건에서 원심은, “전기공사업 및 조명제품 판매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지 않은 광주고법 사건이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에 학계에서는 가동연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손해배상 실무를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상향할 경우 과대배상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정년 및 가동연한을 통상 만 65~67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년 및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함¹²⁾
- 손해배상 관련 제도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비교우위를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의학적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생활비 지출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63세 내지 만 65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¹³⁾
- 급속한 고령화 현상 및 노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육체노동자의 경우 만 60세, 정신노동자의 경우 만 65세로 인정되고 있는 가동연한의 관행적 기준을 각각 만 70세 및 만 80세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¹⁴⁾
- 반면, 가동개시연령(20세), 가동일 수(도시: 22일, 농촌: 25일)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지 않고 가동연한만 연장할 경우 실제 손해보다 과대배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¹⁵⁾

■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7개의 관련 단체¹⁶⁾가 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대부분 가동연한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본 근거로, (i) 사망 당시 피해자가 만 49세의 남성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3세이며, 2016년 5월 경 전체 취업자 26,613,000명 중 55~64세 취업자의 수가 4,708,000명으로 약 17.69%에 이르고, 사고 후인 2017년 5월 경 해당 연령 취업자는 5,029,000명으로 증가한 점, (ii) 사고 이후 2017년 5월 경 피해자의 직종이 속한 건설업 종사자 약 203만 명 중 만 55~64세 종사자는 약 54만 9,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서비스·판매 종사자 약 603만 3,000명 중 만 55~64세 종사자는 약 120만 2,000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정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해자가 사고 전 실제 행하던 업무 중 전기공사 전직 및 점검업무의 경우 그 업무의 내용, 전기공사 자격증 취득 및 실제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만 65세까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판매업무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보다 더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아 만 60세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12) 최보국(2017), 「손해배상 시 고령자의 가동연령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9권, 제1호, p. 22~24, p. 34~35

13) 박영민(2011),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p. 55

14) 윤석찬(2009. 7), 「신체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법조』, p. 127

15) 법률신문(2018. 11. 22),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중 경수근 변호사 작성 부분 참조. 다만 이러한 반대의견은 가동연한 상향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가동개시연령, 도시 및 농촌 일용노임, 가동일 수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연한만 연장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16) 7개 단체 중 공무원연금공단은 특별한 의견이나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실제 회신을 한 기관은 6개임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은 가동연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증가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표 3〉 가동연한 상향 관련 대법원에 제출된 각계 의견

의견 제출 기관	의견 내용
통계청	가동연한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평균수명,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만 제출함)
대한변호사협회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¹⁷⁾
한국법경제학회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개시연령의 상향,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필요함 . 건강수명과 고령노동자 고용 증가 효과는 연령별로 차별적이므로, 몇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 ¹⁸⁾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 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산재 요양 승인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 등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가동연한 상향 시 공단에서 가해자로부터 추가 회수 가능한 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40억 원으로 추정됨
손해보험협회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 (휴업손해 영향 추가 고려 시 인상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하는 등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가동연한을 상향할 경우, 가동일 수도 사회·경제적 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있음. 가동일 수는 2017년 기준 건설업 17.6일, 제조업 20.7일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¹⁹⁾
금융감독원	가동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적 추세에 맞게 피해자의 소득 인정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과 보험료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대법원 보도자료(2018. 11. 29), “손해배상 가동연한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공개변론영상²⁰⁾ 및 각주 기재 자료 등 참조

17)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 전문: <https://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9016>

18) 관련 내용은 법률신문(2018. 11. 22),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중 홍정민 변호사(한국법경제학회 기획이사, 경제학 박사) 작성 부분 참조

19) 공개변론 시 제출된 손해보험협회 발표자료: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600&gubun=6&searchOption=&searchWord=>

20) <https://www.youtube.com/watch?v=xdWCalsXeXA>(재생시간 1시간 30분 경 부터)

5. 가동연한 상향 필요성



■ 대법원 공개변론에 제출된 각계 의견 및 이에 관한 학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5개²¹⁾ 기관 중 3개 기관은 명시적으로 가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유보적 의견을 제출한 2개 기관도 보험료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였으며 가동연한 연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아니었음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1950/1960년대와 1989년의 평균수명 및 정년 변화, 노령연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면 1989년과 2018년 사이에도 가동연한을 상향할 만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1989년 기대수명은 남자 67.5세 여자 75.3세인 반면 2016년 기대수명은 남자 79.3세, 여자 85.4세로 10년 이상 증가하였음
 -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2년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도 1989년과 동일하게 60세로 되어 있으나, 연금 수령을 65세 이상으로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가산하는 제도 및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60~65세의 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1969년생부터는 연금개시연령 자체가 65세로 변경될 예정임
 - 1950/1960년대, 1980년대 및 현재의 기대수명 및 정년 변화 등에 대해서는 <표 4>를 참조함

■ 1989년 이후 지난 30년간 경제적·사회적 변화 및 만 60세 이상임에도 생계 활동을 지속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의 상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경제 상황 및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의 생계 및 노후 대비,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소득활동을 지속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건강 증진 및

21) 7개 단체 중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 제외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 가능성이 제고된 측면도 있으므로, 가동연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광주고법 사건과 같이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별도의 정년이 없고 기술 및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표 4〉 1950/1960년대, 1980년대 및 2010년대의 기대수명 등의 변화

항목	1950/1960년대	1980년대	2010년대
기대수명	(1950)남자 51.12세, 여자 53.73세 (1960)남자 54.92세, 여자 60.99세	(1981)남자 63세, 여자 69세 (1989)남자 67.5세, 여자 75.3세	(2016)남자 79.3세, 여자 85.4세
정년 ¹⁾	55세	58세	60세
노령연금	해당 없음	- 연금수급연령²⁾ - 일반노령연금: 60세 - 특수직종사자: 55세 - 조기노령연금: 55세	- 연금수급연령³⁾ - (좌동) - 연기연금제도/소득활동 시 감액제⁴⁾ - 60세 이상~65세 미만 - 수급연령 상향 예정⁵⁾ - 일반노령연금: 65세 - 조기노령연금: 60세
고령 ⁶⁾ 생산가능인구 비중	해당 없음	(1989) 9.3%	(2018. 9) 21.1%

주: 1)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기준

2) 舊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3) 현행 국민연금법 제62조

4) 연기연금제도(국민연금법 제63조): 수급 시점을 65세 이후로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가산하는 제도

소득활동 시 감액제도(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수급대상자가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5)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6) 고령자 기준: 55~64세

자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76 판결; 법률신문(2018. 11. 22), “[자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국민연금법 등 참조

6. 가동연한 상향의 영향



■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현재 60세인 정년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청년 취업 문제 악화 및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경우 육체노동자는 만 65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 이러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사무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상향해야 한다거나, 현재 통상 만 60세인 사무직 종사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등 사회적 압박이 커지게 될 것임
 - 이는 일자리 문제와 결부되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려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가동연한 상향 논의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가동연한 상향은 보험약관 개정과 보험료 조정 등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정하여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 등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98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인배상 및 무보험차 상해 지급 기준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산출 시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하고 있고²²⁾,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산출 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 일수를 산정하지 않고 있음²³⁾
 -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상향될 경우

2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 월수 및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참조)

23) 위 기준(나. 부상, 3. 휴업손해 부분 참조)

위 약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또한,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보험료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가동연한 상향 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중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 및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지출 규모는 연간 1,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²⁴⁾²⁵⁾
 - 자동차보험 외에도 화재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액 및 보험료 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kiri**

24) 공개변론 시 제출된 손해보험협회 발표자료: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600&gubun=6&searchOption=&searchWord=>

25) 참고로, 가동연한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된 1990년대 초반에도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 자체가 대폭 확대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대인배상의 보상 한도는 1990년대에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사망에 대한 보상 한도의 경우, 1992년 1천500만 원, 1998년 6천만 원, 1999년 8천만 원, 2004년 1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그 후 2014년에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1992년 이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개정 내역 참조)). 현재는 90년대와 달리 대인배상 범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충분한 근거자료를 통한 설득 및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CHAPTER

04

보험경영

- | | |
|----------------------------------|---------|
| 1. 주요 인수어테크 기업 사례와 시사점 | 조영현 이해은 |
|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 황현아 |
| 3.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 조영현 이해은 |
| 4.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 김세중 김유미 |
| 5.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과 금리위험관리 | 임준환 |
| 6.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사이버 리스크 관리 | 변혜원 |
| 7.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 안철경 정인영 |
| 8.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 김규동 |
| 9.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비용 편익 분석 | 임준환 채원영 |
| 10.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 김석영 |
| 11.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 분석 | 조영현 이해은 |
| 12.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과 시사점 | 안철경 정인영 |
| 13.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 안철경 정인영 |
| 14. 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와 신용부도스왑 발행 | 임준환 문혜정 |
| 15.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 김석영 손민숙 |
| 16.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 및 시사점 | 임준환 문혜정 |
| 17. 빅데이터에 나타난 보험산업 | 김석영 정원석 |



주요 인슈어테크 기업 사례와 시사점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본고는 인슈어테크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Cuva사의 자동차보험과 독일 Clark사의 판매 및 중개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인슈어테크가 보험업의 사업모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인슈어테크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두 회사는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매년 공동으로 선정하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선정된 회사임
- Cuva사는 자가운전자이지만 정기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지인의 차량이나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기 혹은 주행거리연동(pay-as-you-go)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은 기존에도 공급된 자동차보험 상품이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차별되는 점은 소비자가 적시에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임
 - 또한 원가를 보험료, 수수료(commission), 관리비, 세금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주목할 특징임
- Clark사는 독일 최초의 디지털 보험중개회사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분석·평가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고객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어드바이저(adviser) 서비스를 제공함
- 두 회사가 구현하는 기술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임
 - 이들은 맞춤형 보험상품 및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며, 혁신적 기술은 이들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일 뿐임
- 기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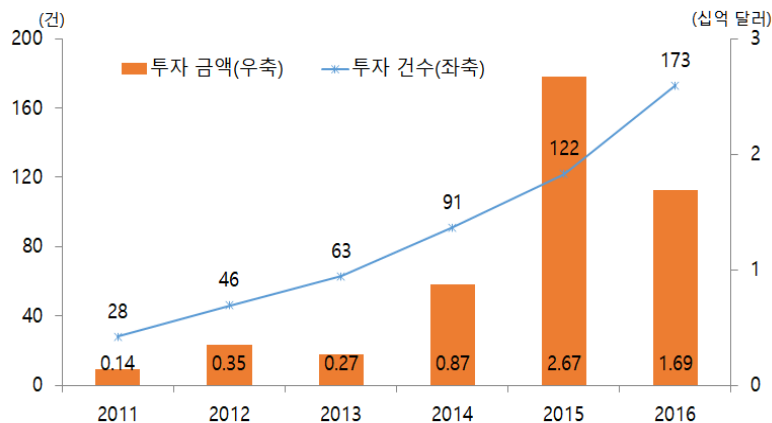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인슈어테크(InsurTech)¹⁾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1년 1.4억 달러에서 2016년 16.9억 달러로 증가함

● 투자건수 역시 2011년 28건에서 2016년 173건으로 증가함

〈그림 1〉 인슈어테크 투자 추이



자료: CB Insights(2017), "Insurance Tech Startups Raise \$1.7B Across 173 Deals in 2016"

■ 인슈어테크가 보험업의 사업모형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인슈어테크 신생기업(start-up)들은 보험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손해보험업(P&C)과 관련된 인슈어테크의 비중이 높으며, 사업별로는 보험 상품 판매와 관련된 인슈어테크의 비중이 높은 상태(〈그림 2〉 참조)
- 인슈어테크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험산업의 흐름을 뒤바꿀만한 인슈어테크 기업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현실임

1)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고하는 기술을 핀테크(Fintech)라 지칭하고, 이 중 보험서비스 제고와 관련된 기술을 인슈어테크(InsurTech)라 함

- Braun and Schreckenberg(2017)²⁾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슈어테크 기업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접근 방식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기존 보험회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함
-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거나 P2P(peer-to-peer) 방식의 위험전가 모델을 제시하는 인슈어테크가 그러한 사례일 수 있음

〈표 1〉 분야별 인슈어테크 분포

(단위: %)

구분	상품 개발	마케팅	판매	보험료산정 및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합계
손해보험	8	4	17	10	7	46
건강보험	5	3	11	8	6	33
생명보험	3	2	9	5	2	21
합계	16	9	37	23	15	100

자료: McKinsey&Company(2017), "Insurtech - the threat that inspires"

- 본고는 인슈어테크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인슈어테크 선도 기업은 KPMG와 H2벤처스가 공동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을 참조함

2. 주요 인슈어테크 기업



-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는 매년 공동으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함³⁾
- 100대 기업은 혁신성, 자본조달, 기업규모 및 국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50대 선도 핀테크 기업'과 혁신적 기술로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50대 이머징(emerging) 스타 기업'으로 구성됨

2) Braun and Schreckenberg(2017), "The Current InsurTech Landscape: Business Models and Disruptive Potential", University of St. Gallen

3) KPMG(2017. 11), "2017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 핀테크 100대 기업의 서비스 분야는 대출(32개)과 지급결제(21개), 금융 및 펀딩(15개), 보험(12개), 자산관리(7개), 레그테크⁴⁾ 및 사이버보안(6개), 블록체인 및 디지털통화(4개), 데이터 분석(3개) 등임

■ 이 중 보험업 관련 회사의 대다수는 헬스케어 및 건강보험 혹은 보험판매 및 중개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12개의 보험업 관련 회사 중 4개사는 헬스케어 및 건강보험을, 5개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비교, 보험판매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안(ZhongAn)보험은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회사로 2015년 1위, 2016년 5위, 2017년 2위에 선정되는 등 인슈어테크를 주도하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음⁵⁾

〈표 2〉 주요 인슈어테크 회사

구분	분류	회사명	국적	설립연도
50대 선도 핀테크 기업	맞춤형 손해보험	ZhongAn	중국	2013
	헬스케어 및 건강보험	Oscar	미국	2013
		Clover	미국	2013
		League	캐나다	2014
		Alan	프랑스	2016
	판매 및 중개	CompareEuropeGroup	영국	2015
50대 이머징 스타 기업	판매 및 중개	Clark	독일	2015
		Cover Genius	호주	2014
		CoverWallet	미국	2015
		Sherpa	몰타	2016
	자동차보험	Cuvva	영국	2014
	소액보험	GrassRoots	케냐	2016

자료: KPMG, 2017 FINTECH 100

■ 본고는 50대 이머징 스타기업에 선정된 영국 Cuvva사의 자동차보험과 독일 Clark사의 판매 및 중개 서비스 사례를 살펴봄

4)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법규준수와 내부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지칭함

5) 중앙보험의 인슈어테크 사례에 대해서는 최창희·이규성·한성원(2017), “중국 중앙보험 인슈어테크 사례의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람

- 건강보험 분야는 각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기업사례



가. Cuvva

- 영국 교통부와 운전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따르면 도시에서 1년에 4,000마일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 규모는 약 6백만 대 수준임
 - 이러한 사실은 단기 자동차보험 수요가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Cuvva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가운전자이지만 정기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지인의 차량이나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공급함
 - 최초로 공급한 자동차보험은 카셰어링 관련 상품이었고, 이후에 자가운전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함
 - 카셰어링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을 1시간부터 28일까지 선택할 수 있음
 -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은 현저하게 낮은 월보험료를 지불하고, 차량 사용 시간당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주행거리연동(Pay-as-you-drive) 방식임
 - 향후 택시운전자를 위한 보험도 제공할 예정임
- 자가운전자 가운데 주행시간이 적은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상품에 비해 50% 이상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⁶⁾
 -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등 운행시간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과 보험료 차이가 없을 수 있음
 - 한편, 가입 가능한 최대 차량가액은 4만 파운드이고 차령은 15년 미만, 운전면허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이 경과한 운전자들이 가입 가능함

6) The Telegraph(2017), "Pay-as-you-go car insurance - how British drivers could save thousands every year"

■ 그런데 Cuvva사의 자동차보험상품은 기존 보험회사들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단기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에 DayInsure와 같은 전문보험회사들과 대형 보험회사들이 공급하고 있었으며,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도 이미 기존 보험회사들이 제공한 상품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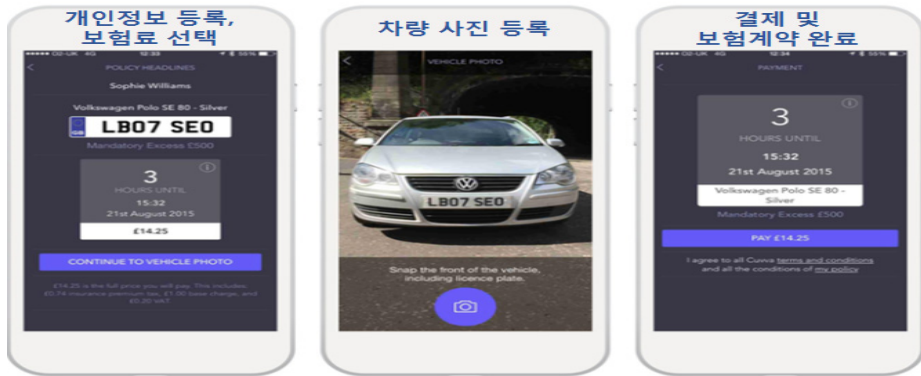
■ Cuvva사의 혁신성은 이러한 기존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적시에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점임

- 기존 보험회사가 공급한 상품은 절차 및 약관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높았으나, Cuvva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빠르고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함
 -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 수수료(commission), 관리비, 세금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주목할 특징임
-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주행거리연동 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장치를 이용하여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Cuvva사는 운전자가 선택한 주행시간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점이 차이점
- 또한, 고객지원서비스는 근무시간 중 10분 내에 응답하고, 클레임팀은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 Cuvva의 카셰어링 단기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약을 체결함

- 먼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 받은 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등록함
- 다음으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계약시간에 따른 다양한 보험료 견적이 제공됨
- 계약시간을 선택하고 차량 사진을 등록한 후,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됨

〈그림 2〉 Cuvva의 자동차보험 계약과정



자료: Daily Fintech(2015), "Cuvva launches an InsurTech app for short term, instant car insurance"

나. Clark

■ 독일 최초의 디지털 보험중개회사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결합하여 고객의 기존 보험상품을 분석·평가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안함

- 고객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함
 - 블룸버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50대 신생기업(start-up) 중 하나로 선정됨⁸⁾
 - 독일에서 가장 공정한(fairest) 디지털 보험 어드바이저로 선정되기도 함⁹⁾

■ 이들은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보험수요를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를 추천함

- Clark 앱 또는 웹 사이트(<https://www.clark.de>)를 통해 고객의 기존 보험상품을 신속하게 분석·평가함
- 독일 내 160개 이상의 보험회사 상품 중 고객의 개별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며, 요청에 따라 컨설팅도 제공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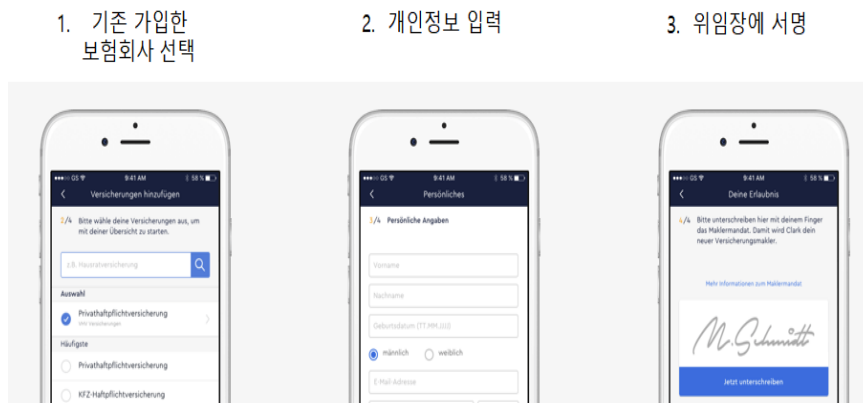
7)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을 말함

8) Bloomberg(2017. 3. 6), "These Are the 50 Most Promising Startups You've Never Heard Of"

9) Clark사 홈페이지 참조

- 며, Clark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commission)까지 투명하게 공개함
- 고객이 Clark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는 않으며, 최근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함¹⁰⁾
 - Clark사는 인터넷 은행 ING-DiBa, 모바일 은행 N26 등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어 자사 플랫폼에서 제휴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휴 회사의 플랫폼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그림 3〉 Clark의 서비스 가입 과정



자료: Clark 홈페이지

4. 결론 및 시사점

■ 두 회사가 구현하는 기술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임

- Cuvva사나 Clark사가 공급하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는 기존에도 존재하였던 것이며, 그들이 활용하는 기술이 독점적인 것도 아님
-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 Clark newsroom(2017. 4. 12), "Leading German online bank ING-DiBa and insurance robo-advisor Clark join forces and announce cooperation"

- 이들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 혹은 판매수수료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함
 - 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Braun and Schreckenberg(2017)가 지적하였듯이 기존 보험회사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요소임
 - 이들의 영업기간이 아직 짧아 향후 성공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IT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에게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긍정적인 언론 및 소비자들의 평가도 적지 않게 발견됨¹¹⁾
- 기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현행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가 적시에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슈어테크 기업이나 IT 기업과의 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kiri**

11) Cuvva사의 경우 <http://www.reviews.co.uk>에서 여러 소비자들의 간단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 금융회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임
 -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됨
-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또는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향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¹⁾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침을 밝힘에 따라²⁾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1월 31일 현재 자산운용회사 21개사와 자문사 2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³⁾ 자산운용회사 39개사, 보험회사 2개사(KB생명, KB손보), 증권회사 3개사, 은행 1개사가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임⁴⁾
-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표제부터 매우 낯설고, 그 규범으로서의 형식(자율규제, 연성규범)과 내용(원칙 중심의 추상적 내용)이 기존의 금융 규제 및 지배구조 규제와는 상이하여 과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 및 투자대상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상황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관투자자가 갖는 자산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1) 연합뉴스(2017. 11. 9), '최종구,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회...“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시 인센티브”)'

2) 연합뉴스(2017. 12. 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http://www.cgs.or.kr/index.asp?MenuIndex=E&SubIndex=1>)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현황(2018년 1월 31일 기준) 참조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현황(2018년 1월 31일 기준) 참조

- ‘스튜어드십’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시 고객 또는 최종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감시 및 관여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함⁵⁾⁶⁾
- 현재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전략, 실적, 위험, 자본구조, 지배구조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여, 의결권 행사와 같은 대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⁷⁾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이고 참여 여부도 선택사항이나, 2010년 12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인가투자운용회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여부 및 미가입 시 대안을 보고하도록 한 이후 참여가 확산⁸⁾되어 현재 약 27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음⁹⁾¹⁰⁾

■ 일본은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26일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책임 있는 기관투자자 제원칙)를 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금융청이 참여 기관투자자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

-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나 그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기초를 둔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 등을 통해서 당해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수익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¹¹⁾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반면,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아베 정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²⁾

5)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는 극히 영국적인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령, 계약 등에 의해 성립되는 위·수탁 관계에 국한된 개념인 ‘수탁자’라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에서 투자시술에 관여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효용이 있어 현재는 영국, 미국은 물론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6) 정윤모,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03, p. 71~72

7)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and the Code 4

8) 정윤모(2016), p. 76~66

9) 영국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홈페이지(<https://www.frc.org.uk/investors/uk-stewardship-code/uk-stewardship-code-statements>)(2018. 2. 6. 기준) 참조

10) 참고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회사는 2011년 234사, 2012년 259사, 2013년 290사, 2014년 295사로 증가하였으나(대신증권 지배구조연구실(2015. 8. 5),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에 대한 제언’, p. 14), 최근 270사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11)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1, 지침 1-1

12) 정윤모(2016), p.79, 간사꾸히로유키(神作裕之)(2016. 6),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 기업법연구, 제30권 제

■ 미국은 노동부의 수탁자 규제(fiduciary rule) 도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017년 1월 투자자 스튜어드 그룹(Investor Steward Group: ISG)이 출범하였음

- 오바마 정부의 노동부는 고객이익 최우선 및 수수료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탁자 규제(fiduciary rule) 도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위 규정 도입이 연기되었음
- 그 사이 기관투자자들은 자율규제 형식의 투자자 스튜어드 그룹(ISG)을 출범시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는데, 수탁자 규제라는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를 도입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¹³⁾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정 및 주요내용



■ 2016년 12월 16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었고,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임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및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 내용도 세부적인 행위 규범이 아닌 원칙 중심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15년 3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출범한 후, 수차례 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2015년 12월 1차 초안이 공개되었고, 이후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코드 제정 취지에 따라 2016년 8월 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제정위원회를 재편하여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¹⁴⁾을 출간하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5% 룰)¹⁵⁾ 개정을 추진¹⁶⁾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호(통권 제65호), p. 54 등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대부분의 자료에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음

13) 신장섭(2017. 12. 21),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정책 대안 -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한다’: 김중석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p. 67

14)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문제(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 공동보유 문제 등)에 관한 해석 지침

15) M&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이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상장회사 보유 지분 비율이 5%가 넘을 경우 그 주주로 하여금 이후 주식 변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로써, 경영 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엄격한 공시의무가 적용되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보고의무가 적용됨

■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는 (i) “원칙”¹⁷⁾ 도입의 목적과 의의, (ii) “원칙”의 적용, (iii) 7개의 원칙 및 각 원칙별 안내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투어드십 코드는 세부적인 행위 규범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범을 표방하고 있어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의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실하고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함 - “원칙”의 목적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것임 - 기관투자자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와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 구별됨¹⁸⁾
“원칙”의 적용		- 원칙은 한국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적용하며, 의결권 자문 기관, 투자자문사에게도 적용됨 -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여를 선언한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적용되며, 참여 기관투자자들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설명 및 공개하여야 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원칙에 대한 참여 및 이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원칙	원칙 1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공개
	원칙 2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제정 및 공개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주기적 점검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의 세부적 지침 마련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공개/의결권 행사내역 및 그 사유 공개
	원칙 6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
각 원칙별 안내지침 (생략)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9),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자들 앞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개최’

17)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의미함

18) 자산운용자는 자산운용, 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함.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함. 자산소유자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지시·평가 등 수단을 활용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자산소유자의 주요유형임(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 도입의 목적과 의의 6)

4.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찬반론



-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¹⁹⁾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제시됨²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효용이 없다는 점,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특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음²¹⁾
 -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초 도입국인 영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 행동주의’ 내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탈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나 근로자 등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이는 연금을 통해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연금사회주의’²²⁾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i) 자율규제 형식을 떠나 사실상 정부 주도의 규제라는 점, (ii)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개혁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20) 원종현(2017. 12. 28),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315

21) 이하의 내용은 신장섭(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점임

22) ‘연금사회주의’는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며 연금이 집합적으로 미국 기업의 최대주주이자 최대 채권보유자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개념으로,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이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에서는 행동주의적 경향을 보인 일부 연금들의 비효율성과 관한 남용이 문제되고, 공공연금이 주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해 연금사회주의가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음(신장섭(2017), p. 71)

의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되는 점, (iii) 국내 대기업의 대주주이자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이 앞장서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왜곡된 형태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비판하고 있음

■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기관투자자를 단순한 주주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볼 수는 없고,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현재 기업 경영에 대한 각종 감시 장치(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제도,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제도 등)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 장치로서 기관투자자 및 투자대상회사 양측 모두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게 됨
 -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종전 cut-and-run²³⁾형식의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데 배분할 경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됨
 - 투자대상 회사의 입장에도 주주총회, 공시 등 기존 제도에 더하여 개별 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의 경영 관여에 일일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논의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감시·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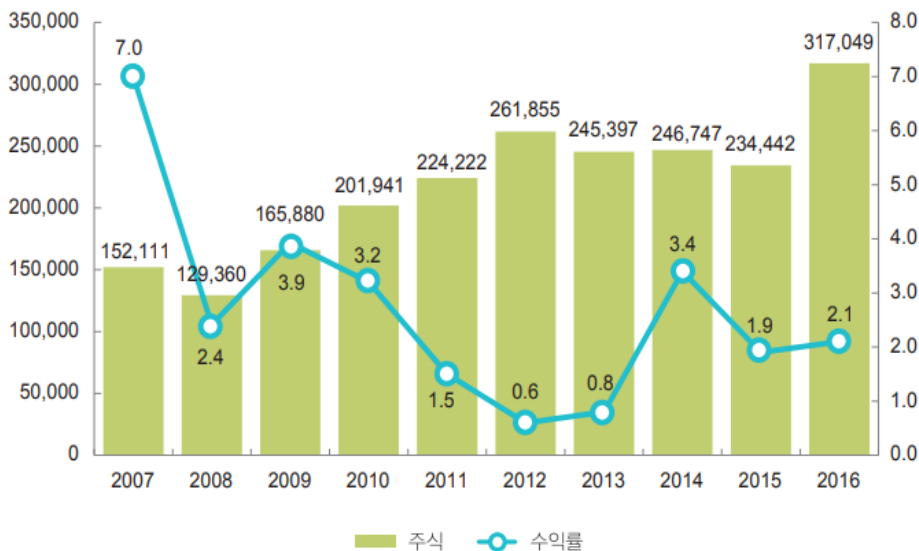
- 보험산업의 2017년 1/4분기 기준 일반계정자산 중 주식 비중은 생명보험 4.3%, 손해보험 2.85%임²⁴⁾

23) 투자대상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보유 지분을 정리, 매각하는 방안

- 규모로는 각각 28조 1,181억 원(생명보험) 및 6조 7,562억 원(손해보험)에 이르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자금 규모(2016년 말 기준 122조 6천억 원)과 비교해 볼 때에도 상당한 금액임

〈그림 1〉 주식투자 추이(생명보험)

(투자금액: 억 원, 수익률: %)



출처: 『2017 생명보험 Fact Book』, 통계 4-3, 주식투자 추이

-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상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산소유자에 해당하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직접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KB생명과 KB손해보험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임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자뿐 아니라 자산소유자도 자산운용자에 대한 지시·평가 등을 통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²⁴⁾ 보험회사도 이러한 범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4) 보험연구원(2017), 『보험동향』, 2017 여름호, p. 70, p. 92

25)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6

■ 한편, 보험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점검·관여를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짐

-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의 보험회사(상장)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기관투자자의 보험회사(상장) 주식 보유 현황

회사명	최대주주 지분율*	기타주주**		국내 기관투자자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한화생명	45.00%	Lazard Asset Management LLC	18.15%	예금보험공사	12.50%
삼성생명	47.03%	이마트	5.88%	국민연금	6.11%
삼성화재해상	18.51%	Genesis Asset Managers LLP	5.16%	국민연금	9.11%
현대해상	24.55%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	6.94%	국민연금	7.91%
		BlackRock Fund Advisors	5.61%		
DB손해보험	23.26%	Matthews International Funds	5.09%	국민연금	8.97%

주: 상장 보험회사 중 기관투자자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함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게시된 각 회사의 분기보고서(2017년 3/4분기) 중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지분율: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한 지분율

** 기타주주: 대상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국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주주

- 〈표 2〉를 보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국내 상장보험회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현재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한 점검 및 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투자대상회사로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비한 적절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6. 결어



■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기관투자자 수익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연금 등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임

- 다만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각종 경영감시제도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보험회사들은 기관투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지위와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장 보험회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의 자금 배분을 목표로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힘
 -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임
- 본고는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개편이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최근 개편안과 유사한 2012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의 영향과 비교·분석함
- 2012년도 조정안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던 점이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대출관련 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분석배경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함¹⁾
 -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 위험을 제어하며,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 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힘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담보 인정비율(LTV) 60% 초과, 만기 시 원금상환 10% 미만)의 위험계수를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를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함
 - 연체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당국은 이러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4%p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함
- 아울러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임
 - 현행 보험회사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경감은 LTV 50% 이하 부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음
 - 즉, 기업대출 위험계수는 LTV 50% 이하 부문에 대해서는 6%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9%를 반영함
 - 향후에는 LTV 비율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DSCR)도 감안하여 DSCR이 1.4를 초과할 경우 위험계수를 4.5%로 추가적으로 하향 적용하며,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LTV 부문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2),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은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해당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누어 구함

■ 본고는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개편이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최근 개편안과 유사한 2012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의 영향과 비교하여 분석함

2. 2012년 대출관련 자본규제 개편의 영향



■ 금융당국은 2012년에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음²⁾

- 2011년 6월 말 은행권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안³⁾ 발표 이후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되는 풍선효과 발생
-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2012년 2월 말 발표함
 -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4%에서 2.8%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거치식, 다중채무자)은 1.4%에서 4.0%로 상향 조정
 - 또한,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
 - * 정상: 0.75% → 1.0%, 요주의: 5% → 10%, 회수의문: 50% → 55%

■ 이러한 보험업권에 대한 가계대출 대응방안은 위험계수의 상향 조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유사함

- 다른 점은 2012년의 경우 제1금융권에 대한 대책 발표 후 8개월 후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최근의 대책은 모든 금융권에 대해 동시에 유사한 규제를 적용한 것임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2. 27),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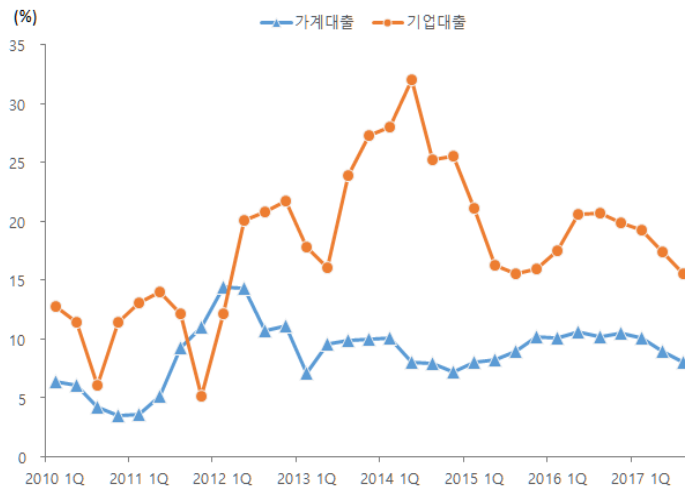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 6. 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또한, 2012년 대응책에는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름

■ 2012년의 대응책 발표 이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총액의 증가율은 둔화되었음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발표 이후 상당기간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2년 1/4분기 14.4%에서 2013년 1/4분기 7.1%까지 하락함
-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이후 급증함
 -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PF대출이 급증했던 것이 기업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림 1〉 보험회사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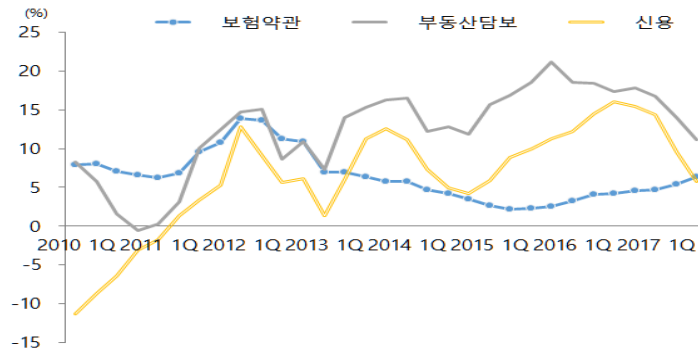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가계대출을 부분별로 살펴볼 때, 정책에 의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 반면, 보험약관대출은 2015년도까지 증가율이 둔화되어 보험회사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에 기여함

-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위험계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둔화되었는데, 이는 보험계약대출의 기준금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율⁴⁾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그림 2〉 보험회사 주요 가계대출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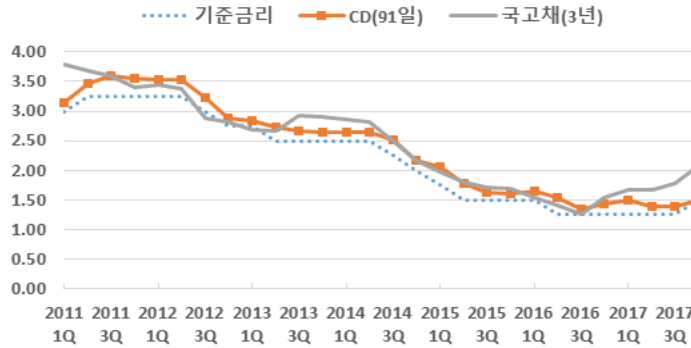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던 점이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주택가격지수⁵⁾는 2011년 1월 89.0에서 2012년 2월 94.3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년 동안 92.3~94.4의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함
- CD금리(91일)는 2012년 1/4분기 3.54%에서 2014년 1/4분기 2.87%까지 하락하여 대출수요가 억제되기 어려웠음

4) 보험회사는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율(부리아율)이 금리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음

5) 2007년 11월 100 기준임;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그림 3〉 금리 추이



주: 분기별 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에 발표한 종합대책⁶⁾에서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밝힘
 - 이전 정부의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를 탈피하고, 수요창출-공급억제로 방향을 전환함
- 이후 2014년 7월⁷⁾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이하 DTI)을 완화하고 9월⁸⁾에는 재건축연한 및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였음

3. 최근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



■ 가계대출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억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규제 개편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 것으로 보임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4.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 7. 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 9. 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 2012년에는 고위험 가계대출은 물론 일반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번 규제 개편 방안은 ‘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임
 - 금리추세, 부동산정책 기조, 보험회사의 자본여력 등에서 2012년과 2018년은 상이하며, 대출수요 및 보험회사의 대출공급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전 금융업권에 유사한 개편 방안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한 것도 2012년과 다른 점
- 보험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자본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규제(RBC)의 강화 및 향후 도입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및 요구자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임
- 그러나 보험회사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는 이번 자본규제보다는 향후 금리 변화와 부동산 가격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12년의 경우 안정적 부동산가격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의해 자본규제 강화에 의한 대출억제 효과가 단기에 그쳤음
 - 정책적 요인 이외에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서는 저금리 기조, 은행의 대출전략,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있음⁹⁾
-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과거 금리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될 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¹⁰⁾
 - 가계부채 역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단, 만약 투기수요를 강하게 억제하고자 하는 부동산정책 기조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하락 혹은 안정된다면, 가계대출이 좀 더 이른 시점에 감소할 수 있을 것임

9) 박창균(2016),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대응」, 『부동산 포커스』

10) 김천규(2017),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향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음
- 2012년의 경우 기업대출을 유인하는 정책은 없었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PF대출 및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최근의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
-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국내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자본규제 개편으로 보험회사가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음
-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FRS 9 적용 시 금리상승기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량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기업회계상의 자본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음 [kiri](#)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확대 전략으로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 보증위험도 커지고 있음
 - 변액보험 판매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판매가 두드러짐
 -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변액보험 보증위험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상품설계 변경과 자산운용 등으로 보증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한 동적 헤지도 일부 활용됨
 - 보증수수료가 없고 원금보장이 가능한 변액연금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채권투자 비중을 조절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해짐
 - 파생상품을 통한 동적 헤지는 일부 보험회사만이 활용 중임
-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방법이 발전하였으며, 상품구조 및 자산운용 방식 변화, 동적 헤지의 정교화, 리스크관리 위원회 도입과 함께 지수연계형연금(EIA) 확대 등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종합적인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수연계형연금(EIA)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도 장기적으로는 동적 헤지를 확대하고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등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액연금보다 보증위험이 적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연계형 연금(EIA) 등으로 연금보험의 상품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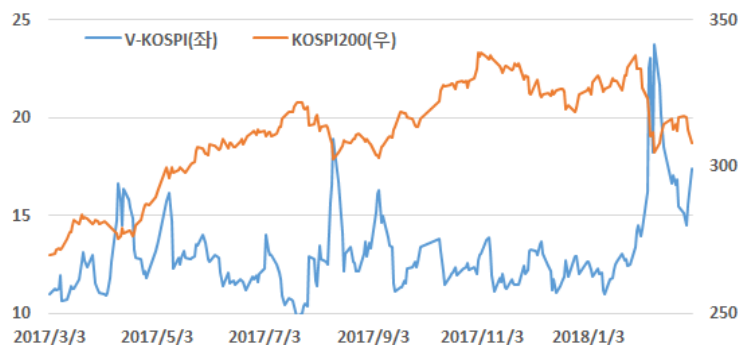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확대 전략과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로 변액보험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IFRS 17 시행 시 자본변동성 부담이 큰 일반 저축성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며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 확대를 추진 중임
-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던 KOSPI 지수가 2016년 2000선을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18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가 금리인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를 상회하고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2018년 2월 크게 하락하였으며, KOSPI 200의 변동성 지수인 V-KOSPI 지수도 20을 상회하면서 급등함

〈그림 1〉 주가지수 및 변동성지수 추이



자료: KRX

-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높아짐

- 본고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의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현황과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2. 변액보험 및 보증위험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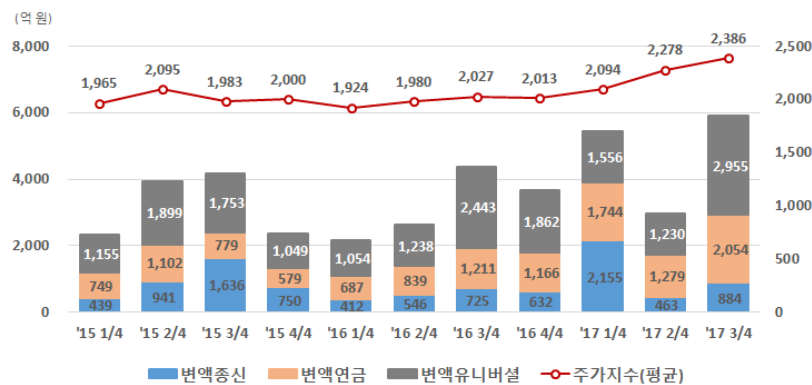


- 2016년 이전까지 정체를 보이던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변액연금 확대전략과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소비자 관심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는 변액연금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짐

- 변액보험은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에서 일반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주가지수의 상승세로 변액보험 수요도 확대됨

- 특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최저중신중도인출금보증(GLWB) 등 다양한 보증옵션을 제공하는 변액연금의 초회보험료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2〉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업무보고서

■ 그러나 변액연금을 포함한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보증옵션은 보증위험이 존재하며, 최근 보증위험이 큰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이 증가하면서 보증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됨

-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최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2015년 4/4분기 3조 6천억 원 수준에서 2017년 3/4분기 4조 6천 원으로 26.2% 증가함
-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으로 2017년 3/4분기 전체 보증준비금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 6.5%, 최저중도인출금보증과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이 각각 0.4%, 0.3%를 차지함
- 이 중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은 종신까지 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중은 크지 않으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1〉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원)

구분	2015 4/4		2016 4/4		2017 3/4	
최저연금적립금보증	4,053	11.0%	4,895	9.6%	3,025	6.5%
최저사망보험금보증	32,236	87.8%	45,563	89.5%	42,967	92.7%
최저중도인출금보증	345	0.9%	290	0.6%	164	0.4%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18	0.0%	55	0.1%	119	0.3%
기타	84	0.2%	96	0.2%	94	0.2%
합계	36,736	100.0%	50,899	100.0%	46,369	100.0%

자료: 업무보고서

■ 과거에는 보증위험 헤지를 위한 자산과 보증준비금 평가방식의 불일치 문제로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증위험의 헤지는 이루어지지 못해왔으나, 2015년 시행세칙 개정 이후 일부회사가 동적 헤지¹⁾를 시작함

- 2015년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헤지하더라도 해당 자산과 보증준비금에 대한 평가방식이 상이하여 헤지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1) 동적 헤지(Dynamic Hedge)는 자본시장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자산을 시장 상황에 따라 사고 팔면서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방법임

- 감독당국은 2015년 보험감독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헤지 대상 계약에 대해 자산과 부채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016년 공정가치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서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동적 헤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됨
 -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회사만이 보증위험에 대한 동적 헤지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회사는 적극적 헤지보다는 준비금의 적립으로 대응하고 있음
- IFRS 17 도입 시 헤지 자산과 보증준비금 평가방식 간의 불일치 문제는 해소될 것이며, 동적 헤지를 통한 보증위험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IFRS 17이 2021년 시행될 경우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헤지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방식이 공정가치평가로 통일되면서 평가방식 차이 문제는 해소될 것임
 - 자산과 부채 평가방식 차이가 해소될 경우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동적 헤지가 일반화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배분을 통해 보증위험이 없고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변액연금 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보증위험을 경감함
-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의 자동 재분배를 통해 원금보장이 가능한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음
 -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는 변액연금의 경우 채권투자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위험이 제한적임
 - 한편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수수료가 없는 변액연금도 출시되고 있으며, 달러 변액연금의 경우 특별계정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위험이 작은 상품으로 볼 수 있음

3. 미국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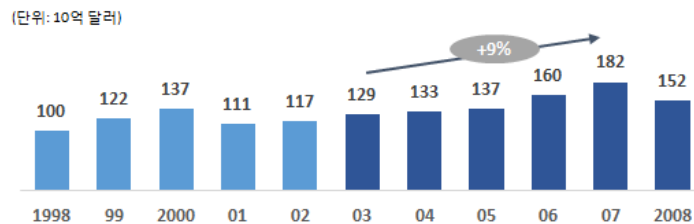


- 변액연금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 최저중도인출금보증(GLWB)이 개발된 후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액연금 판매가 급증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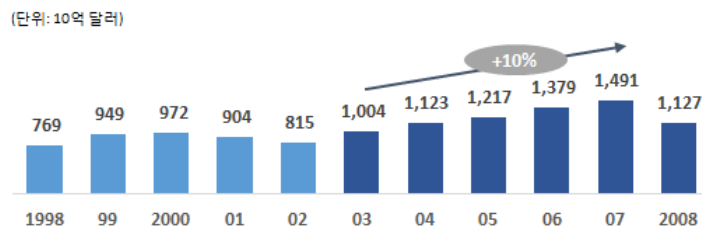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2000년대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과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이 개발되었고, 2005년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이 추가로 개발되면서 종신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변액연금 수요가 크게 확대됨
- 변액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경쟁적으로 변액연금 판매를 확대하였음
-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보증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증위험 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동적 헤지를 일반적으로 활용함

〈그림 3〉 2008년 금융위기 전 미국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및 자산 추이

(a) 초회보험료



(b) 자산



자료: LIMRA survey(1998~2007); Morningstar(2008), analyst report

-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보증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증위험 관리가 어려워짐
- 2008년 금융위기로 주가지수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주식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는 20% 수준에서 2008년 가을에는 80%까지 급등함
- 이로 인해 변액연금 보증위험 헤지를 위해 활용되는 파생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헤지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2) McKinsey(2009), "Responding to the Variable Annuity Crisis"

■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보증수수료를 높이고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변액연금 보증위험을 관리함³⁾

- 과거와 동일한 구조의 변액연금은 보증수수료를 높였으며, 보증구조를 단순화한 신상품의 경우 보증위험을 낮춤으로써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였음
- 보증위험 축소를 위해 보증수준이 국채금리에 연동되는 구조를 활용하거나 보증수수료를 변동성 지수인 VIX에 연동하도록 하여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자동적으로 보증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를 도입함
- 또한 최저종신중도인출금이 지급되기 전 의무 적립기간을 두도록 하고 계약자의 주식투자 비중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계약자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억제하는 방안을 활용함

■ 보험회사들은 상품구조 변경 이외에 동적 헤지전략을 정교화하고 리스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을 확충함

- 보험회사는 보증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자본시장에서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보증위험을 동적으로 헤지하며, 헤지가 용이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위험 모니터링 빈도를 확대하는 등 동적 헤지 전략을 정교화함
- 보험회사는 재무팀, 상품개발팀, 헤지팀, 계리팀 등 변액보험 보증위험과 관계된 부서의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델링 및 분석 역량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극단적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고, 변액보험 비중이 높은 회사는 상품군을 다양화함으로써 위험 집중도를 낮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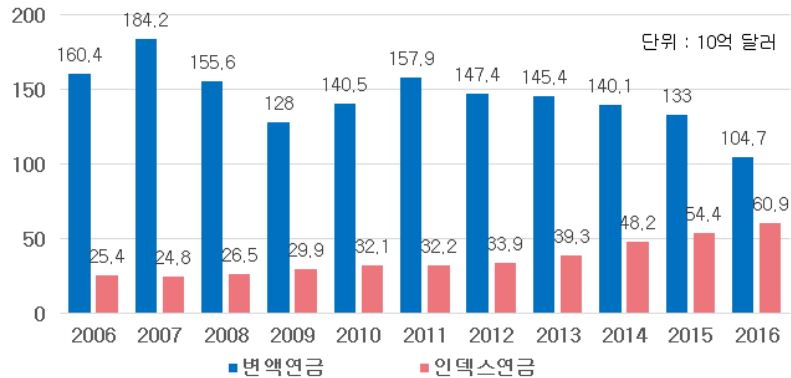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연계형연금(Equity Indexed Annuity: EIA) 수요가 증가하였고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비해 위험이 적을 수 있는 지수연계형연금을 확대함

- 지수연계형연금은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주가지수 상승률이 최저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연금상품이며, 추가 수익률 제공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

3) Prudential(2010), "The Importance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in Today's Variable Annuity Market"

- 금융위기 이후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지수연계형 연금의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4> 참조)

〈그림 4〉 미국 변액연금 및 인덱스 연금 초회보험료 추이



4. 시사점

-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비중과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보증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저축성보험 수수료제도 변화, IFRS 17 시행, 보장성보험 포화 등의 요인으로 생명보험 회사의 변액보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변액보험은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보증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이후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동적 헤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IFRS 17 시행 시에는 파생상품을 통한 동적 헤지 수행에 제약이 사라질 것임
- 현재 일부 보험회사들은 상품구조 및 자산운용 방식 변경 등 상품차원에서 보증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몇몇 보험회사만이 동적 헤지를 활용함

■ ■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방안은 제한적인 상품구조 변경, 동적 헤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거버넌스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품구조 변경, 동적 헤지의 정교화, 리스크 거버넌스와 같은 종합적인 위험관리 전략을 강구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하고 위험이 적은 상품구조 변경을 통한 보증위험 관리 전략이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동적 헤지의 경우 도입 초기단계에 불과한 상황임
- 그러나 미국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는 재무팀, 상품개발팀, 헤지팀, 계리팀 등 변액보험 보증위험과 관계된 부서의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델링 및 분석 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변액연금처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보증위험은 적은 지수연계형연금(EIA) 등으로 연금보험의 상품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지수연계형연금의 경우 최저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증위험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구조설정을 통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보험회사를 통해 지수연계형연금이 판매되어 왔으나 상당히 보수적인 구조로 인해 판매가 제한적이었음
-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수연계형연금은 변액연금의 대체상품이 될 수 있으며, 지수연계형연금 확대는 상품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한편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을 통해 종신노후소득 확보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증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액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비교적 최근 소개된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은 변액연금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종신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함
- 그러나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은 만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보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능력이 필수적임 [kiri](#)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과 금리위험관리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 2021년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금리위험 평가방식이 정교화됨에 따라 금리위험 확대가 불가피함
 - 현행 RBC 제도에서는 보험부채에 최대 잔존만기 구간을 설정하여 부채듀레이션을 측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또는 금리위험액이 감내할 수 있는 상태임
 - K-ICS 제도에서는 실제만기 적용과 다양한 금리충격 시나리오 방식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이 현 RBC 제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금융당국은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 경감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 적용을 인정하고 경감효과를 요구자본에 전액 반영할 계획임
- 보험회사는 K-ICS 도입과 관련하여 금리위험 관리수단으로 전통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을 현재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으로는 보험부채의 금리연동화, 장기 우량채권 매입 등이 있으며 최근 기법으로는 장기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 등이 있음
 - 선도채권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이후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약정하는 파생금융상품임
 - 현행 RBC 제도는 선도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위험 경감효과를 요구자본에 반영하지 않지만, 금리위험 경감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 적용을 인정하고 경감효과를 요구자본에 전액 반영할 예정임
 - 보험회사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선도채권은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 매입 시 현금 불필요, 듀레이션 확대, 금리위험 헤징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음
 - 첫째, 선도채권 매입은 현물채권의 매입과 달리 매입하는 시점에서 현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음
 - 둘째, 장기 우량의 채권 만기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음
 - 셋째, 재투자에 따른 금리위험에 대한 헤징 기능과 우량채권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함
- 그러나 선도채권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금리위험 노출, 채무불이행 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결제시점에서 유동성문제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선도채권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노출된 장외파생금융상품이므로 증거금, 담보제도 등 위험관리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2021년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금리위험 평가방식이 정교화됨에 따라 금리위험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으로 금리위험은 듀레이션 갭(duration gap)¹⁾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1년간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 자산 가치 - 부채 가치)의 하락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은 예상치 못한 금리변화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순자산(= 자산 - 부채)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주로 부채와 자산의 만기(듀레이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함
- 현 RBC 제도에서는 보험부채에 최대 잔존만기구간을 설정함으로써 부채듀레이션을 측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또는 금리위험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임
 - 최대 잔존만기는 20년에서 3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임
- 그러나 2021년 도입될 K-ICS 제도에서는 실제 만기 적용과 다양한 금리충격 시나리오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이 현 RBC 제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을 초과한 보험부채비중이 높으며 이 가운데 금리확정형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액이 확대될 것임

- 2017년 기준 RBC 제도에서 잔여만기 20년 이상의 금리부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 만기를 적용할 경우 부채의 금리위험이 늘어남²⁾(〈표 1〉 참조)
 - 잔존 만기가 긴 보험상품일수록 금리위험(민감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금리확정형 상품에만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할인율 상승으로 자산·부채의 금리위험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현금흐름을 반영할 경우 자산·부채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1) 듀레이션갭 또는 금리위험은 금리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 자산 가치 - 부채 가치)의 손실가능성을 추정하는 개념으로 수정듀레이션(Modified Duration), 실효듀레이션(Effective Duration) 등 상이한 방법에 의해 측정됨. 또한 듀레이션과 만기의 개념은 상이하나 고정금리를 갖는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크므로 이하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2017년 현재 보험부채 최대만기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 규정을 완화함

〈표 1〉 만기별 금리부자산 및 부채 비중

(단위: %)

구분	1년 이하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후	합계
금리부 자산	25	21	20	19	15	100
금리부 부채	3	11	8	9	68	100

자료: 생명보험회사 분기 보고서(2017. 9) 자료를 활용하여 잔존만기별 금리부 자산 및 부채를 각각 추정

■ 이에 금융당국은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을 확대하고 이를 요구자본에 반영할 계획임

- 현행 RBC 제도는 파생금융상품 사용을 통한 금리위험 경감효과를 요구자본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금융당국은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 경감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 적용을 인정하고 경감효과를 요구자본에 전액 반영할 예정임

■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도 우량장기채권 매입위주의 전통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여 금리위험을 지금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으로 보험부채의 금리연동화, 장기 우량채권 매입 등이 있음
- 최근 기법으로 장기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이 있는데 동 계약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이후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약정하는 파생금융상품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K-ICS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선도채권계약의 특징과 잠재적 위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함

- 먼저 금리위험액 산출 시 현 RBC 제도와 K-ICS 제도의 산출방식을 비교할 것임
- 다음으로 새로운 금리위험 관리수단인 선도채권의 전통적 방식에 대한 상대적 장점을 기술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선도채권계약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2. 금리위험 산출 비교: 현행 RBC 제도와 K-ICS 제도



■ 현 RBC 제도의 금리위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 현행 RBC 제도에서 금리위험액은 만기불일치위험액과 금리역마진위험으로 구분됨³⁾
 - 금리위험액 = $Max[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 금리역마진위험액$
- 만기불일치위험액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달라 금리변동 시 자산과 부채(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말함
 - 만기불일치위험액 =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보험부채 금리민감액| \times 금리변동계수$
 - 금리부자산(부채) 금리민감액은 익스포저에 금리듀레이션을 곱한 값임
- 금리역마진위험은 보험계약의 적립이율보다 운용수익률(시장이율)이 낮아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임

■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보험부채의 최대 잔존만기를 확대하고 금리변동계수를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금리위험액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표 2〉 참조)

- 최근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기존 최대 20년에서 25년과 30년을 추가 설정하여 만기 구간별 듀레이션이 늘어나면서 자산 및 부채 만기불일치위험액이 늘어나는 추세임
 - 현 RBC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 금리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도 2020년까지 전액 반영되어 금리위험액은 확대될 예정임
- 금리변동계수가 1.8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면서 만기불일치위험액을 완화시킴

〈표 2〉 RBC 제도 단계적 적용 일정

제도개편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채 최대잔존만기	25년	30년	-	-
금리변동계수 조정	즉시 시행	-	-	-
금리 연동형 최저보증리스크 반영	-	-	50%	100%

출처: 금융감독원(2017. 1. 1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3) 최저금리위험액은 보험부채 익스포저에 최저금리위험 위험계수를 곱한 값으로, 금리역마진 위험액은 보험료적립금에 이자율 차이를 곱한 값으로 각각 산출함. 여기서 이자율 차이란 적립이율에서 자산부채비율과 시장금리를 곱한 값을 차감한 값임

■ 이에 반해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됨

- K-ICS(초안)는 가치평가기준, 현금흐름의 발생 시점, 그리고 할인율 선택에 있어서 현행 RBC 제도와 상이함
 -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은 충격시나리오(stress scenario)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 감소액으로 정의됨
 - 금리충격 시나리오 방식이란 자산 및 보험부채의 실제 미래현금흐름에 다양한 금리충격을 주어 순자산의 손실가능성을 산출하는 방식이고 금리위험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 $$\text{금리위험} = \text{평균회귀} + \sqrt{\max(\text{상승, 하락})^2 + \max(\text{평행, 경사})^2}$$
- 금리상승·금리하락·금리평행·금리경사 시나리오에 따라 각 리스크를 산출한 후 시나리오별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결합할 예정임
 - 금리기간구조의 수준과 변동성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금리위험의 측정대상임
 -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 가치의 하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리기간구조에 따른 자산의 현재가치 산출 모형이 필요함

■ RBC 제도와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산출 방식의 차이점은 실제만기 사용, 시나리오 방식, 금리위험 경감 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 사용 등임

- 첫째, K-ICS 제도에서는 보험부채의 실제만기를 적용하여 보험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의 잔존만기가 확대되어 금리위험액이 확대될 것임
- 둘째, RBC 제도는 금리위험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K-ICS는 4개의 금리시나리오 방식을 사용함
 - 유럽연합(EU)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의 시나리오 방식보다 강화된 조치로 동 제도에서는 2개의 스트레스 시나리오-상승 및 하락-만을 고려함
- 마지막으로, K-ICS 제도에서 파생금융상품, 보증, 담보 등 금리위험경감수단으로 인정하고 경감 효과를 요구자본에 전액 반영할 계획임⁴⁾

4)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K-ICS 1.0)-가용자본·요구자본 부분”(2018. 2. 22) 참조

3.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 관리 방안: 선도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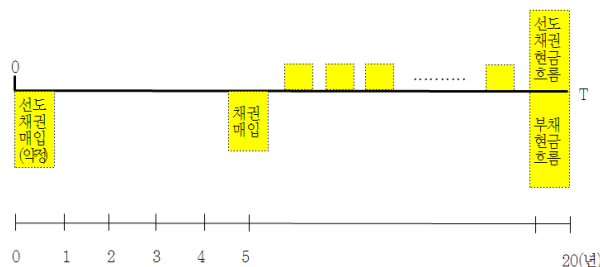
■ K-ICS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금리위험확대를 관리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법으로 금리연동형 상품, 장기 이표(Coupon)채권 매입 확대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보험부채상품의 금리연동화는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축소시키지만 시장금리에 후행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장기 이표채권 매입은 자산듀레이션을 확대시키나 낮은 수익률, 환위험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국내 장기 우량채권의 매입은 장기채권공급의 부족과 채권 매수확대로 금리가 하락하여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해외 우량채권 매입은 금리 위험 또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동 위험을 관리하는 데 헤징 비용이 발생함

■ 한편 전통기법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 기법으로 선도채권(bond forward)이 있음

- 선도채권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에 채권을 매수할 것이라고 약정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임
 - 예컨대 10년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5년 선도채권 계약 매입이 갖는 의미는 5년이 지난 후 10년 국채를 매입함을 의미함(〈그림 1〉 참조)
- 일반적으로 선도채권의 만기는 최저 5년에서 10년, 최장 30년까지 가능함
- 보험회사는 선도채권 매입을 통해 미래 시점의 채권매입가격을 현재에 확정함으로써 듀레이션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그림 1〉 선도채권의 특징



■ 선도채권은 계약체결 시 현금지출 불필요, 듀레이션 확대, 수익률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리위험 관리기법인 현물채권매입에 비해 이점을 갖고 있음

- 첫째, 선도채권 매입은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듀레이션 미스매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일정기간 동안 현금자금조달이 필요없는 전략임(unfunded strategy)
 - 선도채권 매입 계약 체결시점에서 다른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현금지출이 소요되지 않아 투자자산 배분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에 반해 전통적인 방법인 채권투자매입은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불편함을 초래함
- 둘째, 장기 우량채권의 만기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음
 - <그림 1>에서 만기 10년 현물채권을 5년 후 매입하기로 약정한 선도채권은 현재 10년 만기 현물채권매입에 비해 보다 긴 듀레이션을 제공하므로 장기채권의 만기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음
- 셋째, 재투자 위험에 대한 헤징기능과 우량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시킴
 - 현물채권의 수익률보다 선도채권 수익률이 보다 높아 동 채권은 현물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가격을 제시함

■ 회계적인 측면에서 선도채권은 선도계약에 해당되는 파생금융상품의 정의를 만족함으로 현금흐름 헤지회계(Cash Flow Hedge)⁵⁾를 통해 현물채권 가격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 선도채권은 현물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가치가 변하고 체결 시 현금투자가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결제되는 파생금융상품임
- 선도채권 매입이 현금흐름 헤지 회계로 인정받을 경우 선도채권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현물채권 인수시점까지 발생하는 현물채권 가격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⁶⁾
 - 선도채권의 만기 전까지 선도채권의 가격변화는 포괄적 누적손익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되며 실제로 현물채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5) 헤지회계는 헤지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활동에 대해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회계임. 헤지회계는 공정가액헤지회계(Fair value hedge accounting)와 현금흐름헤지회계(Cash flow hedge accounting)로 구분함

6) 현금흐름헤지회계에서 헤지수단인 선도채권상품의 평가손익 중 헤지에 효과적인 부분을 대차대조표 내의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하고 이후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선도채권손익은 헤지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함

■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 선도채권매입은 K-ICS 제도에서 금리위험 경감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어 금리위험 관련 요구자본을 줄이는 실효적인 수단의 역할을 함

- K-ICS 제도에서 금리충격 시나리오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을 매칭시키는 유인을 제공함
 - 충격시나리오에서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 간 개선된 매칭은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 하락을 경감하는 데 기여함
- 선도채권 매입은 현물채권매입이 확실한 경우 자산·부채 간의 현금흐름매칭을 개선하여 듀레이션 갭을 줄여 금리위험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경감시킴
 - <그림 1>에서 채권매입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흐름과 원금을 합친 선도채권 현금흐름유입(inflow)과 보험부채 현금흐름 유출(outflow)을 매칭시킴

4. 결론 및 시사점



■ 다른 한편으로 선도채권은 계약 체결 시 금리위험 노출, 채무불이행 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결제시점에서 유동성문제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음

- 선도채권 체결 시 즉시 금리위험에 노출됨
- 채권선도 결제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 유동성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현물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됨
- 최악의 경우 선도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거나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선도채권 계약을 통한 금리위험관리는 위에서 지적한 제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된 장외파생금융상품이므로 증거금 및 담보제도 등에 따른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가 요구됨

-
- 거래상대방 위험은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증거금 및 담보관리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용위험 산출 시 위험계수방식을 사용하는 K-ICS 방식과 달리 시나리오 방식을 선택하는 Solvency II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어 해외 선도채권 활용 시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kiri](#)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사이버 리스크 관리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기업 사업모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 확대, 사이버공격 증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
 - 컴퓨터 운영체제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은 정보유출 외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함
 - 한편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사이버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 이외에도 전통적인 손해보험상품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노출도 확대됨
- 임원배상책임(D&O)보험, 전문배상책임(E&O)보험, 재산보험 등 기존 손해보험은 사이버 리스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 사고에 따른 손실에 직면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사이버 리스크에는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명시적(affirmative) 사이버 리스크와 약관상 면책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장해야 하는 묵시적(silent) 사이버 리스크가 있음
- 최근 영국의 보험회사 건전성감독당국은 손해보험회사에 묵시적 리스크를 포함하는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요구함
 - 감독당국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료 조정이나 명확한 면책조항 등을 통해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제안함
- 국내 보험산업도 보험회사가 직면한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의 노출 규모 파악을 포함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노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1. 검토배경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사이버 사고의 피해는 정보유출뿐 아니라 영업정지, 물리적 피해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남
 - 작년 5월 WannaCry 랜섬웨어 공격, 6월 NotPetya 말웨어 공격, 9월 Equifax의 정보 유출사건, 올해 초 발표된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드러난 보안취약점¹⁾ 발견 등 사이버 리스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은 영국의 공공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NotPetya 공격은 수송업체, 건강관리업체, 제약회사 등의 조업중단을 가져와 기업의 영업 손실을 초래함
- 따라서 사이버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험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일반손해보험이 보장하는 관련 리스크도 관리해야 할 것임
 - 사이버 사고는 사이버 보험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유출, 정보유출 대응 비용, 사이버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임원배상책임(D&O)보험, 전문배상책임(E&O)보험, 재산보험 등 전통적 손해보험의 보장 영역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본고는 최근의 사이버 사고와 사이버 리스크 현황을 살펴 본 후, 이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보안취약점인 Meltdown과 Spectre를 이용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보안패치가 제공되어 해킹 위협은 경감되었으나, 보안전문가들은 여전히 위협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

2. 사이버 리스크의 진화



- 사이버 리스크는 정보기술 체계의 고장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파괴, 또는 한 기관의 명성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로 정의할 수 있음²⁾
 - 사이버 손실의 주된 원인은 i) 의도된 사이버 범죄나 테러리즘, ii) 시스템 오류나 고장에 의한 데이터 손실, iii) 화재, 자연재해, 전기사고, 산업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기반구조의 물리적 손실, iv)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온라인 활동의 배상책임 등임
- 작년에는 WannaCry와 NotPetya의 공격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파괴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피해는 공격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와 관련된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침
 - 2017년 5월에 있었던 WannaCry는 150개국의 20만 대의 컴퓨터에 감염되었으며, 약 천만 달러의 인질비용, 80억 달러의 영업정지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2017년 5월 중순 기준)³⁾
 - NotPetya 공격으로 수송업체, 건강관리업체, 제약회사 등의 조업이 중단됨
- 한편 올해 초에는 컴퓨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존재하는 두 가지 보안약점인 Spectre와 Meltdown이 알려졌는데, 이는 정보보안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함⁴⁾
 - 해커는 보안취약점들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의 메모리 핵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Apple, Microsoft, Linux 등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보안패치가 취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지만, 보안전문가들은 하드웨어의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⁵⁾

2) “any risk of financial loss, disruption or damage to the reputation of an organisation from some sort of failure of it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Institute of Risk Management)

3) <https://www.propertycasualty360.com/2017/05/16/insurance-experts-wannacry-calls-for-tougher-cyber/>

4) Greenberg(2018. 1. 7), “Triple Meltdown: How So Many Researchers Found a 20-year-old Chip Flaw at the Same Time”, Wired

5) Aon Benfield(2018. 3), *Cyber Threat Insights*

■ 아울러 디지털 정보량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상위 3개 클라우드 서비스가 3일에서 6일 동안 중단되는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 손실은 69~147억 달러, 그 중 15~28억 달러가 보험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추정됨⁶⁾
-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6월 인터넷호스팅 업체인 인터넷 나야나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5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13억 원을 해커에게 지불한 바 있음⁷⁾

■ 유럽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배상책임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⁸⁾

- GDPR은 데이터보안과 관련하여 데이터유출통지(제33조, 제34조), 집단 및 공익소송(제80조), 보상청구권(제82조), 과징금(제8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들에도 나타나고 있음

3.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 사이버 사고는 정보유출 사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과 더불어 이미 판매되었거나 판매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증가시키고 있음

■ 한편 보험회사가 사이버 관련 손실에 노출된 보험계약의 인수에 따른 위험의 집합을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라고 함⁹⁾

6) AIR(2018), "Cloud Down: Impacts on the US Economy", Emerging Risk Report 2018

7) 인터넷 나야나는 3천 4백 여 중소기업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http://www.hani.co.kr/arti/economy/it/79881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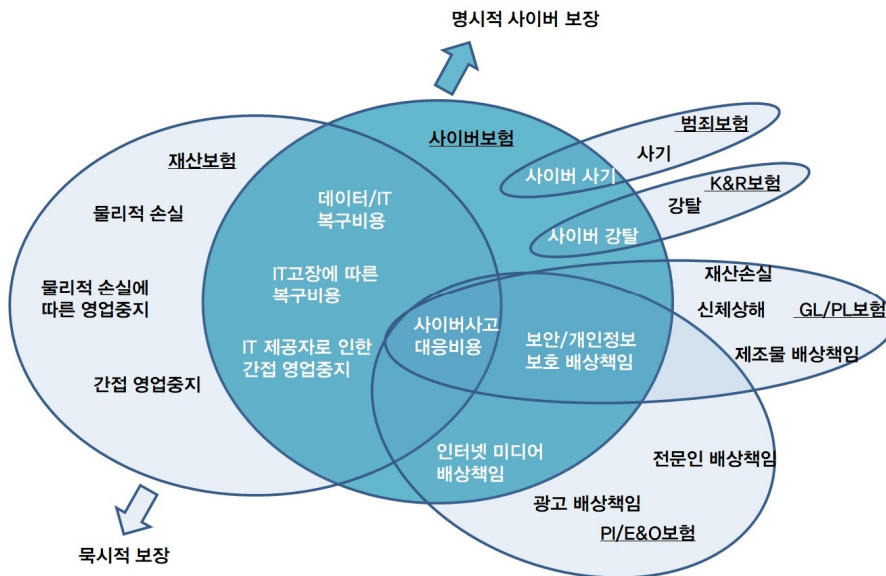
8)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reform/index_en.htm

9)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7. 7), "Cyber Insurance Underwriting Risk", Supervisory Statement SS4/17

- 사이버 사고는 사이버공격, 악성코드를 이용한 IT 체계의 감염 등과 같은 악의적인 행동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데이터손실, 사고에 의한 행동이나 태만 등과 같은 비악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는 명시적(affirmative) 사이버 리스크와 묵시적(non-affirmative 또는 silent) 사이버 리스크에 기인함¹⁰⁾

〈그림 1〉 명시적 사이버 보장과 묵시적 사이버 보장



주: K&R(kidnap and ransom): 납치보험, GL(general liability): 제3자 배상책임보험,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배상책임보험, PI(professional insurance): 전문인배상책임보험, E&O(Error & Omission): 전문배상책임보험
 자료: Parsorie(2018)

■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명시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리스크임

- 사이버 보험계약에서 명시한 과학수사, 법률비용, 알림 및 신용 모니터링, 제3자 배상책임 등과 같은 유출대응 비용 보장은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에 해당됨

■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의미함

10) Affirmative cyber risk를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수하겠다고 동의했다는 의미에서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라고 의역하였으며, non-affirmative(silent) cyber risk도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라고 의역하였음

- 사이버 사고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전문배상책임(E&O)보험, 재산보험, 전위험(all risks)보험 등과 같은 전통적 손해보험에서 보장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랜섬웨어 사고는 납치보험(K&R: kidnap and ransom), 사이버공격이 야기한 물리적 손실은 재산보험, 의료기구 및 서비스, 가전기구, 교통 분야에서 신체부상에 대한 위험 노출의 증가할 경우 일반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¹¹⁾
 - 또한 말웨어 공격에 의한 영업중지나 사고에 의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지 등은 기업휴지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 건전성감독기관(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함¹²⁾
- PRA는 2017년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감독성명(Supervisory Statement)을 통해 보험회사가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인지하고, 정량화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함
 - 동 성명에서 PRA는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고 명확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명확하고 명문화된 제외 조항을 도입하는 방법, 구체적인 보장의 한계를 명시하는 방법을 제시함
- 아울러 PR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가 사이버 전략, 이와 관련된 위험 허용 한도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함
- 위험허용한도(Risk Appetite Statements)와 측정을 대해 명확하게 제시
 -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와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총 사이버 언더라이팅 노출 측정법
 - 극단적인 빈도(최대 200년에 한 번)로 손실총합을 명확하게 고려하고, PRA가 주기적으로 행하는 일반보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따라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 위기 상황분석 실시

11) Parsorie(2018)

12)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7. 7)

4. 요약 및 결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 심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등은 정보유출에서 오는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조업중단이나 배상책임 등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함
 - 조업중단, 물리적 피해, 배상책임 관련 사이버 피해는 기업휴지보험, 재산종합보험, 임원 배상책임(D&O)보험, 전문배상책임(E&O)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이 보장영역에 포함되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는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 가운데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 명시적으로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현황 파악과 보험회사의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련 현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리스크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이버보험이 보장하는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이 보장하는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와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장이 어렵다면 명확한 제외조항이나 보장의 제한을 명시하는 등 PRA가 제시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에 내재하는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의 수준을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촉진해야 할 것임 [kiri](#)

〈별첨 표 1〉 최근 사이버 사고

년도	대상	구분	내용
2017. 5	영국, NHS	WannaCry 랜섬웨어 공격	의료기관, 80개 이상의 NHS(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의 컴퓨터 정지
2017. 6	유럽, FedEx(TNT Express 유럽)	NotPetya 말웨어 공격	수송업체, 수송량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와 IT 체계 복구비용으로 3억 달러의 손실(2017. 9 기준)
2017. 6	미국 Merck & Co	NotPetya 말웨어 공격	제약회사, 말웨어 공격에 의한 생산정지로 약 3억 천만 달러로 추정(2017. 10 기준)
2017. 6	덴마크, Maersk	NotPetya 말웨어 공격	컨테이너 수송업체, 컴퓨터 시스템 오작동으로 수익의 3억 달러 손실(2017. 9 기준)
2017. 6	미국, Nuance Comms	NotPetya 말웨어 공격	2017. 6. 27 건강관리 고객이 사용하는 시스템 이상, 2017년 6천 800만 달러의 수입 손실 + 복구 비용으로 2천 4백만 달러 2017. 12 기록(transcription) 플랫폼에 있는 리포트를 접속하려는 시도
2017. 9	미국, Equifax	개인정보 유출	신용정보업체, 1억 4천 3백만여 명의 미국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영국과 캐나다 고객의 정보, 20만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
2017. 12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설비	Triton 말웨어 공격	산업제어시스템(ICS)을 조작하기 위한 말웨어 장착을 시도했으나 실패 동 공격은 주요 사회간접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서, 물리적, 인적 피해와 조업중단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었음

- 자료: 1) Woolf(2016. 10. 26.), "DDoS Attack That Disrupted Internet Was Largest of Its Kind in History, Experts Say", The Guardian.com
 2) Novet(2017. 8. 16), "Shipping Company Maersk Says June Cyberattack Could Cost It up to \$300 Million", CNBC
 3) Palmer(2017. 9. 20), "NotPetya Cyber Attack on TNT Express Cost FedEx \$300m", ZDNet.com
 4) Cheetham and Heon(2018.3.6), "Triton Cyber Attack: Hackers Target the Safety Systems of Industrial Plants", SCOR.COM

〈별첨 표 2〉 PRA의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련 보험산업조사 결과

-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는 중요함
- 묵시적 사이버 손실 가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함
- 특종보험(Casualty Line)은 잠재적으로 침묵 사이버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
- 해상, 항공, 교통 및 재산보험의 묵시적 손실 가능성
- 재보험 계약의 노출 및 대응의 불확실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 모두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나 리스크 성향이 부족함
- 사이버전문가를 개발하는 데에 대한 투자가 부족
- 보험회사는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리스크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한적
- 재해모형 개발자의 사이버재해(Cyber Catastrophe) 모형은 개발 초기 단계
- EU Data Directive는 긍정 사이버 노출을 증가시킬 예정

주: PRA는 2015. 10~2016. 6 사이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리스크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감독성명을 발표함

자료: <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letter/2016/cyber-underwriting-risk>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보험계약은 장기인데 반해 설계사들이 단기간 근속 후 퇴직 또는 잦은 이직으로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유지관리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 등록설계사 중 해촉 등으로 말소되는 설계사의 비중이 연간 40% 수준이며,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자의 비중은 35% 정도임
 - 전체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말 기준 53.6%이며, 2016년 기준 GA소속 설계사의 55.3%가 최근 5년 내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음
- 보험설계사의 퇴직·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관리 부실계약(‘고아계약’이라 함)은 소비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은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정상적인 유지관리 계약에 비해 해약률 및 고객 이탈률이 높아 보험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임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후속 담당자 지정 등 고아계약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보험회사나 GA채널 등의 고아계약 관리는 미흡한 상황임
-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근속 설계사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 등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서비스체계 구축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GA채널 등에서도 고아계약 관리 전담조직 마련
 - 설계사의 수수료 중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의 수준과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
 -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정의) 설정 및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공시하는 방안 추진

1. 검토배경



- 고아계약(孤兒契約, Orphan Policies)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계사가 퇴직¹⁾ 또는 이직 등으로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약을 의미함
 - 보험실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설계사의 대면활동이나 비대면(유선 등) 접촉 서비스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약을 갖고 있는 고객을 미관리고객, 관심고객, 장미고객(장기 미방문고객), 미아고객, 블루고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함
- 연고판매를 영업 기반으로 한 설계사가 퇴직함으로써 고아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 설계사의 이직이 빈번해지면서 고아계약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실질적인 관리 설계사가 없어지면 계약자는 보험료 연체 사실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투자형 상품의 경우 제때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²⁾
 - 계약 당시 기대했던 양질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다양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조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본고에서는 고아계약의 실태 및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아계약 관리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1)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의 입사는 '위촉', 퇴사(퇴직)는 '해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 설계사 존재와 상관없이 '보험료연체사실' 정보 안내는 회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설계사의 위촉계약상 수행업무임. 그러나 고객은 연체해소나 납입 안내 정보만을 기대하지 않고 정기적인 연락, 보험사고 시 계약자편에서의 도움 등을 기대하게 됨

2. 고아계약의 발생원인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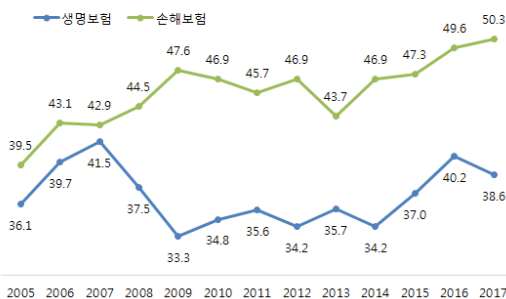
■ 설계사의 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고아계약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설계사 등록정착률이나 말소설계사 비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음

- 보험설계사가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2017년 기준 생명보험 38.6%, 손해보험 50.3%에 그치고 있음
- 등록설계사 중 이직 목적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을 말소한 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상황임
 - 보험설계사가 이직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 코드를 해촉³⁾하고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함

〈그림 1〉 설계사의 정착률 및 등록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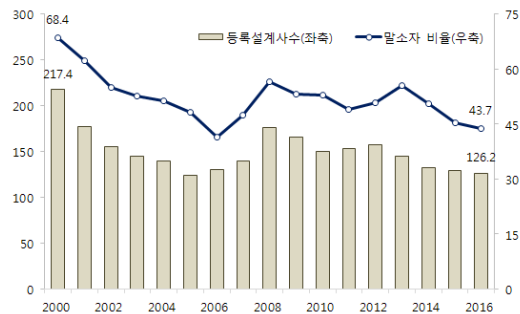
〈13월차 설계사 등록정착률〉

(단위: %)



〈말소설계사 비중 추이(생명보험)〉

(단위: 천 명, %)



주: 1) 13월차 설계사 정착률: 정착등록인원* / 신규등록인원

* 생명보험: 등록 이후 13월차에 본인이 모집한 신계약이 1건 이상이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10건 이상인 인원

손해보험: 등록 이후 13월차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이 10건 이상이거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5건 이상인 인원

2) 말소비율 = 당해연도 말소자 수 / 전년도 등록설계사 수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3) 해촉이란 회사와 설계사 간 위촉계약의 종료, 말소한 보험협회 등록사항 삭제를 의미함. 해촉 즉시 이직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하여야 이직이 가능함

■ 고아계약의 발생은 설계사들의 근로활동 중단(퇴직) 외에도 채널 간 수당체계의 차이나 영업상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하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함

● 모집 수수료 등 인센티브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독립대리점(GA)으로의 설계사 이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설계사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GA소속 설계사의 87.8%(2011년), 55.3%(2016년)가 1회 이상 이직경험을 가지고 있었음⁴⁾

- 이로 인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는 감소하는 반면 GA소속 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53.6%에 이름

● 국회입법조사처(2017)⁵⁾의 조사 결과에서도 2014년 생·손보험회에 등록 말소한 인원 중 2016년 말까지 대리점 포함 2회 이상 이직한 설계사 인원은 총 이직 인원 중 44.6%에 이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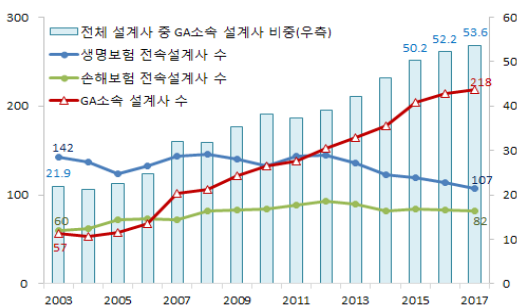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설계사들의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으로 전체 설계사 중 근속연수 3년 미만인 자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고아계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2017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설계사가 각각 56.4%와 55.6%이며,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비중은 35% 수준임

〈그림 2〉 설계사의 이직과 근속연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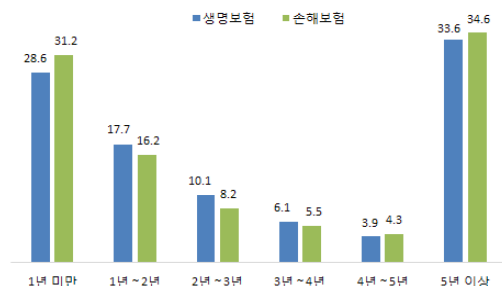
〈설계사 수 추이(전속설계사 vs. GA소속 설계사)〉

(단위: 천 명, %)



〈설계사 근속연수별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4) 안철경·정세창(2017), 「보험설계사의 이직 요인과 정착률 제고 방안」,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4호, 89호, p. 9

5) 김창호(2017),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58호, 국회입법조사처

6) 이직자 비중(생·손보험회): (1회) 55.4%, (2회) 24.3%, (3회) 10.2%, (4회 이상) 10.1%(김창호(2017) 재인용)

■ 보험설계사의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한 고아계약의 발생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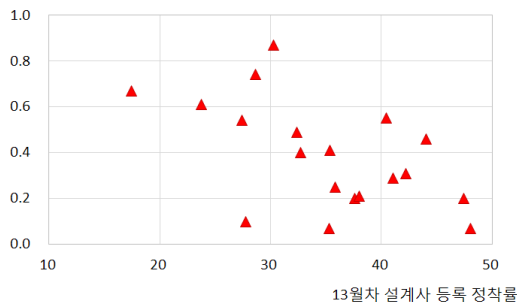
-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 또는 조기 퇴직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민원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2017년 기준 13월차 설계사 정착률과 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56, 13월차 설계사 정착률과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 간의 상관계수는 -0.36으로 나타남

〈그림 3〉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설계사 정착률(생명보험)

〈설계사 정착률 vs. 불완전판매 비율(설계사채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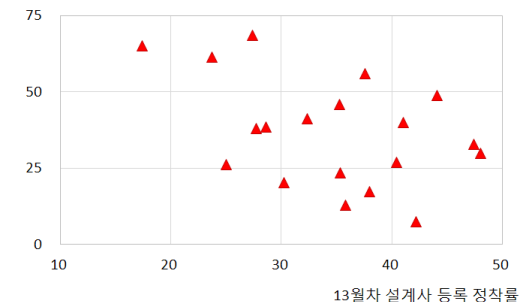
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 vs. 민원 건수〉

(단위: %, 건)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업무보고서

■ 한편, 고아계약의 경우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있는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약률이 높아 보험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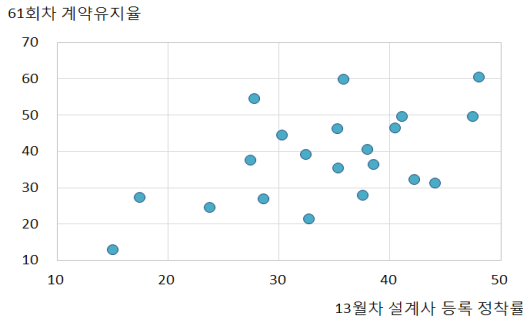
- 설계사 정착률과 보험계약 유지율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근속연수가 짧은 설계사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계약유지율이 낮음
 - 13월차 설계사 정착률과 61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간 상관계수는 0.56이며, 3년 미만 근속자 비중과 61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간 상관계수는 -0.49임
- 한편, 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고아계약의 경우 정상 계약에 비해 해약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⁷⁾

7) A.M, Best(2016), "Anemic Yields Put Spotlight on Retention"

〈그림 4〉 설계사 정착률과 계약유지율 간 관계(생명보험,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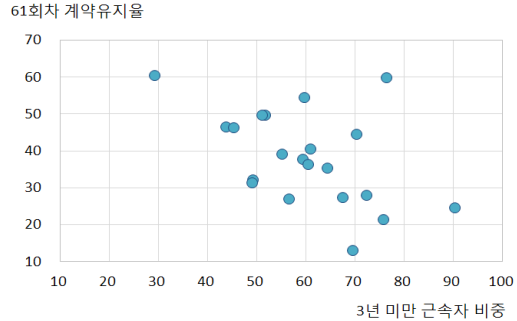
〈13월차 설계사 정착률 vs. 61회차 계약유지율〉

(단위: %)



〈3년 미만 근속자 비중 vs. 61회차 계약유지율〉

(단위: %)



자료: 생명보험협회, 업무보고서

3. 고아계약 관리 현황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전속설계사의 계약 건에 대해 1차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아계약 대상을 선정하고, 클린징(고객정보 수정 보완)과 필터링을 통해 대상고객을 분류한 후, 본사와 지점(설계사)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점 또는 개별 설계사에게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관리함

- 고아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가까운 지점의 우수설계사에게 이관되는 구조로, 우수설계사는 근속기간(2년 이상), 계약유지율, 신계약 유입률, 민원 건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관받은 계약의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한편, 고아계약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계사 정착률 제고를 목표로 설계사 인식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는 육성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⁸⁾

■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한 이후 회사 내 고객관리시스템(비대면/대면)을 통해 보험계약 담보내용 설명, 보험금지급 서비스 지원, 관리자 변경 안내 등 다양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함

8) 인터뉴스(2014. 10. 21), “보험사, ‘고아계약 줄이기’ 어떤 노력?”

- 대부분 대형사의 경우 전속설계사 계약에 대해서는 고아계약 발생 시 기존계약을 (고아 계약) 전담지점에 배정하는 등 고객 케어센터에서 관리하지만 GA 등 비전속채널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음
- 고아계약에 대해 유지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유지율은 기존 관리계약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개선 추세이며, 고객이탈율⁹⁾이 낮아지고 충성고객화되는 추세를 보임
 - A 보험회사의 경우 관리고객과 비관리고객 간 계약유지율 차이가 약 20%p인 것으로 나타남
 - B 보험회사의 경우 고아계약 관리가 시작된 이후 이탈하는 고객비율(이탈률)이 점차 낮아져 2013년 9.0%에서 2017년 6.3%로 나타남
 - C 보험회사의 경우 설계사 해촉 예상 시 관리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객 및 설계사 속성을 분석해 배분하는 고객 속성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배치된 담당설계사를 통해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유지율이 제고되고 충성고객화됨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고아계약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고, 특히 GA의 경우는 조직적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GA설계사가 본인의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아계약 발생 시 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GA 계약 건에 대해서는 특정회사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GA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 TM 계약 건의 경우도 통상 다이렉트사업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기계약 DB로 넘겨져서 관리하는 형태로 담당 설계사가 유명무실하거나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임
- 최근 설계사 이직 시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관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아계약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업계와 설계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업계는 설계사에게 계약관리 권한이 부여될 경우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이직한 설계사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임

9) 연초 대비 연말 비교 시 없어진 고객 비율

- 현재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계약을 이관받은 관리 설계사에게 평균적으로 유지수당의 30~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⁰⁾
- 설계사들은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가 계약관리 권한을 소유할 경우 보험회사의 양적 성장 정책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감독당국은 향후 소비자 권익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밝힘

4. 시사점



- **고아계약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회사/판매채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고아계약의 관리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의 유지관리서비스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 맞춤형 설계, 고객보장 최적화 서비스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고아계약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1차적으로 추가 판매(Up-Selling) 등 단기적 실적 제고를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지양함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GA와 같은 판매조직에서도 고객관리 총괄조직(예: 고객센터어센터 등)에서 고아계약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자중심경영 차원에서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 체계적인 관리자 배정, 양질의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고아계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사에서 지점 또는 판매조직(설계사)에 고아계약을 배정(매칭)할 때 보험계약(고객군) 및 판매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동지침이나 마케팅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10) 보험매일(2016. 5. 3), “계약이관제도, 유지수수료 미지급 ‘불씨’ 여전”

- 일부 중·소형사는 비용 부담 등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존 계약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더 적을 것임
 - 고아계약의 관리는 보험회사(관리)-영업조직(추진)-설계사(실행) 간 유기적 연계성이 중요함
- 상품별로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의 비중과 지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미관리고객에 대해 방문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계약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유지관리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도 불완전판매나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보험계약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정의) 설정 및 관리지표 개발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공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kiri](#)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 2016년 Allianz Risk Transfer AG의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대재해스왑 계약 체결 및 블록체인의 보험산업 컨소시엄 B3i의 결성을 시작으로 보험산업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블록체인의 적용 시도는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과 P2P 보험의 확산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기업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만 블록체인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개인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과 P2P 보험의 확산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블록체인 적용이 시도되고 있음
-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적용은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 시장에서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 AXA의 항공지연보험 퍼지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P2P 보험인 Teambrella는 블록체인의 적용으로 보험의 효율성·편리성이 향상되고, 보험산업의 개념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교보생명) 및 본인 인증 시스템(생명보험 컨소시엄)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임
- 국내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적용이 활성화되면, 여러 방면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효율성 및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회사 공동망 운영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조회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Teambrella 모델과 같은 완전손실공유형 P2P 보험이 도입되면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위험도 계약자 스스로 보장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정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험산업 이외 영역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2016년 Allianz Risk Transfer AG(ART)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대재해스왑 (Catastrophe Swap: Cat swap) 계약의 체결 및 블록체인의 보험산업 컨소시엄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의 결성을 시작으로 보험산업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¹⁾

-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① 전통적 보험회사와 ② P2P 보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²⁾
 - 전통적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을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및 자금흐름에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P2P 보험 측면에서는 전통적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P2P 보험이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P2P 보험의 시장성과 활용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함
- 기업보험이나 재보험 계약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는 전통적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³⁾
 - Allianz Risk Transfer AG는 2016년 6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적용한 대재해스왑을 발행하였음
 - AIG와 IBM은 2017년 6월 Hyperledger Fabric Protocol을 이용한 스마트 보험계약(Smart Insurance Policy)의 파일럿버전을 발표하였음
 - B3i는 2017년 9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재물 초과 재보험 계약의 베타버전을 발표하였음
- 한편 개인보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는 전통적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과 P2P 보험의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음
 - 글로벌 손해보험회사인 AXA는 2017년 9월 블록체인 암호화폐 체계인 이더리움에 기반한 항공자연보험 피자(Fizzy)를 개발하였음

1) 스마트계약이란 사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임

2) P2P는 peer-to-peer를 말하는데, P2P 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위험보장 역할을 축소·배제하고 소비자들의 상호보장 역할을 강화한 보험형태를 말함. P2P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규동(2017. 5. 2), 「P2P 보험 도입효과 분석」, 『KIRI Report』, 제418호 및 김규동(2018. 4. 9),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사례」, 『KIRI Report』, 제442호를 참조 바람

3) 3가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김규동(2017. 8. 7),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KIRI Report』, 제425호를 참조 바람

- 국내 사례로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2017년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임
-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보험으로는 Teambrella의 완전손실공유형 P2P 보험을 예로 들 수 있음

■ 국내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본인인증에 머물러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인해 블록체인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시장에서는 정보나 자금의 흐름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이용할 경우 보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음
 - 이에 비해 개인보험은 정보나 자금의 흐름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한 단계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인해 블록체인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험정보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이 전통적 보험회사의 개인보험계약과 P2P 보험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P2P 보험을 비롯한 개인보험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⁴⁾

2.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적용



■ 글로벌 손해보험회사인 AXA는 2017년 9월 항공지연보험 플랫폼인 피지(Fizzy)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체계인 이더리움에 기반한 스마트보험 계약임⁵⁾

- 보험계약자가 탑승 예정인 항공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보험회사는 사전에 합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는 스마트보험계약임
 - 보험계약자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출발 15일 이전에 계약자 정보와 항공정보를 입력하

4) 블록체인의 기업보험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김규동(2017. 8. 7),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KIRI Report』, 제425호를 참조 바람

5) <https://www.axa.com/en/newsroom/news/axa-goes-blockchain-with-fizzy>

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교통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피지는 항공 출발지 연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즉시 보험금을 지급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이더리움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으로 이루어짐
- 출발이 2시간 지연되는 것이 스마트계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되며, 출발이 2시간 지연(보험사고 발생)됨으로써 거래(보험금 지급)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 스마트계약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보험 사고)이 발생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개입 없이 거래(보험금 지급)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에 적용할 여지가 많음

■ Teambrella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P2P 보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계약자들은 언더라이팅 부터 보험금 지급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

- 동일한 리스크 풀(risk pool)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지 않고 개별 적 립금만 보유하고 있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자들이 투표를 통해 보험금 규모와 지급 여부를 결정함
 -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면, 개별 가입자들의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보험금 이 지급되는 형태로 순수한 상호부조 형태임
- 보장범위 결정부터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까지 회사의 개입 없이 가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규율(self-governing) 모형으로 알려져 있음
 - 보장내용을 계약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위험도 계약자들의 결정에 따라 보장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새로운 가입자가 리스크 풀에 들어오기를 희망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투표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함
 - 그러나 리스크 풀의 규모가 작고 보험사고 규모가 클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례로는 교보생명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과 생명보험 컨소시엄의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음

- 교보생명은 본인인증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작년 12 월부터 시범 운영 중임

-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등 3개 병원과 교보생명 직원계약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말까지 대상 병원을 20개로 확대하고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대상 병원을 600개로 확대할 계획임⁶⁾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두 곳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을, 블록체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침으로서 본인인증을 한 번만 하도록 하였음
-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 중임
- 현재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보험회사마다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임
- 금융업권별로 구축한 블록체인 본인인증 시스템을 연결하면,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3. 향후 개인보험에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성



■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 시스템을 보험회사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음

- 사망, 재해(후유)장해, 실손의료보험 및 암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 등은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에 차이가 없는 표준화된 보험인데, 한 피보험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경우도 있고, 표준화된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별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이 달라 보험금 지급여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A, B, C, D 네 보험회사에 정액형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암 진단 후 암입원, 암수술 등을 받았을 때에, 현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모두 4부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함이 있음

6) 조선비즈(2018. 4. 16), “교보생명, 블록체인 보험금 자동청구시스템 적용 병원 2020년까지 600개로 확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5/2018041501586.html

- 회사별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동일한 보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험금지급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계약자들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한 보험회사에만 보험금을 지급청구하면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에도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도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심사할 경우, 회사별 지급심사 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계약정보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계약자도 자신의 계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 특정한 시기에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있으나, 현재의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조회가 어려워 보험사기 의심 계약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⁷⁾
 -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정보망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계약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들도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을 분실한 오래된 계약을 조회할 경우, 보장내용 및 기타 계약 조건 등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법률적 이슈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P2P 보험이 블록체인의 적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유럽에서 처음 도입된 P2P 보험은 보험중개사가 계약자들을 모집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국내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업의 일부(적립금의 운영 및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험중개사가 수행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P2P 보험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Teambrella와 같은 P2P 보험 모델은 보험계약자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

7) 현재의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이 조회되기까지 약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함

계약자 이외의 제 3자가 보험회사의 역할을 대행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를 보장하는 상호부조 형태임

-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적립금 운영·보험금 지급심사와 같이 보험회사가 하는 역할을 계약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며, 블록체인은 보험계약자들 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⁸⁾
- Teambrella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P2P 보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보험회사의 사업 모델과는 다르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격이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의 법 규정하에서도 Teambrella와 같은 P2P 보험 형태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결론 및 향후 과제



■ 보험산업에 블록체인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정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험산업 이외 영역에서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함

- 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본인인증 용도에 머무르고 있음
 -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으며, 의료정보는 더욱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기록·전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블록체인망에는 보험금 청구 여부만 기록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송된 의료정보의 진위여부는 블록체인으로 신뢰되지 못함⁹⁾
 - 따라서, 교보생명의 모델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KB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 앱인 “My 세브란스”와는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8) 최근 발생한 P2P 대출 사기와 같은 문제는 P2P 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를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여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P2P 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중개업자가 필요 없으므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차단됨. 단,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자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credit risk)는 여전히 존재함

9) 블록체인망에서는 기록이 삭제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고 블록체인망에는 해쉬값만 기록하는 방식의 기술이 일부 적용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유지되지만 정보의 삭제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임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하여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보험금 지급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보험금 지급심사 자동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함
 -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심사 자동화가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서류가 모두 디지털화되어야 함
-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 보험은 보험중개사가 개입하는 P2P 보험에 비해 허용의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보호의 이슈는 있음
 - Teambrella의 P2P 보험 모델에는 보험회사의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 규정과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그러나 플랫폼의 결함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국내에서 P2P 보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보험 회사에 대한 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kiri](#)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비용 편익 분석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최근 국내보험회사는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하는 시각이 병존함
 - 자본 확충 수단으로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등이 있는데 특히 해외통화 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대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임
 -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기업회계 기준의 자본과 감독회계 기준의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도움이 됨
 - 반면 투자운용 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신종자본증권을 조달하는 것은 향후 재무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평가에 앞서 먼저 해외통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가 발행한 해외신종자본증권은 미국 달러화표시 5년간 중도 비상환(Non-call), 만기 30년, 5% 수준의 금리, 중도 상환 시 금리상향조건이 부여된 유가증권이 대부분임
 -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국내 보험회사가 발행한 높은 금리의 신종자본증권 수요는 높은 편임
-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과 더불어 잠재 편익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감내할 만한 수준임
 - 해외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순조달비용(=달러운용이익률-달러발행비용)이 높아 순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음
 - 신종자본증권의 순조달비용은 투자운용이익률(=3.5%)과 달러화표시 발행비용(=5%)의 차이인 -1.5%의 손실을 초래함
 - 그러나 이자지급손비처리에 따른 세금절감효과, 환헤지 시 달러 프리미엄 확보,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의 조달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있음
- 그러나 미국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금리격차가 확대될 경우, 해외신종증권 발행이 줄어들 수 있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보험회사들은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¹⁾에 노력하고 있으나 유상증자는 낮은 배당성향, 지분희석 우려, 낮은 투자가치 등으로 제한적임

- 자본 확충의 전통적인 수단인 유상증자는 보험회사의 낮은 배당성향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매력도가 낮음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배당성향²⁾은 약 25%³⁾로 금융권의 평균배당성향 40% 이상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상장 보험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배당성향 위축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함
- 보험회사들은 대주주의 지분희석에 대한 경영권 변동에 우려하여 유상증자를 꺼림
- 게다가 낮은 배당성향, 고금리 계약의 부담, 지급여력비율 하락 우려 등으로 보험회사 가치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해 투자매력도가 낮음

■ 후순위차입과 신종자본증권 등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은 2016년부터 상시 발행이 허용되면서 발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해외통화표시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 후순위 채권은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의 경우 매해 20%씩 자본인정비율이 축소되며 가용자본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됨
- 이에 반해 신종자본증권은 기업회계 기준의 자본으로 감독회계 기준으로는 만기까지 100% 가용자본으로 인정받는 금융상품임

1) 채권계정재분류를 통한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만기보유에 있는 잔여만기가 짧은 채권을 매각하고 장기채를 매입하면 자산듀레이션이 확대될 수 있음.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가용자본 증가를 통해 RBC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조달된 자금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하면 IFRS 17 도입 전인 2020년까지는 금리민감도가 커지지만 도입 이후에는 부채-자산듀레이션 매칭으로 금리민감도가 감소함. 따라서 현재 RBC 회계상에서는 채권계정재분류가 불리한 점이 있지만 K-ICS 도입 이후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

2)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3) 2016년 말 기준 대형생명보험회사 3사 배당성향의 단순평균임. 각사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이하에서는 해외통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또는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개선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높은 발행금리 및 채무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IFRS 17과 K-ICS 도입으로 자본이 축소되거나 요구자본이 확대 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그 이점이 있음
- 운용수익률을 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향후에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하에서는 높은 조달금리에도 불구하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물량이 확대되는 이유와 발행 방식,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원화 대비 해외통화로 발행하는 이유와 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해외통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환헤지 여부와 환헤지 시 그 방법과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2. 해외통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구조



가. 해외 신종자본증권 현황

■ 최근 보험회사의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표 1〉 참조)

-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6년 상시발행이 허용되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는 추세임
- 최근까지 보험회사의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잔액은 30억 달러 수준이며 금년 조달계획 규모는 약 3조 9,440억 원 규모임
 -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유상증자·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수단을 통해 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함
-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며 올 하반기에도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유럽 지역 270곳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신규 청약이 몰리고 있음

〈표 1〉 국내 보험회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발행일	발행사	발행 규모	표면이율	발행금리 구조	만기	비고
2014.10.21	코리안리	USD 2억	4.500%	5T+314.7bp	30년, Non-call 5년	사모 ¹⁾ /콜
2017.7.24	교보생명	USD 5억	3.950%	5T+209.1bp	30년, Non-call 5년	사모/콜
2017.11.30	현대라이프	KRW 400억	6.100%	-	30년	사모/콜
2017.11.9	흥국생명	USD 5억	4.475%	5T+247.2bp	30년, Non-call 5년	사모/콜
2018.2.28	현대라이프	KRW 600억	6.200%	-	30년	사모/콜
2018.4.23	한화생명	USD 10억	4.700%	5T+200bp	30년, Non-call 5년	사모/콜
2018.5.21	KDB생명	USD 2억	7.500%	5T+465.8bp	30년, Non-call 5년	사모/콜
2018년 3분기	현대해상(예정)	USD 5~7억	-	-	-	-
2018년 7월	교보생명(예정)	USD 5~10억	-	-	-	-
2018년 7월	동양생명(예정)	USD 3~5억	-	-	-	-

주: 1) 기관투자자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
자료: 각사 경영공시; 국제금융센터; 언론기사

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구조 및 역할

■ 국내 보험회사가 발행한 달러화표시 만기 30년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평균적으로 5% 수준에 있으며 5년 비상환 및 금리상향조건이 부가됨(〈표 1〉 참조)

- 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달러화의 경우 5년 만기 달러국채 금리(5T)에 일정한 가산금리(코리안리의 경우 314.7bp)를 합산한 금리로 결정됨
- 만기가 30년으로 정해져 있고 재연장이 가능하며 5년 이전에는 콜(중도상환)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Non-call) 5년 이후 상환여부는 발행사인 보험회사가 결정함
- 중도 상환되지 않을 경우 금리(상향) 재조정은 10년 이후 1회에 한하여 발행금리에 가산 스프레드가 부가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예를 들면, 금리상향조정 금리는 초기 발행금리에 100bp를 가산함
-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기관별로는 보험회사,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펀드 등임

■ 신종자본증권발행은 K-ICS 제도에서도 가용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인정받고 있어 신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실효적인 역할을 제공함

- 신종자본증권은 2021년 도입될 IFRS 17 제도에서 일반회계상 자본으로, K-ICS 감독회 계상 가용자본으로 분류됨
-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재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영구적이고 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때까지 발행금액 전액이 자본으로 인정됨
 -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도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이라는 면에서 자본성이 우수함

3. 신종자본증권 발행 편익 분석



가.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순조달 비용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명시적으로 자산운용이익률과 달러화표시 발행비용의 차이인 순조달비용에 의해 측정됨

-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평균)명시적 비용은 발행에 따른 제반수수료 및 조달금리의 합으로 5% 수준임
 - 제반수수료는 0.5%에 달하고 조달금리는 각 발행사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3.9~6%대에 달해 평균 조달금리는 5% 수준임
- 보험회사의 평균 자산운용이익률은 국내 자산운용이익률인 3.5% 수준에 달함
- 따라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순조달비용은 투자운용이익률과 명시적 비용과의 차이인 -1.5%의 손실(=3.5%-5%)이 발생함
- 달러화표시 발행비용을 원화로 평가한 발행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이유는 원/달러 기대 평가절하율이 제로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원화조달금리=달러조달금리-달러 대비 원화기대평가절하율

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편익

■ 첫째, 환헤지 달러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을 부분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 환헤지 프리미엄을 감안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편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 신종자본증권 편익=순조달비용(=자산운용이익률-발행비용)+환헤지 달러프리미엄(1% 내외)
- 환헤지 시 달러프리미엄의 수준은 국내 금융시장 달러화의 공급과 수요 요인의 상호작용과 1년 이하인 단기와 장기인 환헤지 방식에 의해 결정됨
 - 달러 프리미엄은 달러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화를 차입할 때 지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프리미엄을 말함
 - 달러 프리미엄의 수준은 외국금융기관들의 달러 공급 의향과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의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컨대 외국금융기관들의 달러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달러프리미엄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단기 환헤지 시 달러프리미엄의 변동성이 장기보다 높은 편임

■ 둘째,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 옵션은 자금조달비용 관리 측면에서 발행사에게 유리한 면이 있음

- 해외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발행 5년째 낮은 시장금리로 조달하여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한편 해외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금리향방에 따라 중도상환 옵션행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관리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이 지급하는 이자는 손비처리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절세효과는 발행사의 편익이 될 수 있음

- 지급이자 손비처리에 따른 혜택은 국내 법인세율에 이자지급을 곱한 금액임
- 예컨대, 국내 법인세율(t)이 22%라고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r \times B$)은 손비처리대상이므로 실제 세후 조달비용은 이자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한 값임
 -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세후 자금조달비용= $(1-t) \times r \times B$

4. 평가 및 시사점



- 해외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사에게 주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때 순조달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혜택이 포함되면 순편익이 보다 클 수 있어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감내할 만한 수준임
 -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잠재적 혜택이란 이자지급손비처리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 환헤지 시 달러 프리미엄 확보,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의 조달비용 절감을 포함함
 - 순편익이란 잠재적 혜택에서 순조달비용을 차감한 값임
- 그러나 향후 미국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확대될 경우 해외 신종증권 발행 유인이 줄어들게 되어 별도의 자본확충 대안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미국금리가 급등하여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순조달비용이 다른 잠재적 편익을 압도하여 보험회사들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
 -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경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도입되는 2021년 이전까지는 채권평가손실에 따른 가용자본 위축으로 RBC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들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면 금리상승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추가적으로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자본확충 대안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다양한 건강보험상품이 갱신행 또는 비갱신행 상품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
 - 비갱신행은 보험가입 시 보장기간이 갱신 없이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을 만기로 하거나 20년 만기, 30년 만기 등 연단위로 보장기간을 설정하는 반면 갱신행은 보험계약 갱신 시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요율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하여 80세, 100세까지 위험을 보장함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보험은 갱신행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음
 - 암보험과 같은 일부 건강보험은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비갱신행으로 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갱신행 상품과 비갱신행 상품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갱신행 상품은 리스크 관리와 저렴한 보험료라는 장점이 있으나 고연령 갱신 계약자에게는 미래 보험료 상승,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계약을 유지하는 역선택에 노출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 비갱신행 상품은 향후 의료기술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로 손해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비갱신행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장래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보험금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임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비갱신행 상품과 갱신행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임
 - 2003년 장기요양보험이 처음으로 보험료 무보증상품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개발이 중단됨
 - 해외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무보증상품이 개발되어 미래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급증할 수 있는 상품을 장기보장으로 판매함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고연령화로 인한 보장 확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치매보험과 같이 장래 요율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보장들도 장기보장으로 판매할 수 있음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한 보장들의 보장기간이 장기화될 필요가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건강보험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
 -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층 대상의 암, 치매, 장기요양(Long Term Care)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 활발함
 - 다양한 질병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갱신헌 상품이 활용되고 있음
-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간편심사 보험은 갱신헌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음
 - 고령층의 다수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할 수 없어 간편 심사 보험형태로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갱신헌 상품으로 개발되는 이유는 간편심사 보험에 대한 경험자료 부족과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향후 위험발생률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임
-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갱신헌 상품 개발을 선호하고 있으나 암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의 손해율이 최근 안정화되어 비갱신헌 상품이 다시 출시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암 발생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암보험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음
- 그러나 갱신헌 상품과 비갱신헌 상품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비갱신헌 상품은 상품 판매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화로 손해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갱신헌 상품은 갱신 시 보험료 상승으로 재가입이 어려운 부작용이 있음
- 본고에서는 갱신헌과 비갱신헌 상품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료 무보증(Non Guaranteed)상품을 제안하고자 함

2. 갱신헌 상품의 도입 이유 및 최근 현황



■ 보장성보험은 장기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歲)만기, 연(年)만기의 비갱신헌 또는 갱신헌로 개발됨

- 비갱신헌은 보험가입 시 보장기간이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을 만기로 보장하거나 또는 20년 만기, 30년 만기 형태의 연단위로 보장기간을 설정함
- 갱신헌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5년 갱신헌으로 판매되기도 함
 - 갱신 시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요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하여 80세, 100세까지 위험을 보장함
 - 최근 판매되고 있는 유병자 보험은 주로 갱신을 통하여 장기보장을 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갱신헌으로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리스크 관리임

- 예정위험률 $q_{\text{예정}}$ 을 산출할 때 미래 사고발생률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전할증을 설정하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될 때 갱신헌으로 개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
 - 예정위험률은 실제발생률 $q_{\text{실제}}$ 에 안전할증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¹⁾ 최근 보험회사들은 안전할증을 통상 30%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요 시 50%를 설정하기도 함²⁾
- 보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사고 발생률이 안전할증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증을 늘리기보다는 보장기간을 줄이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갱신헌 보험상품은 리스크 관리와 저렴한 보험료라는 장점과 함께 미래 보험료 상승과 역선택 위험에 대한 노출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1)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 시 예정위험률 산출 방식임

2) 안전할증 수준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보험회사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갱신 시점에 예정위험률을 개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가입 시점에 비갱신형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 그러나 갱신 시 연령 증가만으로도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고연령 계약자일 경우 비싼 보험료로 인하여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
 - 10년 갱신 전기납 기준 일반 암진단 보험상품의 연령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함

〈표 1〉 연령별 암보험상품 보험료(일반 암 기준 보험금 1,000만 원 가정)

(단위: 원)

보험회사	A	B	C	D
40세	2,600	2,680	3,100	3,831
50세	5,750	6,720	7,300	8,487
60세	11,500	14,400	18,100	19,050

자료: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cancerIns/cancerInsList.knia>)

- 60세 전후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시기에 비싼 보험료는 갱신을 어렵게 하여 보험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재가입하지 못할 수 있음
- 한편 갱신 시 건강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계약을 유지할 경향이 있어 위험률 산출 기준 시 고려된 계약자 집단보다 위험한 계약자 집단을 보유하게 되는 역선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자는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건강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생명보험회사들은 갱신형 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 중반 암 발생률이 매년 약 5%씩 상승함에 따라 비갱신형으로 판매된 암보험 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판매를 중단 또는 축소함
- 보험회사들은 암보험 상품을 비롯한 건강보험 상품을 갱신형 상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함
 - 입원 및 수술 담보 상품 등을 3~5년 갱신형 상품으로 개발함

■ 최근 보험회사들은 암 발생률이 안정화되고 전체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비갱신형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암 발생률은 2011~2012년을 전후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암 발생률은 2012년 대비 남자 88.3%, 여자 81.8% 수준으로 하락함

〈표 2〉 10만 명 당 연령 표준화 암 발생 환자 수

(단위: 십만 명 당)

연도	1999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자	291.9	319.4	340.6	342.3	342.3	341.1	330.7	312.4	301.2
여자	173.3	226.1	291.2	304.9	321.8	325.4	315.9	282.9	266.1

주: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출처: 국가암정보센터(<https://www.cancer.go.kr/lay1/S1T639C640/contents.do>)

- 전체 손해율도 2012년 91.6%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7년 77.1%를 기록함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암보험 상품을 갱신행과 함께 비갱신행도 함께 판매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의 목적으로 갱신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비갱신행 상품도 함께 판매함
- 비갱신행 건강보험상품은 보장기간이 길 경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 진단이 현재보다 간편해짐에 따른 질병발생률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할 수 없음
 - 과거 초음파검사의 보편화로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 경험이 있음
 - 최근 안정화된 암 발생률이 액체 생검³⁾과 같은 기술개발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음
 -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보험회사도 비갱신행 암보험 인수는 선호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보험상품이 필요함

3) 액체 생검(Liquid Biopsy)은 비침습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액체상태의 체액시료를 활용한 암 진단법을 지칭함

3. 보험료 무보증상품 도입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비갱신형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출하나 장래에 실제 질병발생률이 예정 질병발생률을 현저하게 상회할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장기보장상품임
 - 비갱신형 보험처럼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함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는 없음
 - 다만, 의료기술의 발달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실제 질병발생률이 변화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갱신형 보험처럼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음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비갱신형 상품과 갱신형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임
 - 비갱신형 상품의 장기 보장에 따른 리스크를 필요 시 요율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음
 - 갱신형 상품처럼 갱신 시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없음
- 국내에서는 2003년에 판매된 장기요양보험이 처음으로 보험료 무보증상품으로 개발되었음
 -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장애상태와 치매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 본 상품은 회사가 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정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⁴⁾
 - 예정위험률의 변경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할 수 없으며, 변경 후 위험률은 변경 전 위험률의 80~120% 범위 이내로 한정함
 - 당시 보험회사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판매 경험이 부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발생률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 장기요양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험회사들은 상품 판매를 통한 경험자료 축적이 거의 전무하였음
 - 장기요양이 다른 보장성 상품보다 더 먼 미래를 보장하여 발생률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

4) 약관 참조

- 특히,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환자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져 장기요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었음

- 판매 후 5년이 지난 2008년에 위험률은 예상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며 보험회사에서는 변동된 요율을 보험료의 조정보다는 보험계약자의 적립액(준비금)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함

- 적립금이 상향조정된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들은 만족해 한 것으로 알려짐

■ 이후 국내에서는 보험료 무보증상품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음

- 암보험 등을 보험료 무보증상품으로 추진하였으나 갱신했던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이 중단되었음

■ 이후 개발된 치매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기간을 80세 비갱신했던 보험으로 판매하다가 최근 9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저하시킴

- 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장기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80세 만기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치매가 80세 이상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음
 - 최근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90세 이상으로 늘리면서 갱신했던 보험 또는 비갱신했던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음
- 향후 의료기술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치매발생률이 급상승할 경우 보험회사들의 손실 우려와 갱신했던 상품 가입자들의 향후 보험료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예상됨

■ 해외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무보증상품이 개발되어 미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상품을 장기보장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장래 실제발생률이 보험계약 체결 시의 예측과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보험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1조)
 - 보험료가 무보증인 경우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 1964년에 발매된 입원특약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기초요율을 변경한 사례는 없음⁵⁾

5) 기본적으로 일본은 예정위험률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발생률이 문제가 되지 않음

-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장기 건강보험을 무보증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향후에 오를 수 있음을 고객에게 중요 정보로 알리고 있음
 -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CI(Critical Illness)를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고객에게 지속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은 급격한 보험금 지급, 투자수익률 악화, 해약 및 사업비 변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고 명시함
 -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상품은 보험금 지급률 상승, 의료물가 및 일반치료비 상승 등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4. 결론



- 보험회사들은 최근 다양한 건강보장 상품을 갱신행 또는 비갱신행으로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함
 - 보험회사들은 IFRS 17 등의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상품보다는 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함
 - 갱신행으로 판매하던 암보험을 비갱신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반면 비갱신행으로 판매하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 등 CI 담보를 갱신행 상품으로도 판매함
 - 일부 회사는 동일상품을 갱신행과 비갱신행으로 함께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함
- 그러나 안정적인 장기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갱신행 또는 비갱신행 장기보장상품은 한계가 있음
 - 인구고령화로 고연령에 대한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갱신행 상품은 향후 보험료 상승이 우려되고 비갱신행 상품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로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함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갱신행 및 비갱신행 상품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을 모두 제고시킬 수 있음

-
- 치매보험과 같이 장래 요율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보장들도 장기보장으로 판매할 수 있음

■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고연령화로 인한 보장 확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한 보장들의 보장기간이 장기화될 필요가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kiri](#)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 분석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일부 보험회사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4분기부터 IFRS 9을 적용함
 - 본고는 2018년 1/4분기에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한 4개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에 의한 실제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IFRS 9 적용으로 4개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2.9%에서 25.3%로 크게 증가함
 -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선행연구 결과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주로 파생 결합증권) 이 외에도 많은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임
-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급증하면 손익변동성이 확대되지만, 보험회사는 IFRS 17 시행 이전까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여 손익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C, D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52%, 105% 감소함
- 2021년 IFRS 17 및 IFRS 9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보험회사는 IFRS 9 적용으로 인한 수익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자산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금리리스크와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각 사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현실적으로 상당수 보험회사는 ALM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비금리부자산 및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은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IFRS 9 적용에 의한 대손충당금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대손충당금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분석배경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FRS 9은 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회사¹⁾의 경우 IFRS 17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IFRS 9 적용을 미룰 수 있음
- 보험회사는 IFRS 9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FRS 9 적용에 의해 발생 가능한 추가적 손익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IFRS 17 시행 전까지 적용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4분기부터 IFRS 9을 적용함

- 이들 대부분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함
 - 즉, IFRS 9을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과 IAS 39을 적용했다라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함

■ IFRS 9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침²⁾

-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의 자산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 및 손익의 변동성이 달라짐
 - 기존 IAS 39은 금융자산을 주관적인 기준(보유목적, 의도와 능력 등)에 따라 네 가지³⁾로 분류했지만, IFRS 9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사업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에 의해 금융자산을 세 가지⁴⁾로 분류함
- 둘째,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이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의한 손상인식 방법에서 기대손실모

1) ① 보험계약에서 분리한 저축요소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한 부채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에 비해 유의적이고, ② 보험 관련 부채의 총장부금액을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90% 이하지만 80%를 초과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함

2) 이 외에 IFRS 17 시행 이후 자산과 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 변동의 영향도 있음.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조영현·이혜은(2018)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형으로 전환되는데,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함

■ 본고는 IFRS 9 적용 결과를 공시한 4개 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IFRS 9으로의 전환이 보험 회사의 자본 및 손익변동성과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조영현·이혜은(2018)은 IFRS 9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추정한 바 있음
- 분석대상 4개사는 IFRS 9 적용에 의한 영향을 2018년 1/4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상세하게 공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새로운 회계제도 적용의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

2. 자산 분류 및 측정 기준 변화의 영향



■ IFRS 9 적용으로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⁵⁾ 측정 금융자산(이하 '당기손익금융자산')이 금융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5.3%로 크게 증가함

- 반면, 상각후원가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비중의 경우 A, B사와 C사가 확연히 다르게 변화함
 - A, B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하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비중 변화가 거의 없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함
 - C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함
- 20% 내외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조영현·이혜은(2018)의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임
 - 조영현·이혜은(2018)은 2016년 말 기준 IFRS 9이 적용되고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이 모두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가정하에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생명보험회사는 9.8%, 손해보험회사는 14.5%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5)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임

〈표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준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IAS 39 (2017. 12. 31)		IFRS 9 (2018. 1. 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당기손익금융자산	A사	3,192	4.0	18,185	23.0
	B사	1,619	4.8	6,654	19.6
	C사	4,339	2.9	29,451	19.3
	D사	436	0.7	28,766	46.1
	합계	9,586	2.9	83,056	25.3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A사	34,942	44.0	21,870	27.7
	B사	15,357	45.5	10,323	30.4
	C사	95,738	63.0	110,041	72.1
	D사	26,446	42.3	8,095	13.0
	합계	172,483	52.6	150,329	45.8
상각후원가금융자산	A사	41,351	52.0	39,004	49.3
	B사	16,747	49.7	16,985	50.0
	C사	51,826	34.1	13,112	8.6
	D사	35,660	57.0	25,490	40.9
	합계	145,584	44.4	94,591	28.8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선행연구 결과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 증권) 이 외에도 많은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임

- 〈표 2〉는 현행 IAS 39 기준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규모인데, A사와 B사의 경우 그 규모가 IFRS 9의 당기손익금융자산 규모와 유사하지만 C사와 D사는 양자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은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됨

〈표 2〉 IAS 39과 IFRS 9의 금융자산 분류

(단위: 억 원)

구분	IAS 39					IFRS 9
	당기손익인식 증권①	매도가능증권②			합계 (①+②)	당기손익금융자산
		주식 및 출자금	수익증권	기타증권		
A사	3,192	236	8,249	3,603	15,280	18,185
B사	1,619	226	4,306	43	6,194	6,654
C사	4,339	1,069	10,905	516	16,829	29,451
D사	436	949	15,347	12	16,308	28,766

주: 2017년 12월 말 기준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C사와 D사의 경우 상당 규모의 외화유가증권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음

- 외화유가증권 이 외에도 신종자본증권과 일부 특수채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됨

〈표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구성비

(단위: %)

구분	주식 및 출자금	신종자본증권	외화유가증권	수익증권	특수채	기타
C사	3.1	11.5	24.6	47.8	5.3	7.7
D사	2.3	-	30.4	54.8	-	12.6

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자산과 적용하지 않은 자산을 모두 포함함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계산함

■ 한편, C사의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던 대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것이 특징적임

-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대출채권은 대부분 PF 대출, 사모사채 등 기업대출임
- C사는 2017년 말 이전에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IFRS 17이 적용되어 보험부채가 시가평가 될 경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비중이 낮을수록 자본변동이 완화됨
- A, B사는 대부분의 대출채권 및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분류함
 - D사는 모든 대출채권을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만기보유증권의

66.4%는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함

3. 자본 및 손익에 미친 영향



■ 전환 시점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의해 보험회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이 크게 변동함

- A, C, D사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의해 각각 -544, 589, -113억 원 규모의 자본 증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A, C, D사 자본규모의 각각 10.0%, 3.3%, 2.1%에 해당함

〈표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미친 영향

(단위: 억 원)

구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㉑ (2017. 12. 31)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적용	기타 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㉒ (2018. 1. 1)	증가분 (^㉒ - ^㉑)
A사	-275	-544	446	-373	-98
B사	-121	0	207	86	207
C사	2,043	589	11	2,643	600
D사	200	-113	18	105	-95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한편, 2018년 1/4분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의 영향은 C사와 D사만 공시하였는데, 양사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의해 영업이익이 각각 444억 원, 216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330억 원, 160억 원이 감소함

-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C, D사의 법인세비용이 각각 114억 원, 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C, D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52%, 105% 감소함
 - 이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임

〈표 5〉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의한 2018년 1/4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변화

(단위: 억 원)

구분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C사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전④	429	126	301	-1,628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후⑤	873	240	631	-1,958
	증가분(⑤-④)	444	114	330	-330
D사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전④	-10	-3	-10	-4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후⑤	206	53	150	-206
	증가분(⑤-④)	216	56	160	-160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두 회사의 손익변동성 크기는 선행연구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조영현·이혜은(2018)은 2012~2016년도 기준 IFRS 9 적용 여부에 따른 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 변동성을 생보사 -38~+45%, 손보사 -21~+13%로 추정함⁶⁾
 - 이들의 추정치가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을 실제보다 낮게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IFRS 9 적용에 의한 산업 전체의 손익변동률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임

4. 대손충당금에 미친 영향



■ IFRS 9 적용으로 A, B, C 세 보험회사의 대손충당금은 평균 28% 증가함

- IAS 39에서는 설정하지 않던 채무증권의 대손충당금이 50억 원 설정되어 전체 증가분 109억 원의 46%를 차지함
 - IFRS 9은 정상 채권에 대해서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함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평균 48%가 증가함

6) 조영현·이혜은(2018)의 〈그림 III-6〉과 〈그림 III-7〉의 수치를 바탕으로 변동률을 계산함

〈표 6〉 대손충당금의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전기 말 (2017. 12. 31)	당기 초 (2018. 1. 1)	증가분	증가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A사	67	114	47	70.1
	B사	10	18	8	80.0
	C사	50	56	6	12.0
	합계	127	188	61	4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	A사	0	4	4	-
	B사	0	2	2	-
	C사	0	44	44	-
	합계	0	50	50	-
기타	A사	83	83	0	0.0
	B사	0	2	2	-
	C사	179	176	-3	-1.7
	합계	262	261	-1	-0.4
합계	A사	150	200	50	33.3
	B사	10	22	12	120.0
	C사	229	276	47	20.5
	합계	389	498	109	28.0

주: D사는 전환시점의 대손충당금 변화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대손충당금의 증가율은 높지만, 대손충당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으며 회계기준 전환에 의한 일회성 사건이므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다만, 향후 보유 채무증권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 IFRS 9 적용 시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할 경우 전체기간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므로 대손충당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IFRS 9은 손상인식 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경기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가 예상될 때 이를 반영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

5. 시사점



■ 2021년 IFRS 17 및 IFRS 9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변동성이 선행연구의 전망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네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IFRS 9 적용 시 대폭 증가하여 25%에 이르며, 이로 인해 투자손익의 변동이 확대됨
 - 단, 4사는 중·소형사들로 산업 전체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 C, D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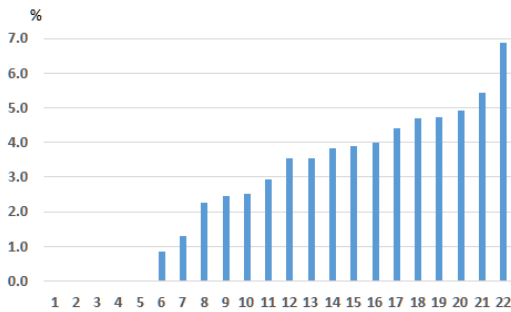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IFRS 9 적용에 의한 수익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자산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손익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비금리부자산과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 일반 채권 비중을 확대하면, 금리리스크도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손익변동성 완화 전략은 자산운용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신종자본증권, 수익증권, 특수채 등 당기손익금융자산은 일반 채권에 비해 위험 및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므로 이들의 비중 축소는 자산운용수익률을 낮출 수 있음
-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금리리스크와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각 사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현실적으로 상당수 보험회사는 ALM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비금리부자산 및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은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한편, IFRS 9 적용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절대 금액 증가는 크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대손충당금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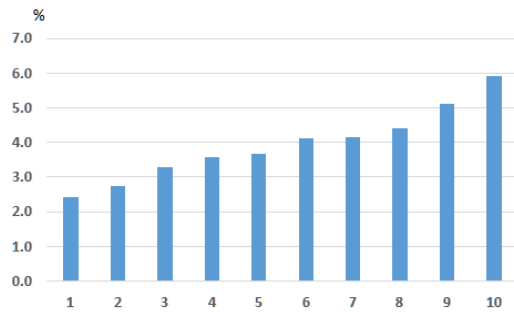
- IFRS 9은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손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 악화 및 보유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증할 수 있음
- 약관대출 이외의 대출채권(이하 ‘일반대출채권’)의 신용위험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의 경우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림 1>과 <그림 2>는 회사별 일반대출채권의 RBC 기준 평균 신용위험계수를 나타냄 **kiri**

<그림 1>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 신용위험계수



주: 2017년 말 기준, 추정 신용위험계수가 과도하게 높은 개사는 제외
 자료: 조영현(2018)7)에서 수정하여 인용

<그림 2>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 신용위험계수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조영현(2018)에서 수정하여 인용

7) 조영현(2018),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심포지엄 발표자료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과 시사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TM·홈쇼핑·CM·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은 2000년 이후 '신채널'이라 불리면서 대면채널·방카슈랑스 채널과 함께 보험유통시장의 주된 채널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성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2017년 기준 생명보험(초회보험료 기준)과 손해보험(원수보험료 기준)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각각 1.4%, 12.1%이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2012년을 최고점으로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보험상품별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단순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저관여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대면채널별 비중의 경우 TM채널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손해보험의 경우 CM채널의 약진이 돋보임
 - 보험상품별 비대면채널의 보험료 비중의 경우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55.0%), 특별계정(변액보험 등)(30.5%), 생존보험(9.7%), 생사혼합보험(4.7%) 순이며,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55.9%), 장기보험(32.3%), 개인연금(4.5%), 특종보험(4.2%), 보증보험(3.0%) 순으로 나타남
 - 비대면채널별 비중의 경우 TM채널이 생·손보 각각 86.5%, 5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CM채널의 경우 2010년 4.7%에서 2017년 28.7%로 크게 확대됨
-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유지율도 대면채널과 유사한 수준이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향후 소비자들의 비대면채널 가입의향도 현행보다 높게 나타남
- 보험유통의 흐름이 소비자보호를 고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접목을 통해 변화·발전해 나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보험회사는 대면채널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채널의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판매에 용이한 상품의 요건, 즉 상품 표준화, 단순화(특약최소화), 소비자 이해 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춘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이 필요함
 - 설명대본 충실화, 경품제공 판매시책 등 보험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 제거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채널관리 노력이 필요함

- 현재의 outbound 위주의 영업에서 inbound 영업 패턴의 활용, 인터넷이나 모바일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TM·홈쇼핑·CM·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은 2000년 이후 ‘신채널’이라 불리면서 대면채널·방카슈랑스채널과 함께 보험유통시장의 주된 채널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성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2017년 기준 생명보험(초회보험료 기준)과 손해보험(원수보험료 기준)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각각 1.4%, 12.1%에 불과하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2012년을 최고점으로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임
- 초기 예상과 달리 비대면채널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나, 2010년 이후 불완전판매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규제감독 정책 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금융당국은 TM채널을 비롯한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채널보다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TM채널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자율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옴¹⁾
 -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에 대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상품을 설명하기 복잡한 보장성보험상품 위주로 판매하려는 전략을 시행한 것도 TM채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험유통채널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제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대면채널의 시장동향을 분석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6. 18),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2. 비대면채널 시장 현황 및 특징



가. 비대면채널의 성장성 및 채널점유율 추이

■ 지난 10년간 손해보험산업의 비대면채널 원수보험료는 15.6% 성장한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는 1.9% 성장에 그침

- 과거 10년 동안 손해보험 비대면채널 성장률(15.6%)은 대면채널 성장률(11.4%)을 상회하였으나, 생명보험 비대면채널 성장률(1.9%)의 경우 대면채널 성장률(7.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은 CM채널과 TM채널이 각각 18.7%, 2.5% 성장하였으나, 홈쇼핑채널의 경우 감소(-6.6%)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도 CM채널(22.0%)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TM채널(17.9%)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표 1〉 모집방법별 보험료 성장률(2008~2017년)

(단위: %)

구분	전체	대면	비대면			
			TM	홈쇼핑	CM	
생명보험	7.6	7.7	1.9	2.5	-6.6	18.7
손해보험	11.6	11.4	15.6	17.9	10.4	22.0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 2017년 기준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 규모는 1,727억 원으로 전체 초회보험료의 1.4%에 불과하나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는 2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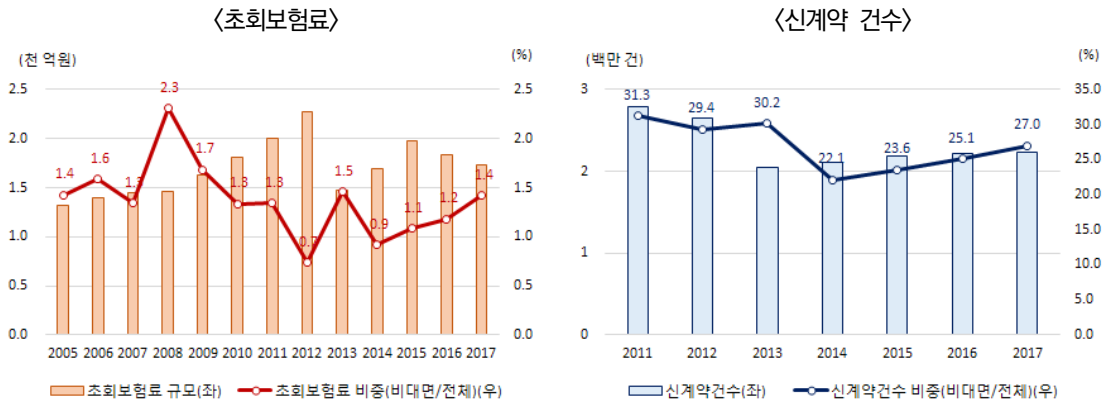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 판매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가 많고²⁾, 손해보험에 비해 판매자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임³⁾

2) 2017년 기준 초회보험료의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은 65.4%로 나타남(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참조)

3) 안철경 외(20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Capgemini and EFMA(2007) 재인용

- 한편 비대면채널의 신계약 건수는 224만 건으로 전체 중 27.0%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저가 상품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그림 1〉 생명보험산업의 비대면채널 초회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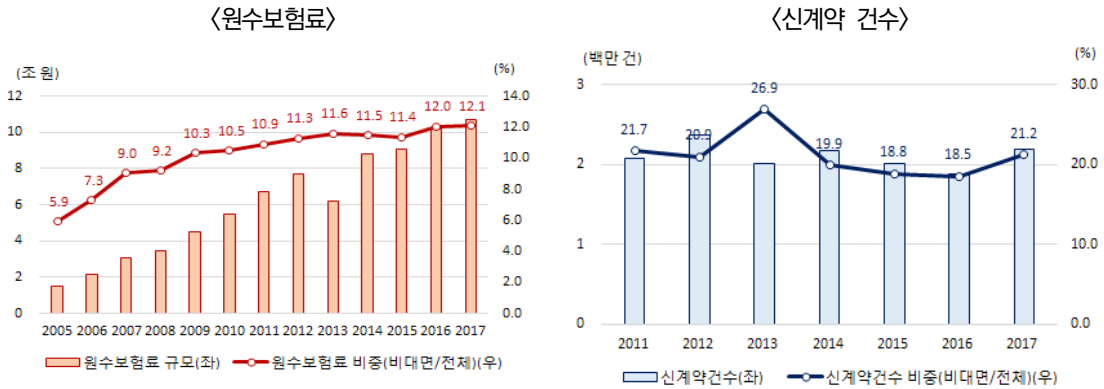
- 2017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산업의 비대면채널 원수보험료 규모는 10.7조 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12.1%를 차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에 비해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비대면채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의무보험이면서 상품이 정형화되어 비대면채널 가입이 용이한 자동차보험⁴⁾이 있고 가격민감도가 높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의 비대면채널 활용은 2010년 22.9%에서 2017년 35.4%로 크게 확대됨
 - 가격민감도는 보험상품 구매 영향요인 중 가장 우선시되며,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에서 가격민감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방증함⁵⁾
- 한편 비대면채널의 신계약 건수는 220만 건으로 전체 중 21.2%를 차지함에 따라 손해보험 역시 상대적으로 중저가 상품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21.5%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5) 안철경 외(20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Capgemini and EFMA(2007) 재인용

〈그림 2〉 손해보험산업의 비대면채널 원수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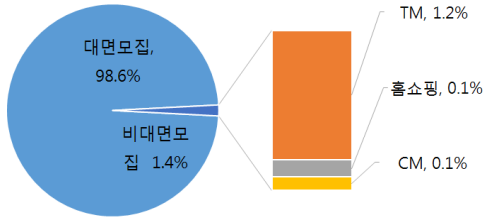
나. 비대면채널별 운영 실태

- 2017년 기준, 생명보험 초회보험료의 비대면채널 비중 1.4% 중 TM채널이 1.2%, 홈쇼핑채널이 0.1%, CM채널이 0.1%를 차지함
- 비대면채널 중 TM채널 비중이 2017년 기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비대면채널 매체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속적인 감독강화를 추진해 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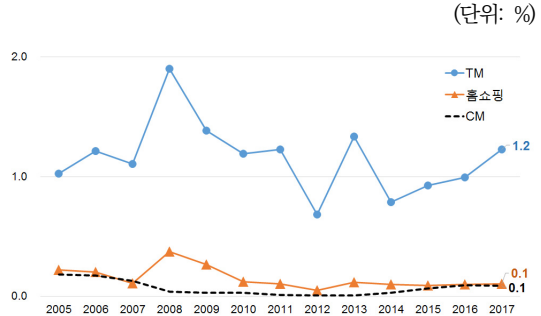
6) 예를 들면, 2006년 「보험통신판매가이드라인」에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계약의 10% 이상), 완전판매모니터링(계약의 20% 이상)을 자율규제로 도입하였으며, 2010년 「보험통신판매업무보험규준」에서 실시 비율을 각각 20% 이상, 40%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2014년 동 자율규제를 감독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2016년 보험계약 청약 후 확인제도(해피콜) 법규화 및 적용대상 확대(저축성·변액보험에서 장기보장성보험 추가), 2018년에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에 고령자 비율을 30% 이상 배정토록 함

〈그림 3〉 생명보험산업의 판매채널 비중 변화(초회보험료 기준)

〈모집방법별 초회보험료 비중(2017년)〉



〈비대면채널별 비중 변화(200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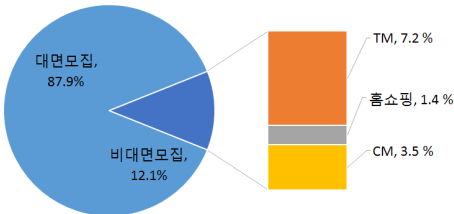
주: 괄호안은 비대면채널 내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 2017년 기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비대면채널 비중 12.1% 중 TM채널이 7.2%, CM채널이 3.5%, 홈쇼핑채널이 1.4%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확산에 따라 CM채널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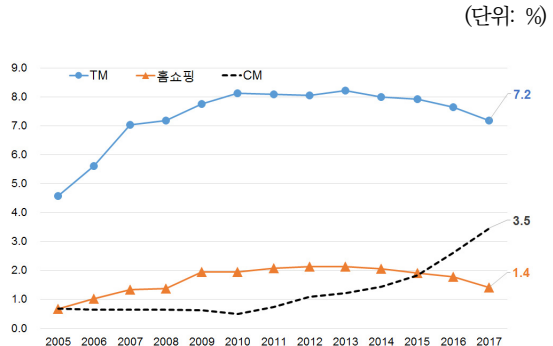
●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저렴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등으로 CM채널의 점유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이후 CM채널 점유율이 홈쇼핑채널 점유율을 추월한 상태임

〈그림 4〉 손해보험산업의 판매채널 비중 변화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2017년)〉



〈비대면채널별 비중 변화(2005~2017년)〉



주: 괄호안은 비대면채널 내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3. 보험상품별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 및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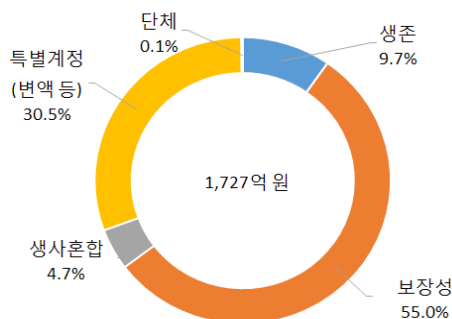
가.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 비중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단순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저관여 상품⁷⁾의 비대면채널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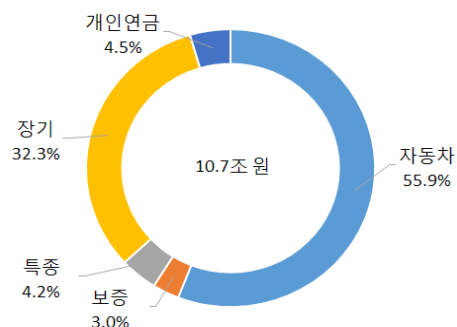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2017년 비대면채널의 상품별 초회보험료는 보장성보험(55.0%), 특별계정(변액보험 등)(30.5%), 생존보험(9.7%), 생사혼합보험(4.7%) 순으로 나타남
 - 복잡한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빠른 속도로 상품내용 전달 시 고객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가 미미한 수준임
- 손해보험의 경우 2017년 비대면채널 원수보험료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55.9%), 장기보험(32.3%), 개인연금(4.5%), 특종보험(4.2%), 보증보험(3.0%) 순임
 - 해상보험 등과 고도의 보험기술 및 국제성과 기업성이 요구되는 상품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많은 반면, 정형화된 자동차보험 상품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이 높음

〈그림 5〉 비대면채널 상품별 비중

〈생명보험(초회보험료 기준, 2017년)〉



〈손해보험(원수보험료 기준, 2017년)〉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7) 관여도는 특정상황에 특정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 또는 중요성 지각 정도를 의미함. 저관여 상품(Low Involvement Product)이란 보험상품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짧은 시간 내에 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상품을 의미함(안철경 외(20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나. 보험상품별 비대면채널 활용 추이

■ 비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판매 비중은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개인보험 상품 중 상대적으로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높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판매 비중이 2010년 13.9%에서 2017년 7.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어린이보험의 경우 비대면채널 비중이 2010년 35.7%에서 2017년 4.2%로 급감하였으며, 암보험의 경우도 71.7%에서 36.3%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⁸⁾
 - 한편 CI 보험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3.3%에서 11.2%로 증가하였으며, 개인형 실손보험의 경우는 4.7%에서 5.6%로 소폭 증가함⁹⁾
- 생존보험의 비대면채널 판매 비중은 0.4%에서 0.7%로 증가한 한편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2.0%에서 0.2%로 감소하였음
- 변액보험을 포함하는 특별계정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0.4%에서 1.1%로 증가하였음

〈표 2〉 생명보험 주요상품별 비대면채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변액보험 등)	합계
	생존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2010	0.4	13.9	2.0	0.1	0.4	1.3
2017	0.7	7.5	0.2	0.2	1.1	1.4

주: 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 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TM채널 비중이 86.5%로 2010년 (89.1%)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홈쇼핑채널(8.9% → 7.3%) 비중은 하락하고, CM채널(2.0% → 6.2%) 비중은 상승함

- 보장성보험의 경우 TM채널(85.7% → 86.3%)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홈쇼핑채널 판매 비중이 소폭 증가(11.7% → 12.5%)함
- 생존보험의 경우 CM채널을 통한 판매가 2010년 7.1%에서 2017년 23.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TM채널(90.2% → 29.3%)을 통한 판매가 크게 감소

8)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정보시스템 참조

9)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정보시스템 참조

- 한 반면, 홈쇼핑채널(9.5% → 64.6%)을 통한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변액보험의 경우 TM채널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99.5% → 99.1%)을 차지함

〈표 3〉 생명보험 주요상품의 비대면채널별 비중 변화(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변액보험 등)		합계	
	생존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TM	86.9	72.1	85.7	86.3	90.8	36.0	100.0	100.0	99.5	99.1	89.1	86.5
홈쇼핑	6.0	4.5	11.7	12.5	8.9	0.2	0.0	0.0	0.5	0.0	8.9	7.3
CM	7.1	23.4	2.6	1.2	0.3	63.8	0.0	0.0	0.0	0.9	2.0	6.2

주: 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채널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출현,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 확대에 따라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증가(22.9% → 35.4%)하는 추세이며, 보증보험의 경우 18.4%로 비중이 크게 확대됨
-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등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경우 비대면채널의 활용도가 낮고 변화추이도 미미함¹⁰⁾

〈표 4〉 손해보험 주요상품별 비대면채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보증	특종	개인연금	합계
2010	6.0	22.9	0.0	17.4	11.8	10.6
2017	7.0	35.4	18.4	7.8	13.1	12.1

주: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손해보험의 TM채널(76.7% → 59.5%)과 홈쇼핑채널(18.6% → 11.8%)을 통한 가입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CM채널(4.7% → 28.7%)을 통한 가입 비중이 크게 확대됨

10) 화재보험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17년 0.1%, 해상보험은 2010년 2.1%에서 2017년 0.1%로 감소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CM채널 비중이 2010년 8.7%에서 2017년 44.1%로 확대됨
 -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등 사업비가 적게 들어 대면채널에 비해 15~17%, TM채널에 비해 3~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¹¹⁾
- 장기보험의 경우 2010년 TM채널(54.2%)과 홈쇼핑채널(45.4%)을 통한 판매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홈쇼핑채널(28.9%) 판매 비중이 줄고 TM채널(69.9%) 비중이 확대됨

〈표 5〉 손해보험 주요상품의 비대면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보증		특종		개인연금		합계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TM	54.2	69.9	91.3	55.9	0.0	0.0	82.2	74.2	50.8	55.8	76.7	59.5
홈쇼핑	45.4	28.9	0.0	0.0	0.0	0.0	17.4	16.9	48.7	37.5	18.6	11.8
CM	0.4	1.2	8.7	44.1	0.0	100.0	0.4	8.9	0.4	6.7	4.7	28.7

주: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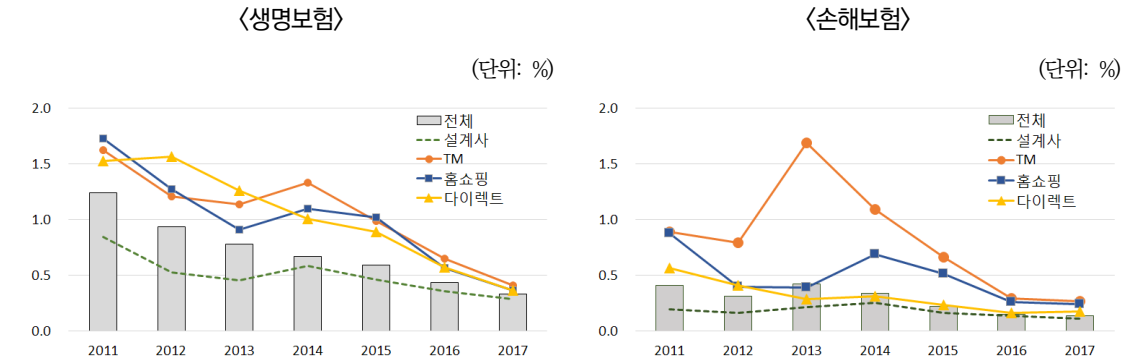
다. 주요지표: 불완전판매 비율, 유지율

-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규제강화 정책으로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개선 추이를 보이며, 설계사(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에 근접한 상황에 놓여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TM채널과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2011년 각각 1.63%, 1.73%로 설계사채널(0.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0.41%, 0.37%로 크게 줄어듦¹²⁾
 - 전화 또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대면채널에 비해 고객의 이해도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이들 채널을 활용하여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을 수 있음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8), “2017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12) 2017년 생명보험의 설계사채널 불완전판매 비율은 0.29%임

〈그림 6〉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 추이



주: 불완전판매 비율=불완전판매 건수/신계약 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13회차 유지율은 각각 84.4%와 82.9%,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70.9%, 72.2%로 두 채널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표 6〉 생명보험회사의 모집방법별 유지율 현황(2017년)

(단위: %)

구분	13회차	25회차	37회차	49회차	61회차
대면채널	84.4	70.9	67.6	57.0	49.9
비대면채널	82.9	72.2	63.4	55.7	45.8

자료: 보험개발원(2017), 『CY2017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라. 향후 성장가능성: 비대면채널 가입의향

■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현재보다 향후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남¹³⁾

- 향후 직판채널 선호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현행 3.6%에서 10.7%로, 손해보험의 경우 현행 13.3%에서 26.0%로 증가함
 - 생명보험 상품별 향후 직판채널 선호도를 살펴보면, 재해상해보험(13.4%), 저축성보험(12.0%), 연금보험(10.1%)이 높게 나타남

13) 상품별 채널선호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연구원(2017),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참조

- 손해보험 상품별 향후 직판채널 선호도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현행 15.7%에서 26.4%로, 장기보험이 0%에서 18.6%로, 상해보험이 20.0%에서 25.4%로 가입의향이 높아짐

〈표 7〉 향후 채널 선호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현행	향후	현행	향후	현행	향후	현행	향후
생명보험	95.8	84.9	3.6	10.7	2.4	7.9	2.8	4.8
손해보험	90.8	77.1	13.3	26.0	1.0	1.0	-	-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
 자료: 보험연구원(2017),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 요약 및 시사점



- 2000년 이후 다채널 전략의 시작으로 신채널이 지속적으로 형성·발전해왔으나 최근 소비자보호 규제강화로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비대면채널의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IT를 기반으로 하는 TM·홈쇼핑·CM·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형성·발전해옴
 - CM채널, 인바운드 TM채널 등의 경우 자발적 구매 또는 녹취 등으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낮고 비용 효율성이 높아 당국도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을 출범시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2014년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보호 위주의 규제 정책이 강조되면서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다양한 신채널의 활용이 부진한 상태임
 - 자동차보험이 2010년 22.9%에서 2017년 35.4%로 크게 확대된 반면, 어린이보험과 암보험 등 생명보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비대면채널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중저가 상품공급에 유리하며, 고객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고, 중·소형사의 차별적 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비대면 채널은 대면채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유지율도 대면채널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소비자들의 향후 가입의향이 확대되어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 TM채널과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설계사채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채널 간 불완전판매 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 다만, TM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화상으로 전달해야 하는 매체의 특성상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대면채널에 비해 완전판매에는 한계가 있음
 - 보험연구원(2017)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향후에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의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유통의 흐름이 소비자보호 기조 하에 4차 산업혁명의 접목을 통해 변화·발전해 나가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비대면채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면채널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채널의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판매에 용이한 상품의 요건, 즉 상품 표준화, 단순화(특약최소화), 소비자이해 용이성 등을 갖춘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설명대본 충실화, 과장광고 및 경품제공 판매시책 등 보험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 제거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비대면채널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채널 간 상호보완과 경쟁을 통해 보험상품 공급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편익 제고 및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대면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outbound 위주의 영업에서 inbound 영업 패턴의 활용, 인터넷이나 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과도한 규제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비대면채널의 가격경쟁력 및 소비자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균형있는 규제가 요구됨 **kiri**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임
-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출고객은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신용보험이 활성화된 이들 국가에서는 상품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상품판매 관행 개선,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공시, 역선택 방지를 위한 상품설계 등이 이루어짐
- 향후 국내에서도 건전한 신용보험시장 형성을 위해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사망(자살 제외), 심각한 장애, 중대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요율산정 규제가 필요함
 - 끝으로 불완전판매 및 역선택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험이란 대출고객이 사망 등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임
 - 신용보험은 채무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채무가 소멸하여 유족 등의 생계안정 확보가 가능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
- 2018년 2/4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약 1,500조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대출금리 인상 시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가계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가계부채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계층의 이자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¹⁾

■ 최근에는 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채무의 상속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²⁾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중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속성 보험(찍기) 금지 규정³⁾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청약을 권유할 경우는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보는데, 신용생명(손해)보험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에 본고에서는 가계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용보험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신용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국의 운영현황 및 감독제도를 토대로 국내 신용보험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3. 29), “금융안정 상황(2018년 3월)”

2) 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2018. 7. 30),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3)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2. 국내 신용보험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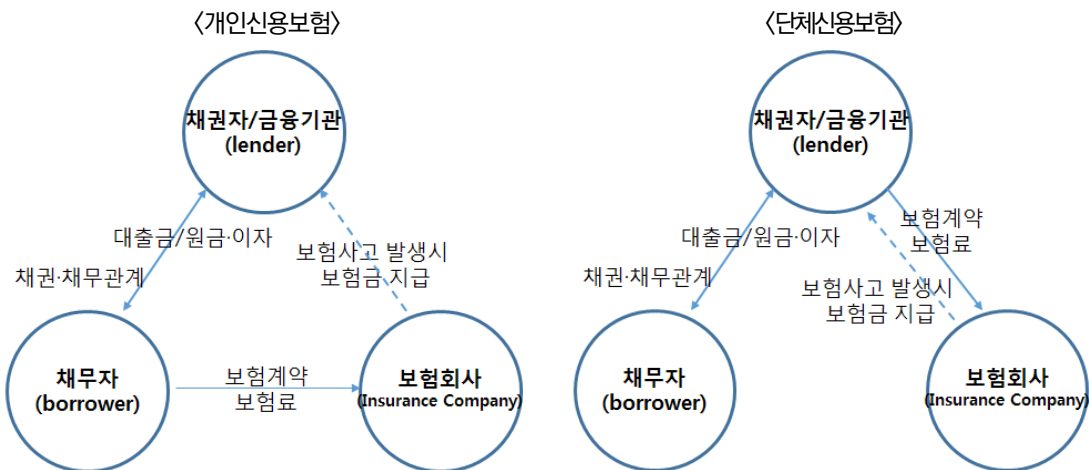


가. 신용보험의 개념

■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이하 ‘신용보험’)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해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임

- 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대출자(채무자)이며, 계약자는 개인(채무자) 또는 신용공여기관(채권자)⁴⁾임
 - 금융회사가 직접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이의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를 대신하여 잔액채무를 금융회사에 보상하는 단체신용보험형태가 일반적임
- 사망, 상해·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대출고객의 채무상환 불이행 시 대출원리금 또는 월 납입금을 담보하며, 계약형태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구분됨

〈그림 1〉 신용보험의 유형



4) 신용공여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는 물론 자동차할부금융, P2P대출자도 포함함

■ 국내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출보증보험⁵⁾이 있으나, 대출보증보험은 신용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대출보증보험은 보험사고(채무불이행) 발생 시 보험회사가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채무자 또는 유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⁶⁾ 반면, 신용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가 상환되고 채무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구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신용보험이나 보증보험 모두 대출과 관련되는 상품이지만 신용보험은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으로 은행 판매가 가능하지만 대출보증보험은 허용되지 않음

〈표 1〉 개인신용보험과 대출보증보험 차이

구분	신용보험	대출보증보험
보험사고	사망, 장애 등	채무불이행
채무변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후 구상
방카슈랑스	1단계 허용	불가능

■ 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또 다른 상품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가 있음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매월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카드회원으로로부터 받고, 회원이 사망, 장기입원 등 특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상품임
 - DCDS의 경우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서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과도한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한편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 감독당국 등에 의해 약관 및 보험요율이 검증받아 채무면제 유예 상품의 수수료에 비해 보험요율 수준이 낮음
 - 또한, 채무의 면제나 유예가 아니라 채무 자체를 변제해 줌으로써 고객의 부채에 대한 부담 및 부채의 상속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5)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 관련) 〈부표 1〉에서는 보증보험상품을 신원보증(Fidelity), 채무이행보증(Surety), 선급금이행보증(Advance Payment), 신용보험(Credit)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6)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표 2〉 국내 신용관련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

구분	신용보험		대출보증보험
	개인신용보험	단체신용보험	
담보위험	사망, 장애, 질병, 실업 등		대출고객의 채무불이행
보험계약자	채무자(대출고객)	대출기관(금융기관)	대출기관(금융기관)
피보험자	채무자(대출고객)		대출기관(금융기관)
보험회사 역할	채무변제(보험금 지급)		채무변제 후 구상
보험료 납입형태	개인이 보험회사에 납부	대출기관이 보험회사에 납부	대출기관이 보험회사에 납부

나. 시장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상품이 등장하였으나,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대한보증보험이 1989년 신용카드신용보험, 1995년 6월 주택임대차신용보험 등을 인가 받아 판매하였으며, 한국보증보험은 1995년 10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을 판매함⁷⁾
- 1997년 2월, 주택은행과 한국생명이 업무제휴를 통해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으며,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 판매가 허용됨⁸⁾
 - 생명보험회사 중 메트라이프생명이 2016년 3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2017년 9월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⁹⁾, 현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이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자동차할부금융 및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신용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음¹⁰⁾
- 국내의 경우 신용보험계약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으나, 2017년 기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수입보험료는 4억 5,200만 원이며, KB손해보험의 신용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기준 13억 원 규모로 미미한 수준임¹¹⁾

7) 이호영·박근홍·김영부(1998), 『신용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8)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3. 1. 17),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 매일경제(2003. 8. 17), “사망 때 대출금 대신 갚는 보험 등장”

9) 비즈니스워치(2018. 6. 11), “신용생명보험 속얹이 ② 고사·회생 ‘갈림길’”

10) 비즈니스워치(2018. 6. 7), “신용생명보험 속얹이 ① “끼기 아닙니다””

11) 이데일리(2018. 7. 11), “끼기 규제 부담에, 신용생명보험 30년째 유명무실”; 비즈니스워치(2018. 6. 11), “신용생명보험의 속얹이”

■ 또한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방카슈랑스 규제(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이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은행 등 대출기관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계약의 기준에 저촉될 것에 대한 우려로 단체신용보험의 판매에 소극적임¹²⁾
 -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대출담보물건 설정 등이 가능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대출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신용보험의 경우도 은행을 제외한 보험상품 판매자(설계사 등)가 대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가입 권유에 한계가 존재함
 - 한편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 규제로 대출 승인 이후 고객의 상품가입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여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려움
- 금융당국은 대출창구에서의 꺾기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으로 규제완화에 미온적임

3. 주요국의 신용보험 운영 및 감독정책



■ 소비자신용보험시장 규모가 미미한 국내 시장과는 달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상품(Consumer Credit Insurance: CCI)이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음¹³⁾

〈표 3〉 미국의 주요 소비자신용보험상품

상품유형	정의 및 보상범위
신용생명보험 (Credit Life Insurance)	채무자 사망 시 대출 및 신용거래를 통해 발생하였던 채무액을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상환
신용상해보험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채무자가 약관에서 정의한 장애를 입어 대출 및 신용거래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액을 대신 상환
신용실업보험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채무자가 약관에서 정의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대출 및 신용거래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액을 대신 상환
신용재산보험 (Credit Personal Property Insurance)	개인의 신용거래를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담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

자료: NAIC(2001),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

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3조(구속성 보험계약의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참조

13) 주요국의 신용보험 운영 및 감독정책은 〈별첨 1〉 참조

■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신용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상품판매 관행,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추진하고 있음

-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는 상품설명 의무 준수 미흡, 채무자의 보험가입 사실 미인지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매자 교육 강화, 표준(핵심)설명서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상품판매 관행과 관련해서 교차판매 및 의무가입 관행, 상품판매시점, 소비자의 선택폭 제한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끼워팔기, Opt-out 판매 금지, 대출 발생 7일 후 상품가입,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폭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과도한 보험료 수준, 일시납 보험료 징수 구조 등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및 보험료 환불제도를 마련하고 보험료 및 수수료를 규제함
- 한편, 상품 특성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역선택(자살, 고의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한도 및 횟수를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를 규정함

〈표 4〉 주요국 신용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 장치

문제점	주요 내용	제도 개선 및 권고 사항
불완전 판매	• 상품설명 의무 준수 미흡(보장범위, 비용) • 채무자의 보험가입 사실 미인지	• 판매자 교육 강화 • 표준(핵심)설명서 제공: 프랑스, 호주 등
상품판매 관행	• 교차판매(Cross-Selling) 및 의무가입 관행 • 상품판매시점: 대출과 동시에 해당상품 가입 • 소비자 선택폭 제한(가입대상 보험회사 제한)	• 끼워팔기(Tying), Opt-out 판매 금지 • 대출발생 7일 후 상품가입: 영국(PPI) •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폭 확대
보험료 및 수수료 적정성	• 과도한 보험료, 높은 판매수수료 • 일시납 보험료 징수 → 조기 대출상환 시 환급금	• 보험료 및 손해를 공시 • 조기 상환 시 보험료 환불: 스페인 등 • 보험료 및 수수료 규제: 이탈리아, 미국
역선택 문제	• 상품특성을 악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행태 - 자살보험금, 고의적 상해, 자발적 실업 등	• 신용실업보험: 지급한도, 횟수 설정 • 보험금지급 면책사유 규정

■ 이 같은 신용보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 및 제도 개선으로 신용보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제고가 같이 이루어짐

4. 요약 및 시사점



- 주택담보대출 등 점증되는 가계대출 리스크가 국내경제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객(대출자)의 유가족 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심리적 불안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노인의 치매, 고도 장애, 사망으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로 대두됨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신용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출고객(채무자)은 신용채무 상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및 장애 등에 따른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가 상속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불안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은행 등 대출기관(채권자)은 고객의 부채상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신용보험상품을 통해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시장 개척이 가능함
 -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표 5〉 신용보험의 주요 기능

채무자(대출고객)	채권자(금융기관)	보험회사	국가/사회
• 사고 시 대출금 상환보장 • 유족에게 채무상속 방지 • 개인신용하락 위험 방지	• 부실채권 방지를 통한 여신 건전성 확보 • 고객과의 관계 보호	• 신규상품 판매채널 확보 • 신시장 개척	• 가계재정안정 도모 •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

- 이러한 신용보험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서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상품 판매 관행,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짐

- 2005년 영국의 지급보장보험(PPI) 불완전판매 스캔들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유럽 주요국의 신용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미흡, 끼워팔기(Tying) 관행에 따른 소비자의 회사선택폭 제한, 보험료의 적정성, 수수료의 투명성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음
 - 한편, 일본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고의적인 상해, 자발적 실업, 자살사고 등 신용보험상품의 특성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신용보험은 대출로 야기되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 역선택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용보험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꺾기 등 불완전판매 및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사망(자살 제외), 심각한 장애, 중대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가계대출의 상환에 관한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가산금리체계에 반영되므로, 사망 등 매우 특별한 발생확률의 사건에 대해 신용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요율산정 규제가 필요함
 - 끝으로 불완전판매 및 역선택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첨부 1〉 주요국의 신용보험 운영 현황 및 감독정책

1. 미국

■ 미국 NAIC 소비자신용모델법(Consumer Credit Model Act)에서는 소비자신용보험을 보장 위험에 따라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 및 장애보험, 신용실업보험, 신용재산보험 등으로 구분함¹⁴⁾

-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 Insurance)은 계약자 사망 시 대출자의 대출 또는 신용거래로 생하였던 잔존 채무를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보상해주는 상품임
- 신용상해 및 장애보험(Credit Accident & Health or Credit Disability Insurance)은 질병 또는 사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회복 시까지 채권자의 채무액에 대해 약정된 월별 상환금을 대납함¹⁵⁾
- 신용실업보험(Credit Unemployment Insurance)은 계약자(차주)가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 당해 대출 또는 신용거래 채무액에 대해 약정된 월별 상환금을 대납하는 구조임¹⁶⁾
- 신용재산보험(Credit Property Insurance)은 소비자가 대출 및 할부신용을 통해 구입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수리·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임
 - 동 상품은 재산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채무변제능력의 변화와 관계없음

■ 최근 10년간 신용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요율인하 등으로 감소 추세이며 손해율은 50%를 하회하는 수준임

14) NAIC(2001),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 NAIC(2009), Credit Personal Property Insurance Model Act; 이상제(2006),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5) 주민정·조재현(2004),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6) 보험계약자가 출산, 간호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 또는 신용거래로 발생한 채무액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월별상환금을 대납해 주는 신용휴직보험(Credit Leave of Absence)상품도 있음. 신용실업보험과 신용휴직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첨부 표 1〉 미국의 주요 신용보험의 시장 규모 및 손해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용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1,272	1,099	805	773	759	756	740	739	731	672
	손해율	42.7	45.3	45.1	47.6	47.0	45.7	47.7	47.6	45.2	44.2
신용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1,401	1,245	940	878	870	885	892	885	851	786
	손해율	36.8	40.3	43.5	45.2	41.8	41.2	36.7	34.9	33.8	32.4

자료: NAIC(2017),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 Health Insurance Experience", 각 연호

■ 한편,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신용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규제 및 수수료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¹⁷⁾

- 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 의무와 더불어 최저손해율제도(Minimum Loss Ratio)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설계 시 주보험감독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장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의 적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요율(prima facie rate)을 신고하나, 대출자에 따라 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함

2. 일본

■ 일본의 경우 1960년대 들어 신용생명보험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자금대출금을 담보해주는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됨¹⁸⁾

- 1958년 자동차 할부판매대금을 담보하는 할부판매대금보험상품이 출시된 이후¹⁹⁾, 1960년대 중반 이후 가계자금의 대출금을 담보하는 개인대출신용보험상품 등이 개발되었고, 1966년부터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함²⁰⁾
 - 특히, 일본에서는 평균상환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장기대출이 많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하고 있음
- 대출자가 사망 또는 고도 장애상태에 놓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자의 채무(주택담보대출)를 대납해 주는 단체신용생명보험상품이 가장 일반적임²¹⁾

17) National Treasury(2014), "Consumer Credit Insurance Market in South Africa"; 이상제(2006),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8) 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

19) 이호영·박근홍·김영부(1998), 『신용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 이지연(2018. 7), "일본의 소비자 대출거래와 단체신용생명보험", 월간생명보험 473호, 생명보험협회

21) <https://www.hokennavi.jp/cont/column-knowhow-019/>

- 단체신용보험상품은 취급기관에 따라 기구단체신용생명보험, 신용보증협회단체신용생명보험, 중앙노동은행단체신용생명보험, 일반금융기관단체신용생명보험으로 분류 가능함²²⁾
- 단체신용생명보험상품의 경우 특약을 통해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 채무를 면제해 주는 상품도 존재함
 - 예를 들어, 3대 질병 특약(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8대 질병 특약(3대 질병, 당뇨병, 고혈압, 간경변, 만성췌장염, 만성신장질환)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입 전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가 필요함

〈첨부 표 2〉 일본의 신용생명보험시장 규모(보유계약기준)

(단위: 천 명, 십억 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체신용 생명보험	피보험자	162,829	153,437	143,415	130,875	127,464	126,252	121,450	119,112
	가입금액	170,262	169,667	169,830	170,622	172,325	174,068	176,507	180,410
소비자신용 단체생명보험	피보험자	1,413	1,037	746	564	474	422	388	358
	가입금액	322	217	152	121	110	115	119	117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각 연호

■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고객들의 단체신용생명보험(Group Credit Life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함²³⁾에 따라 시장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대출이자율에 포함되어 있으며, 질병특약 가입 시 대출 금리에 추가됨
 - 예를 들어, 주신네트은행(住信SBIネット銀行), 요코하마은행(横浜銀行), 후쿠오카은행(福岡銀行) 등과 제휴하여 판매하는 카디프생명의 단체신용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모기지 금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8대 질병을 포함시킬 경우 연 0.3% 금리를 추가함²⁴⁾
- 주택담보 대출 시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플랫35(フラット35)²⁵⁾ 상품의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됨²⁶⁾

22) <https://www.hokenmarket.net/carna/detail/post128.html>

23) 全国信用保証協会連合会(<http://www.zenshinhoren.or.jp/danshin/index.html>)

24) Gomez(2017. 6. 5), “多様化する団体信用生命保険と引受保険会社の提供する豊富な商品サービス”

25) flat 35(フラット35)는 민간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최장 35년 고정금리 상품임; <https://www.jhf.go.jp/loan/yushi/info/flat35.html>

26) 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

■ 한편, 대출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생명보험의 가입을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의 역선택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

-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모르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제기됨
 - 대출기관에서는 채무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실히 규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²⁷⁾
- 신용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에 금융청은 2006년 소비자신용단체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²⁸⁾

-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 중 자살을 원인으로 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 중 9.4%(회사별로는 4.5~2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험금 지급건수 중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60.6%에 달하고 있어²⁹⁾, 사인확정 보험사고 대비 자살사고 비중은 23.9%(회사별로는 13.3~33.3%)임³⁰⁾
 - 자살사고로 인한 신용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14.2%로 병사(28.8%) 다음으로 높았으며, 건당 지불금액은 자살(87.1만 엔)이 병사 및 사고사(68.3만 엔)보다 높았음
- 이에 금융청은 카드로 대출 신청과 보험 가입 신청을 별도로 수행하도록 지도하고³¹⁾,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에게 충분한 설명 이행, 보험금 지급 시 유족에게 확인절차 수행 등 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엄격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³²⁾

27) http://www.homemate-research-insurer.com/useful/18567_facil_088/

28) 金融庁(2006. 9. 15),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への対応について”; 金融庁(2006. 10. 6),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の調査結果について”; 金融庁(2006. 11. 28),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の再調査結果について”

29) 보험회사와 대금업자의 약관 상 일정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원인을 기재 한 문서의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함

30) 2005년도 일본 인구동태통계의 20~49세, 20~59세, 20~69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26.3%, 15.5%, 9.1%임

31) <https://www.cash-learning.com/blog/16574/>

32) http://www.homemate-research-insurer.com/useful/18567_facil_088/

〈첨부 표 3〉 보험사고 원인별 보험금 지급 실태(2006년 3월)

(단위: 천, 억 엔, %)

구분	사인 확정						사인 불분명	합계
	병사	자살	사고	고도장해	기타	소계		
계약건수	12,560 (24.2)	4,908 (9.4)	1,788 (3.4)	249 (0.5)	998 (1.9)	20,503 (39.4)	31,494 (60.6)	51,997 (100)
보험금	87 (28.8)	43 (14.2)	11 (3.7)	2 (0.6)	7 (2.4)	150 (49.6)	152 (50.4)	376 (100)

주: 1) 2006년 3월 말 기준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17개 대부 업체의 2005년도 실적임

2)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金融庁(平成18年11月28日),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の再調査結果について”

3. 영국

■ 영국의 경우 부가보험(Add-on Insurance)³³⁾의 한 형태로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은 채무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및 각종 담보대출 채무를 대납해 주는 지급보장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이하 “PPI”)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음
 - 지급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개인 및 기업대출, 신용카드,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 차량금융 등 기본계약에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띠며, 1990~2010년 사이 총 6,400만 건이 판매됨³⁴⁾
- 한편, 자동차판매사의 경우도 신차 또는 중고차 판매 시 차액보험, 대출이행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차액보험(Guaranteed Auto Protection: GAP)은 자동차가 전파·도난 되었을 경우 차량용자잔액보다 자동차보험의 차량보상비가 적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하는 상품임
 - 대출이행보험(loan Termination Insurance)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차량용자잔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용자잔액과 차량시가 간 차액을 담보하는 상품임

33) 부가보험이란 특정 재화·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모집하는 보험을 의미함(송윤아(2017),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KiRi 리포트』, 제419호, 포커스)

34) FCA,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Explained”(https://www.fca.org.uk/ppi/ppi-explained)

■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PPI의 불완전판매로 감독당국의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임

- 과거에 판매된 PPI의 경우 일시납보험료 형태로 대출금에 포함하여 지불하는 구조임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 수준을 인지하기 어렵고, 조기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받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였음³⁵⁾
- 이 같은 문제들로 2000년대 들어서며 PPI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발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국(Office of Fair Trade: OFT)과 금융감독청(FSA) 등은 PPI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반 조치를 마련함
 - 우선, 2011년 공정거래국의 경쟁위원회는 대출발생 7일 경과 이후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신용생명보험의 일시납 판매 금지,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권 부여 등 엄격한 PPI 취급 기준을 제시함³⁶⁾
 - 금융감독청은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판매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지를 위해 판매수수료 공시 지침을 마련함³⁷⁾
 - 한편, 금융감독청은 2014년 부가보험시장³⁸⁾ 조사를 통해, 부가보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Opt-out 방식³⁹⁾의 계약 금지, 손해율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함⁴⁰⁾

■ 영국의 PPI시장은 2000년을 전후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취해지면서 실적이 급감함

35) 이정원(2017),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36) Competition Commission(2011),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Market Investigation Order 2011"; National Treasury(2014), "Consumer Credit Insurance Market in South Africa"

37) FSA(2013), "Final guidance: Risks to customers from financial incentives"; 정경영(2016),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38) FCA(2014), "General Insurance Add-ons Market Study"; FCA(2015), "General Insurance Add-Ons Market Study-Remedies: banning opt-out selling across financial services and supporting informed decision-making for add-on buyers"

39) Opt-out 방식이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상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형태를 의미함

40) FCA(2015), "Guaranteed Asset Protection insurance: competition remedy including feedback on CP14/29 and final rules"

〈첨부 표 4〉 영국의 지급보장보험(PPI) 시장 규모

(단위: 천 파운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경과보험료	2,244,524	1,445,212	1,124,165	816,553	588,446	396,202
- 모기지 관련	536,487	478,935	433,064	378,305	319,549	226,464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⁴¹⁾ 조사 결과, 2005년 영국의 PPI에 대한 불완전판매 스캔들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지급보장보험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보장보험(Mortgage Protection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과거에는 대출과 동시에 해당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그러나 대출보장보험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끼워팔기 금지, 보험회사 선택에 관한 정보 제공), 대출보장보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설명서 제공, 판매자가 월보험료 수준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네덜란드의 경우 소비자신용보험의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부과, 지급보장보험에 대한 최대수수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스페인은 주택담보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잔여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호주

- 호주의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이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상품이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신용생명보험(Life Credit Insurance)의 경우 자살, AIDS 등 특정 사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 가입연령에도 제한을 두고 있음

41)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2013), "Background Note on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 장애 및 상해 신용보험(Disability, Accident and Sickness Credit Insurance)에 있어서도 장애지속 여부, 운동 및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면책규정을 설정하고 있음
- 신용실업보험(Unemployment Credit Insurance)의 경우 자발적 실업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며, 최대 보험금 지급기간과 지급액 등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있음

〈첨부 표 5〉 호주의 소비자신용보험상품 유형 및 역선택 방지 방안

상품유형	주요 특징 및 보상범위
신용생명보험	• 피보험자 사망 시 - 면책조항: 자살, AIDS, 전쟁으로 인한 사망, 연령제한 • 최대지급금액: 30,000호주달러~50,000호주달러
신용 상해 및 장애보험	• 질병, 사고로 인한 단·장기 근로활동중단으로 인한 소득손실 발생 시 (일정기간 이상 장애가 지속되어야 함) - 면책조항: 운동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 발생, 기왕증 • 최대 월 지급액 1,750호주달러, 일시금 20,000호주달러~50,000호주달러
신용실업보험	•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시(자발적 실업 제외) • 지급기간: 실업 후 통상 60~90일, 지급액: 월 600호주달러~750호주달러

자료: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1998. 7), "Consumer Credit Insurance Review"

■ 2009년 이후 소비자보호단체(ACCC)⁴²⁾ 및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신용보험상품의 부적절한 상품 판매 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6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생명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에서 1억 호주달러 규모의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었음⁴³⁾
- 또한, 2016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자동차판매사에서 모집한 부가보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집수수료와 보험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⁴⁴⁾

42)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1999), "Consumer Credit Insurance Review"

43) ASIC(2016. 10), "REPORT 498: Life Insurance Claims: An Industry Review"; 전용식·정인영(2018),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35호, 이슈분석

44) 2013~2015년 기간 동안 보험회사 자동차판매사에게 제공한 수수료 규모는 6억 200만 달러인 반면, 동 기간 중 소비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1억 4,400만 달러로 수수료의 25% 수준에 불과함; ASIC(2011), "Consumer Credit Insurance: A Review of Sales Practices by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ASIC(2016), "The Sale of Life Insurance through Car Dealers: Taking Consumer's for a Ride"; ADIC(2016), "A Market that is Failing Consumers: The Sale of Add-on Insurance through Car Dealers"

-
- 소비자신용보험과 대출이행보험의 경우 대출발생과 동시에 일시납 보험료를 지급함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였음
 - 이에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화를 통한 소비자신용보험 판매 시 판매절차 지침서(Formal Scripts) 비치, 소비자의 상품가입 동의서 확보, 상품판매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보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⁴⁵⁾

45) ASIC(2011), "Consumer Credit Insurance: A Review of Sales Practices by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와 신용부도스왑 발행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 환헤징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매칭과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채권투자에 소요되는 환헤징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 신용부도스왑(CDS) 발행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최근 보험회사의 해외채권 매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환헤징 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 중 하나임
- 외평채 CDS 발행자로서의 보험회사는, CDS가 신용사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과 미국 국채와 같은 우량채 담보 제공 측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
 - CDS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신용사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CDS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우량 채권을 매입하므로 상시적으로 국제적 적격담보물(Eligible Collateral)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거래상대방위험을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CDS 발행으로 얻게 되는 기대수익은 CDS 프리미엄이고 잠재적 위험은 우리나라 정부의 채무불이행위험 또는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위험이나,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낮음
 - 높은 국가신용등급,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및 순대외금융자산 등 양호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로 인해 정부의 파산가능성은 극히 낮음
 -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한 해외 우량채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위험을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향후 보험회사가 외화표시 CD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및 담보관리 능력, 달러 크레딧라인(Dollar Credit Line) 확보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산다변화 확대 및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해외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헤지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보유 우량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 또한 담보물 평가 과정에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 크레딧라인(Dollar Credit Line)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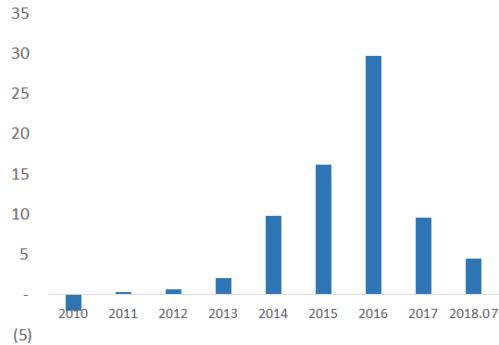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최근 보험회사의 해외채권 매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환헤징 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 중 하나임(〈그림 1,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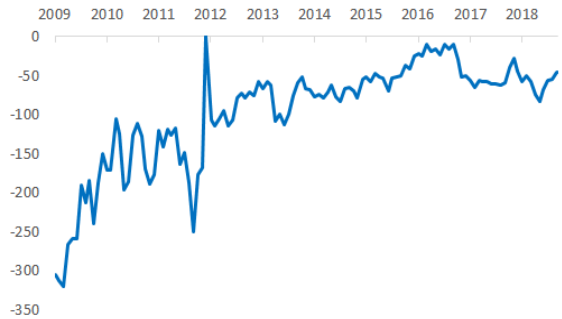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외화유가증권 매입액이 2016년 기준 약 29조 7천억 원이었으나 2017년 9조 6천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2018년은 7월 말 기준으로 약 4조 5천억 원 증가에 그침
 -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8년 12월 말 기준 외화유가증권 매입액은 9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매입액 감소세는 수입보험료의 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환율변동성 확대에 의한 환헤징 비용 상승에서 비롯됨
 - 외화유가증권 매입액과 환헤징 비용(스왑베이스스 포인트) 간에 음(-)의 상관관계(-0.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외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환헤징 비용이 상승하면 해외채권투자 증가세는 감소함을 의미함
 - 외환 스왑베이스스가 2016년 후반부터 커지면서 보험회사의 외화유가증권 매입 증가세가 둔화됨

〈그림 1〉 생명보험회사 외화유가증권 매입액¹⁾ 변화
(단위: 조 원)



주: 1) 매입액은 당해 연도 잔액에서 전년도 잔액을 차감한 것임
2) 2009년(기준 연도) 12월 말 기준 매입잔액은 약 21조 원임
자료: 생명보험협회의 월간생명보험통계

〈그림 2〉 외환 스왑베이스스 추이
(단위: bp)



주: 외환 스왑베이스스=1년물 원/달러 통화스왑-1년물 원화 금리스왑
자료: 연합인포맥스, 원화스왑(월별)

■ 환헤징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매칭과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음

- 보험회사는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낮은 국내 자산에 대한 대안투자로서 듀레이션이 높은 해외채권을 매입함
 - 환위험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채권 투자에 비해 해외채권 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금리차이뿐만 아니라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 발행규모, 유동성 등 채권상품의 다양성에서 비롯됨(예컨대, 국내 회사채시장은 신용등급별로 다양하지 못할 뿐더러 발행규모 및 유동성이 낮은 편임)
 - 국내 우량채권의 경우 보험부채의 평균듀레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듀레이션을 갖고 있어 이를 국내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 보험회사는 환헤징 비용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화표시 신용부도스왑(CDS) 발행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따른 제반 이슈를 검토하고자 함

- 보험회사는 2012년부터 보험업법 제113조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CDS 보장매도가 가능해졌음
 -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CDS 보장매입만 가능했으나, 201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CDS 보장매도가 가능해짐¹⁾

1) 보험업법 제113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라고

- 현재 보험회사는 외화표시 CDS를 발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원화표시 CDS만 발행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가 원화표시 CDS 보장매도뿐만 아니라 해외채권 투자 시 외화표시 CDS 발행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반 이슈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CDS 발행 구조 및 특징



가. CDS 발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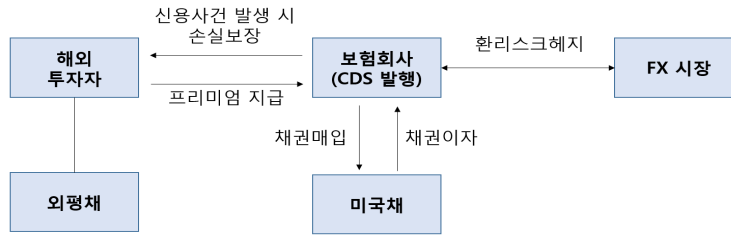
■ CDS 시장 구조는 CDS 보장매도자, 보장매입자, 준거자산(Underlying Asset), 적격담보물, CDS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됨(그림 3) 참조)

- CDS를 발행하는 보장매도자가 있으나 대부분 비거주자인 외국계가 한국물 CDS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 CDS 매입자는 외국인 채권투자자로 우리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하고 외화표시 채권의 투자위험을 헤지하는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매입함
- 기초자산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외화(주로 미 달러화)표시평형기금채권(만기 5년 외평채)가 발행규모면에서 가장 큼
- CDS 발행에 따른 거래상대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 국채 또는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를 담보물로 제공함
- CDS 프리미엄은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베이스스 포인트(bp)로 표시되고 분기마다 지급함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개정됨.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그림 3〉 CDS 발행 구조



나. 국내 CDS 시장 현황 및 특징

■ 최근 국내 CDS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금융기관의 잔액현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 보험회사는 2012년 이후 보장매도자로 참가하고 있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CDS 보장매도 잔액은 4,020억 원, 2018년 6월 말 기준 4,210억 원을 기록함
- 증권회사는 2018년 6월 말 현재 CDS 총 거래 중 주요 참여자로 매입과 매도가 거의 일치하는 균형포지션(Square Position)을 유지하는데, 이는 무위험차익거래(No Arbitrage)에 기반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은행의 경우 보장매입이 보장매도보다 앞서는데 이는 신용위험이 있는 금융채 및 회사채를 매입하고 동 위험을 헤징하기 위한 헤징수단으로 CDS를 매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은행이 중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헤징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발행한 외평채에 대한 CDS를 매입하는 거래인데, 이러한 거래방식에서 파생된 합성 CDS는 실제 중국정부가 발행한 외평채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표 1〉 국내 금융회사 CDS 잔액 현황(원화 환산¹⁾)

(단위: 십억 원)

구분	2012년 12월 말			2017년 12월 말		2018년 6월 말	
	보장매도	보장매입		보장매도	보장매입	보장매도	보장매입
보험회사	90	0	...	402	0	421	0
국내은행	674	2,866		11	4,941	73	4,029
증권	14,748	10,246		25,624	23,762	25,624	25,819
외은지점	478	550		61	644	115	1,306
기타	-	-		53	10	55	0
총계	15,989	13,663		26,150	29,357	26,288	31,154

주: 1) 원화 및 외화거래를 합산하여 원화로 환산한 것임

2) 중간 연도는 생략(...)하였으며, 생략 관련 자료는 아래 금융감독원 자료 참조

자료: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관련 자료;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CDS 보장매도자로 참가하고 있는데 주로 원화표시 CDS 발행이며 외화표시 CDS 발행 실적은 미미함²⁾

- 보험회사는 2012년에 처음으로 CDS 보장매도 거래를 시행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표 1> 참조)
 - 2012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CDS 잔액은 9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원화 거래로 이루어짐
- 보험회사가 2013년 4분기에 시행한 총 2,320억 원 규모의 CDS 보장매도 거래에는 외화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부분이 원화 거래임³⁾
 - 2013년 4분기의 CDS 보장매도 거래의 경우 원화 거래가 상당 부분(2,1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화 표시 거래가 160억 원을 차지함
- 이후 2014~2016년의 CDS 보장매도 거래는 모두 원화거래로 이루어짐⁴⁾

3. 보험회사의 외평채 CDS 발행에 대한 평가



■ 이하에서는 외평채 CDS 발행에 대한 보험회사의 비교우위와 발행에 따른 장단점을 평가하고자 함

가. 외평채 CDS 발행에 대한 보험회사의 비교우위

- CDS 발행자로서 보험회사는 CDS가 보험상품이라는 점과 미국채 등 우량채 담보제공의 측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데 먼저 전자에 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CDS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신용사건에 대한 보장제공(Protection Against Credit Event)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CDS 프리미엄을

2) <표 1>은 원화 및 외화를 포함한 “잔액” 기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잔액 기준에 따르면 원화와 외화표시 CDS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나 잔액이 아닌 “거래” 기준으로 원화 및 외화표시 CDS 계약현황의 거래구분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외화표시 CDS 거래금액은 2013년 4분기에 160억 원에 달함

3) 금융감독원, “2013년 4분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참조

4) 금융감독원, “2014~2016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참조

수취하므로 일종의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음

- 신용사건(Credit Event)에는 파산(Bankruptcy), 기한이익 상실(Obligation Acceleration), 지급불능(Failure to Pay), 지급거절(Repudiation), 채무재조정(Restructuring)뿐만 아니라 신용사건에 대한 정부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 to Credit Event)⁵⁾ 등이 있음
- CDS 프리미엄의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므로 국가 신용리스크를 반영함

■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매입한 우량 해외채권을 CDS 시장의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에 대한 담보물로 활용하여 CDS 발행자에 의한 거래상대방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CDS 시장은 거래소(Exchange)가 아닌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이므로 CDS 매입자는 CDS 발행자가 신용사건 시 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거래상대방위험이라 함
- 그러나 이러한 거래상대방위험은 미 국채 또는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격담보물(Eligible Collateral)을 통해 제거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우량채권을 매입하므로 상시적으로 국제적 적격담보물을 보유하고 있음

나. 외평채 CDS 발행에 따른 기대이익과 잠재적 위험

■ 보험회사가 CDS 발행으로 얻는 기대수익은 CDS 프리미엄인데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조)

- 한국정부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년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평균 51bp)이며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2008년 이래 최저점을 기록함
 - 지난 1년간의 CDS 프리미엄 추이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주된 상승과 하락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임
- 2017년 9월과 11월 기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9월 3일)과 그로 인한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76bp를 기록함

5) 정부의 신용개입이란 정부의 개입 또는 발표로 준거자산의 발행자의 채무이행조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촉발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DA(International Swap and Derivatives Association) 2014 credit event 참조

-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CDS 프리미엄이 연평균 수준에서 등락함
 - 2월 9일(59bp)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의한 신흥국 불안과, 3월 23일(56bp) 미-중 무역분쟁의 촉발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기도 하였음
 -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와 터키 금융불안에서 촉발된 신흥국 불안으로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했다가, 9월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8일, 19일)의 기대감으로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여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 6월 28일(51bp)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 11~14일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38bp를 기록하여 2008년 이래로 처음 30bp대로 진입함
- 최근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은 평균 51bp인데 이는 부도 발생 시 예상손실(Expected Loss)로 우리 정부가 5년 이내에 부도 날 확률은 0.85%로 해석할 수 있음
- CDS 프리미엄이 51bp이고 준거자산의 손실률을 60%라고 할 때 부도가 날 확률은 0.85%임 ($=0.51\%/60\%$)

〈그림 4〉 한국 외평채 CDS 프리미엄 추이



주: 한국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자료: 국제금융센터, 경제금융 지표

■ 다른 한편 보험회사가 외평채 CDS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우리나라 정부 또는 발행자인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히 낮음

- 보험회사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에만 신용보장의무가 발생하는데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에 기인하면 신용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우리나라는 S&P와 Moody's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인 AA(안정적)와 Aa2(안정적)을 3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양국 모두 A+)보다 두 단계 높은 등급 수준임
 - 외환보유액은 2018년 9월 말 기준 4,030억 달러이며, 이는 8월 말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준임
 - 경상수지는 2018년 7월 기준 8,736억 달러 흑자(2017년 기준 GDP 대비 5%)를 기록했으며, 2012년 3월 이래로 77개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순대외금융자산⁶⁾은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2018년 6월 말 기준 3,211억 달러를 기록함
- 보험회사는 해외유량채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위험을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유한 해외유량채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CDS 계약 발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음

4. 국내 보험회사의 과제



■ 향후 보험회사가 외화표시 CD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및 담보관리 능력, 달러 크레딧라인(Dollar Credit Line) 확보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산다변화 확대 및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해외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헤지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순대외금융자산(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et IIP)=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
- 보험회사는 보유우량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 또한 담보물 평가 과정에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 크레딧라인(Dollar Credit Line)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kiri](#)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김석영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요약

- 최근 경증 만성질환자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상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었으나, 유병력자를 위한 정액보상의 간편심사보험이 이미 판매되고 있어 두 시장 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보장 한도를 줄여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고령층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었던 시기에도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손의료보험 도입이 정액형 건강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강보험 판매에 큰 변화는 없었음
 - 당초 예상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이 치료비용을 보전하는 목적과 함께 소득보상의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관계와 달리 일부 질병치료에서는 경쟁관계를, 다른 질병치료에서는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고령층은 간편심사보험을 소득보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두 상품의 경쟁, 보완관계로 판매채널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두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의 다양화로 고령층 소비자들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선택이 필요함
-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두 상품의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해약과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경증 만성질환자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어 판매 중임¹⁾

- 다수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 중인 만성 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보장 한도를 줄여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그러나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으로 간편심사보험이 이미 판매 중임

- 2012년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실버암보험이 최초로 개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함
- 이후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 중임

■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일정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간편심사보험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간편심사보험 대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선호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보험시장에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정액형 건강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강보험 판매에 큰 변화는 없었음

- 2000년 초부터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암보험 등으로 출발한 정액형 건강보험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과거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병력자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3. 30)

실손의료보험이 간편심사보험 및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 실손의료보험이 활성화될 당시, 향후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당시 판매되던 건강보험은 특정 질병에 한정하여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반해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의 질병 치료에 대해 실제 치료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상품 판매도 함께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정액형 건강보험을 주로 판매하던 생명보험회사들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함으로써 2017년 기준 국민 5,178만 명의 66.0%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함²⁾

〈표 1〉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

(단위: 만 건)

구분	FY2011	FY2012	FY2013	2014	2015	2016	2017
생명보험	365	459	513	552	592	612	632
손해보험	2,298	2,456	2,457	2,530	2,674	2,720	2,787
합계	2,662	2,904	2,970	3,082	3,266	3,332	3,41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2018-16호, 통권 982호

- 질병, 암보험 중심으로 건강관련 상품들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부 해약에도 불구하고 보유계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2) 단체실손보험은 개인실손보험 보유계약의 0.04%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생명보험회사 건강관련 보험 보유계약 건수

(단위: 만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해	498	494	487	607	559	551	550
질병	1,547	1,604	1,659	1,886	1,980	2,058	2,154
건강	732	659	628	609	595	588	599
암	690	704	743	886	933	970	1,023
합계	3,466	3,462	3,517	3,988	4,068	4,167	4,326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 당초 예상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두 상품의 성격 및 판매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건강보험은 치료비용 보전과 함께 소득보상 기능도 있고 실제 치료비를 제공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판매됨
 - 일반적으로 암보험 판매 시 치료비와 생활비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함³⁾
-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닌 특약으로 판매되어 정액형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였음
 - 2013년 1월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도 판매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음
-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단독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음⁴⁾

■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목적과 판매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판매방식의 차이는 두 상품이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옴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었어도 설계사 판매수수료 문제로 두 상품의 보완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가입금액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암 종류에 따라 실제 치료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3. 30)

〈표 3〉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비교

구분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가입목적	실제 치료비 보전	치료비와 생활비 보전
가입대상	정상체	정상체
판매방식	건강보험과 함께 판매	단독판매
보장범위	거의 모든 질병 치료	특정 질병 치료
보험료 비교 ⁵⁾	실손의료보험 < 건강보험	

■ 한편 2014년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었으나, 판매가 저조하여 정액형 건강보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고혈압, 당뇨 등 노화 관련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은 정상적인 언더라이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2017년 보유계약 건수는 약 2만 9천 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의 0.1%에도 미치지 못함

3.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관계



■ 2018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어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임
- 특히 고령층은 다양한 이유로 해당 상품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보험가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외래진료비를 보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병원 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음

5) 회사별, 상품별, 연령별로 다를 수 있음

- 입원 1회당 최소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최소 2만 원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자기부담금=max(입원 10만 원 또는 통원 2만 원, 자기부담률 30%)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불가피하게 높지만, 자기부담금 등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낮춤

〈표 4〉 유병자실손의료보험 월 보험료 예시⁶⁾

(단위: 원)

구분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8,509	23,438	28,440	35,812	55,010
여자	17,256	27,518	35,143	54,573	70,306

■ 간편심사보험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활발하게 판매 중임

-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 조건을 완화하였음
 - 업계 최초로 개발된 간편심사 암보험의 경우 당뇨병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을 간소화하였음
- 치료가 주된 목적이므로 가입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 가입금액은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미만 수준이나, 실제 평균가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1,000~1,500만 원 수준임
 - 고령층은 치료를 위해 주로 가입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대비한 보험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
 - 또한 고액의 가입금액 설정 시 보험료가 비싸져 실질적으로 고령층의 가입이 어려움
-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임
 - 암 진단 급부 중심에서 최근에는 입원, 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등이 개발됨

■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는 회사별·담보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61세 기준으로 5~20만 원 선으로 나타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높음

- ‘A 생명보험회사’의 가입금액 2,000만 원 기준 암 진단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10년 만기 10년 납 61세의 월납보험료는 남자 91,800원, 여자 56,800원임⁷⁾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3. 30)

- ‘B 손해보험회사’의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10년 만기 10년 납 61세의 월납보험료는 남자 195,990원, 여자 108,980원임⁸⁾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관계와 달리 고령층을 대상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간편심사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치료비 보전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
 - 간편심사보험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
- 고령층 소비자들은 소득보상이 아닌 치료비 목적으로 두 보험상품을 구매함
 -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수준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보상보다는 치료비 조달이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됨⁹⁾

〈표 5〉 유병자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 비교

구분	유병자실손의료보험	간편심사보험
가입목적	실제 치료비 보전	치료비 보전이 주목적
가입대상	유병자	유병자
판매방식	단독판매	단독판매
보장범위	거의 모든 질병 치료	특정 질병 치료
보험료 비교 ¹⁰⁾	유병자실손의료보험 < 간편심사보험	

■ 고령층 소비자들은 개인별 여건과 보험료, 그리고 보장 급부에 따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또는 간편심사보험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됨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간편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간편심사보험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보다 선호될 수도 있음

7)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기준임

8) 상해사망 가입금액 2천만 원 기준임

9) 김복순(2014),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월간노동 리뷰』, 2014년 10월호

10) 회사별, 상품별, 연령별로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고령층 소비자들이 두 상품을 모두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두 상품을 모두 구매할 실질적인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타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이어서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은 두 상품의 보험료를 부담할 여력이 부족함
 -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15년 46%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고소득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소득보상의 목적으로 두 상품 모두를 구매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간편심사보험을 구매하기에는 자기부담금에 비해 추가되는 보험료 비용이 너무 높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간편심사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동시 가입은 허용됨

4. 결론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로 고령층 소비자들은 노후에 발생하는 병원비 및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선택이 요구되어짐

- 다양한 질병 치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치료에서는 경쟁관계이지만 다른 질병치료에서는 보완관계일 수 있어 고령층 소비자들은 두 상품의 동시가 입을 권유받을 수 있음

- 간편심사보험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으로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도 간편심사보험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두 상품의 경쟁으로 판매채널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두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간편심사보험의 보장범위의 제한의 한계점을 오히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을 제안할 수 있음

■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책이 요구됨

- 두 상품의 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소비자들은 두 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 판단이 어려워 판매채널의 권유에 따라 두 상품을 동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음
- 두 상품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해약과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음
-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고령층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구매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 안내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 최근 보험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가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잔액 및 거래량이 증가함
 - 2018년 6월 말 잔액기준 장외거래 비중이 96.3%, 장내거래 비중이 3.7%임
 - 장외거래는 통화관련 거래(통화스왑, 통화선도)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장내거래는 금리선물 거래, 다음으로 주식선물과 통화선물 거래가 많음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권역별로 비교해볼 때 금융권 파생상품 활용 금액의 1.6%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험회사 운용자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1.85%에서 2018년 6월 말 현재 16%로 증가함
- 이러한 증가세는 국내 주가하락, 대내외 금리상승, 원화가치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위험관리 노력임
 - 원금보증이 내재된 특별계정 변액보험계정은 주로 주가하락 리스크에 대한 헤징수단으로 주가지수선물 매도가 활용됨
 - 일반계정의 경우 확정금리 및 최저 금리수준이 보장된 연동금리형 보험상품이 금리(하락)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금리관련 파생상품(금리선물, 금리스왑, 금리선도 등)을 활용함
 - 또한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금리 및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스왑, 통화선도환 계약 등을 활용함
- 향후 금리 및 환율변동성 확대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추가적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예상됨
 - 2021년 이후 K-ICS 도입 방안 가운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경감조치기법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관리 수단으로 인정될 예정임
- 파생상품 활용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관리에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손익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용자본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손익발생 및 원인, 가치평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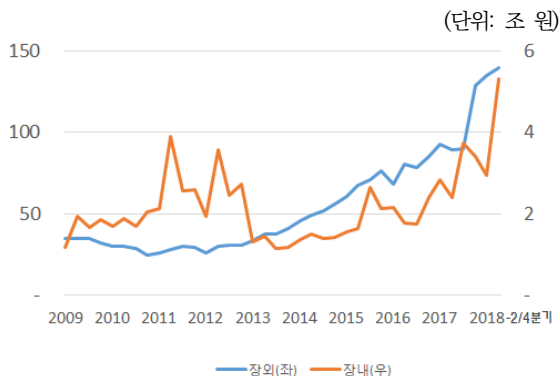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최근 보험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잔액 및 거래량이 증가함(그림 1,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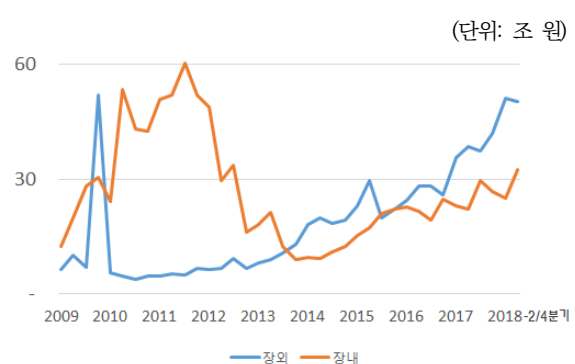
- 보험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2009년 약 35조 원에서 시작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하반기에 급증하여 2018년 2분기 말 현재 약 140조 원을 기록함
 - 장내파생상품도 잔액기준으로 2011~2013년에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2분기 말 현재 5조 3천억 원을 기록함
- 거래량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량은 2009년 약 6조 원에서 2018년 약 50조 원으로 증가함
 -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2009~2011년에 큰 폭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큰 폭 하락하였고,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2분기 말 32조 원을 기록함
- 이를 종합해 볼 때,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은 잔액기준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장외파생상품이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장외거래 비중이 96.3%, 장내거래 비중이 3.7%으로 대부분이 장외거래임

〈그림 1〉 보험회사 장내·외 파생상품 잔액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파생상품관련자료(분기별)

〈그림 2〉 보험회사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량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파생상품관련자료(분기별)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활용을 늘리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의 특징 및 분석



가. 파생상품 활용 현황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실적은 권역별로 비교해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체 운용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실적은 전체 금융권이 활용하는 파생상품 금액(잔액기준)의 1.6%를 차지함¹⁾
 - 은행이 압도적 비중(80.1%)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증권이 16.8%를 차지함
-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은 전체 운용자산(304조 원)의 약 11.85% 수준이었지만 2018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898조 원)의 16%를 차지함²⁾

■ 보험회사는 장내거래소를 통해 금리선물, 주식선물, 통화선물을 거래하며, 장외거래를 통해 통화스왑, 통화선도환, 금리스왑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표 1) 참조)

- 보험회사는 장내거래소를 통해 금리선물, 주식선물, 통화선물 등을 활용함
 - 금리선물, 주식선물, 통화선물은 각각 국채, 주가지수, 그리고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임
- 보험회사는 장외거래를 통해 통화스왑³⁾, 통화선도환, 금리스왑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환위험과 금리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장기 통화계약임
 - 통화선도환(Forward Foreign Exchange)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원금교환 없이 환율을 사전에 고정시킴으로써 환위험관리에 유용한 장외계약임
 -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은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고정금리와 시장금리를 교환하는 장외계약으로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수단임

1) 금융감독원 파생상품관련자료, 2018년 2분기 참조

2) 월간생명보험통계, 월간손해보험통계 및 금융감독원 파생상품관련자료 참조

3) 두 당사자 간 계약 초기에 원금을 교환하고 환율과 통화 간의 금리수준을 고정한 다음 계약만기에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계약으로 이를 이중통화스왑계약(Cross-currency Swap)이라고 함

■ 보험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상품별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표 1〉 참조)

- 보험회사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는 금리선물 거래가 잔액 기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식선물과 통화선물 거래가 많음
 - 2009년 3월 말 기준 장내 파생상품 잔액은 금리 선물(4,900억 원), 통화선물(3,030억 원), 주식선물(2,920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는 금리선물(2조 1,430억 원), 주식선물(1조 7,270억 원), 통화선물(1조 4,240억 원) 순으로 많았음
- 보험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관련 거래(통화스왑, 통화선도)가 잔액 기준에서 압도적으로 많음
 - 2009년 3월 말 기준 장외 파생상품 잔액은 통화스왑(24조 2,570억 원), 통화선도(6조 2,221억 원), 주식옵션(2조 5,660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는 통화스왑(76조 5,130억 원), 통화선도(51조 3,310억 원), 금리스왑(5조 7,920억 원) 순으로 많았음
 - 이 외에도 2018년 6월 말 기준 주식옵션, 금리 선도 및 옵션, 통화옵션, 신용부도스왑, 총수익스왑 등의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 잔액 중 장외거래 잔액의 비중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함

나. 파생상품 활용의 특징

■ 보험회사는 주가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내 주가지수 선물을, 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외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환을, 그리고 금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내외 금리스왑, 선도 및 선물을 주로 활용함

- 일반적으로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에 대한 보험회사의 선택여부는 헤징수단의 이용가능성, 헤징의 기간, 거래상대방위험, 증거금제도 등에 따른 유동성확보에 달려 있음
- 보험회사는 주가위험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장내거래상품인 주가지수를 선호하는데, 이는 동 상품이 장내거래소에서 기초자산의 단순성(종합주가지수 200), 만기의 다양성, 높은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임
- 반면 보험회사는 환율위험관리의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외거래가 보다 고객맞춤형(Customer-tailored) 계약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임
 - 보험부채에 내재된 금융위험이 복잡하고 장기인 특성을 갖고 있어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를 통해 보험회사의 선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한편 금리위험 관리는 장내거래인 금리선물과 장외거래인 금리스왑이 공히 이용될 수 있으나, 전자는 거래규모, 기초자산의 다양성, 만기의 측면에서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는 계약당사자 간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표 1〉 보험회사 장내·외 파생상품 비중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09년 3월 말		2018년 6월 말	
잔액기준	장내		장내	
	주식선물	292	주식선물	1,727
	주식옵션	93	주식옵션	0
	주식ELW ¹⁾	2	주식ELW	0
	금리선물	490	금리선물	2,143
	통화선물	303	통화선물	1,424
	기타선물	1	기타선물	3
	합계 (장내거래 비중)	1,182 (3%)	합계 (장내거래 비중) ⁴⁾	5,297 (3.7%)
	장외		장외	
	주식옵션	2,566	주식옵션	483
	주식ELW	29	주식ELW	0
	금리선도	4	금리선도	2,763
	금리스왑	1,316	금리스왑	5,792
	금리옵션	477	금리옵션	3
	통화선도	6,221	통화선도	51,331
	통화스왑	24,257	통화스왑	76,513
	통화옵션	0	통화옵션	6
	신용부도스왑 ²⁾	0	신용부도스왑	421
	총수익스왑 ³⁾ 등	0	총수익스왑 등	1,858
	합계 (장외거래 비중)	34,871 (97%)	합계 (장외거래 비중)	139,168 (96.3%)

주: 1) 주식ELW는 특정 주식 혹은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증권임

2) 신용부도스왑(CDS)은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일정한 CDS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신용사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는 계약임

3) 총수익스왑(TRS)은 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임

4) 장내외거래 비중(%)은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총 잔액 중에서 장내외 파생상품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 금융감독원 파생상품관련자료, 2009년 1분기 및 2018년 2분기 관련 자료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시장위험을 헤징하기 위함임

-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투기적 동기, 무위험차익거래 동기, 헤징동기-가 있음
 - 투기적 동기는 파생상품의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주로 헤지펀드 또는 확실한 시장견해(Market View)를 갖는 투자자들의 거래동기임
 - 무위험차익거래 동기는 파생상품의 기초현물상품 결합에 의한 복제가능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복제가격과 실제가격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경우 싼 가격에서 매입하는 동시에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뜻하며, 이는 투자은행 및 대형 상업은행의 거래부서에서 사용함
- 보험회사는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차원에서 보유자산의 시장위험관리, 보험부채의 최저 금리보장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헤지 목적으로 주로 사용함
 - 보험회사는 장내거래소 및 장외거래를 통해 시장위험을 동태적(Dynamic) 또는 롤오버(Roll-over) 헤징기법 또는 정태적 헤징(Static Hedging)을 통해 금리, 주가,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다. 보험회사 파생상품 활용 증가의 원인 분석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급증은 국내 주가 하락, 미국 금리 상승, 원화가치의 변동성 확대에 주로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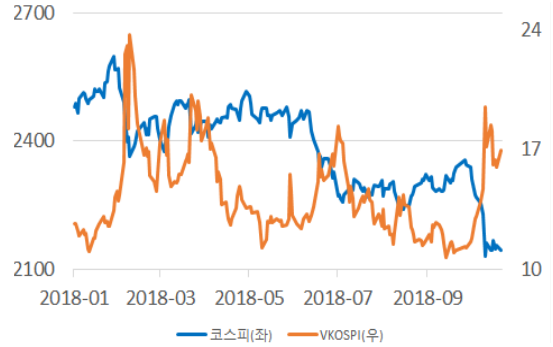
- 최근 금년 초에 3% 이하이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2%대로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10년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금리차가 확대되어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그림 3〉 참조)
- 2018년 들어 국내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하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조)

〈그림 3〉 한국 국채 및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단위: %)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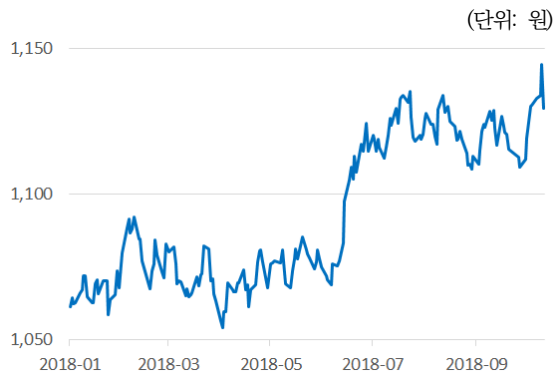
〈그림 4〉 코스피 및 VKOSPI(변동성지수) 추이
(단위: 원, %)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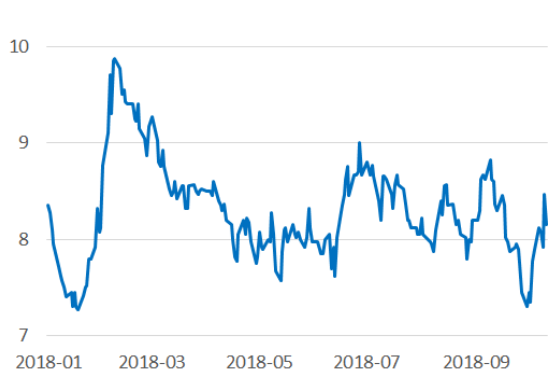
- 또한 미국 국채 금리상승으로 원화가치가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원/달러 리스크리버설 값이 상승하였고, 이는 향후 달러강세 심리가 외환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그림 5, 6〉 참조)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6〉 원/달러 리스크리버설 지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 국내 주가 하락, 미국 금리 상승, 원화가치의 변동성 확대로 보험회사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 해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및 해외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원금보증이 내재된 특별계정의 변액보험계정은 주로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헤징 수단으로 주가지수선물 매도를 활용해 주가하락 위험을 관리함

- 일반계정의 경우 확정금리 및 최저 금리수준이 보장된 연동금리 보험상품이 금리(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함
- 또한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매칭 목적으로 해외투자 시 금리 및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스왑, 통화선도환 계약 등을 활용함

■ 향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조치와 K-ICS 안에서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시장위험 경감기법 인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올해 12월에 한 차례,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이로 인한 환위험 변동성 확대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상조치와 더불어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조치의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이미 전달한 상태임
 - 정책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의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음
- 2021년 이후 KICS 도입안 가운데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위험경감 조치기법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금부터 파생상품 활용을 늘리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시사점



- 파생상품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관리에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용자본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파생상품의 활용은 위험관리를 통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손익의 급격한 변화로 가용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가용자본의 변동성 확대는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거래상대방 위험, 장내거래상품에서

-
- 증거금 변화, 또는 장외거래에서 담보가치의 변동성 등에서 발생함
- 이러한 가용자본의 변동성 확대로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들-경영진, 주주, 직원, 감독자, 계약자 등- 간의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예컨대, 주식옵션 평가 시 옵션시장에서 도출되는 내재변동성과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역사적 변동성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내재변동성이 역사적 변동성보다 크게 되어 어떠한 변동성을 사용하여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치 산정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가치산정의 차이는 손익 변동의 차이로 연결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손익발생 및 원인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ri](#)



빅데이터에 나타난 보험산업

김석영 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크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임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운동습관 등 건강 관리 자료 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일부 해외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경영활동에 접목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 본고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검색 빈도 분석을 통해 보험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검토함
 - 포털사이트 검색 빈도는 사용자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 보험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아지는 시점, 지역별 및 상품별 검색 빈도 등을 분석함
- 검색 빈도 분석 결과,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정부의 보험관련 서비스 및 홍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보험에 대한 검색 빈도가 급증하는 시점은 연휴 전후로 나타남
 - 서울에서만 높은 검색 빈도를 보이는 온라인 전업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의 70%가 서울에서 발생하였음
 - F보험회사의 검색 빈도가 급증하기 시작한 해부터 F보험회사의 CM채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함
 - 정부가 시작한 보험다모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작 초기 및 관련 이슈가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는 검색 빈도가 증가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검색 빈도를 보임
- 검색 빈도 분석은 보험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존과 다른 각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임
 - 빅데이터 분석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 방안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빅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 등장하고 있음

-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수치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로¹⁾ 그 특성은 3V로 요약됨
 - 3V란 데이터의 양(Volume),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함²⁾
- 일부 해외 대기업들은 회사 빅데이터 분석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음
 - 미국 백화점 체인 타겟(Target)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0대 소녀 고객이 임신한 사실을 부모보다 먼저 파악하기도 함³⁾
 - 아마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수요를 예측하고 당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함

■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생성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빈도 빅데이터 분석 또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 특히 검색 빈도 데이터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구글(Google)은 이용자 검색어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과 생각을 밝히기도 함⁴⁾
 - 검색 빈도 분석을 통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상당수가 인종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냄
- 국내에서는 네이버데이터랩(Naver DataLab)과 구글트렌드(Google Trends) 등이 검색어의 검색 빈도 및 트렌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네이버데이터랩은 특정 검색어의 검색 추이를 기간, 범위, 성별, 연령별로 제공함
 - 구글트렌드 역시 구글에서 특정 검색어의 기간별,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줌

1) 정용찬(2013),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 O'Reilly Radar Team(2012)

3) <https://www.forbes.com/sites/kashmirhill/2012/02/16/how-target-figured-out-a-teen-girl-was-pregnant-before-her-father-did/#4951d7ae6668>

4) Seth Stephens Davidowitz(2017), Everybody Lies, Bloomsbury Publishing

■ 본 보고서는 네이버데이터랩⁵⁾과 구글트렌드에서 제공하는 검색 빈도를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특징을 살펴봄

- 분석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이며, 보험을 검색한 소비자들의 특징, 검색 시점과 장소, 검색한 보험 관련 검색어 유형 등을 살펴봄
- 검색 빈도 자료를 통한 보험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특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임
 - 본고의 검색 빈도 분석은 검색어와 관심 있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Casuality)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색 빈도 추이에 따른 상관관계(Correlation)를 판단하는 것임

2. 검색 빈도 분석을 통한 보험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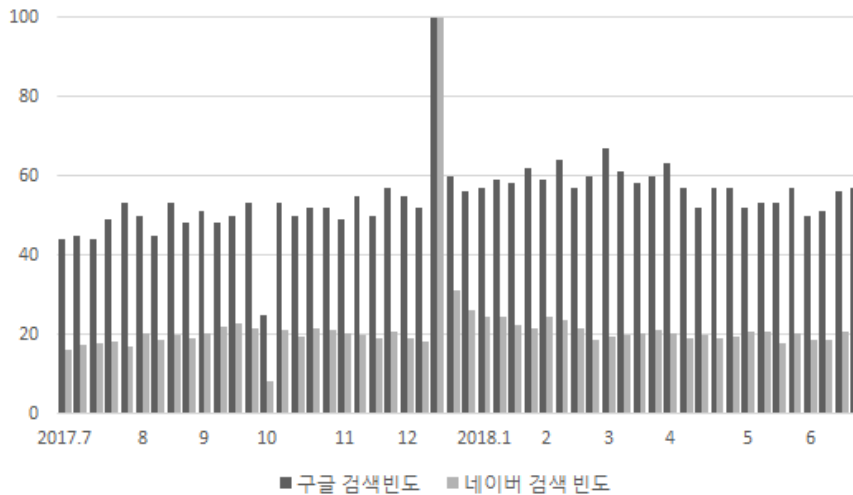
■ 보험 및 연관 단어 검색 빈도가 높은 시기는 보험 관련 언론 보도 빈도가 높았던 때로 나타남

- 네이버와 구글 모두에서 2017년 10월초 연휴 기간 동안 검색 빈도는 현저히 낮아지고, 2017년 12월 19일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시작되어 언론보도가 많았던 날 ‘보험’ 관련 검색 빈도가 급증함
- 포털사이트 시장 점유율에서 두 회사가 차이가 있지만 네이버와 구글 이용자의 행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 71.5%, 구글 8.3%이나, 구글은 검색 빈도의 지역정보를 제공함⁶⁾
 - 네이버와 구글의 그래프 수치는 해당 기간 중 검색어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100으로 할 때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냄
 - 예를 들어, 분석 기간 중 해당 검색어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날이 100이라면, 20인 날 해당 검색어의 검색 빈도는 100인 날의 20% 수준임

5)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임. 네이버데이터랩은 검색 빈도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없으나 연령별 정보를 제공함

6) DMC 미디어(2018), “포털사이트 이용행태 조사 분석 보고서”

〈그림 1〉 보험 검색 빈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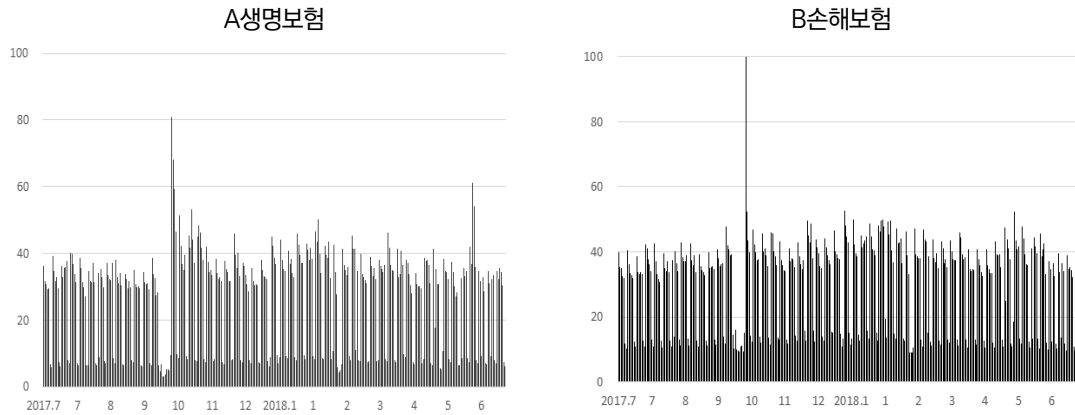
주: 2017년 7월 1일에서 2018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주간 단위 검색 결과임
 자료: 네이버데이터랩; 구글트렌드

■ 사용자들은 주말과 연휴에는 보험회사를 검색하지 않으며,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0월 10일 연휴 동안⁷⁾ 발생한 사고 처리를 위해 검색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연휴 직후 손해보험회사의 검색 빈도가 매우 높게 검색됨으로써 고객들이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린 것으로 판단됨
-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래프 하단이 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토·일요일에 검색 빈도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임
 - 사용자들은 일과시간 중에 관심사에 대한 검색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에는 검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 시간대별 검색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예상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주초에 해당하는 월·화요일의 경우 다른 요일보다 손해보험회사 검색 빈도가 높음
 - 이는 장기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야외 활동 등으로 보험회사를 찾지 않고, 주초에 사고 처리 등을 위한 검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7)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 추석, 한글날, 주말 등 10여 일간의 장기연휴가 있었음

〈그림 2〉 국내 대형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회사 검색 빈도



자료: 네이버데이터랩

〈표 1〉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요일별 평균 검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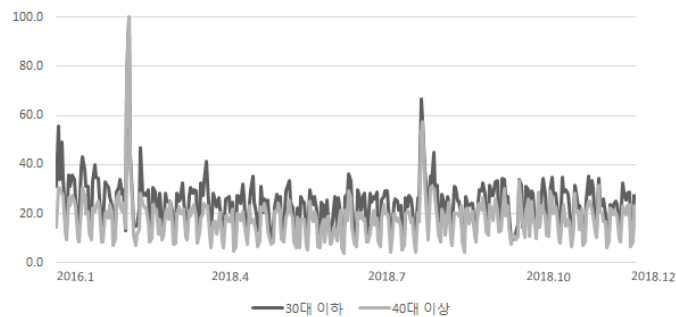
구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A생명보험	7.3	36.5	35.4	34.9	33.6	31.9	7.9
B손해보험	11.5	40.8	39.4	37.6	36.5	35.3	13.3

자료: 네이버데이터랩

■ 사용자 중 젊은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보험에 관한 검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5~39세 연령대 사용자들은 “보험료, 보험금, 보험회사” 등 검색어 빈도가 40~54세 연령대의 사용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연령대별 “보험” 및 관련 검색어 검색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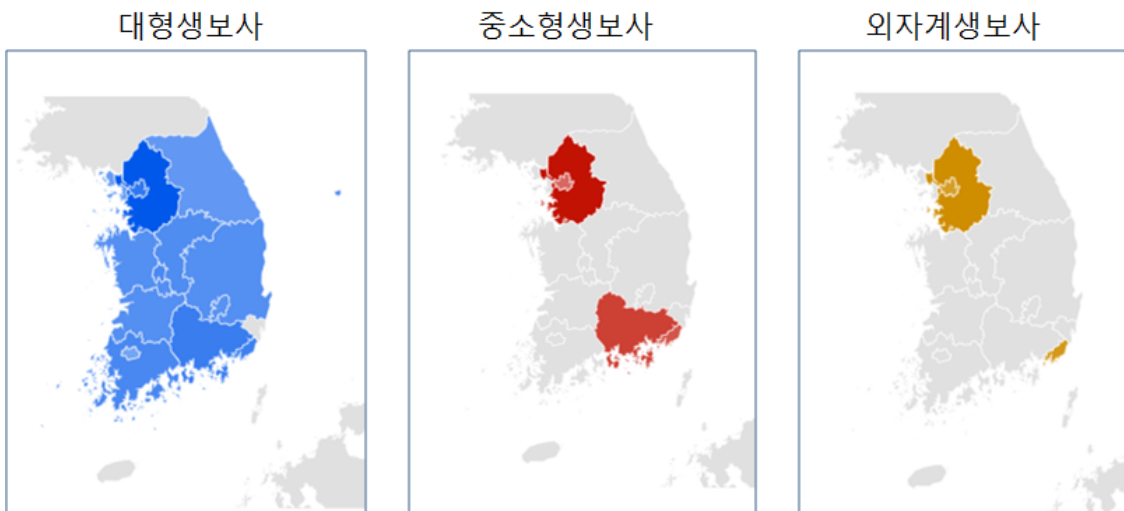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데이터랩

■ 대형 A보험회사는 전국적으로 높은 검색 빈도를 보인 반면, 중·소형 B보험회사와 외국계 C보험회사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모습을 보임

- 이는 일차적으로 대형보험사가 갖는 전국적인 브랜드파워의 영향으로 판단됨
- 또한,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전국적으로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지역별 영업조직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대부분 보험회사의 강원도 지역 설계사 숫자는 전체 설계사의 5% 미만인데, 대형사는 비율이 낮아도 설계사 숫자는 수백 명임

〈그림 4〉 보험회사 지역별 관심도



출처: 구글트렌드

■ 온라인 전업 생명보험회사인 D보험회사에 대한 검색은 서울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보험회사 검색은 전국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그림 5〉 참조) D보험회사에 대한 검색은 서울에서만 집중되고 있음
- 실제로 D보험회사의 2017년 신계약 36,096건 중 70.4%가 서울에서 체결됨⁸⁾

8)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통계연보』

〈그림 5〉 온라인 전업 D보험회사에 대한 지역별 검색 빈도



출처: 구글트렌드

■ E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전국에서 발생하나 검색은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계약 건수는 91만 건으로 업계 4위 수준⁹⁾이며 지역적으로도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E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E보험회사의 전체 설계사 숫자가 915명인 것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지역 단위 방카슈랑스 채널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E생명보험 지역별 검색 빈도



출처: 구글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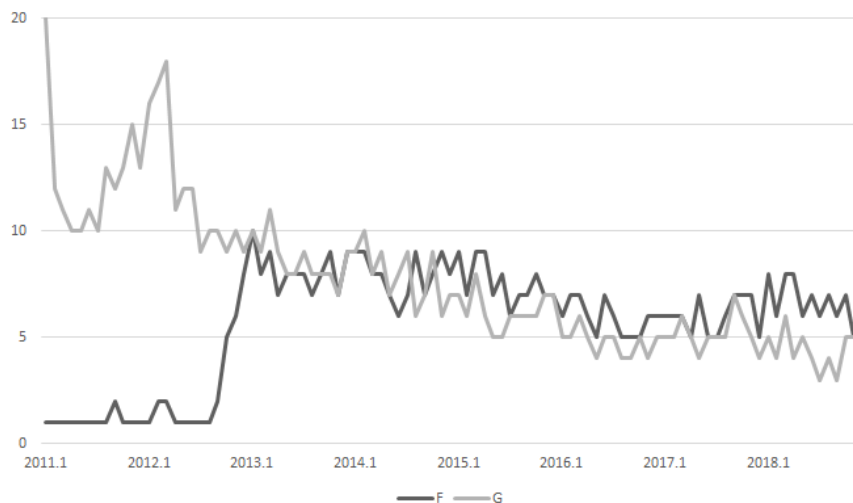
9) 생명보험협회, 2018년 7월 31일 기준

■ ■ 보험회사 검색에서 대형 F생명보험회사의 검색 빈도는 다른 대형 G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비슷해지는데, 이는 F사의 CM채널 판매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함

● F보험회사는 2012년 CM채널 실적이 없었으나 2013년 3천 4백만 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함

- F보험회사의 CM채널 실적은 G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며, G보험회사는 2013년 온라인사업을 분사(分社)시킴

〈그림 7〉 보험회사 검색 빈도 추이



주: 2011년 1월 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 기간 동안 주간 단위 검색 결과임
자료: 구글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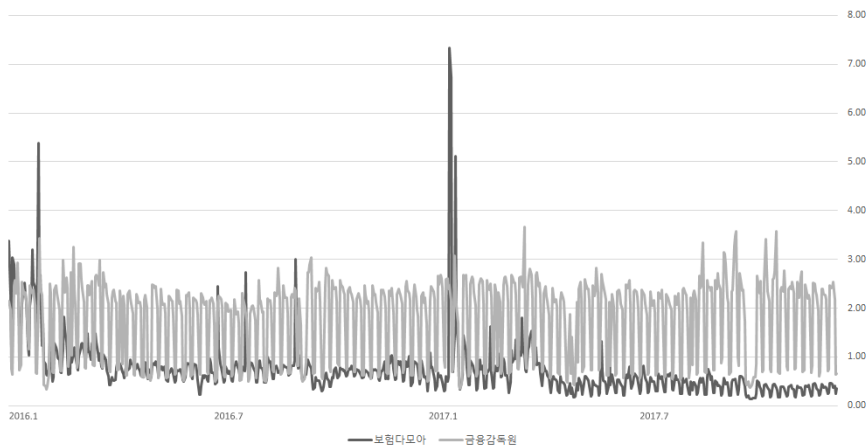
■ ■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작된 ‘보험다모아’는 초기에 높은 검색 빈도를 기록한 이후 ‘금융감독원’ 검색 빈도보다 낮아짐

●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다모아의 검색 빈도가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검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보다 낮은 검색 빈도를 보이고 있음

● 보험다모아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만 검색 빈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뿐 평소에는 낮은 검색 빈도를 기록함

- 2017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의 보험다모아에 대한 평가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험다모아에 대한 검색 빈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함

〈그림 8〉 ‘보험다모아’와 ‘금융감독원’ 검색 빈도 트렌드



자료: 네이버데이터랩

3. 결론



■ 빅데이터 분석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빈도 빅데이터 분석만으로도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함
 - 검색 목적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 빈도 분석 결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소비자들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짐
 - 설문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응답을 할 수 있으나, 검색 기록은 사용자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함
 - 설문조사 혹은 경험통계 등의 분석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함

■ 검색 관련 빅데이터 분석만을 통해서도 보험소비자의 누가, 어디서, 언제 정보를 검색하는지 분석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연령대별, 지역별, 요일별 보험 관련 정보의 검색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보험회사 경영전략의 변화를 소비자 검색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

-
- ‘보험다모아’, ‘내 보험금 찾아줌’ 등 보험 관련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상황을 지역별·연령별로 파악할 수 있음
 - 국내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확산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집적, 접근,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 데이터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kiri](#)

kiri 리포트 포커스 모음집 2018

발행일 | 2019년 1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